

연구자료 D168-1 / 2002. 11

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업정책

서 중 혁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
박 현 태 연 구 위 원
김 태 곤 부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위협적인 요소와 세계의 시장이라는 기회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앞으로 한중간 경제의 상호의존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농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해왔다. 구조조정은 작목 전환과 농업산업화경영,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목 전환은 경쟁력이 낮은 토지이용형의 식량작물에서 경쟁력이 높은 쌀을 비롯한 채소, 과일, 화훼, 축산 등 노동집약적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간 무역마찰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방안 - 중국농업의 구조와 한중간 농업경쟁관계를 중심으로 -』(C2001-35, 2001. 12)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자료집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것을 3권으로 나누어 엮은 것이다. 1권은 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정, 2권은 중국의 농산물수급과 생산구조, 3권은 중국농업의 국제화와 발전과제 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실린 자료는 중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원문을 번역하거나 재정리한 것이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나 중국 농업에 대한 이해와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2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차 례

제 1 장 정치·사회·경제의 기본구조	1
1. 정부구조	1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조	2
3. 지방정부의 구조	5
4.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구조	7
5. 국유기업구조	10
6. 향진기업구조	11
7. 지역개발구조	12
8. 경제구조	17
9. 산업정책의 구조	19
10. 외국자본정책구조	21
11. 무역구조	23
12. WTO가맹구조	25
13. 투자구조	27
14. 민족의 모습	30
15. 교육수준	31
16. 환경문제	33
17. 실업문제	34
18. 호적구조	35
19. 중국인 특유의 사고와 행동	36
제 2 장 행정일반	39
1. 중국의 지역구분	39
2. 지방행정구획 개요	40
3. 농림수산업 담당행정부국(部局)	42
4. 중국 농업부의 조직	43

5. 농촌의 기층조직 기본 상황	45
6. 성별 향진, 촌민위원회수의 추이	46
제 3 장 농촌개혁 20년의 성과(1978~1998)	48
1. 1978년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농촌경제	48
2. 농촌개혁 20년	60
3. 농촌개혁의 부문별 성과	75
제 4 장 농업 및 농촌경제 정책	143
1. ‘10차 5개년계획’ 기간의 농업·농촌경제 정책목표	144
2. ‘가정승포경영제(농가생산책임제)’의 정착	150
3. 농산물 시장시스템의 확립	162
4. 2005~2015년 농업·농촌경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68
제 5 장 중국의 농정체제와 중앙·지방정부 역할	175
1. 중국의 농업발전과 농정변화	175
2. 현 단계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193
3. 주요 농정집행조직과 기능	218
4. 농업부문 예산과 재원조달	235
5. 농산물의 대외수출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246
<부록> 농업산업화경영에 있어서 용두기업 육성의 의견	258
농업관련 용어해설	266

표 차 례

표 1	주요 농산물 생산량	176
표 2	토지생산성(주요 농산물단위생산량)	179
표 3	도시와 농촌인구수 및 구성	181
표 4	도시와 농촌가정 1인당 수입과 지수	182
표 5	국가재정수입과 지출 총액 및 증가속도	236
표 6	국가재정의 농업지출	237
표 7	농업지출에서 분야별 지출	237
표 8	분세제 하의 재정수입항목	239
표 9	분세제 하의 재정지출항목	239
표 10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비중	240
표 11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240
표 12	길림성 재정수입과 지출	241
표 13	길림성 재정의 농업지출	241
표 14	길림성 농업분야별 지출	242
표 15	조달원천별 변화추세	243
부표 1	최근 경영상황	264

그 립 차 례

그림 1	농업부 조직체계도(주요 업무기구)	219
그림 2	조직체계	222
그림 3	대외무역경제협작부 조직체계	223
그림 4	국가양식국 조직체계도	225
그림 5	농업위원회 조직체계도(주요 업무기구)	226
그림 6	대외무역경제협작廳 조직체계도	229
그림 7	길림성 양식국 조직체계도	231
그림 8	백산시 농업국 조직체계도	232
그림 9	백산시 대외무역국 조직체계도	233
그림 10	백산시 양식국 조직체계	234

제 1 장

정치 · 사회 · 경제의 기본구조

1. 정부구조

1.1. 국무원

중국정부, 즉 국무원(중앙인민정부)은 최고국가권력의 집행기관이고, 국가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대회개최 중에는 전인대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 활동을 보고한다.

국무원(내각)은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부총리급) 약간명, 각 위원회 주임, 각부 부장(장관에 해당), 심계서계장(감사원장에 해당) 및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 멤버의 임기는 대략 전인대와 같은 5년이다. 총리, 부총리 및 국무위원은 3선 또는 10년 연속의 임기가 금지되어 있고 65세에 정년이 된다.

국무원은 정기적으로 전체회의와 상무회의가 있고 양쪽 모두 총리가 소집, 주최한다. 전체회의는 각료회의이고 각 부의 부장까지 출석한다.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및 비서장이 출석한다.

1.2. 국무원의 권한과 역할

국무원의 주된 권한은 다음 4가지 항목이다.

- ① 헌법, 법률, 법령에 바탕을 둔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결의, 명령을 발포하고 나아가서는 이들의 결의와 명령의 실시 상황을 심사하는 것
-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
- ③ 각 부, 각 위원회, 그 소속기관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
- ④ 국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

1.3. 시대에 맞춘 기구개혁을 실시

국무원은 1998년 3월에 대폭적으로 기구개혁을 하고 지금까지 40개가 있었던 부, 위원회를 29개로 삭감했다. 또한 13개의 직속기구, 7개의 변사기구(사무기구) 등의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각 부 부장(대신), 각 위원회 주임권한 및 지위는 기본적으로 동격이지만 일부 위원회는 부의 지도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 국무원기구 개혁의 주된 포인트는 마크로 컨트롤 부문에서 국가계획위원회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석탄공업부 등 지금까지의 사업경제관리부문을 공업국으로서 산하기관으로 두고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사업관리부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우전부와 전자공업부를 기초로 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부, 우주공업 총공사 등의 정보관련 부문을 통합하고 새로운 신속산업(정보산업)부를 설립했다. 정보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혁이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조

2.1.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일본의 국회에 해당하는 조직이고 헌법상에

서 중국의 국가권력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멤버는 전국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대표 및 군 대표에서 선출된다. 이 중에는 소수민족대표, 비공산당원도 일정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는 5년으로 전국이래 이미 9기의 대표가 선출되어 있다. 대회는 매년 3월 내지 4월에 북경에서 개최된다.

전인대가 폐회 중인 동안에는 상설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고 법률의 비준 등을 행사한다.

제9기 대표는 2,979명이지만 그 중 공산당원이 71.5%를 차지하고 민족으로는 한민족이 85.6%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별로 보면 노동자 323명(10.8%), 농민 240명(8.1%), 간부 988명(33.2%), 지식인 62명(21.1%), 민주당파, 무당파 애국인사 460명(15.4%), 귀국화교 37명(1.2%), 홍콩대표 35명(1.2%), 해방군 268명(9.0%)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인대가 행사하는 직권은 헌법개정, 법률제한,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의 선출, 국가계획, 국가예산심사, 승인 등이다.

상설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으로 구성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임기는 전인대멤버와 같은 5년이다.

2.2. 만장일치 가결시대 종식

전인대는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혹은 그 의향을 받아들인 국무원의 지시, 제안을 그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고무도장회의’ 등이라고 불리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법치주의를 목표로 할 방침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국무원에서 제안하는 의제의 부체결, 의제에 대한 기권, 반대표 등도 나오고 있고 인사제안에 대해서도 많은 반대표가 던져지고 있다.

현재의 제9기 전인대대표는 1998년 3월에 선출되어 있어 임기는 2003년까지로 되어 있다. 같은 해 3월에 차기 전인대대표가 선출되게 되는데 이 차기전인대대회

에서 국무원 총리 등 국가인사가 토의된다. 2003년 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국가지도자로서 전인대 심사를 받게 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에 의하면 나라의 최고권력기관이나 일본과 같이 예산위원회 등 테마별로 심의되는 것만 아니라 국회 전체회의 이외는 각 지방마다의 분과회가 열려 심의내용을 토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3. 험난한 민주화

최근 전인대에서의 심의안건채택에 있어서 많은 반대표(기권포함)가 던져지고 있다. 특히 부정, 부패적발보고를 중심으로 한 최고검찰보고의 체결에는 반대표의 비율이 높다. 어떻게 부패의 적발이 흐지부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전인대대표(일반서민) 불만이 뿌리깊은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안건체결에서 보는 최근 전인대는 열린 중국을 상징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최근 당간부의 부정부패를 의식하여 “간부는 인민의 공적인 심부름꾼이면서 결코 인민의 위에 서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법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간부의 특권남용을 강하게 훈계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눈에 거슬리는 부패를 앞에 두고 스스로 청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넘치고 있다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매년 전인대와 병행하여 열린 민주당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조직인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있어서도 “간부부패는 마치 인민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면 당과 정부의 위신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발신되고 있다.

전인대와 정협이라는 두 개의 의회가 현재의 공산당과 국가운영의 장래에 경고를 발신하고 법질서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장래의 공산당 일당독재가 붕괴하는 것을 상정한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의회제 민주주의 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치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중국이 사회주의를 형용하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나라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면 긴장의 차이를 깊게 하는 대만 문제의 해결을 향한 광명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민주화로의 행정은 여전히 험하다는 것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지방정부의 구조

3.1. 지방행정구획

중국은 지금까지는 전국 30개의 시, 성, 자치구로 되어 있다. (대만은 제외) 1997년 3월에 사천성 중경이 제4번째 직할시로 승격하여 같은 해 7월에는 홍콩이 1999년 12월에는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어 특별행정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은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22개의 성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로 구성된 것이다.

중국행정중심은 수도 북경이다. 그 중앙정부는 국무원이라고 불리며 최고국가권력집행기관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그 활동을 보고한다.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31개의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동격이지만 지금까지의 직할시인 북경, 천진, 상해의 지위는 정치, 경제면에서 타 지방정부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승격한 중경시의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져 있는지 주목받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도 중앙 국무원과 거의 같은 행정조직이 있다.

대중국 비즈니스에서도 문제는 중앙과 지방소관의 범위와 허인가권한이다. 시장경제화의 흐름 안에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주도이었던 계획경제는 크게 변화하여 지방정부 권한이 보다 강하게 되었다.

단지 산업에 따라 여전히 중앙권한이 강한 분야가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자동차 산업이다.

3.2. 지방정부 재정

1994년부터 중국은 재정개혁에 착수했다. 이 재정개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립을 낳은 요인이 되었다. 중앙정부는 큰 재정적자로 고민하고 있으나 주로 연해 지역의 지방재정은 흑자기조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를 재건하기 위해서 세금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중앙세 수입분을 지금까지 40%에서 60%로 인상을 결정했으나 이 결정에 지방정부는 크게 불만을 재창했다. 이것을 결정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투표에서 과거에 없었던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1994년에 국무원은 산업정책대강 및 자동차 산업정책을 결정했다. 이것은 중앙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한 것이다. 이 중에서 외자도입허인가권한에 대해서는 외자정책완화에 따른 지방외자도입권한이 대폭 강해졌다. 그러나 투자총액 3,000만달러 이상의 안건은 여전히 중앙정부 비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전자, 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앙소관관청의 권한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지방외자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중국은 EU와의 WTO 가맹교섭에 있어서 자동차 프로젝트 지방인가권한을 지금까지의 3,000만달러에서 1.5억달러까지 확대할 것을 합의했다. 앞으로 이 지방 권한 확대가 존수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

3.3. 권한위양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지방분권화 추진에도 있다.

단지 중앙과 지방의 권한구분도 모색중으로 시장경제화가 지방분권화에 연결됐다고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오히려 여전히 사회주의에 의한 중앙집권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지방경제 대두를 중국에서는 ‘서후경제’라고 부른다. 중앙정부는 그 확대가 정치 독립에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화 추진을 위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다.

4.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구조

4.1.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은 1992년 중공중앙결정에 있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을 결정했으나 이것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타결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개혁, 개방 정책의 계속을 표명한 것과 동시에 덩소핑이 1992년 제시한 개혁·개방 확대와 심화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결정은 중국경제 장기전략을 나타낸 것이고 그 의미에서는 덩소핑의 ‘유언’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국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동시에 서로 모순되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체제하에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국력과 생활수준의 인상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계속해서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덩소핑류의 표현으로 하면 “자본주의적 수법에서도 사회주의적 수법에서도 경제가 발전하면 좋다”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발전의 진행방법과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있어

서 중국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중앙과 지방에서도 해석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인 권력투쟁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고, 이후에도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4.2. 시장경제화에 대응한 시스템은 미정비

최근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는 중국’만이 강조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고 경제제도는 지금이 시장경제화로의 이행기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제도 아래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모순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그 조절과 새로운 제도구축도 모색중이라고 해도 좋다.

중국은 요즘 WTO에 가맹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주로 서양의 가맹으로 성립되는 것이나 러시아, 동구유럽과 중국은 ‘시장경제이행국’으로 가입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WTO 가맹이 시장경제로의 완전이행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가맹조건의 하나인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재편이 추진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 움직임을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이 촉진되는 것이다.

4.3.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비공유기업

중국경제 시장화의 진전도를 측량하는 지표 중 공업생산소유형태별 내역을 보면, 1998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대표하는 국유공업이 이미 총생산액의 30%를 하회(28.2%) 하고 집단공업, 개인공업 및 ‘그 외 경제유형’(사유기업, 주식기업, 외자기업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해석으로는 국유부문의 비중이 떨어져도 집단부문과 합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이 해석을 맞추어 보면 국유와 집단(공업생산의 38.4%)이 과반수(계66.6% 점유율)를 차지하고 있고 문제는 없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유기업점유율이 둔화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 만성화되어 생산성지연이 눈에 띄게 된 것이다. 반대로 국유공업 이외의 비국유부문은 수년간의 연평균 신장율이 20%에서 40%라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중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경제의 계승주체가 비국유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4.4. 시장화의 지역격차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현상은 중국 계획경제의 영향을 여전히 강하게 남기고 있으며, 산업에서는 자동차, 전자, 통신, 항공 혹은 금융, 상업 등의 비제조업일 것이다. 이들 산업분야는 중국이 중점육성산업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의 중앙정부기관의 권한, 규제가 극히 강하고 지방분권화(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분야이다.

비제조업분야에서도 금융, 상업, 소매 등은 개혁,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는 지방에서는 실험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고 제조업만큼 규제가 엄격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외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규제가 엄격했던 통신, 금융, 서비스분야 등의 개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있고 시장경제화를 더욱 진전시킬 방침이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는 계획경제의 요소를 남기면서도 시장경제를 대담하게 추진시키고 있다. 산업면에서의 시장화는 지역적으로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보면 개방이 진전되고 있는 외자기업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성장도 크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남부 심천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심천에서는 공업생산 수출의 대부분이 외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유부문에 의한 것이다. 인접한 홍콩의 영향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장 시장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4.5. 시장화의 문제

시장경제화로의 이행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진전하고 있으나 국유기업의 개혁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은 시장경제화를 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시장화 진전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발생현상인 지역격차(소득격차), 실업, 기업도산 등의 제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가에 있으나 경제발전과 이들 제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앞으로도 시장화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국유기업구조

5.1. 존재감 저하하는 국유기업

과거에는 국유기업이라고 불리워졌으나 소유와 경영이 결정됐던 1992년부터 국유기업과 그 이름이 개정되었다.

국유기업은 크게 분류하면 중앙국유기업과 지방국유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중앙국유기업은 중앙정부인 국무원 각부의 산하에 있는 공장, 기업이고 그 수는 1995년 통계에 따르면 7,275개이다. 지방국유기업은 지방정부의 산하에 있고 그 수는 11만 725개이다.

공업에서의 국유기업(11만 8,000개)은 전체 공업기업수의 겨우 1.6%에 불과하지만 종업원 수 (4,652만명)는 31.6% 총생산액으로는 32.6%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국유기업은 공업생산액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집단기업과 외자기업의 급격한 신장으로 인해 이미 30%까지 그 점유율을 낮추고 있다. 지역적으로

봐도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남부지역은 국유기업의 점유율이 낮고 동북 지역 등 대다수의 전통적인 국유기업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다. 예를 들면 동북 요령에서는 국유기업이 공업전체의 61%인 것에 대해 화남의 광둥성에서는 24%로 크게 차이가 있다. 국유기업과 비교하여 비국유기업 부문의 생산성과 성장률이 높은 것이 그대로 각 지역의 성장의 차가 되었다.

5.2. 국유기업개혁은 전도 험난

중국경제에서 시장경제화의 파장이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하게 감퇴시키고 있으나 그 적자체질은 최근 20년간의 개혁·개방의 과정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유공업기업의 40%는 적자라고 하며 게다가 그 적자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국유기업개혁이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주요 대형 국유기업의 적자해소를 2000년까지, 그 외의 국유기업은 2010년까지로 달성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도는 험난이다.

적자 누적기업들을 도산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실업률이 악화되어 있는 오늘날 기업파산의 증가로 대량의 실업자를 낳고 있는 것이 사회불안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이루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제, 기업 합병, 기업매수, 외자와의 합병 등 여러 방식을 도입하여 국유기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있다.

6. 향진기업구조

6.1. 향진기업은 농촌의 부업에서 발전

향진기업은 과거의 인민공사가 있었던 시대(인민공사는 1983년경 해체)에 인민공

사와 생산대대가 경영하고 있던 기업(사대기업)이고 농촌부업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이후는 문자 그대로 향·진(촌) 이 경영하는 공동경영기업 및 개인경영기업을 가리키고 있다. 말하자면 농촌의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소속으로 보면 ‘향진기업’이지만 실제로는 대형외자 기업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도 있다.

6.2. 남부에는 거대한 향진기업도 있다.

향진기업 전체의 중국경제의 지위를 보면 1998년 현재 기업수 2,003만개, 종업원 수는 1억 1536만명에 이른다. 총생산액은 4조 2,000억엔이고 이 생산액은 농촌사회의 전 생산액의 70% 가까이 된다.

현재 1억엔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는 향진기업이 4,989개 5억엔 이상이 433개, 10억엔 이상이 72개로 되어 있다. 상위 10을 보면 천진, 강소성무석, 강소성 오강 광동성순덕, 산둥성오평, 요령성대련, 상해시 마교, 강소성강음 등 연해지역 향진기업이고, 특히 강소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지방별 향진기업수가 대다수인 것은 호남성, 광둥성, 운남성, 절강성 등이고 100만개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향진기업의 업종별로는 상업, 음식, 서비스가 41%이고, 교통운수(20.7%), 건축업(4.1%)등으로 되어 있다.

7. 지역개발구조

7.1. 지역간 경제격차 심각

중국경제 과제는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국유기업개혁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경

제격차문제이다.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15년 장기계획에서는 연해지역과의 격차시정을 주목적으로 중서부(내륙)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특히 2000년에 들어 중국은 ‘중서부대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중서부는 연해동부의 12성, 시, 구 이외의 성, 구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사천, 중경, 대서, 운남, 위주, 신강 등 10성으로 시, 구로 되어 있고 면적으로는 540평방 킬로로 중국 전국토의 57%, 인구는 2.85억명으로 총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GDP로는 겨우 14%이고 1999년 수출입액은 137억달러로 3.8%에 불과하다. 전화보급률에서도 전국평균 11%에 대한 중서부는 4%로 경제나 사회기반면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7.2. 중서부 개발은 장쩌민 체제의 독자정책

중서부개발진흥은 연해동부와 격차시정이 주된 목적이다. 하루아침에 그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격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안정을 손상시킨다는 판단아래 행해지는 정책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것은 연해개방 우선정책을 채용한 등소평 노선에 대해 장쩌민 체제가 채택하는 독자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등소평 개혁·개방 노선은 지역격차를 어느 정도 확대시켰는가?

우선 소득(GDP)지역별 구성으로는 1988년 연해지역 점유율이 54.2%인 반면 중서부는 45.7%이었다. 이것이 1994년에는 각각 58.3%와 41.6%로 변화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소득분배는 연해와 내륙중서부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7.3. 중서부 개발의 성패가 강 체제 안정결정

다음으로 일인당 소득을 연해와 중서부 도시주민 수입에 비교하면 동북도시수입이 4,294엔인 것에 비해 중부가 2,883엔, 서부 3,045엔이다. 도시주민에 한하여 그다지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으로 비교하면 1994년 도시주민의 수입이 3,179엔인 것에 비해 농민수입은 1,220엔이고 그 단순격차는 2.6배이다. 1985년 도시와 농촌과의 생활비수입격차는 1.7배였던 것에서 이것만으로도 격차는 이 10년 간에 확실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광둥성의 1인당 수입은 6,378엔에 비해 서부의 귀주성은 500엔 이상이고 그 격차는 12.7배가 넘는다.

‘선부론’의 결과가 도시와 농촌의 수입차를 확대시킨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등소평의 국가전략은 이 격차를 재도약하는 계기로 하여 격차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허용 위에 성립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현재의 장쩌민 체제는 이미 이것을 허용할 수 없다. 거기에 정권의 안정도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7.4.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개발이 추진

내륙진흥은 연해와의 격차시정과 사회안정의 확립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자본도 그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중서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재정자금으로 늘리는 중서부 자원개발·인프라투자를 우선하는 자원가공형 및 노동집약형 산업의 중서부로의 이전, 외자 중서부로의 유도 등을 약속하고 있다.

중장이 앞으로 중서부에 재정투융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중

하나의 외자의 세제철폐이고 경제특구를 시장으로 하는 특정지역과 그 외 지역경쟁조건을 평등화하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내륙부 지방정부가 가진 외국투자 인가권한의 상한을 1,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했다.

7.5. 구미외자기업 진출

노동집약형산업의 중서부로의 이전은 정책의 유도가 없어도 이미 시작되어 있다.

연해 지역에서의 인건비 상승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내륙이전을 촉진시키고 섬유산업 등 일부 산업으로는 일찍이 연해에서 중부(호남·호북 등)로 이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외자 기업 중에는 내륙의 풍부한 시장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예도 있다. 특히 구미의 다국적 기업에는 사천성, 호북성 등에 선행투자를 하고 있는 예가 비교적 많다.

7.6. 장강 델타가 금후 유망지역

유망한 내륙지역은 상해를 중심기지로 한 장강델타 연안 소주, 무서, 무한, 중경 그리고 성도라는 희망을 들 수 있다.

장강델타는 인구로 말하면 전국의 1/3을 차지하고 자원, 건축자재, 화학공업, 기계 등 산업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

문제는 물류 등 인프라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해로의 접근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지역개발 정책은 상해포동과 중서부에 중점을 둔 것이 명확하다. 이 중점정책을 향한 재정, 세제, 외자정책 등이 크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연해지역은 특구를 포함하여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격차 시정은 내륙지역의 중점투자자로 인한 개발촉진과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불

가에서의 대책을 논의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해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일부 용인하는 것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고용축진과 소득이 내륙으로 환류하여 성간 격차는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간격차, 지역간 격차, 직업간격차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7.7. 장대한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구상

중서부 개발의 주요 항목은 도로, 댐 건설, 교통 네트워크 신설, 개조 빈곤, 농촌으로의 물공급, 식수조립, 기초교육, 기초위생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등의 인프라정비이다. 이 안에서 대형 인프라의 최대목표는 신강에서 상해까지 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이다.

전장 4,212km, 투자액 5550억위안, 2007년 완성 연간우송능력 240억입방미터라는 장대한 계획이다. 2003년에는 최초의 공용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8,500만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7.8. 외자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추진

지금까지 외자의 투자는 거의가 연해동부이었다. 1998년말 현재로 외자도입, 중서부 10성의 점유율은 겨우 3.2%에 불과하다. 중국이 지금까지 도입한 외자 총액 30,000달러에 대해 주어부가 도입한 외자는 겨우 90억달러가 못되는 것이다.

외자도입면에서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중서부지역에 외자를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중국은 대담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로 진출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의 면에서 연해입연해와 나란히 15%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중서부 지방 정부가 특히 장려하는 외자에 대한 '2면 3감'(2년간 세금면제, 3년째부터 반)의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8. 경제구조

8.1. 경제특구

중국의 개방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특별구(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개발구)가 등소평시대의 종연과 함께 그 역사적 역할을 끝내고 있다.

경제특구는 등소평이 시작한 것으로 1980년에 홍콩에 인접한 심천, 마카오국경의 주해, 산두 그리고 대만과 마주 보이는 언덕인 하문에 4개소가 설립되었다. 1988년에는 그때까지 준특구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었던 해남도 가광동성에서 독립하여 해남성이 된 것과 동시에 성전체가 제5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경제특구라는 그 이름대로 대외경제 활동 위에서 큰 자주권이 부여된 특구로 유치된 외자에 대한 세금제도상 우대를 취하는 등 외국자본의 도입창구로서 또한 중국 대외개방정책 혹은 등소평체제의 상징으로서 20년간 경제성장을 인솔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8.2. 등소평 체제와 함께 했던 경제특구

1984년에 경제특구를 시찰한 등소평은 특구의 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동시에 특구의 실험을 연해 주요도시로 확대하여 특구에 준한 경제기술개발구의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경제기술개발부는 기능에서도 외국자본우대조치가 거의 특구와 다름이 없고 대련을 비롯하여 상해, 천진 등 주요 연해도시에서 수출가공구 하이테크존, 보세구 등이 설치되어 외국자본 진출이 성행하여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경제특구, 개발구 그리고 그 후의 주요 델타지역의 개방과 외국자본유치를 성공한 등소평은 1992년에 두 번째 특구시찰을 하고, 경제특구나 개발구 실험을 내륙,

변경지역에까지 확대하여 개혁, 개방정책을 더욱 심화, 확대하는 방침을 계획하였다. 이것이 널리 알려진 남방구화이다.

이러한 것으로 경제특구에서 시작된 중국의 개방정책은 연해에서 내륙으로 확대되어 중국전체가 개방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외국자본 우대조치 제도에서 경제특구의 특구가 되는 의미는 흐려져 왔다고 해도 좋다. 외국자본도입 창구라는 역할에서 오는 경제특구 사명은 거의 끝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 혹은 개발구의 정치적인 역할도 홍콩, 마카오반환이 결정된 것에 따라 끝났다고 해도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중국에 있어서의 ‘최후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하문특구나 그 외 개발구에서 유치 장려하고 있는 대만기업단지의 역할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8.3. 경제 특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특구와 개발구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연해지역은 GNP의 54% 수출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자본의 80% 이상이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의 견인차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기업의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도 군림하게 되었다.

특구는 단순한 수출가공구 혹은 보세구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특구로서 앞서 나가는 400만 산업도시인 심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의 산업진흥도시 혹은 기술개발센터로 더욱 고도기능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사실 심천은 오늘날 홍콩을 넘어설 기세로 하이테크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가장 IT시대의 선두를 달리는 도시가 되어 있다. 그 외의 특구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산업정책의 구조

9.1. 효율무시 생산주의가 성행

1979년이래 개혁, 개발정책은 중국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세계적으로도 성장센터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중국경제의 과제는 많다.

지금까지 중국경제중점은 지역개발이 중시되어 각지가 경쟁적으로 산업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효율무시의 생산주의가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분권화와 시장경제화가 동시에 진전됨으로 인해 각 지역(각 성, 시, 구)이 각각 가공생산기지를 가지고 지역간의 분업을 저해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자본에 있어서도 각지가 경쟁하여 외국자본유치에 적극적이 되어 같은 공장이 각지에 난립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다.

9.2. 국유기업의 활성화

연해지역에서의 지역개발중점은 상해로 외국자본을 중심으로 자립적 발전이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중점정책은 중서부 개발로 이전하여 중서부 개발을 산업정책으로 연결시킨 종합적 정책이 취해지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중국경제는 성장이 빨랐으나 구조적으로는 문제점이 많고 특히 에너지부족, 교통인프라의 지연, 기초 산업 미성숙 등이 눈에 띈다. 또한 시장경제화와 분권화는 ‘서후경제’라고 불리는 지방의 폐쇄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일부의 산업육성에 있어서는 계획경제의 요소가 보다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정부는 산업정책대감을 작성하였고, 1990년대 산업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타결하는 이 대감에 따르면 1990년대 산업정책의 포인트는 국유기업의 활성화이고 그 주된 대상산업을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엘렉트로닉스 그리고

건축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각각의 산업에 중점투자와 외국자본도입을 본격적으로 하는 방침이다.

9.3. 자동차 산업이 최중점의 강화대상

산업정책대강은 그 후 자동차 엘렉트로닉스의 각론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자동차산업정책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정책은 중앙에서 지정받은 8개의 공장만이 승용차생산과 자본과의 협력이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장래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에서 1996년 이후 신규 외국자본메이커참여를 조건부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자동차 국산화계획에 대해 일본,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자동차메이커가 이름을 걸고 있어 중국의 자동차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이다. 또한 WTO가맹을 목전에 두고 자동차관세인하와 규제완화 미국GM과 토요타의 신규참여 등에 따라 ‘3대 3소 2미’로 상징되는 지금까지의 자동차산업정책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전자 엘렉트로닉스도 자동차와 나란히 1990년대에 있어서 중국의 산업육성의 목표로 반도체와 IC 등의 전자부품, 대형TV와 DVD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기술수준향상과 공급력 증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통신 인프라의 정비에 관련하여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 컴퓨터, 통신네트워크 등의 IT산업도 중점산업이다. 이 분야에서도 구미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9.4. 산업정책의 주체는 지방으로 계속 이전

이러한 산업정책은 지금까지 계획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위원회(현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작성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기구개혁에

따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매크로컨트롤관리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대신하여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각종 공업국을 산하에 배치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다.

중국의 산업정책은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요소도 아직까지도 강해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조절과 산업육성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대립도 잔존할 것이다.

10. 외국자본정책구조

10.1. 1995년 외국자본도입의 가이드 라인을 발전

중국은 1995년 6월에 외국자본도입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가계획위원회(현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연합으로 작성되었다. 지금까지 제출된 외국자본정책을 기본적으로 답습한 것이나 1994년에 발표된 산업정책대감에 따른 중점육성산업의 방침이 반영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이드 라인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앞으로의 외국투자 도입가이드라인(‘외상투자방향잠행규정’, 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이고 또 하나는 이 방침에 바탕을 두고 작성이 된 외국투자의 장려, 제한금지항목의 일람(‘외상투자산업목록’, 이하 ‘목록’이라고 한다.)이다.

10.2. 산업별 외국자본도입방침이 결정되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외국자본도입방침을 분야별로 ‘장려’, ‘허가’, ‘제한’, ‘금지’의 4개로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야와 제품을 ‘목록’으로 발표하고 있다. 단지 허가항목은 목록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제한분야는 갑을의 2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갑종의 제한내용은 이미 중국 국내에서 개발 혹은 기술도입이 끝나 있고 생산능력에서 보고 이미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을종은 자동차산업과 비디오, 텔레비전, 은행 등 국가가 공장과 기업의 유치·인가를 지정하여 진출기업수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을종은 외국자본의 진출 그 자체에 제한이 있어 또한 진출형태에 있어서도 제한이 더해져 있는 분야가 많다.

장려, 인가업종에서는 3,000만달러 이하의 프로젝트는 중앙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방에서 인가가 가능하다. 또한 갑종제한업종에서도 1,000만달러 이하의 것은 지방 및 국무원의 담당각 부의 인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원은 1998년 9월부터 내륙진흥의 일환으로 외국 투자의 허인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내륙성, 구에서도 3,000만달러 이하의 프로젝트는 중앙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방이 결정 가능하게 했다.

10.3. 아시아 위기에 따른 외국자본정책재검토

1995년 외국자본도입의 가이드 라인은 그 후 정세 변화에 따라 1997년에 새로운 수정을 하여 외국자본우대 정책의 재검토를 하고 있다(1998년 실시). 그 배경에는 1997년부터의 아시아 통화위기가 있고 또한 그 이전에 외국자본도입이 3년간 계속 감소를 보이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구가이드라인의 대상업종, 품목수를 비교해보면 신가이드라인은 개정전과 비교하여 12건이 증가하였고, 전체 329항목이 되었다.

내역은 ‘장려’ 187항목, ‘갑종제한’ 26항목, ‘을종제한’ 85항목, ‘금지’ 31항목이다. 구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면, ‘장려’가 15건 증가, ‘제한’은 갑종이 6건 감소, 을종은 10건 증가했고, ‘금지’는 구가이드라인과 변함이 없었다.

10.4. ‘제한업종’ 취급에 주목

‘장려’ 업종의 항목은 신가이드라인에서 증가하고 있다. 내역은 농업, 임업, 전력, 기계, 전자등 29개 업종으로 이들 분야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를 장려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제한업종’은 이번 수정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구 가이드 라인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풀탑캔이 이번 갑종제한에서 떨어진 대신 에어컨 및 냉장고용 컴플렉서가 새롭게 갑종제한에 더하여진 것이 다른 점이다.

을종제한업종에서는 전력, 의료기계, 선박의 3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편 석탄산업은 이번에 제외되었다. 구가이드 라인에서 ‘100% 외국자본’을 인정받지 못했던 무역, 국내상업, 여행회사 등은 새롭게 ‘중국측 출자가 외국자본을 상회할 것’이라는 규정이 더하여져 제한조건이 한층 엄격해 졌다.

제한 업종은 외국자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가장 육성하려는 업종군이고 실제로 외국자본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부활한 설비수입면세조치도 ‘장려’와 ‘을종제한’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개방하면 국내기업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다. 제한업종도 앞으로는 국유기업개혁의 촉진과 WTO 가맹에 목적을 둔 국가교섭에서 합의한 각 분야의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제한조건을 서서히 완화해 가지 않으며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11. 무역구조

외국자본에도 대외무역권이 인정받기 시작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대외무역권(해외와의 무역거래권한)은 국무원대외무역경제

합작부(통산성에 해당) 산하의 수출입무역총공사와 그 지방공사에만 부여되어 있고 공장, 기업, 지방정부에는 그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경제개혁 및 무역체제와 진전되며 최근에는 상당한 범위에까지 무역권이 부여받게 되었다.

외자기업도 부여받고 있으나 취급상품과 취급금액 등에 일정제한이 있어 무역제도는 아직 서방측의 조건과 같지는 않았다.

WTO는 서방측의 무역제도의 상징으로 가맹하기 위해서는 WTO가맹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제도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맹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가맹조건의 하나는 관세인하문제이다. 중국은 1996년 4월 1일부터 5,000품목에 대해 평균 30%인하를 하고 평균관세율이 23%가 되도록 하였다. WTO요구에 한발짝 가까워진 것이 되나 자동차 등 일부의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산업과 곧 진출외국자본의 보호를 목적으로 고관세가 적용되어 있다.

이것은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민족산업이 압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기업에 있어서도 염가인 수입품이 국내시장으로 흘러 겨우 시작된 외국자본기업의 투자메리트를 잃어버리지 않게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제도 개편과 WTO의 가맹문제에 영켜 중국은 지금까지 제한되어 있었던 무역권한을 외국기업에도 개방하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의료비, 항공운임, 호텔비, 집세, 관광시설 입장료 등을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내국인보다 높게 설정하여 외국기업에게서 불만을 일으켰으나 이 2중 가격제도를 WTO가맹까지로 철폐할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철폐하고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내국민대우’라고 부르며, 이미 심천특구 등 일부의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새로운 우대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12. WTO가맹구조

12.1. 높아진 WTO 가맹가능성

WTO는 GATT를 발전적으로 강화한 국제기구이다. 중국은 1986년에 GATT에 가맹신청을 했으나 오늘날까지 가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는 상품무역과 더불어 농업, 서비스, 무역, 무역관련조치, 지적소유권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국내에서도 국내 산업의 보호입장에서 가맹조건으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의견도 뿌리깊다. 1999년 4월에 주룽지 수장이 방미했을 때 미국과의 교섭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고 중국가맹이 두 번 다시 어렵다는 견해가 퍼졌다.

그러나, 1999년 7월 일중합의 그리고 최대의 포인트였던 미국과의 교섭이 11월에 타결되어 다음해 5월에 EU와 합의가 성립된 것과 미국의회의 PNTR(대중단구무역관계)의안 승인에 따라 중국이 2000년에도 정식멤버로서 가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2. 발전도상국의 취급을 희망하는 중국

WTO는 무차별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은 WTO 가맹에 따라 자동적으로 WTO 가맹국 중에서 MFN(최혜국대우)를 부여받을 권한을 가진다.

또한 중국은 가맹조건으로 어디까지나 개발도상국으로 참가한다고 하는 원칙을 관철했다. 이것은 WTO원칙에서 수입관세를 선진국의 3~5%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10~13%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시장개방도 단계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도 외국자본우대정책등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12.3. 국간 교섭은 각국의 관심분야에 따라 진행

전반적으로 보면 구미의 요구수준은 일본보다도 높고 이점에서는 일본이 처음부터 중국에 양보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반대로 미국은 요구가 높아진 이유로 중국 국내에서의 반발도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미의 요구내용이 개방시기의 구체적 명시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 일중간 합의 내용에서 구체적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점 등은 일본과 구미의 대중교섭에 있어서 민간과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간 교섭이기 때문에 교섭조항은 각각의 관심있는 분야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미국은 영화, 변호사 등의 개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통신, 금융, 보험 시장의 개방에 관심을 나타낸다. 또한 일본은 건설, 부동산개방에 관심을 나타낸다.

12.4. 합의를 최우선으로 교섭에 임하는 중국정부

각국별 대응을 보면 중국은 EU요구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가 상한에 있다고 하여 시장개방확대와 외국자본출자제한의 철폐 등에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합의내용에는 없었던 새로운 양보를 행하고 있어 EU와의 합의를 중시한 것도 나타내고 있다.

EU는 당초 미국보다도 원칙면에서 높은 요구를 추구해 교섭이 난항을 겪어 한때는 합의가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원칙론에서의 요구를 들면서도 EU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의 관세인하와 보험회사의 신규참여를 도입하는 등 EU는 강경하게 교섭을 전개하고 있고 예상외로 중국이 양보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중국에 있어서는 WTO의 2000년대 가맹은 최대 우선 외교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EU와의 교섭도 ‘미국이상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표명하면서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양국간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엄수할 것인가 아닌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2000년대 늦어도 2001년 초에는 중국의 WTO가맹이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5. 기회와 위협의 병존

중국의 WTO 가맹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의 중국진출은 제조업에서는 구미를 상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 금융, 보험, 소매업 등의 서비스분야에서는 지연되고 있다.

중국 WTO가맹이 시장개방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규칙을 만든 시장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실시되지는 않는다. 당분간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나이즈 스탠더드가 병존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찬스와 비즈니스 위협이 병존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13. 투자구조

13.1. 중국측 파트너 선택이 사업성공의 첫걸음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합병 또는 합작에 의한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중국측 파트너를 찾아야만 한다. 100% 외국자본에 의한 진출경우에는 토지취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이든 중개자(현지대리인)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들의 중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합병과 합작의 경우 최초로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측 파트너의 선택이다.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소개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만일 회사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재무상황 등 파트너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 자료는 부족하다. 단지 최근에는 컨설턴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기에 법률, 회계사무소 등이 중국측 파트너를 알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어느 쪽이든 파트너 선택이 중국에서의 사업성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다. 파트너를 선택할 때 유의점은 그 파트너가 ‘진출하고 싶은 산업 주관관청에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이다. 또한 파트너의 기술력, 자금력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13.2. 계약서 작성의 방법을 세부까지 명문화할 것

파트너가 결정한다고 해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계약서와 정관 F/S(사업화조정 보고서) 작성이다.

중국은 아직 법치국가로의 발전 중에 있고 계약개념도 희박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나중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약특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자본측으로는 가능한 한 세밀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상대가 중국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타국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계약과 같이 행하는 자세를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

13.3. 토지를 선택할 때에는 인프라 정비도에 주의

다음은 토지획득으로 후보지는 인프라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도, 가스 등이 본선뿐만 아니라 지선까지 정비되어 있는가 등이다.

중국이 제공하는 토지는 기본적으로는 기초 인프라정비까지이다. 기초 인프라정비라고 해도 일반공업단지에서는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정비는 토지취득자나 진출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측 파트너와 진출지역의 정부가 제시하는 토지의 정비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직접 후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측 파트너가 출자 일부에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에 알맞은 출자인가 아닌가를 잘 봐두어야 한다.

13.4. 진출분야의 주관은 어떤가를 명확하게 파악

인가는 진출지의 투자도입창구(대외무역경제부문)에서 행해졌다. 경제특구 등의 개발구나 주요도시에서는 3,000만달러 이하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인가를 받고, 그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는 중앙인가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나 비디오, 반도체 등의 중요산업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소관관청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산하의 기계공업국과 전자공업국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 단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1.5억 달러 정도까지의 투자는 지방정부의 인가로 가능하게 되어있다.

더욱이 선택기, 냉장고, 에어컨, 맥주 등의 제한업종은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허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진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관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생산라인을 도입했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수요를 대폭 상회하고 있어 신규도입은 중앙정부에 따라 제한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외국자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싶기 때문에 중앙이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우리들에게 인가권한이 있다’하여 유치하는 경향이 강하나 그러한 유인에 안이하게 끌려가는 것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 민족의 모습

14.1. 다민족국가의 중심의 민족분포

중국은 56개의 민족을 가지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이 중 한민족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다. 타 소수 민족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장족(치왕족)은 1,555만명이며, 가장 적은 민족은 글바족으로 겨우 2,000명이다.

지리적인 분포상황을 보면 한민족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그 거주지역은 연안지역, 황하, 장강, 주강의 3대 유역 및 동북송화강, 요하평원에 집중되어 있다.

소수민족은 연안부와 중부에 분산되어 있으나 주로 중서부 연경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은 산악과 고원, 상림지역 혹은 목축지역 등 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민족의 집중지역에는 그 민족의 명칭을 칭한 행정구가 존재하고 있다. 성 레벨에서는 ‘신강위글자치구’(우이글족), ‘내몽고자치구’(몽고족), ‘공서장족자치구’(치왕국), ‘티벳자치구’(티벳족), ‘영화회족자치구’(회족)의 5개가 설립되어 있고, 지구 레벨에서는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구’ 등 31, 현 수준에서는 하북성의 ‘맹춘회족자치현’, 내몽고의 ‘오로천자치구’ 등 96개이다.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에 따라 소수민족은 평등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중국국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각 수준에서의 인민대표대회에 상당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확보되어 있다. 또한 각 자치구 정부의 주임은 일반적으로 민족대표가 그 지위에 취임하고 있다.

그러나 티벳, 내몽고는 한민족과의 대립이 뿌리깊고, 장기적으로는 민족자치구가 앞으로 강한 자치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14.2.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지만 공통어는 한어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에 있어서도 각각의 민족언어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통어는 ‘한어’이다. 일반적으로 ‘보통화’(푸우동호아)라고 불리우는 표준어는 북경어 및 화북동북지방의 방언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으나 북경어가 표준어는 아니다.

또한 한어에 있어서도 북경, 상해, 광도의 발음은 일본의 사투리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어 전혀 다른 언어로 이해할 필요까지 느낀다.

15. 교육수준

15.1. 의무교육제

중국의 교육제도는 고등교육(대학, 대학원, 연구원), 중등교육(고교, 전문학교, 기술학교, 중학), 초등교육(소학), 유아교육, 특수교육(맹농아아동학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을 주관하는 관청은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원의 교육부이다. 성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있고, 광둥성과 같이 고등교육청과 보통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는 곳도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6.3.3.제의 교육제도가 취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등중학’ 3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이 3년이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4년이지만, 이공학부는 5년제가 되어있는 곳이 많다. 또한 의학부는 기본적으로 5년제에서 일부는 6년제 대학도 있다.

대학은 전국에 1,022개가 있고, 그 중 종합대학은 북경대학, 청화대학, 상해북일 대학 등 78개이다. 더욱이 그 중 30개가 전국중점대학으로 지정되어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학합병이 계속되어 학교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의학, 농학 등 단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며, 시장경제의 흐름속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2. 과열하는 수험전쟁과 ‘실업아동’의 존재

중국에서도 명문학교가 있으며, 특히 고급간부의 자제가 다니는 학교는 인기가 있다. 북경사범대학부속학교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최근 상해와 천진 등에서 영재 교육을 목표로 한 사립학교의 설립이 계속되고 있다. 광둥성에서도 대만기업의 진출영향을 반영하여 대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학교가 설립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사립학교는 학생모집, 교사의 임명, 교재의 선택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사립학교설립은 중국에서도 ‘수험전쟁’(교육과열)을 낳아 진학경쟁의 과열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농촌에서는 ‘실업아동’이라고 불리우는 수천만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비, 교과서 등은 기본적으로 무료 배포되어야 하고, 학교 교사의 급료도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되고 있다. 각종 학생들로부터 잡비를 징수하는 예가 많다. 그 비용이 의외로 높아 지불이 불가능한 농촌가정도 많다.

또한 노동력으로서 아동을 농촌작업에 동원하는 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교육문제는 한층 심각하게 되었다. 1995년 통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율이 98.5%, 중학교 진학율이 90.8%, 고등학교 진학률이 48.3%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배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각종 리쿠르트가 전개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졸업생을 외국자본기업이 채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그 학생을 교육했다고 하여 기업이 교육비로 1만엔을 교육관청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다.

16. 환경문제

16.1. 중국정부의 공해문제 인정

중국에서는 과거에 공해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해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이고 또 공해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누출되는 것을 극히 억제해 왔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공해문제와 환경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가 중국경제발전의 열쇠가 되어 있었다.

중국의 환경문제 중 하나인 배기가스나 폐기물 등은 공업화로 인한 오염문제이다. 또한 황하의 모래, 삼림자원의 난벌채, 사막화 문제 등도 경제발전과 함께 한층 심각하게 되었다.

또한 대기오염문제도 있다. 특히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배출이 심각하다. 아황산가스의 중국 연간 배출량은 1,500만톤(1987년)으로 구소련의 2,500만톤(1989년), 미국의 2,000만톤(1990년)에 이어 세계 제3위이고 일본의 83.5만톤 (1989년)의 약18배에 달한다. 그 중 석탄연료에 의한 배출이 90%를 넘고 있다.

주된 발생원은 공업(50%), 화력발전(30%), 가정(15%)이다. 특히 공장이나 화력발전소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환경대책도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지역은 연해 내륙 등과 같은 공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공업화 정도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해동부를 발생원으로 하는 아황산가스에 대해서는 상당량이 편서풍을 타고 일본 상공으로 흘러들어 일본 산성비의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16.2. 외국자본의 공장은 공해대책 의무화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현재는 경제발전, 지역개발을 우선하고 있어 환경문제로서의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중국은 1993년에 개최된 지구환경사회회의에 참가하여 정부로서도 이를 취급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국기업은 환경대책과 공해대책 등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기업이 공장진출할 경우에는 화녕규칙의 요구가 엄하고 공해대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에서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17. 실업문제

농촌에서는 4명 중 1명이 실업자에비균

사회주의를 취하는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실업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업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경제화로의 이행을 받아 솔직히 「실업」이라고 부르게 되어 그 통계도 발표하게 되었다.

1995년 말에 도시부의 실업은 570만명 실업율은 3.1%로 실제로는 2,0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반실업자’가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농촌부에서는 ‘잠재적 실업자’라고도 할만한 과잉 노동자가 1억 2,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농촌노동인구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수치이다.

최근에는 국유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 도시노동자의 실업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시아캉’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은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에서 범죄 온상이 되어 있다.

18. 호적구조

18.1. 법률상 호적 이동제한, 현실적 증가

중국에서 호적이동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농촌호적에서 도시호적으로의 이동은 엄하게 제한되어 있고 농촌호적의 사람은 평생 농촌호적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촌호적 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해도시의 경제개발구에서는 외국자본기업의 진출로 고용기회가 발생하고 있어 개발구내에서는 농촌호적 종업원의 채용이 허가되어 있다. 또한 주택판매촉진의 일환에서 도시호적주택의 판매를 하고 있는 도시도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 아이 갖기 정책’이 장려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히 농촌에서는 봉건제가 뿌리깊게 남아 있고, 노동력으로서의 필요성과 남존여비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낳는 가정도 많다. 계획출산의 규정을 어겨 출생한 아이는 호적에 등록할 수 없게 되어 ‘흑호구’(숨은 호적)이라고 불리고 있다.

18.2. 합법적인 호적의 이전방법

호적의 이전이 합법적인 경우도 있다. 심천특구에서 내국인은 특별 통행증이 필요하지만 심천의 총인구 400만명 중 300만명은 특구외에서 오고 있는 인구이고 ‘잠정인구’로 불리운다.

외국자본기업도 심천밖에서 채용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호적을 올릴 수는 없어 고용이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자본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기업내에 오랫동안 남게 하기 위해 호적이전을 지방당국에 신청하는 것이다.

당국은 기업마다 사람 수를 제한하여 인가하지만 일인당 1~2만엔을 지불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호적취득료는 본래는 개인부담이었으나 기업에 따라서는 전액 또는 반액을 회사측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을 상매하는 그룹도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호적취득알선자의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연해의 개발부에서는 임시공 또는 정사원으로 농촌호적자를 채용가능하지만 임시공의 경우에는 보통 2-3년 동안 도시호적자가 된다.

19. 중국인 특유의 사고와 행동

19.1. 중국인은 ‘체면’, ‘인정’, ‘개인주의’의 민족

현재 중국 대륙의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는 유교의 전통·중국의 사회주의 제도, 공산당의 정책과 사상교육의 공동작용에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과 대만의 중국인 해외의 화교 또는 같은 동양문화권에 있는 일본인과는 단순히 동일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다음에 설명하는 ‘체면’, ‘인정’, ‘개인주의’의 3가지가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전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19.2. 체면, 중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체면’은 대륙중국인에게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인에게는 ‘체면’은 마스크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난한 가정에서도 소중한 손님을 모실 때에는 거창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도 ‘체

면'때문이고, 또한 국민경제가 붕괴하는 마당에까지 쫓겨 있었던 문화대혁명의 후 기에도 계속 '세계혁명의 지도자'를 자부한 모택동이 혁명동맹국에게 무상원조를 명령한 것도 어떤 뜻에서 는 이러한 '체면' 때문이었다.

재산소유권의 불명확화와 법률제도의 불완비도 정부와 국유기업간부의 '체면'을 세우는데 제 역할을 했다. 적자를 해소할 수 없는 국유기업의 사장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부의 공무원과 거래관계자를 거대한 연회에 초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중국인의 '체면'에 상처받게 하면 큰일이 난다. 한국인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지만 대륙중국인과 비교하면 각 단계의 차가 있는 것 같다.

19.3. 인정, 중국어에서는 '인맥'을 의미

중국어의 '인정'은 한국 사회의 '인정'하고는 좀 다르고, '인맥'과 '관계' 등의 의미에 가깝다.

중국도 '인정'을 중요시하는 사회이지만 법치국가로서 확립되어 있는 국가와는 다르고, 아직 법률규칙이 건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는 인치국가인 중국에서는 그만큼 '인정'이 여러 방면에서 통용되어 쓰여진다. '인정'이 정부와 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침투하여 있기 때문에 뇌물 등의 부정부패가 일반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 공무원과 기업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사택을 방문할 때 조용하게 주는 것이 상대방도 받기 쉽다. 이것도 상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라고 해도 일본의 습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러한 인정에 의존해 합병회사를 경영해도 성공할 수 없다. 이점에서는 중국인은 서구인의 건조한 사고방식에 맞는 것 같다.

19.4. 개인주의, ‘자아중심’ 민족

일본의 ‘집단주의’ 지향과는 반대로 중국인은 ‘개인주의’ 지향이다. ‘자아중심’의 민족이라고 해도 좋다. 특히 대륙의 중국인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집단주의’ 교육과 선전이 끊이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주의’ 경향은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

제 2 장

행정 일반

1. 중국의 지역구분

중국의 농업관계문헌에서는 몇 가지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 설명하고 있다.

1.1. 북방과 남방의 구분

양자강(장강)을 경계로 남북으로 구분하는 방법의 경우 북방지역은 북경, 천진, 하북, 산서, 내몽고, 요영, 길림, 흑룡강, 산둥, 하남, 내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의 15성(省), 시, 자치구이며, 남방지역은 상해, 감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호북, 호남, 광둥, 광서, 해남, 사천, 귀천, 운남, 티벳의 15성, 시, 자치구이다.

1.2. 동부, 중부, 서부 3구분

경제사회 발전상황과 입지를 감안하여 3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동부지역] 요영, 북경, 천진, 상해, 하북, 산둥, 강소, 절강, 복건, 광둥, 광서, 해남의 12성, 시, 자치구.

[중부지역] 흑룡강, 길림, 산서, 내몽고,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의 9성, 자치구.

[서부지역] 사천, 운남, 귀주, 티벳, 내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의 9성, 자치구.

주 : 이상의 구분은 『중국농촌통계연감, 1995년판』(국가통계국편)에 따른다. 즉, 중국판농업백서인 『중국농업발전보고, 1995년』(농업부편)에서는 ‘하북성’과 ‘광서 자치구’가 중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1996년판에서도 동일하다.

1.3. 경제지대별 6구분

[동북] : 요녕, 길림, 흑룡강.

[화북] : 북경, 천진, 하북, 산서, 내몽고.

[중남] : 하남, 호북, 호남, 광둥, 광서, 해남.

[서남] : 사천, 귀주, 운남, 티벳

[서북] : 내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2. 지방행정구획 개요

일본에서는 지방행정구획 계층은 국가를 포함하여 국가 → 도도부현 → 시초우손의 3단계이다. 중국의 경우는 국가 → 성급(省級) → 지구급 → 현급 → 향급 → 촌급의 6단계로 되어 있다. 『級』을 붙인 것은 등급을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등급에 명칭이 다른 행정구획이 복수 존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하 각급에 포함되는 서로 다른 명칭의 행정구획명을 다음과 같다.

- ① 성급 : 省, 자치구 시
- ② 지구급 : 지구, 시, 자치준, 명(명)
- ③ 현급 : 현, 자치현, 시, 旗, 자치旗, 특구, 임구
- ④ 향급 : 향
- ⑤ 촌급 : 촌

2.1. 3종류의 시

중국의 지방행정구획구분을 알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복수의 등급에 동일 명칭의 지방행정구획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가 3개의 등급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성급의 시, 지구급의 시, 현급의 시로 3개의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성급의 시는 북경, 천진, 상해의 3개밖에 없으므로 알기 쉽지만 지구급의 시는 210개가 있고, 또한 현급의 시 그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무난하다.

2.2. 중국의 국가라는 개념

중국에서 설명을 들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국가’와 ‘나라’라는 개념이 일본인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방은 동떨어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차이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에서 설명을 듣게 될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국가’ 또는 ‘나라’가 ① 중앙정부인지 ② 성정부인지 ③ 지구의 행정행서(行署)인지 ④ 현정부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이 말하는 ‘국가’ 또는 ‘나라’가 ①~④의 어느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좋다. 그러나 충분한 회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깊게 캐묻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 자신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향(鄉)이나 진에서 ‘국가간부’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그들은 현정부가 월급을 부담하고 있는 향과 진의 임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농림수산업 담당행정부국(部局)

3.1. 중앙행정조직의 일본과의 차이점

일본의 경우는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까지 일관하여 농림수산성이 담당하고 있고, 농업수산업에 대해서도 그 대부분을 농림수산성에서 소관하고 있다. 말하자면 농림수산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한 곳만을 방문하면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는 농림수산업에 관한 문제는 대다수의 부(部)에 걸쳐 있고 농업부만을 방문해도 농업생산과 향진기업 정도 밖에는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농업부에서 쌀유통, 가공, 소비의 상황을 들으려고 해도 만족할 수 있는 답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3.2. 중국 농림수산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국

현재 일본 농림수산성 소장사무를 염두해 두고 이를 구성하는 중국 중앙관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업부
- ② 임업부
- ③ 국내 무역부 : 농산물 유통, 소비
- ④ 수리부 : 농업관개 배수사업
- ⑤ 대외무역 경제협력부 : 농산물 무역과 농업에 관한 차환, 원조, 외자도입
- ⑥ 기계공업부 : 농업기계
- ⑦ 화학공업부 : 화학비료, 농약, 플라스틱 필름
- ⑧ 중국경공업총회 : 식품제조
- ⑨ 중국방직총회 : 생사

위에 기록한 것 외에 각부 사이를 조절하기 위한 각부보다 상위등급의 국가 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있다.

즉 일본 농림수산성이 소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응하는 중국문제를 모두 이해하려고 하면 위에서 열거한 중앙관청을 모두 방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위 문제 이외에 중국농업, 농촌문제 중 중요한 사항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해둔다.

4. 중국 농업부의 조직

1997년1월에 필자가 직접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 간부직원으로부터 청취한 농업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부장 - 부부장 5명
- 농간국(農墾局) 국영농장관계
 - 어업국
 - 향진기업관리국
 - 축산수의사
 - 농업사
 - 농업기계화관리사
 - 판공청
 - 국제합작사 - 대외경제합작판공실
 - 재무사
 - 총합계획사
 - 기관서비스센터 - 직원의 복리후생
 - 인사노동사
 - 과학기술 및 품질표준사
 - 환경보호 에너지사
 - 농업자원구획관리사
 - 시장정보사

- 정책체제계획법규사
- 교육사
- 농촌합작경제사
- 이퇴(離退)간부사 - 농업부의 퇴직자대책
- 동식물 검역국
- 전국사료공업판공사 - 이하는 연구기관등
- 중국농업과학원
- 중국수산과학원
- 화남열대작물연구원
- 농업공정연구설계원
- 중국농학회
- 중국수산학회
- 농촌경제연구원센터 - 이하는 사무단위
- 전국농업기술 서비스센터 - 전국농업기술보급 스테이션
 - 전국식물방제 총스테이션
 - 전국종자공작 총스테이션
 - 전국토양비료공작 총스테이션
- 축산수의 총스테이션
- 전국수산기술 보급 총스테이션
- 농약검정소
- 경영관리총스테이션
- 경제정보센터
- 중국목공상총공사 - 중목 그룹
- 중국농간총공사 - 중간 그룹
- 중국종자 총공사 - 중수 그룹
- 농목어업국제합작총공사 - 이하는 매스컴관계
- 농업방송학교
- 중국농업영화TV제작소
- 농업출판사

5. 농촌의 기층조직 기본 상황

5.1. 인민공사제도 해체와 향촌(鄉村)제도 실시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농촌경제체제개혁이 1978년 연말이후 개시되었다. 그 결과 1958년부터 실시되어 온 인민공사제도가 해체되었고 그 후는 향촌제도가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인민공사제도는 공사 → 생산대대 → 생산대라고 하는 계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향촌제도도 향(또는 진) → 촌민위원회 → 촌민소조(小組)라고 하는 계층이 형성되었다.

인민공사제도에서 향촌제도로 이행되는 상황을 개념도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해체전)		(공사해체후)
인민공사 5.4만	→	향진정부 4.7만
생산대대 71.9만	→	촌민위원회 74.0만
생산대 597.7만	→	촌민소대 600만여
농가호수 1.82억호	→	농가호수 2.33억호
농민수 8.28억인	→	농민수 9.18억인

5.2. 농촌의 기층조직 기본상황

5.2.1. 향과 진의 차이

향과 진은 격으로 말하면 동격이다. 그러나 향보다도 진이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향에서 진으로 ‘승격’ 희망이 저류로서 있는 듯하다. 법령으로 보면 현급 이상의 국가기관 소재지일 것, 비농업인구가 일정수 또는 일정비율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이 향에서 진으로의 승격요건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법령은 실태로서

는 무시되어진 지방이 많기 때문이다. 향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진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5.2.2. 1향진, 1촌민위원회 규모

1995년 실적에서는 하나의 향 또는 진의 규모로 관할하의 촌민위원회가 15.7, 관내농가호수4,939호, 농촌인구 1만9,449명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촌민위원회는 관내의 농가호수 315호, 농가인구는 1,239명으로 되어 있다.

6. 성별 향진, 촌민위원회수의 추이

6.1. 향 감소와 진의 증가

인민공사제도에서 향진제도로 전환이 정착한 1985년 말과 1995년말 향진정부수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향이 감소하고 진이 증가되고 있으나 각 성간에서는 꽤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광동성에서는 1985년말에는 2만 821이었던 향정부가 1995년 말에는 63으로까지 격감하고 있다.

한편 같은 성진정부의 수는 이 기간에 149에서 1,592로 증가했던 것이다. 이를 보면 이 사이에 꽤 많은 향정부가 합병한 것인데 필자가 1995년 여름에 같은 성을 방문했을 때 이 성의 간부에게 이점에 대해 질문했던 바에 의하면 이 성에서는 인민공사제도에서 향진제도로 이행할 때에 인민공사를 진으로 하고 생산대대를 향으로 하였고 생산대를 촌민위원회로 하는 개편방법을 취했다. 그 후 이것을 제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향정부수의 감소는 운남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인은 아마도 광동성과 같을 것이다.

6.2. 촌민위원회수의 동향

촌민위원회수의 추이에 관해서도 광동성과 운남성에서는 대규모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광동성의 대규모 감소의 이유는 전술한 것과 같이 생산대를 촌민위원회로 하는 것이 당초의 방법이었고 그것을 제정한 결과이고 아마 운남성도 같은 것이다.

이 두 성을 제외하면 촌민위원회수의 증감에는 그다지 큰 규모의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촌민위원회수의 추이가 행정정부수의 추이와 크게 다른 것은 일정한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감소하고 있는 성이 있는 반면 증대하고 있는 성도 있어 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제 3 장

농촌개혁 20년의 성과(1978~1998)

I. 1978년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농촌경제

1. 발전성과

1978년 개최한 당의 제 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농촌개혁과 발전은 이미 20년의 찬란한 역정을 지나왔다. 이 기나긴 20년의 역정 동안 우리 당은 등소평의 이론이자 위대한 기치인 해방사상, 실사구시, 과감한 탐색, 끊임없는 실천을 견지해 왔다. 우선 농촌에서부터 파격적인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농민의 대폭적인 적극성을 충분히 이끌어냈으며, 농촌 생산력에 있어 크나큰 해방과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농업과 농촌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놀랄만한 위대한 성과를 얻어냈다.

- (1) 농촌경제의 전체적인 힘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농촌산업구조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0년 동안 농촌 경제의 발전으로 농촌은 곧 농업, 농업은 곧 농작물 재배, 농작물 재배는 곧 식량확보라는 단순한 구조를 점차적으로 벗어났다. 곡식 등에 있어 안정적인 재배생산을 함과 동시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적

극 발전시켜 높은 생산량과 우수한 질량, 고효율의 농업과 농촌의 비농산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지방기업이 새로운 세력으로 나타나 농촌 산업구조의 변혁을 가져옴으로서 농촌경제의 전면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1998년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있어 총생산가치가 25,103.4억원에 달하였다. 이는 1978년과 비교했을 때 2.25배가 증가된 것이다. 그 중 농업의 비중은 1978년의 80%에서 1998년의 56.2%로 감소한 반면에, 임업, 목축업, 어업의 비중은 43.8%로 상승하였다. 또한 농작물 재배 내에서 곡식과종면적이 농작물총과종면적에서 차지한 비중은 1978년의 80.3%에서 1998년의 73.1%로 감소했으나, 경제 작물의 비중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향촌기업의 생산가치는 이미 전국 총생산가치의 $\frac{1}{3}$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둥으로 발전하였다. 비농업 산업의 발전은 농촌경제를 크게 활성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수입을 높였고, 1억이 넘는 농민의 취업을 해결했다. 게다가 전면적인 농촌현대화 건설을 가져와, 중국국정에 적합한 농촌 현대화의 초보적인 길을 찾아냈다.

- (2) 주요농산품의 생산량이 연이어 몇 단계나 상승하자 중국은 명실상부한 농업 대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8년 전국에서 거둔 농작물의 생산량은 49,000만 톤을 초과했다. 이는 1978년과 비교했을 때, 18523만 톤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九五’계획의 목표량을 앞당겨서 달성한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5,000만 톤을 1계단이라고 본다면, 20년간 중국에서 생산된 식량 규모는 연속해서 4계단이나 훌쩍 뛰어오른 것만큼이 된다. 면화, 기름(油類), 설탕 등의 지속적인 생산량의 증가는 1998년의 각각 450만 톤, 2314만 톤과 9790만 톤 씩 되었는데, 이는 1978년에 비해 각각 1.03배, 3.39배, 그리고 3.11배씩 더 증가된 것이다. ‘시장바구니’도 대폭 증가하여 1998년의 돼지, 소, 양고기 생산량인 4,355만 톤(발표된 통계수치)과 수산물 3,907만 톤으로, 이는 1978년에 비해 7.27배 증가된 것이다. 지금의 농업은 국제적으로도 그 지위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농산물, 면화, 유채씨, 담배, 육류, 계란류, 수산물, 야채의 생산량은 모두 골고루 세계에서 수위의 자리에 올라 이미 국제 농산물 공급체계의 중요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
- (3) 1인당 평균 차지하는 농산품의 양이 대폭으로 증가하자, 농산물 시장의 공급 체계에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20년동안 전국인구는 2.8억 여명이 증가

하였으나 농업발전은 그 인구증가의 속도를 크게 초과했으며, 1인당평균 차지하는 식량의 양도 크게 높아졌다. 1998년과 1978년을 비교했을 때, 1인당평균 차지하는 식량, 면화, 기름의 양(量)은 각각 318.7kg , 2.3kg , 3.53kg 씩 증가하여, 모두 23.2%, 53.5% 그리고 228.6%씩 증가했다.

1인당평균 차지하는 설탕, 육류, 수산품의 양은 각각 24.9kg , 8.9kg, 4.8kg에서 78.4kg, 34.9kg, 30.9kg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각각 214.9%, 292.1% 그리고, 543.8%가 증가된 것이다. 1인당평균 차지하는 과일의 양도 6.8kg에서 43.7kg으로 542.6%가 증가되었다. 육류, 달걀류, 우유 그리고 수산품에 대한 1인당평균점유량은 이미 세계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20년에 걸친 농촌발전은 짧은 기간 동안 내에 농산품의 장기적인 단점이었던 수동적 국면뿐만 아니라, 과거의 줄을 서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배급표에 의해 판매하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게다가 대다수 농산품은 장기적인 부족상태에서 풍년에는 여유가 있어서 어떤 농산품은 상대적으로 너무 남던 농산품의 총량이 기본적으로 평행을 이루도록 변화시켰다.

농업의 발전은 이미 자원에 예속되어 있던 과거에서 수자원과 시장의 이중예속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은 이미 하나의 새로운 역사단계로 들어섰다. 자력에 의한 경쟁으로, 세계의 7%에도 미치지 못했던 농경면적에 22%의 세계인구가 살수 있도록 만든 것은 중국이 세계농업발전에 남긴 위대한 공헌이라 하겠다.

- (4) 농민생활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998년 농민 1인당평균 순 수입은 2,162원에 달하여 1978년에 비해 2,028.4원 증가했다. 가격요인을 빼고 연평균 성장률은 7.41에 달한다.

전국농민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은 이미 배를 채우던 단계에서 배불리 먹고 살만한 단계로 전환되었다. 농민의 의, 식, 주 방면의 생활조건이 명확한 개선으로 인하여 생활의 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1998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생활 소비지출은 1590.3원에 달했다. 농민의 의, 식, 주 방면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식비 면에 있어 식품지출이 생활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의 66.7%에서 1998년의 53.4%로 13.3%감소되었다. 대다수 농민은 이제 배불리 먹는 것은 기본이 되었다. 그리하여, 주식의 비중은 감소되

고, 부식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영양이 높은 식품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복 면에 있어서도 천을 사다가 옷을 만들던 것에서 직접 기성복을 사서 입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거지에 있어서도 농민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은 이미 1978년의 8.1㎡에서 1998년의 23.7㎡로 증가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건물 중 벽돌과 나무의 구조와 철과 흙을 옹고 시켜짓던 구조의 비율이 높아졌다. 부분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지역과 앞서 부유해지기 시작한 농민의 주택 및 내부 장식에 있어선 이미 현대생활 방식으로 바뀌었다.

농촌의 소모품 방면에 있어서 과거에는 ‘과거부터 인기 4대 가전제품(老四大件)’인 자전거, 재봉틀, 시계, 라디오와 같은 소모품은 이미 기본적으로 포화상태이며,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오토바이 등 새로운 가전 제품 등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빈민 인구를 이미 1978년의 2.5억 명에서 1998년의 4,20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 (5) 농촌현대화 건설 속도가 지속해서 빨라지고 있다. 물, 전기, 교통, 통신을 중점으로 한 농촌기초설비의 건설이 급속한 발전을 했다. 1998년 전국은 이미 90%이상의 행정촌에 교통, 전기, 우편이 연결되었다. 향촌기업을 선두로 한 농촌공업화의 공정이 급속화 되었으며, 농촌의 작은 마을 건설을 돌파구로 한 현대화건설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농촌교육, 의료, 위생, 사회보장 등 각종 사업에 모두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전국 농업의 기계설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전국 농업기계의 총동력은 4억kW를 돌파하여 주요농작의 기계화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화료 사용량과 농촌 전기 사용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1998년 각각 4,085.6만톤과 2,042.1억kW에 달했을 때는, 1978년에 비해 각각 3.62배와 7.02배 증가한 것이다.

2. 주요 조치

개혁개방 이후 20년, 즉 신 중국성립 이래 중국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이 가장 활기에 넘치고 발전의 폭이 큰 시기였다. 농민 수익이 가장 많고, 생활수준이 가장 눈

에 띄게 개선되었던 시기이며, 농촌의 각종 건설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이다. 이는 당이 농업과 농촌사업을 중시하고, 솔선하여 농촌에 일련의 개혁과 정확한 경제 정책을 실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20년이래, 중국은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 방면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였다.

2.1. 농촌개혁을 추진하여 생산력의 발전을 이룸.

2.1.1. 고도로 집중된 인민고사체제로의 변혁으로 가족책임경영을 기초로 통분결합(統分結合)의 상층경영체제를 실행

이는 당의 지도아래 수많은 농민이 이룬 위대한 창조이다. 개혁 중에 끊임없이 경영체제를 개선하여 철저히 인민공사의 ‘일대이공’(一大二公, 인민공사조직화의 주요 방침 ‘大’는 공사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토지가 많아 대규모적인 생산과 건설이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公’은 사회주의화, 집단 소유화를 말함), ‘정사합일’(政社合一, 정치권력으로서의 역할인 ‘政’과 집단소유제에 근거한 경제조직으로서의 역할인 ‘社’를 일체화하는 것)인 구체제의 폐단을 버린 것으로 토지의 모든 권리와 사용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가족책임제를 추진하여 농민의 농업생산, 경영주의 주체적 입지를 확립시켰다. 이와 동시에 집단 경제 조직은 농가를 위해 생산의 전, 중, 후반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런 종류의 경영체제는 농업생산자체의 특징에 부응하였다. 집단 경제의 우월성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경영의 적극성을 끌어내어 이미 중국농업의 기본제도화 되었으며, 앞으로도 오래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1.2. 단일한 집단소유제 경영구조를 변혁하여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여, 여러 종류의 소유제 경제의 병존 및 공동발전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

20년간 당은 중국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국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경제요인과 경영 주체, 경영형식의 공동 발전을 고무시켜 농촌의 소유제 구조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하였다. 향촌기업의 돌연한 출현은 농촌의 집단경제발전을 주도한

힘이 되었다. 또한 농촌개체, 사영기업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의 왕성한 발전은 중국 농촌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한 경제 원인이 되었다. 주식제도, 주식합작제경제의 발 빠른 발전은 농촌경제 중 가장 활발한 힘 되었다. 향촌집단기업 또한 주식제, 주식합작제 및 의탁, 임대, 합병 등 여러 형식의 개혁으로 농촌집단 경제에 여러 종류의 효과적인 실현 형식을 형성하였다.

2.1.3. 시장 공급을 채택하여 농산물 유통체제의 변혁을 고수

20년간 국가는 농산품의 판매가를 연이어서 수 차례 대폭인상 하였다. 1988년과 1978년을 서로 비교했을 때, 농산품 판매가의 총 지수가 483.3%로 인상되었다. 농산품의 가격관계에 있어 농민의 생산에 적극성을 끌어냈으며, 농민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를 위해 여러 조건을 만들어냈다. 농산품 공급관계가 순조로운 상황에서 국가가 농산품 구매체제를 적절한 시기에 개혁하여 국가주문의 농산품수량을 감소하거나 점차적으로 취소하게 되었다.

현재, 곡물을 제외하고는 부분주문을 실행하고 있다. 목화는 공급판매합작사(供销社,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구관 협동조합으로, 처음에는 농민을 상대로 매매하는 업무만을 취급했으나, 점차 국영상업기관의 위탁을 받아 구관 업무도 취급하게 됨)경영과 통일시키고, 고연(특수설비를 한 건조실에서 건조시킨 담배 잎, 또는 이것을 만드는데 쓰이는 담배) 등 소수 농산품은 여전히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에 고치, 설탕류는 국가정찰제외에도 대다수 농산품의 가격과 시장경영으로 이미 개방되었다. 그 중에서 육류, 수산품, 과일, 야채생산은 이미 완전히 시장으로부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부농산품 구입총액 중, 국가정가의 비중은 이미 1978년의 94.4%에 비하여 1998년에는 15%이하로 하락하였다.

곡물 유통체제의 개혁은 ‘넷을 나누어 하나를 완성한다’(四分改一完善)의 원칙과 ‘구매를 넓히고, 정찰제를 실시하며, 영업운영을 봉쇄한다’(敞开收購, 順價銷, 封運行)의 정책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화 유통체제의 개혁도 현재 진행중이다. 1999년부터 새로운 목화가 시장에 등장하자, 새로운 목화구입정책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농촌의 토지, 노동력, 자금 및 기술 등의 요소가 시장에서 점차

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의 자원배치 중, 기초성 작용이 뚜렷이 강화되고 있다.

2.1.4. 농촌분배형식이 변혁

점차 노동에 따른 분배와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가 결합된 분배방식이 실행되어 농민의 적극성을 이끌어 냈다. 가족부담경영책임제의 실시로 ‘한 숟의 밥’이라던 생각과 농민생산 경영의 장단점을 그 수입과 직접 연관시키던 전통의식을 버렸다. 이런 종류의 생산 방식을 농민들 사이에는 ‘거둬들인 것이 풍족하면 국가의 몫이고, 나머지는 집단의 몫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농부의 몫’(國家的, 留足集體的, 下都是自己的)이라고 한다. 당의 15대보고(15大報告)에 명확히 제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노동에 의한 분배를 주로 하여 여러 종류의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제도를 고수하였다. 노동에 의한 분배와 생산요소에 의한 분배를 서로 결합시켜 효율성과 공평성,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입을 견지하여 일부 사람이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도록 허락과 격려를 해주었고,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수입분배에 참여를 허락하고 격려하여 농민의 생산에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추진시켰다.

2.1.5. 농촌경제의 거시적 조정과 억제방식을 변혁시켜, 경제, 법률, 행정 등 방법을 종합 운용한 농촌경제의 거시적 조정과 억제 체제를 대체적으로 형성

개혁개방 이후, 전통계획경제체제 아래서 계획 위주의 자원분배방식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조심스레 발휘했다. 농산품시장의 점차적인 개방과 시장 메커니즘의 성장에 따라, 국가는 농업의 가시적인 조정과 억제, 잇따른 곡물 등 주요 농산품의 전항저축제도 설립, 가격구매제도와 모험기금제도의 보호를 강화시켰다. ‘농업법’, ‘농업기술확충법’, ‘향촌기업법’ 등 일련의 농업 법률법규를 반포하여 농촌경제에 대한 국가의 거시적 조정은 이미 단일 행정적 지령성 계획에서 시장 조정위주로 행정수단, 법률수단, 경제수단과 서로 결합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농촌개혁 전의 국가는 농업생산에 대해 보다 높고 집중적인 지령성 계획관리를 실행하였다. 국가는 매년 십 여종의 농산품에 대하여 엄격한 지령성 계획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계급별로 차례차례 명령을 하달해야만 했다. 이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각지에서 적지 않은 목표와 요구가 증가하였으나, 농촌개혁 중 이런 종류의 관리체제가 바로 잡혔다. 현재 국가는 이미 농산품 생산의 지령성계획을 전면 취소했으며, 9종의 주요 농산품 생산에만 지도성계획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개혁은 농민에게 생산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케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업의 기능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관리를 하도록 하고, 봉사와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더욱더 시장의 수요에 부합시켰다.

2.2. 농업을 국민경제의 서두로 하여, 농업에 대한 자원과 보호를 제정 및 개선함으로써,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을 위한 일련정책 조치를 추진

2.2.1. 언제나 농업을 각종사업의 서두에 놓음.

신 중국이 성립 된지 30여 년 동안 긍정 및 부정적인 양방면의 경험과 교훈은 농업이 경제발전, 사회안정, 국가자립의 기초임을 인식시켰다. 중국은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농업대국이고, 농업 상황의 좋고, 나쁨은 언제나 전국의 큰 문제로 관련지어졌다.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당은 농업, 농촌 및 농민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을 뿐 아니라, 농업과 농촌사업에 대한 전문 배치를 진행시켰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농촌의 거둬들인 풍년으로 당 중앙은 모든 당에 농업의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다해서 결코 농업경제 업무에서의 긴장을 늦추지 말 것과 국민경제 중 농업생산가치 비중의 하락으로 인해 농업의 기초적 지위가 부정당하거나, 그 외 방면의 일로 인해 농업을 경시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하였다. 농촌개혁 20년간, 당의 제15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20년간의 농촌개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전면총괄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농업과 농촌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배치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 당의 농업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은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

전에 믿을 수 있는 정책의 보장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2.2.2. 국민 수입과 사회 자금의 분배구조를 적극 조정시켜, 농업 참가율이 지속해서 증가

20년 동안, 국가는 기본건설투자의 재정예산 내(內)자금, 신용자금 그리고, 외자(外資)이용 등의 방면에서 농업투자 쪽으로 더욱 힘을 기울였다. 국가예산 내 농업 기본건설투자의 비중이 점차 향상되자 국가가 배치한 예산 내 기본건설투자 중 농업의 비중이 ‘6차 5개년 계획’ 기간의 6.1%에서 ‘7차 5개년 계획’ 기간의 7.7%로 높아졌다. 1995년에는 16.9%로 1997년에는 26.4%로 한층 더 높아졌다. 1998년, 국내수요를 넓히기 위해 국가는 더욱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채택했다. 그 해, 재정예산 내 기본건설투자금 350억원을 새로 추가시켜 전년도의 국가 농업기본건설 투자를 약 500억원 높이 달성시켰다. 이 액수는 1978년의 20배 이상이다.

국가가 모은 농업 기본건설 투자금은 집중적으로 대중형 수리센터, 상품식량기지, ‘삼북’(三北, 중국의 서북, 화북, 동북서부의 세 북부지방) 방호림 등 중요한 공사의 건설에 쓰였다. 잇따른 착공으로 장강삼협(長江三峽)의 수리센터와 황하(黃河) 밑바닥의 수리센터, 화이허(淮河), 타이후(太湖), 퉁팅후(洞庭湖), 과양후에 종합 정비공정을 건설했다. 황하하류, 장강 중, 하류에 제방과 방류댐을 만들어 홍수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건설 공사를 하여 각지의 큰 강과, 하천, 호수를 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골간 공사를 마쳤다. 이 공사로 인하여 국가급의 상품식량 기지현 830여 곳과 우량면화기지 241곳, 기름류 기지 42곳, 설탕류 기지 57곳을 건설하였다. 또한, 황화이하이 평원(黃淮海平原), 삼강평원(三江平原), 황하삼각주(黃河三角洲), 장강 중하류평원(長江中下游平原) 등과 같이 잠재력이 큰 지역을 증강시켜, 식량, 면화, 기름, 육류, 설탕 등 주요 농산품을 중심으로 한 농업 종합개발을 진행하였다.

‘삼북’(三北) 방호림 체계를 중심으로 한 농업공정으로, 임업자원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전환되자, 삼림자원면적과 축적량 양측 모두 신장되고, 삼림복개율이 1970년대 후기의 12%에서 1998년의 13.92%로 향상되었다. 농업, 임업, 수리, 기상과학기

술확장 등 사회화 복무체제건설이 강화되었다. 위에서 말한 농업 공정의 실시는 농업기초시설건설의 취약한 상태를 개선하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2.2.3. ‘쌀주머니’(米袋子, 미곡) 성장(省長) 책임제와 ‘시장바구니’(菜籃子, 부식품) 시장책임제를 실행하여, 각급 정부의 농업발전책임을 강화

농업생산에서 시장과 가치규율의 조정작용을 집중발휘 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 조정과 억제대책을 운용하고, 농업에 대해 농업보호정책을 실행했으며, 국계민생(國計民生,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농산품의 저장조절제도를 만들어, 식량 위험기금 및 부식품 조절기금제도, 식량전문조항비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성은행 즉, 농업발전은행을 설립했다. 1994년부터 중앙정부는 ‘쌀주머니’ 성장 책임제와 ‘시장바구니’ 시장 책임제를 공개화 시켜 각지의 농업을 장악하였다. 특히, 식량생산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강화시켜 중국 주요 농산품의 지역적인 공급과 수요의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2.4. 농민 부담을 감소와 농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중앙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중시하여, 이미 몇 차례나 전문문서를 보내어 구체적인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확히 요구한 바 있다. 1993년 중앙정부는 과단성 있는 대책을 채택하여, 농민에게 부담을 주던 문서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킨 후, 다시 검토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정리과정을 통하여 37항의 중앙 및 국가기관 관련 문서에서 언급된 농민 부담항목과 43항의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돈과 상품, 노역, 승진을 위한 목표달성활동에 대한 요구를 취소하여, 약 10항의 잘못된 수취와 관리방법을 바로잡았다. 그 후 중앙정부는 ‘약법삼장’(約法三章)을 제출하여 농민부담의 반탄(反彈)을 제지하였다. 여러 차례 농민부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위법 행위와 악성 사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조치가 있었다.

1998년 9월에 열린 당의 제15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중앙은 농민 부담 업무를 감소하기 위한 전문 배치기관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주던 부차적인 부

담과 근본적인 부담을 함께 고쳐야하며, 항목과 한도액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부담 시키거나,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3년 동안은 실행케 했다. 함부로 돈을 건거나, 자금을 모으거나, 벌금 또는 업무량을 분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켜, 변태적으로 증가하는 농민부담의 각종 잘못된 병폐를 바로 잡아야 했으며, 또한 세금제도를 점차적으로 개혁하고, 농민책임의 비용과 노무의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입법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부담업무를 감소시켜 농민은 괄목할만한 효과와 보호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정부는 농민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3. 과학기술진보에 의존한 과학교육

과학기술은 중국 농업문제 해결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년 동안 국가는 농업과학연구, 과학기술성과의 확충과 농촌교육사업을 가장 특별한 위치에 놓고, ‘과학교육으로 농촌을 일으킨다’는 전략을 실시하였다. 지속된 농업과학기술 체제 개혁의 심화는 중요한 성과의 확충과 응용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조직은 ‘豐收계획’, ‘星火계획’ 등의 과학활동을 넓히고, 농촌 각종 전문 기술협회와 사회화 복무조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격려를 하였다. 국외 선진농업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한껏 흡수하였으며, 농업과학기술의 함량을 한층 향상시켰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농업생산에 한 공헌은 이미 1978년의 27%정도에서 1998년의 42%로 높아졌다. 양계법잡교논 벼(兩系法雜交), 논벼를 가뭄 논에 드문드문 심는 방법과 파종기술, 북방과 고한산지(高寒山地)에서 교잡한 옥수수의 지면 복개재배기술(覆蓋栽培技術), 소맥정량파종기술(小麥精量播種技術), 측토배합시비(測土配方施肥)와 화학비료 시비 기술, 절수 관개 등의 기술이 대량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제와 사회에서 훌륭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 중 지막복개재배기술(地膜覆蓋栽培技術)의 확충면적은 0.23억헥타르 이상이 되었으며, 농업 효과의 증가 누계 액수는 600억 원에 달하여, 중국 농작물재배기술에 한 차례 혁명을 가져왔다. 논벼의 한육희식기술(旱育稀植技術)은 북방의 논벼생산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현재 이미 10여 개의 성(省)과 직할시에서 모두 0.13ha씩 누계 확장되었다.

2.4. 두 가지 자원과 두 개의 시장으로서 국제경쟁과 협력에 적극 참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은 모든 방면과 여러 계층의 대외농업기술교류와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외향형농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농산품의 국제무역을 확대시켜, 농업의 대외개방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년동안 농업 외자 이용금액은 총 100억 달러를 넘었으며, 수 많은 농작물 및 가축우량종, 모종 및 거대한 농업기술성과를 도입하여 농업의 대외무역을 계속해서 확대시켰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밀, 옥수수, 쌀, 그리고 면화가격의 변동으로, 중국의 수입 밀, 수출용 옥수수, 쌀, 면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중국 농업의 대외개방은 이미 연해로부터 내륙으로 확충되었으며, 일반가공업으로부터 재배, 양식 등의 산업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외자 도입에서 국외창설기업투자로 발전되었으며, 기술성과의 도입과 흡수에서 부분생산, 가공기술로까지 확장되어 그 합작과 교류의 범위가 날로 넓어지고 있다.

개혁개방 20년 동안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의 성공적 실천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위대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해 건설한 물질적 기초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농업과 농촌사업을 위하여 비교적 좋은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농업생산관계를 조정하여 생산력발전의 요구에 부합하고, 농민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주어 농민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정책제정의 우선적인 출발점으로 했다. 반드시 농민의 창조정신을 존중해야 하며, 군중에 의해 위대한 개혁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개혁의 시장방향을 고수하고, 농촌경제를 위해 새로운 활력을 주입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전체적인 국면에서 출발하여, 농업과 농촌사업을 깊이 중시해야만 한다

농촌개혁의 성공은 등소평 이론의 위대한 승리이다. 등소평 이론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해방사상, 실사구시를 한결같이 고수하였다. 이는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이 얻어낸 위대한 성과 중 가장 근본적인 경

힘이었다. 등소평 이론을 확실히 이행하기만 한다면, 이 강력한 사상무기는 지속적인 농촌개혁과 과감한 탐색, 끊임없는 창조를 추진하여, 반드시 사회주의 신 농촌의 위대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

II. 농촌개혁 20년

당의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은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개혁은 우선 농촌의 구체제 타파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대도시와 전 경제체제에까지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이다. 개혁이 농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 기본국정과 당시 농촌의 어려웠던 상황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10년 동안의 대재해는 국민 경제를 붕괴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농촌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다. 그 당시 배를 채우지 못한 인구는 무려 2.5억명에 달해서 식량문제는 가장 급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혁이 이외의 다른 해결책은 없었다. 당의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해방사상과 실사구시의 사상노선을 새로이 확립하여 당 사업의 중심을 경제건설에 옮겨놓아 농촌개혁에 사상적 전제조건을 제공하고, 정치적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농촌개혁은 필연적으로 시작되었고 발전하게 되었다.

1. 농촌개혁의 ‘4가지 타파’

1.1. 인민공사체제를 타파하고 농가생산청부제를 기초로 하여 통분결합(統分結合)된 이중경영체제를 실행

1.1.1. 농촌 인민공사체제를 개혁

인민공사는 정사합일(政社合一)의 조직으로서 농민의 협력경제조직일 뿐만 아니

라, 국가 기층(基層)의 정권조직이기도 하다. 농촌개혁의 심화에 따라, 농가생산정부책임제의 보편적인 추진과 인민공사의 폐단이 날로 드러나고 있다.

1979년 가을, 사천성(四川省)의 광한현(廣漢縣)은 우선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민공사를 철폐하고 정부와 경제조직인 공사로 분리하여 건설하여 공사(公社)를 향(鄉)으로 바꾸고, 향 당위원회와 향 인민정부(鄉人民政府)를 설립하여 인민공사를 대신해 농민기층의 정권의 기능을 행사하는 동시에 농공상연합회사(農工商聯合公司)등의 이름을 가진 일급 합작경제조직을 설립하였다.

생산대대를 촌(村)이라 바꾸고 촌민위원회를 설립하여, 생산대대가 독립채산이 되어 손익을 자주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농업생산합작사를 조직했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농촌정치체제의 문을 열었다. 1982년 12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한 새로운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향 정부는 농촌을 위해 설립된 기층정권으로서 인민공사를 철폐하기 위해 향 정권(鄉政權)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제정하였다.

1983년 1월, 당 중앙은 ‘현재 농촌경제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서 지적하기를, “인민공사체제는 두 방면에 걸쳐 개혁되어야 한다. 이는 곧 생산책임제의 실행이며, 특히 농가생산정부제의 실행이자 정부와 경제조직의 분리이다”라고 하였다. 1983년 10월 12일, 당 중앙, 국무원(國務院)은 ‘정경 분리와 향(鄉)정부 건립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어, 전국 인민공사에 모조리 정치와 경제조직을 분리하여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4년 말, 전국의 99%가 되던 인민공사를 향(鄉)으로 바꾸고, 향(鄉) 인민정부가 성립되었다. 99%의 생산대대가 촌(村)으로 바뀌고, 촌(村)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85년 6월, 전국각지의 향(鄉)정부 수립 사업이 모두 끝났다.

정사합일(政社合一, 정치 권력과 경제 조직으로서의 공사를 일체화하는 체제) 체제의 개혁은 농촌 생산 관계와 관리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 삼급소유제(三級所有制)에 있어서 생산대대를 최소단위로 한다)라는 체제하에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 계급의 상, 하급 행정 종속관계를 개혁하여 평등한 경제관계

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구분이 없던 종전의 상황이 바뀌어, 당과 정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정당분리는 향 당위원회가 정부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바로 고쳐 당 기층에 있는 지도자와 정권건설을 강화하고 체제보장을 제공하였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행했다. 체제상 인민공사 시기의 첫째로 균등, 둘째로 징발과 배치(一平二調, ‘平’은 소비물자나 식량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절대평등주의, ‘調’는 생산용 자재와 필요한 인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것으로 1958년에 인민공사화 운동 당시에 나타난 풍조인데, 후일 일을 잘하든 못하든 대우는 똑같은 무차별 균등 보수제도의 폐단을 비판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음)문제부터 해결하여, 농민생산경영의 적극성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1.1.2. 가정연산승포제를 기초로, 통분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행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토지 청부제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있다. 이는 농촌개혁 첫 단계의 주요내용이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 추진은 1972년12월 당의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84년 12월 당의 제12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연 6년에 걸친 사업이었다. 1982년 1월, 당 중앙이 전달한 1981년 10월에 열린 전국 농촌사업회의의 기록에서 “각 농민에게 생산부담을 분담하는 것은 사회주의 농업경제의 구성요소일 뿐이며, 합작화 이전의 사유제적 개체 경제와는 다르다” 라고 지적하고 농가생산청부책임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였다.

1983년 1월 중공중앙정부는 ‘현재 농촌경제 정책이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서 농민에게 부담을 분담하는 가족경영체제는 합작경제 중 경영의 한 단계일 뿐이며, 일종의 새로운 형식의 가정경제라고 지적하였다. 농가생산청부책임제는 종전의 협동화 시기의 적극적 성과를 계승하여 토지 등 기본생산자료의 공유제와 모종의 통일 경영의 기능을 고수했다. 이런 종류의 분산경영과 통일경영의 결합적 경영방식은 폭넓은 적응력을 지니고 있어,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의 결합 원칙을 채택하여 집단의 우월성과 개인의 적극성을 동시에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의 지도하에

중국 농민이 이루어낸 위대한 창조이며, 마르크스주의 농업 협동화 이론이 새로이 발전된 실천형식이다.

이 보고서에서 또 지적하기를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완성하는 관건은 청탁을 통한 통합과 분리의 관계를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이며, 통일경영을 위주로 한 인민공사와 생산대대는 농가생산청부제의 장점을 주의하여 받아들여야 하며, 분산경영 위주의 인민공사와 생산대대는 생산발전의 수요에 따라 호혜의 원칙과 사원들의 요구와 동의를 잘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계화 경작이나, 수리, 식물보호, 방역, 제종(制種), 배종(配種) 등은 모두 전면적인 계획하에 배치, 통일 관리, 분리청탁, 제도제정을 해서 농민을 배려해야 한다.

1.2. ‘식량증산을 경제 시책의 중심에 둔다’는 단일구조를 타파하여, 여러 종류의 경영체제와 향촌기업을 발전시켰으며 농산업 구조를 변혁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전반적인 발전이 모든 농촌경제를 활발하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경영을 펼쳐 특정업종경영농가인 전업호(專業戶, 중점호, 겸업 농가, 복합경영중핵 농가)의 발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농촌개혁의 주요정책이다. 1981년 3월, 당중앙, 국무원은 국가농위(國家農委)에 전파한 ‘농촌의 적극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히길, “통일경영의 전제아래, 업종별 청탁, 농가 생산 청부 임금계산법에 따른 생산책임제를 추진하여, 각종 형식의 전업대(專業隊), 전업조(專業組), 전업호(專業戶), 전업공(專業工)을 조직한다”고 하였다.

전업호(專業戶)란, 업종별 생산을 그 내용으로 하여, 교환을 그 목적으로 한 상품생산자를 뜻한다. 일종의 청부재배업자이며, 수공업자인 청부 전업호(請負專業戶)이며, 일종의 자체생산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자영전업호(自營專業戶)이다. 그들은 일단 생산을 시작하면 상품생산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어,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추구하고, 농촌의 각종 능력가로서의 힘을 발휘하여 생산의 업종별 분업과 여러 가지 경제 연합을 촉진시킨다.

개혁개방 20년간, 중국 농업의 산업구조는 이미 과거 단일적 재배로부터 농수산업 공동발전으로 변모하여,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이 신속히 향상되어 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식량대국뿐 아니라, 축산, 수산물의 대국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수많은 농촌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전국 인민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반조건을 제공하였다. 20년간, 재배업종의 연평균 발전속도는 6.7%에 달하였다. 또한 그 발전 속도가 가장 빨랐던 1982년의 증가 속도는 12.3%에 달했다.

재배업종 중 특히 식량생산량의 상승은 장기화되던 식량공급 부족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설령 1998년과 같은 흉년이 든다고 해도 끄떡없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었다. 도시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육류, 계란, 우유, 어류 등 동물성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목축업과 어업의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1997년 목축업과 어업 생산가치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5배와 8.2배 증가되었다. 1차 산업 총 생산가치 중의 비중은 각각 31.5%와 9.1%가 되고, 시장 총점유율은 20년 전 보다 2배와 5배반이 넘었다. 1997년, 재배업종과 임업은 제1차 산업 중에서 모두 56%와 3.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1978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24%가 감소되었거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1996년, 돼지, 소, 양고기 총 생산량은 4,772.6만 톤이며, 이는 1978년에 비해 4.6배가 증가한 것이다. 우유의 생산량은 629.4만 톤으로 6.1배에 달하였다. 1997년 수산물 생산량은 3,602만 톤으로 6.7배 증가하였다. 1992년에서 지금까지, 목축업의 생산증가 속도는 더욱 높아져 11.6%에 달한다. 1991년 이래, 세계의 육류생산의 증가 총량 중 80%가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20년간 농촌의 산업구조가 조정된 후로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다. 농촌 산업구조 중 1차 산업의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고,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되었다. 1997년 1차 산업의 생산가치 비중은 24.4%에 달하며, 1978년에 비하면 44.2% 하락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2, 3차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거듭 상승하였으며, 특히 2차산업은 이미 농촌 산업구조 중 절대적으로 우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997년에 이미 총생산의 62.9%에 달하였으며, 1978년과 비교했을 때, 36.8% 더 신장한 것이다. 3차산업 또한 비교적 빠른 발전을 계속 유지하여, 농촌 경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의 5.3%에서 1997년에는 12.7%로 상승하였다. 1997년, 목축업과 어업

생산가치는 각각 5배와 8.2배로 증가하여 제 1차 산업 총생산가치 중에서 각각 31.5%와 9.1%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각각 총 시장 점유율은 20년 전의 2배와 5배반이 넘었다.

오늘날 농민은 희망이라는 들판 위에 두 손으로 현대적 기업을 건립해 낸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향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력은 농촌 총 노동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전국 국내 총생산가치의 $\frac{1}{3}$ 과 전국 세금수입의 $\frac{1}{5}$, 전국 시장출하 물품 인도가치의 $\frac{1}{3}$ 이 모두 향촌기업에서 산출된 것이다. 날로 시장경제의 식에 눈뜨고 있는 중국 농민의 눈이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경제 작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농촌 전반에, 설사 재배업종 내부에서 만일지라도 경제 작물의 증가속도가 식용작물보다 더 빠르다. 식용작물의 파종면적은 1978년부터 7% 하락해서 1997년의 총 파종면적의 73.2%를 차지했지만, 같은 시기에 기름 작물면적의 비중은 1배가 상승하였다. 이밖에도 면화 이외의 기타 경제작물 비중 또한 대폭 상승되었다.

1.3. 일괄구입, 일괄판매제도를 타파하고, 시장의 요구에 호응하여, 농산품의 유통을 원활히 함.

1985년 1월 1일, 당의 제12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의하면 경제 체제개혁, 결정의 기본정신에 대하여 당 중앙, 국무원은 ‘한층 더 활발한 농촌경제를 위한 정책 제10항’을 제정하였다. 이 10항의 정책 제1항에는 농산품의 정부통제 할당구매제도의 개혁으로 1985년부터 일부의 품종을 제외하고, 국가는 다시는 농민에게 정부통제로 할당구매의 임무를 내리지 않았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추어 계약구매(예를들면, 곡식, 면화)와 시장구매(산돼지, 수산물과 야채)를 나누어 실행하였다. 일괄구매, 할당구입제를 없앤 후, 여러 경로의 직선 유통을 실행하였다. 어떤 기관이든 더 이상 농민에게 지령성 생산기획을 하달하지 않았다. 농촌 시장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수많은 농민이 시장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농산품 유통체제의 변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혁은 농촌 경제의 안정적 증진을 촉진시켰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농산품 일괄 판매, 일괄 구입을 계약

구입과 시장구매인 ‘복선제도’로 바꾸어 놓았다. 면화 등 4가지 생산품 외에 기타 종류의 농산품 가격의 전면적인 개방은 시장 조정을 위주로 한 농산품유통체제를 형성하여, 많은 농민이 자주경영 및 손익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의 주체로 만들었다. 현재, 농산품의 종합상품 비율은 이미 1980년대의 40%정도 수준에서 60%이상으로 향상되었다. 전국적이고, 지역적이던 농산품시장 체계의 초보적 형성이 4,500여 곳의 도매시장의 커다란 유통의 교량으로 바뀌었다.

개혁개방 20년 동안, 유통체제 개혁의 지속적인 강화로, 국내소비품 시장이 번영과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상품생산과 유통을 촉진시켜, 인민의 물질문화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줄곧 존재해 오던 결핍경제의 속박을 철저히 타파하고, 구매시장의 뚜렷한 특징으로 떠오르고있다.

개혁개방 이후, 주민수입의 지속적이고 빠른 증가속도로 인해, 시장 수요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통계에 따르면, 1997년 도시와 향진 주민 가정 1인당 평균 분배수입은 5,160위안으로서 1978년에 비해 14.6배 증가 한 것이다. 이에 물가요인을 빼고서도 각각의 연평균 증가 비율은 6.2%와 8.1%이다. 넘쳐나는 시장 수요는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와 동시에, 시장 물가를 장기적으로 높였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주요상품을 우수 품질의 유명상품으로 집약하였다. 어떤 해에는 곡식, 식용식물성기름, 설탕 등에 구조적, 지역적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공급구조는 전면적으로 안정적인 형세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공업의 생산 상황은 양호했으며, 농업은 연간 풍작을 거둬들였고, 시장바구니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시장에는 의, 식, 생활용품이 넘쳐 났다. 주민수입과 소비수요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소비품 시장규모를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촉진시켰다.

개혁개방 20년간, 도시의 시장은 물론이고, 농촌의 시장규모 모두 빠른 속도의 발전을 지속하였다. 1997년 농촌시장의 소비품 소매매출액은 10,649억 원으로 1978년에 비해 12.1배 증가한 것이다. 그에 비해 도시시장의 소비품 소매매출액은 16,650

억 위안으로 21.3배 증가하여, 1978~1997년간, 전국 사회 소비품 소매매출 총액의 누계는 16.6만억 위안에 달한다. 물가 요소를 배제하고도, 실제 연평균 증가율은 9.6%가 되는 것이다. 20년 동안, 국민경제의 빠른 성장과 양적 변화의 축적은 상품 시장의 공급과 수요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농업생산의 연속적 풍작으로 상품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존재해 오던 결핍경제의 속박을 철저히 타파하고, 나날이 구매자 측의 시장 특징이 뚜렷해졌다.

주로 현재 시장에서 주를 이루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평형과 과다공급의 비율은 100%에 달한다. 개혁개방 초기 상품 공급부족 상태는 이미 사라졌으며, 물가의 상승폭이 상승선에서 하강선을 타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초기, 상품의 공급부족으로 시장가가 치솟았다. 이처럼 공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물가상승폭 또한 올라갔다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1998년 상반기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소비자의 지위는 피동적 위치에서 주동적 위치로 바뀌었다. 결핍경제시대의 소비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상품을 상품증표나 물품증명서에 근거하여 구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그 주도적 위치에까지 올랐다. 시장은 생산자에 대한 유도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과거 생산자가 계획에 맞추어 생산을 진행하여, 생산과 시장이 다소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의 수요가 생산규모와 생산 방향을 결정한다.

20년의 개혁개방은 인민의 물질과 문화생활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인민의 소비수요 또한 새로이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요즘, 시장에는 브랜드, 품질, 특성, 새로운 상품이 점차적으로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고 품질, 고 품격, 고 영양 그리고 새로운 맛의 식품이 나날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민이 기본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의, 식, 생활용품 판매의 비중을 점차 낮추고, 문화, 오락, 보건 등 정신적인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점차 늘렸다. 소비자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유명상품이나 우수한 상품에 집중되는 동시에 다원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1.4. 단일집단경제의 소유제 구조를 타파하여 공유제를 주체로 한 여러 종류의 소유제로의 변화

개혁을 통해 초보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요구하고 있는 신체제의 틀을 구축하여 커다란 해방과 생산력의 발전은 물론이고 농촌에 천지가 뒤집힐 만한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업호(專業戶) 발전에 대한 지원은 국가 중요정책의 제1항이다. 1981년3월, 당 중앙, 국무원(國務院)은 국가농위(國家農委)에 전파한 ‘농촌의 적극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히길, “통일경영의 전제 아래, 업종별 청탁, 농가 생산 청부 임금계산법에 따른 생산책임제를 추진하여, 각종 형식의 전업대(專業隊), 전업조(專業組), 전업호(專業戶), 전업공(專業工)을 조직한다”고 하였다.

전업호(專業戶)란, 업종별생산을 그 내용으로 하여, 교환을 목적으로 한 상품생산자를 뜻한다. 일종의 청부재배업자이며, 수공업자인 청부전업호(請負專業戶)이며, 일종의 자체생산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자영전업호(自營專業戶)이다. 그들은 일단 생산을 시작하면, 상품생산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어,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추구하고, 농촌의 각종 능력가로서의 힘을 발휘하여, 생산의 업종별 분업과 여러 가지 경제 연합을 촉진시킨다.

농촌주식합작제의 발전이 상품경제의 조건하에 있는 연합과 합작을 촉진시킨 것은 농촌 소유제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다. 농촌 상품경제의 발전 과정 중 농민은 한층 더 명확한 재산권 및 합리적 재산권과 이익분배 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농민이 농촌의 주식합작제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쓰촨성(四川省)은 1984년 6월 주식합작제의 실험적 실행의 의사를 표했다. 당 중앙, 국무원(國務院)은 이러한 경제 체제를 승인해 주었다. ‘한층 더 활발한 농촌경제를 위한 제10항 정책’에서 지적하길, “몇몇 합작경제는 합자경영(공동출자경영), 출자금 이익분배의 방식을 채택하여, 자금이 주식에 유입될 수 있게 했으며, 생산자료와 기본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그 가치로 환산하여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고, 경영소득에서 얻은 이윤의 일부를 주식의 액면에 따라 이익 분배했다. 이런 주식방식 동업은 주주의 재산권을 바꾸지

않고, 동업이 곧 재산과 정상 노동력의 합병이라는 폐단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오히려 분산되었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비교적 빨리 새로운 경영규모로 일어 설 수 있는 공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제창할만한 것이, 반드시 자발적인 호혜를 견지해야하며, 강제적인 할당은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각지에서 스스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고, 실험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1985년 쓰촨성(四川省)의 공래현(邛崃縣) 평락진(平落鎮)에서 시험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여 잇따라 14개의 진관기업(鎮辦企業)에서 주식합작제의 시험적인 경영에 참여하였다. 1986년 이후, 중경(重慶), 면양(綿陽), 악산(樂山) 등의 지역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1990년, 전국 농촌에는 각종 주식합작경제 조직이 1,704곳이나 생겨났고, 관련 업종부문은 거의 농촌경제의 모든 영역을 차지했다. 1990년대, 특히 덩샤오핑이 남쪽지방에서 한 담화(南巡講話) 이후, 농촌 주식합작경제는 전국에서 신속한 발전을 하였다.

이러한 상품경제의 조건아래 연합과 합작은 다른 산업과 다른 생산력의 발전수에 적응했으며, 다양성과 다양화라는 특성을 띠고 있었다. 어떤 것은 노동, 자금, 기술, 생산자료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혹은 동일하지 않은 생산카테고리의 연합도 있었다. 또 어떤 것은 동일한 소유제 혹은 동일하지 않은 소유제 사이의 연합체도 있었으며, 회사구분형태, 업종별 형태와 근무형태 등이 있었다. 농촌의 합작경제는 주식합작제를 실행하여, 합작경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주입시켰다.

농촌 개혁의 ‘사대타파’(四大突破)는 중국 농촌을 초보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적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체제의 틀을 구축하여 커다란 해방과 생산력을 발전시켰고, 농촌이 세상이 뒤집힐 만한 역사적 변화를 하게 했다. 농업종합생산능력의 대폭적인 향상은 주요 농산품의 장기적인 결핍의 역사를 종결시켰으며, 식량의 연 총생산량은 20년간 2억톤씩 증가하여 12억 중국인의 식량문제를 이미 완전히 해결하였다. 개혁개방 20년이래, 농업 생산 연평균 발전 속도는 6.7%에 달하며, 이

는 같은 시기의 세계 농업 평균발전 수준을 훨씬 뛰어 넘은 것이다. 발전 속도가 가장 빨랐던 1984년에는 12.3%에 달했다. 1996년, 식량생산은 5억 톤의 선을 돌파하여, 장기적으로 존재해 오던 식량공급부족상태를 대대적으로 개선시켰다. 농산물의 해를 거듭한 풍작은, 식량생산량을 눈에 띄게 증가시켰다. 1997년, 곡식, 면화, 기름, 설탕의 생산량은 각각 1978년과 비교했을 때, 0.62배, 1.1배, 3.1배 그리고, 2.9배 씩 증가 한 것이다. 이는 도시시장의 번영과 주민의 시장바구니를 두둑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빠른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 중 식량생산량 연평균 증가속도는 2.7%에 달하여, 인구 증가 속도를 크게 초과하였다.

농촌 산업구조와 노동력 취업구조에 취한 중대조정과 향진기업의 돌출은 1.3억의 남아들던 농업 노동력을 농촌에선 역사상 전례가 없을 만큼 많이 공업화 건설에 유입시켰다. 20년 동안의 탐색과 발전을 통하여, 향진기업은 이미 농촌경제의 주체적 힘으로 발전하였으며, 전국 공업경제 절반에 가까운 영역과 온 국민경제의 커다란 지주로 자리잡았다.

동부 연해는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라 불릴 만큼 새로이 변모한 향진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경쟁이, 중부지역은 향촌기업이 터주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부 및 빈곤지역은 향진기업이 가난을 벗고 부유해질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총량의 신속한 증가와 전체 자질의 지속적인 향상은 향진기업을 국민경제 발전을 추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 다방면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농민 생활의 명확한 개선은 전국의 농촌이 총체적으로 배를 채우는 상태에서 배불리 먹는 단계로의 진입을 가능케 했다. 도시 주민과 마찬가지로, 농촌 주민의 식단과 질적 방면 또한 뚜렷한 개선과 향상을 보였으며, 농민들 또한 배불리 먹는 것은 물론, 영양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농촌경제의 신속한 발전아래, 농촌의 각 종 사회사업 또한 눈에 띄는 발전을 하였으며, 농민의 사상 관념과 정신적 면모에도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 20년간 개혁에서 얻은 기본 경험

2.1. 농민의 자주권을 보장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조장하는 것이 농촌정책 제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농민에게 생산의 자주권을 넘겨 주어 농민의 적극성을 일깨운 것이었다. 당은 제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촌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확정한 것이 수억만 농민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케 하였다고 말했다. 반드시 경제적으로 농민의 물질적인 이익이 충분한 관심을 받고,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농촌개혁이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정확한 출발점을 견지한 데 있다.

안위성(安徽省)의 봉양현(鳳陽縣)에 있는 생산대대에서는 농가생산청부경영을 실행 첫 해에 1인 평균 수입이 6배로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식량 총생산량은 기존의 7년간 거둔 생산량의 총계와 같았다. 농가생산청부경영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에게 자주권을 주어 농민으로 하여금 실익을 얻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장쩌민 총서기는 1998년 9월 25일 안후이성(安徽省) 시찰시 바로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전개하는 어떠한 항목의 사업과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농민의 적극성을 일깨울 것인가, 아니면 꺾을 것인가이며, 농촌생산력에 해방과 발전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를 가져올 것 인가하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농촌정책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이며, 또한 정책의 정확함과 그렇지 않음을 검증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다.”

농민의 생산경영에서의 자주권 존중은 토지청부권, 생산자주권, 수익분배권의 3가지 측면과 함께 중점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동시에 농민경제에서의 생산경영 자주권은 반드시 민주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농민에게 실익을 주어 농민수입

을 늘렸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농촌개혁 20년은 이렇게 지나왔다.

2.2. 농촌의 공유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실현형식의 대담한 탐색과 농촌소유제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시켜야만 함.

생산관계는 반드시 생산력의 발전요구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개혁은 실질적으로는 생산력발전을 구축하고 있는 생산관계의 조정이다. 당의 지도자가 펼친 토지개혁은 이미 넓은 농촌생산력을 해방시켰다. 인민공사의 ‘일대이공’(一大二公, 인민공사 조직회의의 주요방침, ‘大’는 공사(公社)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토지가 많아 대규모적인 생산과 건설이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公’은 사회주의화, 집단소유화를 말함) 또한 장기적으로 농민의 적극성을 억압해왔다. 농촌개혁이후, 집단 경제 내부에서 토지 집단 소유 및 농가생산 청부경영을 실행하여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시키고, 농가생산청부경영을 기초로 통일 경영과 분산경영이 서로 결합된 형태의 이중경영체제를 세웠다. 동시에 농민 발전 개체 및 사영경제 그리고 주식합작제 경제를 고려하여 인도하였고,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여러 종류의 소유제경제를 실행하여 공동발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아래 농촌의 가장 주요한 생산관계를 순조롭게 하여 전체 농촌의 경제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활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실제경험에서 증명되었듯이, 개혁 중 형성된 농촌의 기본경제제도와 경영제도는 사회주의의 초급단계를 농촌에 접목시켰다. 농촌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키는 물론 오래도록 지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2.3. 농촌개혁의 시장동향을 반드시 고려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은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이다. 농촌개혁은 실제로 처음부터 이 목표를 향해 온 것이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농가의 자주경영과 자주적으로 손익을 책임지는 시장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시켰다. 농민에게 자주권이 주어지자 시장수요에 따라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했고, 상품생산이 발전하여 필연적으로 분업분담을 초래하였으며, 생산요소의 합리적 유통을 촉진시켰다. 이는

농촌경제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순응하면서 제때에 농산물 매매체제를 개혁하고 농민이 유통영역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며, 농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을 양성하였다. 이렇게 농촌경제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함으로써 농촌경제를 국한된 자연경제와 계획경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당은 제14기 전체회의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건립을 위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공급판매합작사에 대한 개혁의 심화, 부농산물 매매체계의 개선, 농업의 생산자료 유통체제에 대한 개혁의 심화, 농촌의 시장체제완비와 시장의 육성촉진 등의 방면에서 농촌 유통체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시장 동향의 유지와 끊임없는 개혁의 심화는 농업의 현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작용을 하였다.

2.4. 농민의 창조정신을 존중

가정연산승포책임제의 모든 추진과정에서 보았을 때, 농민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잘 실현하였기 때문에 책임제 형식의 선택과 실행하는 시간 등의 방면에서 강압적 명령이나, ‘단칼에 자라버리는’ 일은 없었었다. 그래서, 농촌개혁의 진행이 건강하고 성공적일 수 있었다.

할당된 생산은 개체에서 향촌기업으로 또 다시 농촌주민 자치구로 가게 된다. 이것은 모두 당의 지도하에서 중국 수억만 농민이 창조해 내는 위대한 힘인 것이다. 20년간의 농촌개혁은 중대한 정책을 한 문항씩 만들어 냈으며, 이 문항은 최하부 조직과 농민 군중의 창조적 실천의 기초 위에서 하나씩 실천되어졌다. 군중에 의하여 추진된 개혁은 농민의 창의적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농촌개혁 중 얻은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

2.5. 전체 국면에서 출발하여 농업을 깊이 중시하여

농촌개혁과 도시개혁이 상호조화 및 협조 발전되도록 함.

개혁이전에 도시에서는 공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공업 전체의 자원을 독점하고,

농촌의 농업은 도시를 위하여 식품과 원료를 제공하고, 국가는 자금, 물자, 기술, 인재 등 각종 생산요소를 통제하여 통일분배, 도시와 농촌에 기형적 관계가 나타나서 도시와 농촌경제가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78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노동력 총수 중 73.8%를 차지하는 농촌노동력이 창조한 생산가치는 농공업 총생산가치의 25.6%를 차지할 뿐이다. 전국 농민 1인당 평균 순수입은 134위안에 불과했으며, 수억명의 농민이 장기적인 빈곤상태에 빠졌으며, 심지어 배를 채우지 못했다. 농촌의 낙후한 상태는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왔다.

당의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로부터 각종 조치가 채택되어 도시와 농촌관계를 조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시켰다. 첫째로, 부농산물의 가격을 높여, 농공업생산품의 협상가격차를 축소시켰다. 1979~1987년간 농민이 판매한 농산물 순수입은 약 2,000억 위안이었다. 두 번째는 총 할당판매제도의 개혁이다. 세 번째는 농촌경제 구조를 조정하여 농촌의 비농업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촌노동력의 취업공간을 확충한다. 네 번째는 도시를 심도 깊은 집중 계획관리 체제하에서 개혁하여 도시와 농촌사이를 소유제의 경제연합에 걸쳐 추진하였는데 도시는 설비, 기술, 인재, 자금을 제공하고 농촌은 공장, 원료, 노동력을 제공하여 농촌경제 발전을 촉진 시켰다. 다섯 번째는 노동력, 자금, 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유동을 허가하여 과학기술자가 농촌에 내려가 일하도록 청부하고, 청부받은 기업이 농촌생산기관의 초빙을 받아들여 기술과 자문을 제공하여 위탁의 연구항목 또는 과학연구성과를 양도하거나 공동으로 과학연구인 생산연합체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농촌의 남아도는 노동력이 노동력결핍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촌의 우수한 장인들이 다른 지역의 경영이나 청탁기업으로 들어가 일을 하거나 장사하거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경우이다. 여섯 번째는 비농업 산업 발전의 기초 위에 적극적으로 소성진을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전국에 편성된 소성진은 1979년의 2,800여 곳에서 1998년의 19,216 곳으로 발전하였다.

도시와 농촌관계를 조정하는 조치의 실행결과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시키던 상황

을 타파하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결합 및 발전의 길이 트이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의 경제가 잘 융합되는 새로운 구조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도시와 농촌경제는 빠른 발전의 추진아래 농촌시장건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교적 규모를 갖춘 도매시장 및 업종별시장의 진흥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품의 교역망이 신속히 발전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시, 현, 진을 형성하여 서로 연결하고, 대, 중, 소형이 서로 보충되고, 도매와 소매가 서로 결합한 여러 가지 품격, 형식, 기능의 도시와 농촌시장이 망라되었다.

농촌개혁은 이미 20년의 시간과 역정을 지나왔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인민공사를 폐기시켰으며, 계획경제의 패턴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농촌의 새로운 경제체제의 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농촌의 생산력을 해방 및 발전시켰으며 농촌경제와 사회발전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개혁의 성과와 경험은 전국의 개혁, 발전, 안정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고, 수많은 농민이 부유하고 유망한 미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며, 더더욱 중국공산당과 함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신념을 확고히했다.

Ⅲ. 농촌개혁의 부문별 성과

1. 농촌의 기본경제제도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난 20년 간 중국의 농촌경제는 집단경제라는 획일화된 소유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공유제 위주의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발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공중앙은 1980년에 발표한 ‘농업생산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과 관

련된 몇 가지 문제'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1기 3중전회 이후 각 지역 간부와 인민공사와 합작사(合作社)의 구성원들이 실제상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부분적인 노무공급 청부제도·정액임금제·도급생산제·성과급제도 등 다양한 형식의 생산책임제를 도입하여 일련의 새로운 경험을 모색하였다.

특히 새로 출현한 전문청부 생산성과급 책임제는 근로자들로부터 더 큰 환영을 받았다. 위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생산 책임제에 대해 각 지역과 각 인민공사 및 생산대대는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 다양한 노동조직과 다양한 임금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집체경제(集體經濟)가 비교적 안정된 일반 지역에서는 현행 생산책임제가 지역주민을 만족시키고 있거나 향후 개정을 통해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가정청부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1982년의 당 중앙 문건에서는 농업생산책임제는 각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농업생산책임제를 제정하고 정비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의 집체소유제(集體所有制)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91년 열린 13기 8중전회에서는 가정청부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와 집체 통합경영과 가정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중국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기본 제도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정착시키고 부단히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 국무원이 비준하여 농업부에 하달한 '향진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에서는 '8차 5개년계획'기간과 향후 10년간 향진기업의 발전은 사회주의 집체소유제가 주체가 된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성분이 공존하는 소유제구조를 계속 견지해야 하며 향(鄉)과 진(鎮)에서 공동 경영하는 향진기업·촌(村, 촌민조직 포함)에서 경영하는 향진기업, 농가조직(농민합작 포함)이 경영하는 향진기업, 개인(個體戶와 민영)이 경영하는 향진기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는 가정청부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와 집체통합경영과 가정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장기간에 걸쳐 정착시키고 부단히 정비해야 하며 향진기업은 점진적으로 청부경영책임제를 정비하고 주식합작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1994년 국무원이 비준하고 하달한 국가체제개혁위원회의

‘1994년 경제체제개혁 실시요점에 관하여’라는 문건은 가정청부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와 집체통합경영과 가정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토지집체소유를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경지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개발성격이 강한 생산프로젝트의 위탁경영권 상속을 허용하며 토지사용권의 합법적인 유상양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994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적절한 규모를 갖춘 다양한 기법의 경영을 발전시킬 것을 지적하였다. 1996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9차 5개년계획 시기와 금년 농촌업무에 관한 주요 임무와 정책조치’라는 문건에서 농촌개혁 심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농촌경제체제와 운용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농촌의 토지·자금·기술·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이동과 효과적인 결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형식의 합작과 제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996년 농촌 금융체제 개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농촌신용사(農村信用社)의 합작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농촌금융체제개혁의 중점이며 농촌신용사를 점진적으로 농민이 주주가 되고 사원이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주로 주주사원을 위해 봉사하는 합작성격을 지닌 금융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적고 있다. 1997년 제15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15大라 약칭함) 보고에서는 소유제 구조를 조정하고 정비해야 하고 생산력 발전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공유제의 실질적인 형식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8년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는 농촌 소유제 구조를 조정하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발전과 획기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고 농촌 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형식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진전과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합작과 제휴를 촉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과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8년 15기 3중전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정청부경영을 기초로 하고 집체 통합경영과 가정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

영체제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시켜야 한다. 가정청부경영을 실시하는 것은 생산관계가 생산력발전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법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수작업 노동력을 위주로 한 전통농업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선진과학기술과 생산수단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농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렇듯 폭넓은 적용성과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농촌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중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관계를 안정시키고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지임대기간을 다시 30년간 연장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농촌토지임대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과 법규를 조속히 제정하여 농민에게 장기적이고도 안정된 토지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확실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농업집약도와 주민의 자율성의 제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과 적절한 규모의 토지경영(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다. 공유제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아울러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농촌개체 및 민영 등 비공유제 경제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농민이 다양한 주식합작제 형식을 통해 경제실체로 부상한 것은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정확하게 인도하며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농민의 노동제휴와 자본제휴를 위주로 한 집단경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2. 농촌경영제도

농가위탁경영을 기초로 통일경영과 분리경영이 결합된 경영제도는 1998년 열린 15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강조한 중국 농촌이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 할 기본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촌개혁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고 정비되어 확립된 것이다. 20년에 걸친 개혁에서 농촌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이 제도와 관련된 중앙문건의 중요한 정신을 근거로 하여 이 제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2.1. 인민공사 경영제도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 ‘뭐든지 가능하며 또 가능하다’

1978년 열린 11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고 1979년 11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시킨 ‘농업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따른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앙의 결정’이란 문건은 농촌의 분배제도와 경영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일정한 노동성과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노동성과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도 있으며 생산대의 일률적인 채산과 분배라는 전제아래 작업조를 위탁받아 생산량에 따른 노동임금을 계산하여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은 인민공사제도에 대한 첫 번째 돌파구로 이로부터 농촌경제체제개혁의 서막이 올랐다.

1980년 중공중앙이 배포한 ‘농업생산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문제’라는 문건은 오랫동안 ‘정부가 방출한 식량을 먹고 대출을 받아 생산을 하고 정부의 구제로 생활을 한’ 외진 산악지역과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의 생산대는 민중의 요구에 따라 농가 생산 청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인민공사 경영제도에 대한 또 하나의 돌파구로 농가 청부제가 전국적으로 발전하는데 촉매제가 되었다. 1981년말까지 전국 농촌의 90% 이상의 생산대가 서로 다른 형식의 농업생산 책임제를 확립하였고 그 중 3분의 2이상의 생산대가 농가 생산 청부제 또는 이와 유사한 책임제를 실시하였다.

2.2. 총결, 정비, 안정: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여 통합경영과 분리경영을 결합한다.’

1982년에 중공중앙은 농촌개혁을 지도하기 위한 첫 번째 문건인 ‘전국농촌업무회의 요약’을 통해 대규모의 변동이 이미 지나갔으며 지금은 총결, 정비 및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명확히 선포하였다. 이 문건은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책임제는 모두가 사회주의 집단경제의 생산책임제이며 형식에 관계없이 대중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한 뒤 청부제를 통해 통합경영과 분리경영을 결합하여 공존한다'고 언급하였다.

1983년에 중공중앙이 발표한 '현재 농촌경제정책의 일부 문제'에서는 농가 청부 책임제는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의 결합이라는 원칙을 택해 집단의 우월성과 개인의 적극성이 동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더욱 개선되고 발전함에 따라 농업사회주의 합작화라는 구체적인 길이 중국의 현실과 더욱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한 '농가 청부 책임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청부제를 통해 통합과 분산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적고 있다. 중앙 문건정신의 영도아래 농업생산 책임제는 안정적인 기초 위에서 점차 개선되었다. 198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농가청부제를 실시한 생산대는 전체 생산대의 97.8%를 차지하여 농가청부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 후 이러한 구도는 장기간 안정되었다.

2.3. 진일보한 안정과 개선을 강조: '15년간 토지임대기간은 불변'

'1984년 농촌업무에 관한 중공중앙의 통지'에서는 "토지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이며 과수, 산림, 민동산, 황무지 등 생산주기가 길고 개발성격을 띤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당연히 더욱 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건과 1985년 및 1986년의 중앙문건은 농가 청부 경영의 안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을 상호 결합한 이중 경영체제를 더욱 개선할 것과 토지공유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합작경제조직의 설치를 강조하였다.

1987년에 중앙은 또 다른 문건을 통해 농촌개혁 성과를 개략적으로 총괄하였다. 경영제도에 있어서도 향(鄉)과 촌(村)의 합작조직이 실행하고 있는 분산경영과 통일경영이 상호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에 대해 농민은 만족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정착시키고 개선해야 한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던' 과거로 회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 합작조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가 생산, 관리 및 자산축적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조직은 자원개발을 기획하고 집단기업을 설립하여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기초시설을 발전시키는 경제실력을 강

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앙 문건의 이러한 정신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역적 합작경제조직 건설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당연히 맡아야 할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2.4. 장기적인 안정과 끊임없는 개선을 강조: ‘하나의 기본제도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1990년 말에 나온 ‘1991년 농업과 농촌업무에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통지’에서는 처음으로 ‘기본제도’라고 표현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농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정연산승포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집단경제를 위해 생산력 수준과 발전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영체제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농촌의 기본제도로 장기간 안정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건에서는 토지임대제의 개선, 건전한 서비스체계 구축, 집단경제 실력 강화를 분명히 요구했다.

1991년 11월에 열린 13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8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업과 농업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가정연산승포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와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중국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기본제도로 삼아 장기간 안정시키고 끊임없이 개선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집단 통합경영 단계가 비교적 취약한 현실상황에 비추어 이중경영체제의 개선, 집단통합서비스의 강화, 집단경제실력 강화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중앙 문건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이중경영체제 정비작업에 힘을 쏟고 농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강화하였다.

2.5. 장기적인 안정과 개선을 재차 강조: ‘토지임대기간을 다시 30년 연장하는 정책에 변화없다’

1993년 10월에 열린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는 농가청부책임을 위주로 한 책임제

와 통합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고 개선해야 하며 기존의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변함없이 임대기간을 다시 30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열린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는 매 번 이 정책을 강조했다.

1998년 10월에 있는 15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토지임대기간을 다시 30년 연장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과 농촌토지임대관계를 장기간 안정시킬 수 있는 법률과 법규를 조속히 제정하여 농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된 토지사용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 문건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199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80% 이상의 농촌조직이 토지임대기간 연장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농촌토지임대법의 입법작업도 이미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다.

3. 농촌 산업구조조정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전까지 농촌은 대단히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식량생산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농업 이외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농가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농촌의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농촌의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1차산업(농업)의 비중이 빠르게 낮아진 반면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1978년부터 1997년까지 농촌의 각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차산업(농업)의 비중이 78.95%에서 36.24%로 빠르게 하락하여 연평균 하락 폭이 2.25%에 달했다. 이에 비해 2차산업의 비중은 11.7%에서 41.39%로 급속히 상승하여 연평균 1.56% 상승했다. 3차산업의 비중 또한 9.36%에서 22.38%로 상승하여 평균 0.69% 상승했다. 농촌의 산업구조에서 2차산업의 비중이 3차산업에 비해 높았고 증가폭도 3차산업보다 빨라 농촌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의 성장이 2차산업 위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둘째, 농촌 5대부문의 구조에서 공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고 건설업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운송업과 식품서비스업의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다.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에 농촌 5대부문의 생산액 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은 68.9%에서 22.9%로 급속히 하락하여 연평균 하락폭이 3.07%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공업의 비중은 19.5%이던 것이 58.2%로 대폭 상승하여 2.58%의 평균 상승폭을 보였다. 건설업, 운송업 및 식품서비스업의 비중은 11.6%에서 18.9%로 상승하여 평균 상승폭은 0.49%를 기록하였다. 농촌 5대 부문에서 농촌 공업이 빠른 속도로 농업을 대체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셋째, 농업 내부에서 농업(경종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목축업과 어업의 비중은 다소 상승했으며 임업의 비중은 한동안 등락을 거듭한 후 안정세를 보였다. 1978년부터 1997년 사이에 농업(경종업)의 비중은 80.0%에서 50.6%로 빠르게 하락하여 평균 하락폭은 1.26%이었다. 목축업의 비중은 15.0%에서 31.5%로 상승하여 0.87%의 평균 상승폭을 보였으며 어업의 비중은 1.6%에서 9.1%로 상승하여 0.39%의 평균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동안 임업의 평균 비중은 3.4%이었으며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5년(5.2%)이었다.

넷째, 경종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 농업 내부 구조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경종업을 예로 들면 곡류작물, 경제작물과 기타 농작물의 파종면적은 1978년에 각각 80.4%, 9.6%, 10.0%이던 것이 1997년에는 각각 73.3%, 14.2%, 12.5%로 조정되었다.

4. 농업산업화경영

농업산업화경영은 농촌개혁의 심화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따른 산물이다.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 언급하자면 일찍이 8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발전한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農(어업·목축업·임업)工商 종합경영(농산품을 가공하여 시

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농산품의 상품화라고 할 수 있다)과 貿工農技 일체화(무역을 위해서는 농산품을 가공할 필요가 있으며 농산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농업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농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과 중반에 이르러서야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96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부는 농업산업화 업무지도위원회 및 사무소를 개설하고 28개에 달하는 省·자치구·직할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21개의 성이 성 위원회와 성 정부의 명의로 농업의 산업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문건을 마련하고 많은 지역에서 성급 고위층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산업화 지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농업부 등 7개의 部, 委, 行으로 이루어진 국무원 농업산업화경영 조사위원회가 1998년에 산둥(山東), 지린(吉林), 저장(浙江), 장쑤(江蘇) 등 12개 성내의 40개 현(縣) 및 시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840여 개의 농업산업화경영조직 중 주력기업 선도형이 44.3%를 차지하였고 중개조직 선도형과 도매시장 선도형이 각각 32.6%와 18.2%를 차지하였으며 기타형식이 4.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연계 형식으로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조직이 약 70%를 차지하였고 주식합작 형태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조직이 약 20.4%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9.6%는 합작사가 거래량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주력조직들이 농가에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우대가격에 생산원료를 공급하는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합 1,078만호의 농가가 이러한 혜택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업산업화경영에 힘입어 한 농가당 평균소득이 590위안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5. 농업 사회화서비스 체계구축

1980년대 초, 일부 지역에서 제품생산서비스를 위주로 한 농업 사회화서비스체계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기에 이르자 농업 사회화서비스가 점차 보급되어 전국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당 중앙과 국무원은 농업 사회화서비스 구축을 농촌개혁 심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농업사회화 서비스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 개의 향촌 집체경제 조직을 기초단위로 하고 관련 경제기술부처와 농산물 가공유통기업에 의존하며 농민이 혼자 또는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조수단으로 하는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가 전국 농촌에서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 가공유통기업과 농민이 혼자 또는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논밭갈기, 씨 뿌리기, 물대기와 물빼기, 작물보호, 수확 등으로 이루어진 농업생산서비스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였고 화학비료, 농약, 종자 등 생산전 서비스도 비교적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출하, 운송, 가공 등 생산후 서비스는 채소, 가금류 알, 수산물 등 분야에서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였다. 최근 몇 년간 농업산업화경영의 주력기업은 농민을 대상으로 가공 및 유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5만 9,000개의 농업기술보급기관이 있으며 농업기술보급 인원은 39만 여명에 이른다. 가축의료기관은 6만 8,000여 곳에 43만 명의 직원이 있으며 수산업기술보급기관은 7천 900여 곳에 2만 8,0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이밖에 향진 농기구보급소는 4만여 곳에 25만 8,000여 명의 농기구기술보급인원이 있으며 향진 경영관리소는 4만 2,000여 곳에 16만 9,0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수리·임업·공급·판매·식량 등 경제기술부처도 전국 각 향과 진에 상응한 서비스기구를 설치하였다. 이밖에 전국에 15만여 개의 농민전문기술협회가 설립되어 전국 농가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약 5백만 농가가 관계를 맺었다.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기구들은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6. 농산물 시장체계 구축

1985년 정부는 농산물 일괄구입과 일괄판매제도를 개혁하여 양곡과 면화를 주문 구입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농산물가격과 경영에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새로 형성되고 빠르게 발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정기시장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그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와 농촌에 수많은 농산물도매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7년에 이르러 전국 도시와 농촌의 정기시장이 8만 7,105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1985년에 비해 2만 5,768개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정기시장의 연간 거래액도 1조 7424억 5,000만 위안에 달해 1985년에 비해 26.6배 증가하였다.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은 4,000개로 늘어나 각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판매중심지와 농산물 주산지에 폭넓게 분포하였으며 특정 품목만을 판매하는 도매시장과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이 있었다. 이들 도매시장은 상품집산, 가격형성, 정보교류라는 세 가지 주요기능을 십분 발휘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이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정기시장과 기타 소매망을 기초로 하는 농산물 시장망을 구축하였다. 농산물시장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과 때를 맞춰 대형 개인 운송상, 농민합작운송협회 및 연합체 그리고 각종 전문기술협회 등 활력이 넘치는 수많은 시장주체를 양성하였다. 각 지방 정부는 농산물시장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중요농산품의 보호가격수매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위험관리기금을 조성하고 특별비축을 하는 등 거시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7.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

11기 3중전회 이후 생산이 늘고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일괄구입과 일괄판매의 범위와 수량을 점차 줄이고 농민이 자유롭게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1985년에 정부는 농산품에 대한 일괄구입 및 일괄판매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양곡 및 면화에 대해서만 계약구입을 하고 남은 양곡 및 면화와 기타 대부분 농산품(잎담배, 누에고치와 일부 약재는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일괄구입)에 대해서는 시장매매와 다단계 유통을 실시한다고 공식 선포하였다.

20년에 걸친 개혁기간동안 이미 85% 이상 농산품의 가격과 경영에 자율성이 부과되었다. 1998년 국무원은 밀, 옥수수, 벼 등 주요 양곡은 국유 양곡기업에서 구입을 담당하고 계약구입가격과 보호가격을 포함한 구입가격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확정한 원칙에 따라 양곡재배에 따른 농민의 합리적인 이익과 양곡기업의 구입, 판매, 보관비용에 약간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곡판매시장과 가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기자유시장을 일년 내내 개방하였다.

1992년부터 중앙과 지방에 양곡특별비축제도를 제정하고 위험관리기금을 조성하였다. 현재 양곡유통체제개혁의 핵심은 보호가격으로 농민으로부터 여분의 양곡을 수매하고 국유 양곡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에 양곡을 판매하며 양곡수매자금의 유용을 금지하고 국유 양곡기업의 체제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중국 면화시장에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여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재고가 증가하고 손실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1998년에 국무원은 1999년도부터 국가가 면화의 비축·수출입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구입과 판매가격을 자율화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면화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마른 잎담배, 누에고치, 양모 등 원자재에 대해서도 유통체제개혁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시장형성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8. 농촌 공급판매합작사 개혁

1980년대 공급판매합작사의 개혁은 주로 ‘세 가지 특성의 회복, 다섯 분야에서의 돌파구 마련, 여섯 가지 발전을 도모하는 것’(恢復三性, 五個突破, 六個發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자면, 조직의 대중성, 관리의 민주성 및 경영의 융통성을 회복하고 노동제도, 농민출자, 경영범위, 내부분배와 가격관리 등에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하며 유기적인 서비스, 지역과 업종을 초월한 수평관계의 협력, 농산품과 부식품의 가공, 다양한 경영방식, 농촌의 상업네트워크와 과학기술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을 통해 하부 공급판매합작사는 집단소유제 특성을 회복하고 농민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며 농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신의 경제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공급판매합작사 개혁심화에 관한 결정’이라는 문건의 요구에 따라, 1995년 5월에 중화전국공급판매총합작사는 정식으로 국가상업부처로부터 독립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는 전국적인 농민합작경제연합조직이 되었다. 총합작사의 통합적인 운영 아래 전국의 공급판매합작사는 하부공급판매사 관리와 면화구입 및 농업생산원료공급에 중점을 두었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하부공급판매사 설립에 더욱 매진하였다.

1998년에 이르러 공급판매합작사는 32개의 성·자치구·직할시연합사와 2,300개의 현, 시 연합사 및 3만개의 하부연합사를 갖추게 되었고 전국 농가총수의 80%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가구가 여기에 소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70만개의 경영서비스망, 1만개의 전문합작사 및 합작사가 경영하는 1만 6,700개의 기업을 갖추었다. 직원 수는 450만명에 이르렀고 연간 구입액과 판매액은 1조 2,000억 위안에 달했으며 농산품가공을 위주로 하는 합작사 직영 기업의 연간 생산액도 900억 위안에 달했다. 그 중 일부기업은 농업산업화의 주력기업이 되었다.

9. 농민부담 경감

1980년대 중반과 후반부터 일부지역에서 과중한 농민부담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농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업무를 전국 각지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주로 임무를 부여하고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국무원은 ‘농민부담의 적절한 경감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고, ‘농민의 비용부담과 노무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특히 1992년에는 장쩌민(江澤民)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어떤 명목으로라도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3년부터 1996년 말까지는 주로 부담을 경감하여 농민의 반발을 사전에 방지

하였다. 1993년 국무원은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37개항의 요금징수, 자금모집, 기금과 43개항의 목표달성에 대한 진급규정을 폐지하였다. 1995년 국무원은 “규정을 간소화한다”고 선포하고, 각 지방에 농가부담에 따른 농민의 반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1996년 말에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성공적인 농민부담 경감업무 추진에 관한 결정’이란 문건을 만들었다.

15기 3중전회에서는 농민부담 경감을 당의 농촌업무 기본방침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과 각 부처에서는 많은 조치를 취하였다. 당과 정부의 최고실력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고 농민부담과 관련된 정부문건을 정리하고 폐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벌여 일련의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하였으며 지방법규와 행정규칙을 반포하여 80% 정도의 현에서 농민부담 예결산, 감독카드 및 특별항목 회계검사 등 ‘3항제도(三項制度)’를 시행하게 되었다.

10. 빈곤퇴치개발

1997년에 이르러 의식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국농촌의 빈곤인구가 1978년의 2억 5,000만 명에서 5,000만명으로 감소하여 30.7%에 달하던 빈곤 비중이 5.4%로 낮아졌다. 1998년에는 빈곤인구가 다시 4천 20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가가 지정한 592개 현에서 206만 8,000ha의 농경지가 늘어나 2,890만명에 달하는 주민과 3,784만마리에 달하는 대형가축의 식수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15만 4,000km의 도로와 19만 2,000km의 변전선이 추가로 가설되고 61만 명의 노동인력이 수출되었다.

농민 1인당 연간평균소득은 648위안에서 1,247위안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양곡 점유량은 350kg에서 359kg으로 늘어났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중앙정부는 빈곤구제를 위해 419억 3,000만 위안을 투입하였는데 그 중 빈곤구제 신용대출금으로 248억 5,000만 위안, 재정자금으로 81억 8,000만 위안 그리고 취로사업자금으로

89억 위안이 사용되었다.

‘국가87빈곤구제계획’이 실시된 이후 중앙정부의 빈곤구제자금이 더욱 증액되어 1998년까지 투입된 자금총액은 이미 183억 1,500만 위안에 달했다. 5년간 모두 640억 6,500만 위안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그 중 빈곤구제 신용대출자금으로 331억 위안, 빈곤구제 재정자금으로 99억 6,500만 위안 그리고 취로사업자금으로 210억 위안이 사용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투입한 부대자금도 크게 늘어나 1997년에는 이미 54억 2,000만 위안에 달했다.

11. 농업종합개발

1988년 초 당시 양곡, 면화, 식용기름 등 주요 농산품 생산량이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경지면적이 해마다 감소하자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업종합개발이란 생산량이 높지 않은 경작지를 중점적으로 개량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양곡, 면화, 식용기름, 육류, 설탕 등 주요 농산품의 종합적인 생산능력을 높임과 아울러 다양한 농업경영과 고소득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각 농산품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산림, 수자원, 경작지, 도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농업, 어업, 목축업과 부식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개발범위는 이미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1,336개 현(區와 市 포함)과 205개의 국유 농장과 목장(이미 개발프로젝트가 중단된 농장과 목장 제외)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투입자금 총액은 701억 위안에 달한다. 생산성이 낮은 경작지 중 지금까지 모두 1682만 2,670ha를 개량했고 248만 2,670ha에 달하는 산림을 조성하였으며 189만 9,330ha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144만 8,670ha의 양질의 목초지를 조성하였다. 개발지역에 기본적으로 ‘네모반듯하고 주위에 숲이 둘러쳐져 있으며 수로가 서로 연결되고 길이 사방으로 나있으며 날이 가물면 물을 대고 홍수가 나면 물을 뺄 수 있는’ 양질의 농경지가 조성되었다. 11년 동안 농업종합개발에 힘입어 양곡 생산능력이

4,772만톤 증가하였고 면화와 식용기름은 각각 111만 1,500톤과 235만 3,000톤 증가하였다. 그 중 양곡생산량은 같은 기간 전국 양곡 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다. 개발지역 농민의 연평균 소득은 비개발지역 농민에 비해 260위안 많았으며 많게는 500위안이나 높았다.

12. 농촌 금융체제 개혁

20년 동안 농촌금융체제개혁은 크게 3단계를 거쳤다.

첫째, 부활 및 조정단계(1979~1984): 1979년 2월 중국농업은행이 네 번째로 부활하고 농촌신용사 개혁이 시작됨에 따라 농업은행의 통합관리체제를 중심으로 농업은행과 농촌신용사가 분업을 통한 협력을 도모하는 농촌금융체제를 형성하였다.

둘째, 전면적인 개혁단계(1985~1991): 농업은행에 대해 기업화된 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신용합작연합사를 설립하고 농업은행과 농촌신용사의 관계를 조정하였다. 이밖에 다양한 금융조직과 다양한 신용형식이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셋째, 체제개혁의 심화단계(1992년 이후): 금융체제개혁의 조정목표에 따라 1994년 중국농업개발은행이 설립되어 농업정책적 금융업무를 담당했다. 농업은행은 정책적 업무에서 손을 뗀 후 시중은행으로의 전환과정을 가속화하였다. 1996년 국무원은 ‘농업금융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내놓았다. 이 결정에 따라 농촌신용사와 농업은행은 행정예속관계에서 탈피하였으며 합작원칙에 따라 규정을 재정비하였고 일부 신용사를 정리한 후 농촌합작은행으로 통합하였다. 농업은행은 기본적으로 국유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완료하였고 농업개발은행은 성 이하의 행정구역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또한 각종 농업보험기관이 점차 설립되었고 농촌합작기금을 청산하고 정리하였다. 개혁목표에 따라 중국은 최종적으로 합작금융을 기초로 하고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이 분업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는 농촌금융체계를 형성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13. 농촌 신용대출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농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촌 신용대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 농촌 신용대출의 임무가 농업의 단순한 재생산을 지원하던 것에서 농업생산의 각 영역과 농촌경제의 각 분야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국유 시중은행, 국책은행 및 농촌신용협작사가 주체가 되고 기타 금융기관이 이를 보완하는 완전한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신용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체계를 구축하고 점차 개선하였다.

셋째, 농촌신용대출 규모가 신속히 확대되었다. 1998년 말까지 각종 농촌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이 농촌에 있는 상품생산 기업과 농가에 지급한 대출총액이 약 3조 위안에 달하며, 이는 1978년의 641억 위안에 비해 46배 증가한 것이다. 각종 예금총액은 2조 5,800억 위안으로 1978년의 499억 위안에 비해 약 50배 증가하였다.

넷째, 농촌 신용대출이 농촌 시장경제의 각 영역, 각 부분, 각 단계에까지 파고들었고 신용대출 종류도 40여 개에 달했다.

14. 농업 기초건설 투자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농업 기초건설 투자액이 계속 증가했지만 투자비중은 오히려 2%와 4%사이에서 장기간 오르내렸다. 1978년 농업에 투입된 국가재정은 51억 1,400만 위안으로 1975년에 비해 15억 위안이 증가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32%가 되었다. ‘6차 5개년 계획’기간에 정부는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형 양곡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농업 기초건설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1985년 들어 투자비중은 이미 3.4%로 떨어져 1978년에 비해 7.92% 하락하였다. ‘7차 5개년 계획’기간에 농업생산의 정체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중국은 양곡, 면화, 식용기름 등 주요농산품의 생산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산림, 경작지, 도로,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수단으로 하는 농업종합개발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재정예산에서 농업기초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져 1990년에 농업기초투자액은 67억 2,2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6년에 비해 32억 1,600만 위안이 늘어난 것으로 매년 13.6% 씩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농업기초건설 투자액이 사회간접자본의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8차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기초건설 투자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이미 219억 900만 위안으로 늘어나 1990년의 3배가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간접자본의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와 4%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중앙농업종합개발투자액은 최초에는 8억 7,000만 위안이던 것이 1995년에는 23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9차 5개년 계획’기간에 국가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종자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종자계획’을 실시하였고 재정예산에 의한 투자액이 1996년의 8,000만 위안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8년에는 2억 2,000만 위안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종자계획’을 위한 특별대출 금액으로 매년 5억 위안을 배정하였다. ‘9차 5개년 계획’기간에 예산에서 농업기초건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져 1998년에는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및 수리기초건설에 대한 투자액이 620억 6,4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의 2.8배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상승했다. 아울러 농업종합개발에 대한 국가예산외 투자액이 1996년의 27억 5,000만 위안에서 1998년의 39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15.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경종업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중국의 경종업 생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장기간에 걸친 농산품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기본적으로 12억 인구의 양식문제를 해결했다.

개혁개방을 실시한 20년 동안 양곡생산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전국 양곡 총생산량은 연속해서 3억 5,000만 톤, 4억톤, 4억 5,000만 톤에 이르렀다. 1998년 전국 양곡 총생산량은 4억 9,000만 톤을 넘어서 1978년의 3억 477만 톤에 비해 60.78% 증가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1인당 평균 양곡점유량은 연속해서 세계평균수준인 400kg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였고 국내 양곡비축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경제작물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양곡생산에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농업경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지도방침 아래 작물재배구조와 생산품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곡류작물, 경제작물과 기타 농작물의 파종면적이 농작물 총파종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에 각각 80.4%, 9.6%, 10.0%이던 것이 1997년에는 각각 73.3%, 14.2%, 12.5%로 조정되었다.

곡류작물의 비중이 7.1% 하락한 반면 경제작물의 비중은 4.6% 상승하였다. 1978년부터 1998년 사이에 전국 면화, 식용기름, 채소, 과일, 차잎, 누에고치 생산량은 각각 1배, 3.4배, 4.1배, 3.7배, 7.4배, 1.5배, 1.4배 증가하여 농업종합생산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대규모 농업상품기지건설, 농업종합개발, 대형 하천과 호수에 대한 치수사업 등 조치를 통해 농업생산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양곡 종합생산 능력이 약 4억 9천만 톤에 달해 1970년대 말에 비해 1.9배 향상되었다.

16. 豊收계획(풍년계획)

전국 농·어·목축업 풍수계획은 농업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계획 실시한 국가종합 농업과학기술 보급계획이다. 풍수계획은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의 전체적인 목표에 근거하여 국민경제발전과 시장수요를 기준으로 삼아 우수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농업과학기술 성과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급, 응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성과의 실용화와 실용기술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의 과학기술함량과 농업생산자의 과학기술소양을 높이고 농업과학기술을 농업생산과 농촌경제와 긴밀히 결합시켜 농촌과학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증대를 실현하여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

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풍수계획의 실시로 인해 과학연구와 생산을 연결시켜 주는 교량이 놓이게 되어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선진화된 많은 농업과학연구 성과물들이 빠르게 보급되었다. 농업기술 보급기관의 안정을 촉진함에 따라 농업기술보급인원의 자질과 많은 농업생산자의 영농기술과 양식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 행정, 기술, 자금, 물자 등 자원의 분배구조를 합리화하고 고도화하여 중요한 농업성과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응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험을 축적하였다.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도시와 농촌주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농산품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고 농업기술 보급과 응용의 효율을 높였다.

재정부는 풍수계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별자금이 매년 증가하여 1978년에 2,000만 위안이던 것이 1999년에는 1억 위안으로 증액되었다. 풍수계획은 실시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공식통계에 따르면 1978년 실시 이후 농업부가 '9차 5개년계획'기간에 집중 보급한 10대 기술을 위주로 도합 257종의 농업기술을 보급하였다. 재배기술 보급면적은 1억 7백만ha에 달해 양곡 4천 200만톤, 조면 1백 20만톤, 과일과 채소 300만톤을 증산하였다. 5억 마리에 달하는 가금과 가축을 과학적으로 사육하고 어류 양식면적도 80만ha에 달해 1백 20만톤의 축산품과 8십만톤의 수산품이 추가 생산되었다. 이에 따른 추가 생산액만도 약 7백억 위안에 달했다. 연간 1백만명의 기술인력과 4억명의 농민에 대해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영농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도시와 농촌주민의 '쌀독'과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7. 星火계획

1986년 국가과학위원회가 입안하고 실시한 이래 전국적으로 모두 9만 4,643건의 각종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85% 이상이 현에서 실시되었으며 80%의 개발 프로젝트가 향진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종업, 양식업, 농산품, 부식품 가공업, 농

촌 건축자재업, 의약공업, 식품위생업, 방직물 가공업, 절전형 환경보호산업, 생산설비 및 자동차, 전력, 계측기 등 주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산업이 성화계획에 포함되었으며 모두 4만 7,310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5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다.

12년 동안 성화계획에 소요된 자금 총액은 2,122억 4,000만 위안이며 여기에는 81억 7,000만 위안의 정부지출과 360억 8,000만 위안의 은행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성화계획에 의해 창출된 생산액은 3,055억 9,000만 위안이고 이에 대한 세금만도 754억 3,000만 위안이었으며 94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성화계획 밀집지역이 조성되었고 200여종의 주력산업이 육성되었으며 농촌경제발전에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많은 기업과 그룹이 설립되었다. 1998년 말까지 성화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5,800만명이 기술교육을 받았다.

18. 菜篮子공정(장바구니 계획)

1988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농업부는 생산량 증대와 원활한 유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대한 부식품 공급상황개선을 기본목표로 하는 ‘菜篮子(장바구니)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각종 부식품의 생산과 판매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부는 1995년에 새로운 ‘장바구니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각종 부식품의 총량과 1인당 점유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8년 전국 육류, 각종 식용알, 유제품, 수산물, 채소, 과일 등 6대 제품의 총생산량은 1988년 대비 각각 98.53%, 205.59%, 84.96%, 263.24%, 137.82%와 229.51% 증가했다. 이 중에서 육류, 각종 식용알, 수산물과 채소의 1인당 점유량은 국제수준을 넘어섰다. 부식품시장에 다양하고 고품질의 부식품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다. 다양한 가격대의 단순가공품과 정밀가공품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시장에 공급되었다.

생산판매체제 개혁이 더욱 심화되어 모든 부식품의 가격과 경영에 자율성이 부과되고 농민과 다양한 형식의 합작경제조직이 유통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신선한 농산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으며 거시조정시스템이 점차 정비되었다. ‘菜籃子공정’의 실시로 인해 농업과 농촌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농민소득이 증대되었으며, 6대 부식품의 생산액은 이미 농업 총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많은 지역에서 농민이 ‘菜籃子공정’에 참여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중산층에 편입되었다. 이렇듯이 ‘菜籃子공정’은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19. 종자산업

전국에 이미 국가지정 종자 보관창고, 복제종자 저장창고, 2곳의 시험관종묘창고와 29곳의 종자 번식장이 조성되어 35만종 이상의 종자자원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국가의 자원장기보존창고에는 31만종의 종자자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3위에 해당된다.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이전 30년 동안 3,000여 종의 농작물 우량종을 배양해 냈다. 특히 교배종 벼, 교배종 옥수수과 양질의 유채 육종기술과 생산량은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했다. 현급(縣級) 이상의 국유 종자회사가 1,000곳 정도로 늘어나 우수한 종자의 공급 및 보급체계가 건전해져 연간 우량종자 공급량이 130만톤에서 400만톤으로 증가했다. 전국 주요 농작물의 종자는 이미 서너 차례 개량이 이루어 졌으며 매년 개량 때마다 생산량이 10%이상 늘어났다. 우량종자 보급률이 원래의 80%에서 95% 정도까지 높아졌다. 종자의 과학기술함량이 높아졌고 전국에 이미 10여 곳의 종자가공기계공장이 설립되어 연간 100여 대의 종자가공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각급 종자회사는 이미 1,000대에 가까운 종자 가공설비를 보유하고 상품종자의 85%이상인 연간 350만톤의 종자를 정밀가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자보호기술 보급면적이 1,533만ha에 달했다.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 보호조례’를 공포 실시하여 각급 농정(農政) 주관부처에 종자관리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였다.

20. 산림조성과 생태환경 개선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인공조림면적이 약 1,000만ha 증가하였으며 1997년 말에는 그 면적이 3,425만ha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항공기로 씨앗을 살포하여 조성한 산림면적은 868만ha에 달했고 입산통제조치를 통한 조림면적은 5,638만ha에 달했다. 산림 녹화율은 1978년의 12%에서 13.92%로 상승했다. 광둥(廣東), 푸젠(福建),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저장(浙江), 광시(廣西), 산둥(山東), 지린(吉林), 장쑤(江蘇), 하이난(海南) 등 12개 성과 자치구에서 민둥산이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1978년 동북(東北), 화북(華北), 동북서북(東北西北)지방에서 방호림 사업이 추진된 이래 양쯔강(揚子江) 중상류 방호림, 연해지방 방호림, 평원 녹화, 타이싱산(太行山) 녹화, 황사방지, 황허(黃河) 중류 방호림, 주강(珠江)유역 방호림, 화이허(淮河) 타이후(太湖) 유역 방호림, 라오허(遼河)유역 방호림 등 10대 임업생태사업이 잇달아 추진되었다. 10대 임업생태사업이 실시된 면적은 국토면적의 73.5%에 달하는 705만 6,000평방km이며 중국의 상습 토사유실지역과 황사피해지역이 포함되었다. 1997년까지 10대 임업생태사업에 따른 조림면적이 3,453만 8,000ha에 달했으며 매년 10대 임업생태사업에 의해 조성된 산림면적은 당해연도 전국조림면적의 60%를 차지하여 중국 조림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2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동북, 화북, 동서북 지역 방호림 사업에 의한 조림면적은 2,578만ha에 달했으며 이 지역의 산림 녹화율은 5.05%에서 9%로 높아졌다. 또한 동북, 화북, 동서북 지역의 황사 방지면적이 약 4만평방km 증가했으며 토사 보존면적이 약 10만km² 늘어났다. 방호림에 의해 보호되는 경지면적이 1,533만 3,000ha 증가하여 평원에 위치한 농경지는 기본적으로 방호림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쯔강 중상류 방호림 사업에 의해 667만ha의 숲이 새로 생겨나 산림녹화율은 19.9%에서 25%로 상승하였다. 연해 방호림 사업에 의한 조림면적은 105만ha에 달했고 해안지역에 1만 5,000km에 달하는 숲지대가 조성되었다. 평원녹화 사업은 이미 829개 현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방호림에 의해 보호되는 전국 농경지 면적은 약 3,500만ha에 달했으며 10% 내지 20%의 양곡이 증산되었다.

21. 국민 의무식수 운동

국민 의무식수 운동은 1981년 시작되었다. 17년 동안 전국적으로 280억 그루에 달하는 나무가 새로 심어졌으며 연인원 54억 8,600만 명이 참가하였다. 전국적으로 향진(鄉鎮) 이상의 행정지역에서 20만 8,000곳의 녹화지역이 새로 생겨나 602만ha의 숲이 조성되었다. 전국에 22만 6,000개의 청소년 자원산림보호대가 조직되었으며 대원수는 1,340만 명에 달했다. 매년 전국적으로 1억 2,000만 명의 여성이 의무식목 운동에 참가하여 17만 6,000개의 '3·8녹화사업'기지(각급 여성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식수운동단체)가 설치되었다. 인민해방군은 영내에 1억 7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13만 8천ha의 숲을 조성하였다. 경지개간, 석탄, 경공업 등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180만 5천ha의 산림을 조성하였고 철도교통기관은 '모든 철로 옆에 숲을'(萬里鐵路萬里林)이란 기치를 내걸고 식수운동을 벌여 23만 7천ha에 달하는 지역을 녹화하였다. 이밖에 교통부는 '모든 도로 옆에 나무를'(千里公路一線牽)이란 구호아래 나무심기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 51만 2천km에 달하는 도로가 녹화기준을 달성했다.

22. 산불방지

1987년 다싱안링(大興安嶺) 산림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후 산불방지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산불방지지휘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산불방지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게 했다. 1988년 이후 매년 봄에 전국산불방지업무회의를 개최하여 1년 간의 산불방지업무를 통합적으로 계획하였다. 1988년 1월 국무원은 '산불방지조례'를 공포하였다. 산불방지에 관한 법규가 점차 정비됨에 따라 법에 의한 화재방지 역량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32개 성·자치구·직할시와 350개 지역(市와 州 포함) 및 2,600개 현(市, 區, 旗 포함)에 산불방지지휘부가 설치되어 입산인원 관리와 야외취사 관리 등에 있어서 일련의 효과적인 방법이 마련되었다.

1988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산림경비부대가 전부 무장경찰

부대에 편입되어 헤이룽장(黑龍江), 지린, 네이멍구(內蒙古), 윈난(雲南) 산림 총경비대가 잇달아 창설되었다. 항공기에 의한 산림보호는 195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18곳의 항공산림보호소가 설치되어 동베이(東北), 네이멍구 및 시난(西南)의 주요 산림지대가 그 보호 아래 있다. 199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1만여 개의 전문적인 산림소방대가 설치되어 30만 명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불방지를 위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여 정부는 매년 4,500만 위안을 화재방지를 위한 기초시설건설에 투입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투자액이 9,000만 위안으로 증액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7,600여 개의 화재감시를 위한 전망대가 설치되었고 약 25만km의 소방도로가 부설되었으며 6만 5,000km에 달하는 통신전용선이 가설되었다. 또한 화재위험을 알리기 위한 기상관측소가 112곳 설치되었고 약 34만km의 화재저지지가 개설되었으며 32만km 정도의 화재방지 산림지대가 조성되었다.

23. 임업개혁실험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임업부는 헤이룽장(黑龍江)성 웨이허(葦河) 국유림지역 산림공업개혁실험구, 푸젠 썬밍(三明)집단 산림지역 종합개혁실험구, 후난성 화이화(懷化) 산림지역 종합개발개혁실험구, 쓰촨(四川)성 이빈(宜賓)대임업개발실험구, 광둥성 샤오관(韶關) 임업종합개혁실험구, 네이멍구 자치구 츠핑(赤峰) 사막화방지개혁실험구, 후베이성 우한(武漢) 도시임업건설실험구,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임산품유통체계개혁실험구,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우저우(梧州) 개방형임업개혁실험구, 허베이성 청더(承德) 산림종합효율개혁실험구 등 10개의 서로 다른 임업개혁실험구의 설치를 비준하였다. 게다가 국가인민위원회가 설치하고 임업부가 임업개혁실험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구이저우(貴州)성 첸둥난먀오족 통족(黔東南苗族侗族) 자치주 소수민족지구 임업개혁실험구가 11개 성과 10개 자치구 및 96개 현에 분포되었다.

‘8차 5개년 계획’ 이후 임업개혁실험구는 임업관리체제, 하부합작경제조직형식,

경영모델, 임산물 유통시장건설, 임업지역 제도마련, 산림자원 자산화관리와 경영제도 마련, 현대 임업기업 제도마련 등의 문제에 있어서 임업경제를 운용하는 과정 중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를 둘러싸고, 중·단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개혁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리체제, 조직형식, 경영모델, 시장건설, 투자체제, 산림지역 종합개발과 임업개발구조조정을 위한 관련정책조치, 임업정책 자원관리제도 마련 등 문제에 있어서 임업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시범을 보이는 등 크게 기여하였다.

24. 농촌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한 목축업

1978년 목축업 생산액이 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0%에 불과했지만 1997년에는 그 비중이 31.5%로 높아졌다. 1989년 934억 6,000만 위안이던 축산물 판매에 의한 수입이 1997년에는 4,115억 6,000만 위안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목축업 수입 성장속도는 경종업을 추월하여 농민의 주요 소득원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일부 발전이 미진한 지역에서는 축산업에 의한 소득이 농가 1인당 평균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목축업의 신속한 발전에 힘입어 농촌의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목축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는 거의 1억 명에 이르고 목축업에 의한 생산액은 7,8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축업은 또한 향진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여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량 증산을 크게 촉진하였다. 최근 몇 년간 사료원료로 쓰인 양곡은 양곡 총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하여 개혁개방 실시이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중요한 관련산업인 사료산업은 거의 제로상태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겨우 십 수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중국은 일약 세계 제2의 사료산업국으로 발돋움하였고 1997년의 생산액은 1,261억 위안에 달했다.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에 있어서도 1997년 한 해 동안 목축업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했고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류 고기가공품 수출만 하더라도 3대 주요 가전제품인 냉

장고와 세탁기 및 컬러TV의 수출액보다 많았다.

25. 축산산업구조 점차 고도화

국가통계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97년 중국의 육류, 식용알과 유제품의 생산량은 각각 5,152만톤, 2,125만톤, 775만톤에 달해 최근 20년 간 평균 10%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육류와 식용알의 총생산량은 이미 오래 전에 세계 1위에 올랐고 축산품의 장기적인 부족현상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 또한 축산품 구조도 현저히 개선되어 육류 총생산량 중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에 94%에서 1996년에는 68.3%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쇠고기와 양고기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8.4%와 4.1%로 상승하였고 가금류 고기의 시장점유율도 18.2%로 높아졌다. 이렇듯 과거의 단일한 제품구조에서 벗어나고 시장 공급량이 증가하여 다양한 시장수요를 만족시켰다.

26. 급증한 1인당 축산품 생산량과 소비량

1980년, 중국의 1인당 육류, 식용알, 유제품 점유량은 각각 12.2kg, 2.6kg, 1.4kg이었지만 1997년에 이르러서는 1인당 점유량이 각각 41.9kg, 17.3kg, 6.3kg으로 증가했다. 육류의 1인당 점유량은 이미 세계수준을 넘어섰고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의 1인당 점유량은 세계평균치의 약 2배에 이르렀고 식용알의 1인당 점유량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동물성 식품의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양곡 소비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1986년에 138kg에 달하던 대도시와 중소도시 주민의 1인당 양곡소비량이 1997년에는 88.6kg으로 감소했다.

27. 항공 살포에 의한 목초지 조성

제11기 3중전회 이후 당중앙, 국무원 및 국가 지도자들의 관심과 재정부, 민항국,

인민해방군 공군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항공 살포에 의한 목초재배가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1979년에 산시(陝西)성 위린(榆林)지역, 네이멍구, 닝샤(寧夏) 등 3개의 성과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시험적으로 항공 살포에 의한 목초재배에 성공했다. 이 후 20년 동안 항공 살포에 의한 목초재배사업이 시범지역에서의 시험적 실시, 보급, 규모 확대라는 세 단계를 거쳐 이미 16개 성과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1998년까지 전국적으로 254만 8,700ha에 대해 항공 살포에 의한 목초지 조성이 실시되어 그 중 8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목초지를 조성하였고 153만 3천ha는 보류지역으로 남아있다. 20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의 항공 살포에 의한 목초지 조성은 기술규범, 관리체제, 과학기술로의 전환, 3대효율, 인재양성 및 발전 방식 등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와 경험을 획득했다. 항공 살포에 의한 목초지는 양질의 목초를 대량생산하는 목초생산기지와 겨울과 봄의 열악한 자연환경에서도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해주는 가축보호기지를 형성하였다. 항공 살포에 의한 목초 재배가 국토를 정비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며 광활한 목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28. 수의(獸醫)업무

20년 동안 수의업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동물 전염병이 억제되었다. 중국정부는 116가지 동물 전염병을 법정예방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이에 상응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1955년 우역(牛疫)을 근절했다고 공식으로 선언한데 이어 1996년 1월 16일에 우폐역(牛肺疫)을 근절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돼지 콜레라, 뉴캐슬병, 마비저, 급사병, 부루셀라, 탄저병, 광견병 등 목축업 생산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동물 전염병이 비교적 양호하게 억제되고 있다. 가축 흡혈충 종합방제작업이 최근 들어 양호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가금과 가축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32%와 49%에

서 돼지는 8%로 가금은 18%로 낮아졌다.

둘째, 수의기관과 수의사가 증가하였다. 중국은 이미 양호한 동물방역, 검역 및 감독체계를 형성하여 5만 4,000개의 각급 가축 의료소에서 23만 명이 동물검역에 종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70여만 명의 수의방역인원과 6만여 명의 동물방역감독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 획일적으로 동물방역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관련 법규를 통해 전염병을 방제하고 건실한 하부조직을 구축하여 전면적으로 방역, 검역 및 감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 전국에 독립적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기관이 120여 개 설립되어 1만 2,000여 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미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준종을 대량으로 수집, 보존하여 동물보호기술 연구를 위해 많은 연구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콜레라 백신 등의 연구 및 응용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주로 주요전염병의 단일 클론항체, 핵산탐침, 토끼 독성 출혈증과 가축 일본 효혈충 등 질병의 종합방제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돼지 콜레라 등 중대한 전염병에 관한 기초연구와 새끼돼지 장티푸스 유전공학 백신의 연구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 신기술이 전염병 방제와 동물약품 생산에 응용됨에 따라 동물보호기술이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넷째, 수의 법제화 관리가 점차 개선되었다. 국무원은 ‘가금, 가축 방역조례’와 ‘동물 의약품 관리조례’를 잇달아 공포하였고, 1998년 1월 1일 ‘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의업무 법제화관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29. 사료산업

중국의 사료산업은 1970년대 중·후반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지난 20년 동안

사료원료산업, 첨가제산업, 기계공업, 가공업 및 교육, 과학연구, 직업훈련, 감독, 검역 등 비교적 완전한 사료산업 체계를 갖추었다. 1998년 전국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5,557만톤에 이르러 1978년 대비 92.7배 증가했다. 1978년에 거의 제로상태이던 농축사료, 첨가제혼합사료가 지금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각각 889만 6천톤과 138만 3천톤에 달한다.

사료산업의 발전은 가축 사육업의 빠른 성장과 사육방식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20년 동안 배합사료의 총생산량이 거의 6억톤에 다다랐고 약 30% 정도의 축산제품은 공업사료의 전환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또한 농축사료와 첨가제혼합사료는 현대화된 사육기술을 전통적인 사육방식과 서로 결합시켜 사료제품을 사용하는 사육농가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현재 중국은 이미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미량원소 등 14가지 100여 종의 사료첨가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80만톤에 달한다. 그 중 아미노산은 연간 8,000톤 정도 생산되고 16가지 상용 비타민은 국내에서 모두 생산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만톤 이상이다. 이밖에 미네랄과 미량원소 첨가제는 연간 60만톤 정도가 생산된다. 전국에 핵심기업 60개를 포함한 270개의 사료기계 제조회사가 설립되어 연간 1만대의 사료제조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20년 동안 사료연구, 교육, 직업훈련, 품질검사, 제품기준, 제품정보 등 사료산업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점차 발전하고 있다. 수백 가지의 연구성과가 생산에 응용되어 실질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었다. 대다수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에 사료 또는 동물영양학과가 개설되어 많은 사료산업인재를 공급하였다. 정부는 베이징과 우한에 국가가 관리하는 사료 품질검사센터를 설립하였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일부 현에 200여 개의 사료제품 품질감독검사기구를 설치하였다. 사료 표준화시스템이 점차 개선되어 이미 사료제품, 검사방법, 위생 및 상표 등 170여 가지 업종표준과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업종관리와 기업표준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30. 어업개혁과 어업의 거시정책

1980년대 초반 중국의 어업은 비교적 일찍 ‘국가에 의한 계약구입, 일괄구입, 할당구입 및 국영 수산물 공급판매 기업에 의한 독점 경영’이라는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에서 탈피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다양한 경영형식과 경영방식을 발전시켰다. 이와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먼저 수산물 유통체제를 개혁하여 어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

1985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규제완화와 수산업의 빠른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관한 지시’를 내려 모든 수산품을 할당구입하지 않고 가격을 자율화하여 시장이 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식을 위주로 양식, 어획, 가공을 병행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아울러 국영, 집단 및 개인경영을 병행하고 생산, 공급, 판매와 어업, 공업, 상업 그리고 내수와 수출을 연계한 종합적인 경영을 할 것과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효율을 중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7년 국무원은 농업부에 하달한 ‘농업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의견’이란 문건에서 향후 어업발전의 방침과 기본정책을 확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양식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원양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가공과 유통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법제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향후 어업발전을 이끄는 핵심문건이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업발전을 위해 거시조정방식을 조정하였다. 예를 들면, 정확한 어업발전방침과 정책지침을 제정하고 발전중점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한 지원조치를 취해 중국의 어업발전과 어업이 나아갈 방향에 결정적인 작용과 영향을 미쳤다.

31. 중요 산업으로 발전한 어업

농업 총생산액에서 어업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에 1.6%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10.6%로 상승하여 같은 기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어업 발전속도를 보였다. 수산물 시장에 풍부한 물량이 공급되어 생선이 귀하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1998년에는 이미 3,907만톤에 달해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3분의 1일 넘어섰으며, 1978년의 536만톤에 비해 6.3배 증가하였다. 특히 198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1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연평균 13.3%라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전국 수산물 1인당 점유량은 매년 증가하여 1998년에는 31.3kg으로 세계평균치인 13kg을 훌쩍 뛰어넘었다. 어민 평균소득도 1978년에 93위안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3,974위안으로 상승하여 대다수의 어민들이 남들보다 먼저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에 도달했다.

32. 어업의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

20년간 중국은 전통적인 자원개발방식을 전환하고 고도화하였고 어업발전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어업의 산업구조 또한 대대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양식을 위주로 한 어업 발전방침을 확정하고 원양어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근해어업 자원보호를 강화하였다. 수산품의 절대 증산량 중 61%가 양식업에 의한 것으로 총생산량에서 양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전의 29%에서 56%까지 높아졌으며 양식 품종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는 발전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세계 주요 어업국 중 양식산업이 어획산업을 초과한 유일한 국가이다. 해양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조업어선에 대해 허가제도와 조업량 규제제도를 실시하여 어획량을 엄격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아울러 1995년부터 보하이(渤海), 황하이(黃海), 동하이(東海), 난하이(南海)에서 조업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에 다시 계획 어획량을 늘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3. 교육과 과학에 의한 어업

첫째, 어업 응용기초연구와 중요 응용기술연구를 중요시하여 과학기술진보 및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충분한 과학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셋째,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외국의 우수한 수산과학기술성과 및 우량품종을 도입하여 이용하였다. 어업기술진보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높아져 중국은 현재 48%에 달해 1978년 대비 20% 상승하였다.

34. 어업 법제건설

‘합법적인 어업과 법에 의한 어업육성’이란 말이 점차 어업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중앙, 각 성의 인민대표대회 및 성 정부, 어업 주무부처에서 공포하여 실시 중인 어업관련 법률, 법규 및 문건은 모두 500여 건에 달해 ‘어업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어업법률체계가 그 틀을 형성하였다. 1979년부터 어업행정 및 어항 감독관리 기구와 관리감독 인력이 출범하여 1998년 말에는 3만여 명의 어업행정인력과 2,000여 척의 각종 어업 행정지도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밖에 전문화된 어업행정기구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 법률 집행 능력이 점차 향상되었다.

35.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어업국제화

1998년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총량은 214만 4,000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8억 6,000만 달러이며 18억 2,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올렸다. 원양어업 생산량도 91만 톤에 달했다. 중국과 국제 어업계와의 협력이 날로 강화되어 현재 약 60개 국가 및

국제어업기구와 어업경제, 과학기술, 어업관리에 관한 협력 및 교류관계를 맺어 세계 수산물무역과 원양어업의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36. 향진기업의 발전과정

향진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 중에 등장하여 빠르게 발전한 신생기업으로 중국 농민의 창조적 결과물으로써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향진기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첫째,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1979~1983): ‘농촌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따른 일련의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란 문건에서는 “인민공사와 생산대대가 경영하는 사대기업(社隊企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이 추진한 개혁개방정책의 감화를 받아 대다수 농민들이 낡은 관념과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잉여노동력을 이용하고 지리적인 특성에 맞게 우세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경영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투자루트, 다양한 경제성분과 다양한 생산경영방식을 통해 농촌의 2·3차산업을 발전시켰다. 1978년 향진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2,827만 명으로 총생산액은 493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이 110억 위안이었다. 1983년에는 향진기업의 근로자수가 3,235만 명으로 늘어났고 총생산액도 1,008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세금만도 177억 위안이었다. 이는 1978년에 비해 각각 14.4%, 104.5%, 60.9% 증가한 것이다.

둘째, 고속성장단계(1984~1988): 1984년 초 중공중앙이 발표한 문건에서는 인민공사와 생산대대가 경영하는 사대기업을 설립하고 이와 더불어 농민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각종 기업을 경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당중앙과 국무원은 농(農), 목(牧), 어업부에 ‘인민공사와 생산대대가 경영하는 사대기업의 새로운 국면 조성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하달하였다. 사대기업이 향진기업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향에서 경영하는 기업, 촌에서 경영하는 기업,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과 농업, 공업, 상업, 건설업, 운송업, 서비스업이 동시에 발전하였다. 1988년 향진기업의 종업원 수는 9,495만 명이었고 총생산액은 7,018억

위안이었으며 이에 대해 892억 위안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이는 1978년 대비 각각 235.9%, 1,323.5%, 710.9% 성장한 것이다.

셋째, 정리와 제고단계(1989~1991): 정부가 향진기업에 대해 ‘정돈, 조정, 개조, 제고’라는 방침을 실시함에 따라 향진기업의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었고 많은 향진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전업하였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 더 많은 향진기업이 내실을 다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또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외자, 기술, 설비, 선진관리경험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의 외향적인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1991년 향진기업에 의한 수출액은 789억 위안으로 1988년에 비해 200%가까이 성장했다. 이 해에 향진기업의 조업원수, 총생산액, 조세액은 각각 9,614만 명, 1조 1,622억 위안, 1,573억 위안이였다. 이는 각각 1978년의 3.4배, 23.6배, 14.3배이다.

넷째, 전면적인 발전단계(1992~1996): 1993년과 1993년에 국무원은 잇달아 문건을 하달하여 향진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조성하였다. 1996년에 향진기업의 종업원수는 1억 3,500만 명이었고 부가가치총액은 1조 8000억 위안에 달했다. 수출금액은 6,008억 위안이었고 총조세액은 6,253억 위안이였다. 이 중 종업원 수와 총 조세액은 각각 1978년의 4.8배와 56.8배였다.

다섯째, 개혁, 발전과 제고단계(1997년 이후):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국무원은 전국 향진기업 업무회의를 열었으며 중공중앙은 문건을 하달하였다. 이는 중국 향진기업 발전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다. 향진기업의 많은 간부사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취적으로 개혁하였다. 또한 과학과 교육에 의한 기업발전전략,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수출에 의한 발전전략, 명품전략을 성실히 추진하였다. 동시에 품질과 효율을 중심으로 삼고 발전의 가속화를 중점으로 삼아 시장을 겨냥해 끊임없이 개혁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힘입어 기업구조가 한층 고도화되고 전체적인 자질과 기업운영 및 경제효율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1997년 향진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총액은 2조 700억 위안으로 1996년 대비 17.4% 증가하였다. 수출액과 이윤총액은 각각 16.8% 성장한 6,946억

위안과 11.2% 증가한 4,865억 위안이었다.

37. 농촌경제의 핵심역량과 국민경제의 기둥으로 성장한 향진기업

향진기업의 발전에 힘입어 농촌의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가 효과적으로 바뀌었다. 20년 동안 중국의 농촌은 경종업을 위주로 한 단일경영구조에서 벗어나 농, 공, 상업을 종합적으로 경영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였다. 농촌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40%로 하락한 반면 2, 3차산업은 각각 30%에서 60%로 상승하였다.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노동력이 농경지에서 빠져나갔다. 현재 전국적으로 향진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농촌노동력과 잉여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30%와 50%이다. 많은 농촌노동력이 상업과 공업에 뛰어들어 비교적 높은 자질을 갖춘 2, 3차산업 종사자가 되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생산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향진기업은 농가 소득증대의 중요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한 자본축적을 늘리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역량이 되었다. 1997년 농민 1인당 평균순소득의 3분의 1이 향진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었으며 향진기업에 누적된 집체자산은 농촌 전체 집체자산의 80%를 차지하였다. 집체경제력이 강화됨에 따라 농촌의 문화교육, 의료위생 등 공공복지사업과 수리,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향진기업의 발전으로 인해 농업생산을 위한 거액의 자금이 축적되었다. 20년 동안 향진기업이 농촌 지원과 건설에 투입한 자금은 1,500억 위안으로 농업 생산조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농업기술설비가 증가하였다. 공업이 주체가 된 향진기업은 농촌의 토지, 노동력, 농산품, 임산품, 광물자원 등 생산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가공업, 상업, 서비스업을 발전시켰다. 많은 농민들이 농업, 공업과 상업을 병행하여 소규모의 공업지역과 도시를 형성하였다.

향진기업은 이미 도시와 농촌일체화의 중요한 방안이 되었다. 향진기업의 생산과 경영은 국민경제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소비재 생산에서부터 생산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상품은 국내 각 업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탄, 시멘트, 식음료, 의류는 각각 40%, 40%, 43%, 8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진기업은 도시와 농촌시장에 더욱 풍부한 제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력을 증강시켰다. 1997년 향진기업이 창출한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 위안으로 이는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전국 세수총액의 5분의 1과 수출총액의 3분의 1이 향진기업에 의해 창출되었다. 위에서 보듯이 향진기업은 이미 전체 국민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38. 향진기업의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

향진기업은 시종일관 시장을 겨냥한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하여 점진적으로 독특한 특색을 지닌 탄력적인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자면, 신속하고 자주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 탄력적인 인력운영 시스템, 개인 능력에 따른 간부 시스템, 상벌이 분명한 인센티브 시스템, 책임경영을 하는 제약 시스템,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분배 시스템, 자기축적에 의한 발전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자산의 재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주체가 날로 다원화되었고 각종 소유제성분이 날로 융합되었다.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많은 농민의 실천을 통해 창조되고 발전한 주식합작제기업, 주식제기업, 합자합작기업은 모두가 공유제 경제의 새로운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향후 생산력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원래 개인 민영기업이 위주가 된 윈저우(溫州)에서는 자발적인 제휴와 합작을 통해 주식합작제기업 또는 주식제 기업이 앞다투어 생겨났다. 집체경제 외에는 다른 형식은 찾아볼 수 없던 쑤저우(蘇州)와 난징(南京)에서는 절반 이상의 향촌 집체기업이 주식제, 주식합작제와 다른 형식의 경영방식을 추진하였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39. 향진기업의 과학기술력 제고

치열한 시장경쟁에 적응하기 위해서 향진기업은 과학기술과 인재를 매우 중시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관리수준을 높였다. 관계부처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이전한 기술특허 중 향진기업이 60%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향진기업이 새로 투입한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에 사용되었다. 수많은 향진기업이 지식능력개발을 중시하여 인력 스카우트와 인재양성에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며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기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향진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45%이상에 달하고 제품 불량률이 5%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함량이 높고 품질이 뛰어난 고부가가치의 명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만개의 향진기업이 자체적인 연구개발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향진기업은 관리에 있어서도 점차 제도화, 과학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70%이상의 향촌집체기업이 기초관리와 전문관리능력을 갖춰 비교적 완전한 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우수한 과학기술과 관리는 기업의 능력, 제품의 품질과 경제효율을 높이는 데 견실한 기초를 다져주었다.

40. 향진기업의 대외개방, 규모화

향진기업은 점차 지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발전을 도모하였다. ‘현지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현지에서 상품을 가공하며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것에서부터 시장쟁탈전이 벌어졌다. 끊임없이 외부로 확장하고 국내외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며 연해지역, 하천주변지역, 도로 주변지역 및 내륙지역을 넘나드는 전방위 경영을 하였다. 또한 외자를 유치하고 대외무역과 해외경영을 추진하며 차원 높은 대규모 시장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소형기업에서 대형기업으로, 약한 기업에서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1997년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전국에 11만 1천개 있었고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향진기업은 약 1,200개에 달했다.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한 향진기업이 갈수록

많아졌고 거액의 자금, 기술과 선진관리 경험을 도입하여 기업의 능력과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켰다. 최근 몇 년간, 향진기업은 자체적인 자본축적, 규모확장, 제휴 또는 합병을 통해 우수한 기업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구도로 빠르게 재편되어 비교적 큰 규모를 갖춘 기업이 등장하였다.

그 중 매출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대형기업이 8,700여 개이며 일단의 그룹이 출현하였다. 현재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거대 향진기업은 1,029개이고 대형, 중형 향진기업은 약 6,4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비교적 큰 규모를 갖춘 기업과 그룹은 실력이 탄탄하고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뒷받침해주는 예비역량이 충분해 다른 기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41. 농기계 산업의 다양한 소유제 경제

농촌개혁이 실시된 이후 정부는 농민개인 또는 몇 가구가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생산과 운송업에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국가나 집단투자에 의한 기계화에 의존하던 과거의 발전모델을 개혁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근로의욕이 크게 고취되었다. 이로써 노동자와 생산도구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현 단계에서의 농업생산의 특징과 농촌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농업의 기계화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42. 향상된 농기계 수준과 개선된 농자재

지난 20년간 농기계 보유량은 줄곧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다. 1998년 말까지 전국 농기계 고정자산 원가는 2,318억 위안에 달해 1978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다. 농기계의 총동력은 약 4억 4,000만 킬로와트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농업용 트랙터 보유량은 1,208만 대로 약 5배 증가했다. 콤바인은 1,577만 대로 5배 가까

이 증가했으며, 바인더 보유량은 18만 대로 8배 정도 늘어났다. 또한 농업용 수송 차량도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비료 살포기, 자동 및 반자동 파종기 등 기술함량이 비교적 높은 신형 농기계는 현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농기계의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농업생산수단이 개선되었고 종합적인 농업생산력이 강화되었다.

43. 향상된 농업기계화

1998년 기계화 경작, 기계화 파종, 기계화 수확 면적은 전국적으로 각각 6,005만 3,000ha, 3,835만 8,000ha, 2,342만 5,000ha로 1978년에 비해 각각 48%, 188%, 650% 증가했다. 경작, 파종 및 수확의 기계화 수준은 각각 63%, 25%, 15%로 1978년 대비 22, 16, 13% 상승했다. 1990년대 이후 농기계 신기술 개발과 제작 및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 농기계와 농업기술이 더욱 밀접하게 결합하였다.

1998년 기계에 의한 화학비료 시비면적은 전국적으로 3,725만 2,000ha에 달했고 자동, 반자동 파종기에 의한 파종면적은 2,124만 3,000ha에 달했으며 기계를 사용하여 짚을 파쇄하여 경작지에 뿌린 면적이 1,040만 3,000ha에 달했다. 또한 기계를 사용하여 경작지에 비닐을 씌운 면적이 460만ha이고 기계를 사용하여 경작지를 간 면적이 1,576만 4,000ha이었다. 농업기계화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짐으로써 전통적인 경작방식이 빠르게 바뀌었고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가소득도 증가했다.

44. 농기계 서비스의 상업화

20년 간의 개혁과 발전을 거쳐 농기계 서비스가 상업화되어 농기계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었으며 농기계의 효과적인 사용이 이루어졌다. 전문 농기계 서비스회사, 집단위탁, 주식합작, 전문 농기계합작사,

농기계연합체, 농기계 사용자협회 등 다양한 형식을 지닌 새로운 서비스조직이 전국 각지에서 등장하여 농업기계화 발전과정 중 자주적인 경영, 책임경영, 독립적인 축적과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농기계서비스체계는 더욱 견실해져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망을 형성하였다.

가정청부경영을 기초로 집체 통합경영과 가정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 하에서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을 초월한 농기계 서비스를 위주로 전문화, 사회화, 시장화라는 발전노선을 걸었다. 이를 통해 영업범위를 확장하고 농기계 이용율과 경영효율을 제고하였으며 개별적인 경작과정 중 봉착할 수밖에 없는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줌으로써 농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농기계 서비스 시장의 영향으로 전국에 소형트랙터, 농업용 수송차량과 바인더를 위주로 한 농기계 붐이 연속적으로 일어 농기계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45. 농기계의 거시조정과 관리

20년 동안 각급 정부는 농업기계화 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농기계 인프라건설과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거시조정을 강화하여 중·대형트랙터개조 및 바인더의 지역을 초월한 사용 등 정책을 연속해서 내놓았다. 또한 ‘농업용 트랙터 및 운전자의 안전관리 규정’과 ‘농기계 사용 안전기술조건’ 등 정부부처 규정과 국가기준을 공포하였고 전국 2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도 ‘농기계 관리조례’라는 지방규정이 공포되었다. 지역을 초월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서 각급 정부는 협조를 강화하여 농기계의 순조로운 이동과 안전한 작업을 보장하고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농업기계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46. 농지개간 개혁

제11기 3중전회 이후 농지개간 기업은 일련의 중요한 개혁을 진행했다.

첫째, 1979년에 정부는 농지개간기업에 대한 재무일인책임제(財務包干制)를 실시하여 전년도에 약 9,000만 위안의 손실이 발생했던 농지개간기업이 그 해에는 3억 9,000만 위안의 이윤을 남겼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농지개간회사가 국가에 납부한 세금총액은 491억 1,200만 위안으로 연평균 조세액은 거의 26억 위안에 달했다.

둘째, 농지개간 사업체에서 농·공·상 종합경영(農工商綜合經營)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8년까지 농지개간사업체가 경영하는 1, 2, 3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의 58:31:11에서 44.82:32.52:22.66으로 바뀌었다. 90년대 이후 농업산업화경영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관계를 유대로 한 그룹과 선도기업이 설립되었고 산업화 선도기업을 축으로 주변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비교적 큰 규모의 생산기지가 구축되었다. 또한 일부 핵심산업은 지역적인 분포, 생산의 전문화, 서비스의 사회화, 관리의 기업화, 경영일체화를 특징으로 하는 농업산업화경영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셋째, 1983년 국유농장에서 직원가정농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에 다시 직원가정농장의 생산비와 생활비를 직원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1998년까지 전국의 농지개간 농업경영 사업체 중 이미 89.32%의 사업체가 직원 가정농장 청부경영 방식을 채택하였다. 재배농업 중 가정청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영사업체가 경종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경영사업체의 91.36%를 차지했다. 또한 가정청부에 의한 경작면적은 경종업 총경작면적의 86.22%를 차지하였으며 가정청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동력은 경종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노동력의 78.9%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직원의 생활비와 생산비의 자비부담율은 85.62%와 79.3%에 이르렀다.

넷째, 단일 국유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켰다. 1998년까지 농지개간 사업체 중 개인 또는 민영사업체는 이미 36만 7,000 개에 이르렀으며 종업원은 65만 명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유자본이 주식을 통제하거나 출자한 주식제기업 또는 주식합작제기업, 사회법인주식

을 흡수하거나 직원이 출자한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작기업이 설립되었다.

다섯째,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실시하였다. 1997년까지 농지개간 사업체가 경영하는 ‘삼자기업’(三資企業, 中外合資企業, 中外合作企業, 外國企業獨資企業)이 1,500여 개에 이르렀고 총 외자이용액은 약 30억 달러였으며 누계 수출총액은 616억 3,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100여 개에 해외독자기업과 해외전자기업(海外全資企業)이 설립되었다.

여섯째, 기업의 경영 메커니즘을 전환하여 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시켰다. 1998년 말까지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농지개간 사업체의 전체 2, 3차산업 기업 중 30%에 달하는 기업이 임대, 주식합작 또는 주식제 경영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는 204개의 다원화된 투자구조를 갖춘 주식유한회사와 13개의 상장기업이 있었다. 또한 2,577개의 2, 3차산업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 합병, 매각 또는 조업중단 되었다.

일곱째, 농지개간지역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전국 36개 농지개간지역 중 15개의 농지개간지역이 이미 그룹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았고 그 중 11개 농지개간지역 그룹의 모회사가 사업체등록을 마쳤다. 또한 상하이(上海), 헤이룽장, 신장(新疆) 생산건설부대가 120개 국가그룹시범지역에 포함되었다. 이밖에 부수적인 개혁을 심화하여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고 개선하였다.

47. 농지개간지역의 농업생산 증가

1998년 농지개간 사업체의 농작물 총파종면적은 488만 5,580ha로 1978년에 비해 13.28% 증가했다. 양곡 총생산량은 1,645만 9,200톤으로 2년 연속 1,500만톤을 넘어서었다. 이는 1978년 총생산량의 2.54배이고 72.64%의 상품화 비율을 기록했다. 면화 총생산량은 1978년 총생산량의 9.71배인 72만 800톤이었고 식용기름 총생산량은 1978년 총생산량의 5.45배인 46만 5,200톤에 달했다. 설탕원료 총생산량은 1978년 총생산량의 10.57배인 995만 7,000톤에 달했다. 이렇듯 양곡, 면화, 식용기름, 설탕

원료 등 주요농산품의 총생산량이 모두 1978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경공업의 종합 생산능력도 크게 향상되어 중국 양곡, 면화, 식용기름, 설탕원료 등 주요농산품의 장기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가축사육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이미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했다.

1998년 육류 총생산량은 1978년 총생산량의 4.45배인 81만 9,800톤이었고 우유 총생산량은 1978년의 4.17배인 113만 600톤이었으며, 식용알류 총생산량은 1978년의 16.01배인 23만 2,200톤이었고 수산품의 총생산량은 1978년의 21.83배인 47만 8,000톤에 달했다. 축·수산품의 상품화 비율은 80%에 달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공급된 멸균우유 중 80%를 차지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주민에 대한 우유의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풍요하게 해주었다. 1978년에 4:1이던 경공업과 가축사육업의 생산액 비중이 2.7:1로 조정되었다. 농작물과 목축 및 수산품의 품종이 더욱 고급화되고 전문화되어 날로 다양화되는 공업원료와 서민생활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켰다.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농지개간 사업체는 모두 531차례나 국가와 정부부처가 수여하는 과학기술표창을 수상했다. 그 중에 102개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고 270개는 국내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신기술, 신품종, 신형 농기계, 신형 시설과 새로운 성과가 농지개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었고 농업생산량에 증가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는 이미 48.8%에 이르렀다.

48. 농지개간지역 농산품 생산기지 건설

20년 동안 150억 위안 이상 되는 자금이 농업종합개발에 투입되어 농지개간지역의 수리시설, 조림, 가축과 가금 생산시설, 농업기계장비, 교통과 통신 등 기본적인 생산환경이 개선되고 강화되었고 전문화, 집약화, 상품화된 농산품 생산기지가 대거 조성되었다. 헤이룽장, 신장과 네이멍구에 이미 100만톤에서 1,0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양곡 생산기지가 조성되었고 그 외에도 랴오닝, 후베이, 장쑤, 허베이, 지린, 장시, 후난, 닝샤 등 농지개간 지역에 100만톤 이하의 생산능력을 갖춘 양곡 생

산기지가 건설되었으며 양곡의 상품화 비율은 72.64%에 이르렀다. 또한 신장, 후베이, 장쑤, 후난 등 농지개간지역에 우량종면화 생산기지가 건설되어 1998년 면화 총생산량의 16.76%에 해당하는 면화를 생산하여 전국면화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헤이룽장, 신장, 닝샤, 광둥, 광시, 후난 등 농지개간 지역에 설탕원료 생산기지가 조성되어 전국 기계제작 설탕의 12%에 해당하는 설탕이 이 곳에서 생산되었다. 이 밖에 품질이 우수한 특산과일을 생산하는 과일생산기지가 대거 조성되었다. 동시에 경종업과 가축 사육업이 연계되고 생산, 공급, 판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가축 사육업 모델을 발전시키고 개간지역에 농업단지와 목축단지 및 수산물생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외지역, 헤이룽장, 네이멍구, 허베이의 개간지역에 우유생산기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후베이, 후난, 광시, 장시성에 돼지 사육기지를, 헤이룽장, 랴오닝, 장쑤, 후베이의 개간지역에 가금류 생산지역을, 후베이, 후난, 허베이, 랴오닝 개간지역에 수산물 양식기지를, 신장과 네이멍구 개간지역에 고급양모 생산기지를 각각 건설하였다. 재배농업과 가축 사육업의 우량종 생산기지도 국유농장과 많은 농촌에 양질의 농작물종자와 축, 수산품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그 중 상품화한 농작물종자의 양은 100만톤에 달했으며 농·축산품의 생산수준과 품질을 촉진하고 제고하였다. 농지개간사업체가 경영하는 농업은 이미 전문화 생산, 집약화 경영, 서비스의 사회화, 농공업과 상업의 일체화를 특징으로 한 새로운 구조를 형성했다.

49. 농지개간지역의 천연고무생산

농지개간지역의 천연고무 생산은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고무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력과 생명공학실험실 등 선진시설이 그 역할을 십분 발휘하여 수천 가지에 이르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예를 들어, 고무나무의 꽃밥배양과 고무를 채취하기 위해 고무나무에 칼금을 긋는 것에 관한 새로운 제도 등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 1980년대 초, 북위 18°에서 24°사이에 위치한 지역에 대규모 천연

고무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로부터 1등 발명상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세계 천연고무 생산국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년 동안 중국의 농지개간지역에서 생산된 천연수지는 1978년의 9만 5,000톤에서 1997년에는 35만톤으로 증가해 ha당 생산량은 645kg에서 1,151kg으로 늘어났다. 농지개간지역의 천연고무 생산기지는 매년 국가에 3억 위안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 천연고무 생산기지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의 국면을 전환하였고, 국가는 이로 인해 50억 위안의 수입 대체효과를 얻게 되었다. 중국의 천연고무 재배면적은 이미 약 60만ha에 달하며 연간 45만톤의 천연수지를 생산하여 세계 48개 고무재배국 중 재배면적은 세계 4위,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천연고무 가공품도 단일품종만을 생산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표준고무, 선박용 아교, 에폭시수지 등 1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50. 농경지 수리건설

농촌개혁을 실시한 이래 특히 국무원이 농경지 수리 기초시설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후, 가뭄과 홍수에 대한 농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대규모의 농경지 수리시설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었고 효율 또한 갈수록 향상되었다. 특히 절수형 관개 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의 농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절수형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의 잠재력을 지닌 지역에서 관정을 뚫어 지하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절수형 관정지역을 건설하였다.

농업종합개발을 실시하여 산림, 수자원, 농경지, 도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중·대형 관정지역에 절수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조하여 효과적인 관개가 가능한 경지면적을 확대하였다. 상습적으로 가뭄피해를 입는 물부족 지역과 산언덕 지역에 소형 저수시설이나 양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을 저장,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절수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의 식수부족 문제를 해소

하였다. 토사유실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지류를 종합관리하고 언덕을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언덕에 나무를 심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였다.

도시와 농촌에 대한 용수공급능력을 강화하여 이들 지역의 급수상황을 개선하였다. 목축지역의 수리시설을 발전시키고 야생풀을 사료로 이용하는 천연목장을 조성하였다. 배수시설을 건설하여 침수 농경지의 배수능력을 향상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분야에서 모두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농촌 수리사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전국적으로 댐 200여개, 제방 8만 6,000km, 66.67ha 이상의 관개지역 330곳, 고정 배수 관개 펌프실 8만 4,000개, 동력식 종합관정 133만 곳이 설치되었고 전기를 이용해 배수 및 관개를 할 수 있는 동력설비가 2543만kW 증가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관개가 이루어지는 농지면적과 침수피해에서 벗어난 농지면적이 각각 400만ha와 320만ha 증가하였다. 148만ha에 달하는 알카리성 토양 지역이 농지 개량을 통해 농사가 가능해졌고 31만 8,000km²에 달하는 상습 토사유실지역이 새롭게 정비되어 1억 6,000만 명에 달하는 농촌주민의 식수문제가 해결되었다. 전국 총 경지면적의 절반도 안되는 관개지역에서 생산한 양곡, 면화, 채소가 전국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 80%, 90%이다. 농촌 수리사업의 발전은 농업 더 나아가 전체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51. 소형수리사업 재산권제도 개혁

농촌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 수리체제 개혁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졌으며, 특히 소형동력 관정, 소형저수지, 소형펌프장, 소형수로 등 소형수리사업에 대해 입찰, 양도, 임대, 청부, 주식제 및 주식합작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제도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8년 말까지 전국 각지의 1,600만 건에 달하는 소형수리사업 중 264만 건에 대해 재산권제도개혁이 실시되었다. 그 중 주식합작제를 실시한 소형수리사업이 15%를 차지했고 입찰, 임대, 청부를 실시한 소형수리사업은 각각 14%, 7%, 64%를 차지했다. 개혁을 통해 보존자산을 회수하여 소형 수리사업의 투

자루트를 확대하고 재산권을 분명히 하여 책임, 권리 및 이익의 소재를 명확히 했다. 소형수리사업 관리체제의 개혁과 경영시스템의 전환을 촉진하여 소형수리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원과 자금의 합리적인 투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독자적으로 소형수리시설을 건설한 후 스스로 사용료를 받아 자주적인 경영을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새로운 소형수리사업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수리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줄였다.

52. 수자원과 토양 보호를 통한 생태환경 건설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수자원과 토양 보호사업이 큰 진전을 이루었고 수자원과 토양보호 법규체제와 법규 집행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전까지 한쪽에서 보호하고 한쪽에서 파괴를 하던 수자원과 토양 보호사업의 폐단이 점차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수자원과 토양 유실 중점예방보호구, 중점 감독구와 중점 정비구에 대한 구획 및 공고가 실시되었고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토사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삼동시’(三同時) 제도가 점차 본궤도에 올랐다. 정비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정부는 우딩허(無定河), 용딩허(永定河) 등 8건의 중점 정비사업, 황허 중류의 지류 정비사업, 양쯔강 상류 중점정비사업 등 토사보호를 위한 생태환경 건설사업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1991년 ‘수자원과 토양 보호법’(水土保持法)이 정식 발효되어 향후 예방위주의 중국 토사보호방침을 확정하여 수자원과 토양 보호사업이 법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8년 양쯔강(揚子江), 쑹화강(松花江)과嫩江(嫩江)에 발생한 홍수는 중국의 심각한 수자원과 토양 유실문제와 생태환경 악화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당 중앙과 국무원이 내놓은 재해피해 복구방침과 ‘전국생태환경건설계획’에서는 대형하천 중상류 지역의 수자원과 토양 보호를 하천정비의 근본적인 조치와 생태환경 건설의 주요사업으로 삼아 과감한 정책을 통해 양쯔강과 황허 상류지역에서의 산림벌목을 금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고 정부는 상습 수자원과 토양 유실지역의 종합정비에 소요되는 자금투입을 확대하였다. 1998년 전국 중점 정비 현은 지난날 380여 개에서 812개로 늘어났고 종합정비 지류는 1만여 개에서 2만여 개로 증

가했다. 수자원과 토양 유실 종합정비면적도 매 해 3만km²이던 것이 5만 880km²로 늘어나 처음으로 5만km²를 넘어섰다. 1998년 말까지 전국 수자원과 토양 유실 종합정비 면적은 모두 합해 78만km²였으며 그 중에는 계단식 농지 위주의 기본 농경지 1,200만ha, 수자원과 토양 보호림 4,000만ha, 유실수림 약 400만ha, 보존 초지 약 400만ha가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수자원과 토양 보호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수자원과 토양 보호시설의 연간 토사유실 방지능력은 15억톤이고 250억m³에 달하는 물을 추가로 저장할 수 있다. 한편, 황허(黃河) 중상류지역의 수자원과 토양 보호사업으로 매년 3억톤에 달하는 수자원과 토양이 황허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53. 농업을 위한 기상 서비스

20년 동안 농업을 위한 기상 서비스의 효율은 국민경제 각 업종에 대한 기상서비스의 총효율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급 기상관측 부서는 현지 농업생산과 농촌경제발전의 필요에 부응하고 각 지역의 농업종합개발, 농업구조조정, 경종업 제도개혁, 각종 농산품(양곡, 육류, 식용기름, 식용알류, 우유 등) 생산기지 건설과 종자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농업 기상정보, 농업 기후지역 구분, 농업 기후자원 합리개발 이용, 농업 기상적용 기술보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와 성급 기후 재해관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기 기후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각 지역에서 농업생산량 예보업무를 시작하였고 예보의 정확도는 점차적으로 제고되었다. 전국 3분의 1이상의 현에 향진 1급에 이르는 농촌 기상과학기술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전, 생산단계, 생산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기상에 대한 인공적인 영향을 통해 농업의 가뭄 대응 능력과 우박방지 및 수원저장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 이후 매년 인공적으로 강우량을 늘리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00만km²에

달하고 우박 방지 작업을 실시하는 지역의 면적은 10만 내지 20만km²에 이른다. 기상과학기술에 의한 빈곤구제가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고, 1987년 이후 국가 기상부서는 모두 400여 건에 달하는 과학기술 빈곤구제 프로젝트를 하달하였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 기상부서는 720개의 현에 과학기술 빈곤구제 기지 및 연락소를 설치하여 926건의 빈곤구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872차례에 걸쳐 기술양성반을 개설하여 연간 수만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이익이 17억 위안을 초과했다.

54. 향상된 기상서비스 수준과 사회경제 효율

개혁개방을 추진한 20년 동안 중국은 이미 기상예보, 경보, 기후분석응용, 농업기상, 한정된 지역에서의 기상에 대한 인공적인 영향 등 여러 가지 현대화된 기상정보서비스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였다. 기상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이로 인한 생산효율 간의 비율이 이미 1:40에 접근하고 있다. 태풍, 폭우, 한파, 강풍 및 강한 대류기후 등 국가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각급 관측소의 예보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1981년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폭우, 홍수를 막기 위한 징장(荊江)과 룽양샤(龍羊峽)댐의 방류, 1983년 산시(陝西)성 안캉(安康)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 1984년 화베이(華北) 지역의 폭우, 1985년과 1986년 2년 연속 동베이(東北)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에 의한 홍수, 1987년 다싱안링(大興安嶺) 지역의 대형 산불, 1991년 화이허(淮河)와 타이후(太湖) 유역의 홍수 발생 때 기상대는 항상 적시에 정확한 예보와 서비스 제공했다. 특히 1998년 장마기간에 양쯔강에서 1954년 이후 처음으로 강 전역에 걸쳐 발생한 대홍수 때 기상대는 사전에 비교적 정확히 날씨를 예측하고 정확한 중·단기 일기예보를 하여 홍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1995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단기 일기예보 중 일반 강우예보의 정확도도 1980

년대에 비해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더, 위성 구름사진 등 관측수단의 운용으로 돌발적인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업무가 무(無)에서 유(有)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수치로 표시되는 중기 일기예보의 시효는 1980년대 중반에 2~3일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6~7일로 늘어났다. 또한 매 순간 바뀌는 일간 일기예보업무는 생산계획을 세우는 데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1997년 말까지 전국 기상부서는 각 지방정부를 위해 560여 곳의 기상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다.

55. 하이테크의 농업적 응용

주요 농작물의 우성교배종 이용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올랐다. 교배종 벼의 총 보급 면적은 1억 4,000만ha로 2억 4,000만톤의 벼를 증산했다. 식물세포와 조직배양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꽃밥배양과 단배체 육종에 관한 응용연구는 세계최고수준이다. 원형질배양과 세포교배 및 식물유전공학은 이미 생산에 응용되고 있다. 농작물 유전육종, 우량품종의 선별적 배양 등 분야에서 핵기술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유전자 조작동물과 배태공학의 응용은 우량가축의 번식력을 효과적으로 높였고 동물 전염병 유전백신, 동식물배양과 대사, 동식물 성장 호르몬, 생물 반응기와 동식물 병충해 방제기술 등은 이미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했다. 원격탐지기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 네 번의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연속 국가핵심프로젝트로 선정되어 토지자원이용과 관측조사, 토양침식조사 및 홍수위험 관측, 초지 및 산림자원의 조사, 농작물 생산량 조사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농작물 생산량에 대한 예측조사는 그 면적이 넓고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95% 이상에 달하며 전국 양곡생산량 예측과 예보의 정확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농작물 품종자원 데이터베이스, 농업경제 통계자원 데이터베이스, 현급 농업과 토지자원 데이터베이스, 농업 정보문헌 데이터베이스, 농업 관리정보 시

시스템, 농업 전문가 시스템, 정책 결정 자문시스템, 농업 모델화 재배시스템 등이 구축되었고 농업정보 네트워크 건설과 응용도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다. 임업, 생태환경 보호, 농산품과 부식품의 가공과 저장 및 신선도 유지, 농업시설, 수경재배 등 분야의 첨단기술도 대량으로 응용되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56. 농업분야에서의 중요한 과학연구성과와 개발

‘6차 5개년 계획’기간부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고, 기초적, 종합적으로 확실한 목적을 지닌 농업분야의 중요한 기술과제에 대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농작물 종자자원에 대한 평가 및 응용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 병충해에 강하고 질 좋은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을 배양하여 농업증산에 대한 기여도가 이미 30%에 육박하였다. 농작물의 다수확 기술의 연구와 보급으로 인해 다모작작물의 재배면적이 전국 경지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였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이모작지수는 9.5% 상승하였고 이모작 면적이 866만 6,700ha나 늘어났다. 병충해와 잡초 및 들쥐 피해에 대한 주요농작물의 종합방제기술체제와 주요병충해에 대한 관측과 방제기술체제가 점차 구축되기 시작하여 식물의 보호와 병충해 종합방제 능력이 향상되었다. 농업용수, 임업, 농산품 가공, 수산업, 목축업, 초지 목축업,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농기계, 사료 산업, 사막화 방지, 농업기상 등 영역에서 60여 건에 달하는 농업과학기술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수천 종의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거두었고 일부 핵심기술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기여도는 1978년의 26%에서 ‘9차 5개년계획’기간 초기에는 39%로 상승하였다.

57. 핵심기술 연구와 개발 프로젝트

2000년에 5,000만톤의 양곡을 증산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9차 5개년계

획'기간에 '5대작물의 넓은 면적에서 다수확을 위한 종합적인 부대기술연구개발과 시범' 및 '주요농작물 우량종 선별재배 및 산업화기술연구와 개발' 등 3가지 국가 농업과학기술 핵심프로젝트를 설정하였다. 일부 핵심기술연구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져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일부 성과는 이미 생산에 보급, 응용되기 시작하여 뚜렷한 사회 및 경제효과를 거두었다. '5대 작물의 넓은 면적에서의 다수확을 위한 종합적인 부대기술연구개발과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된 5개 성과 자치구에서는 66만 6,700ha에 달하는 초다수확 시범재배농지, 666만 6,700ha에 달하는 다수확 시험지구, 6만 6,700ha의 다수확 시범지구와 66만 6,700ha에 달하는 시험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우량종을 선별하여 우량종 재배율이 98%를 초과하였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양곡과 면화의 증산량은 각각 1,832만 8,000톤과 23만 6,300톤으로 추가 창출된 직접 경제이익이 269억 9,000만 위안에 이르렀다. '주요가축과 가금류 규범화사육 및 산업화기술연구와 개발'프로젝트는 3년 만에 35건의 기술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35가지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른 육류와 달걀의 증산량이 각각 50여만톤과 2만톤에 달했고 15억 위안에 이르는 추가경제이익 창출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7개 성과 직할시의 돼지고기 살코기, 양계 및 비육 쇠고기 산업의 발전을 불러와 100억 위안 이상의 사회경제효과를 창출했다.

58. 중요 과학기술산업공정 프로젝트

1992년 국가과학위원회는 국민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핵심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연구부터 설계, 개발, 산업화에 이르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과학기술산업공정을 실행하였다. 그 중 이미 3가지 프로젝트가 시행중이며 1997년 실행된 '공장화 고효율농업 시범공정'은 중국 생산력에 적합한 공장화설비 농업기술, 종자종묘 생산기술, 공장화 재배기술과 생산후 가공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미 생산에 응용하고 있고, 중국의 다종류 생태환경설비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8년 시작된 '농업 고효율 용수(用水) 과

학기술산업 시범공정'은 중국북방의 가뭄, 반가뭄 지역 여덟 곳의 농업 고효율 용수의 핵심기술을 제시하고 5가지 농업 고효율 용수 자재설비를 개발하였으며 산업화개발을 위한 실험시범을 보여 중국 국내시장 점유율이 20~50%에 달하고 있다. 중요 과학기술 산업공정은 중국의 농업산업화, 현대화발전에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59. 농업구역 종합정리

생산력이 낮은 경지의 개조와 지역농업 종합개발 과정에서 생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황화이하이(黃淮海) 평원, 쑹넨(松嫩)-산장(三江) 평원, 북방 가뭄지역, 황투(黃土) 고원, 남방지역의 홍황랑(紅黃壤) 지역에 지역농업 종합정리 핵심기술을 개발할 연구팀을 만들었다. 25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51개의 비교적 고정적인 종합실험구역과 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과학연구기지를 만들어 1,533만 3,300ha의 생산성이 낮은 농경지를 개량했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황무지 약 166만 6,700ha를 개간했다. 또 알칼리성 토지 처리, 모래땅 개조 등과 관련된 종합기술을 연구해냈으며 수토 유실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소유역(小流域)을 기준으로 한 생태환경 종합정리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고 서로 다른 지역에 적합한 주요 농작물을 생산하는 고효율 재배기술과 실용기술을 제시했다. 20년 동안 중국은 1.95억 위안의 경비와 3만 여 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투입해 일만여 항목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중 320여 항목은 성(省)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500여 항목의 실용기술을 보급해 200억 여 위안의 경제적 효율을 거두었다.

60. 농촌교육 종합개혁

1987년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는 농촌교육개혁을 총괄하면서 농촌지역에 농촌교육 종합개혁을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농촌교육 개혁의 출발점과 착안점을 농촌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맞추어 농촌의 실제수요와 맞지 않는 교육을 개혁하여 농업, 과

학, 기술,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농촌의 기초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을 개혁 발전시키고 교육사상, 학교경영방향, 관리체제, 교육구조에서 교육내용, 교육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개혁개방이후 당과 국가는 농촌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농촌학교 교육강화와 개혁에 관한 몇 가지 통지’(關於加強和改革農村學校教育若干問題的通知),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教育體制改革的決定),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령’(中國教育改革和發展綱要) 등 일련의 문건을 연이어 발표하고, ‘전국농촌교육 종합개혁업무회의’를 열어 농촌교육 종합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기초교육,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을 실시하여 농촌교육체제를 더욱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20년 동안 농촌교육 개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촌교육도 농업과 농촌업무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농촌교육의 전략적인 지위가 더 강화되었으며 농촌교육의 경제적 역할도 사회의 중시를 받기 시작했다. 농촌교육구조도 나날이 합리적으로 변하고 기초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모두 상당히 발전했다. 농촌교육의 질도 향상되어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농촌에 수많은 노동자와 각급 전문인재들을 공급해 농촌경제 발전과 농촌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61. 고등 농업교육

20년 동안 전문대생, 학부생과 연구생 60여만 명을 배출해냈으며 학교 평균 재학생 규모는 1978년의 1,068명에서 1997년에는 3,045명으로 늘었으며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1:3.3에서 1:7.17로 상승했다. 교사들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대폭 향상되어 학과와 전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998년까지 전국에 91개 학교에 농업과학 박사과정(그 중 1급학과 27개)이, 310개 학교에 석사과정, 독립 건설된 농림학교가 59개, 고등 농림교육과가 있는 종합대학이 11개였다.

교육개혁이 부단히 심화되면서 신입생 모집과 취업제도도 바뀌었다. 국가차원의

통일 모집을 중심으로 하되 졸업 후 자신의 출신지로 돌아 가 취직하기, 출신지에 필요한 과정의 학생 모집, 실습생 모집을 부차로 하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교학개혁에서는 1998년 교육부가 다시 전공목록을 수정하여 농업과학전공 16개과를 확정하였다. 교육부의 ‘21세기를 향한 고등농림교육 교학내용과 커리큘럼 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와 실천’(面向21世紀高等農林教育教學內容和課程體系改革研究與實踐)을 선두로 하는 교학개혁 프로젝트가 고등 농림교육 교학개혁의 돌파구가 되었다. 또한 고등 농림교육은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 전략을 적극 실시해 농촌, 농업과 농민을 위한 지방경제건설에 봉사하여 거대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 농업학교 34곳을 조사한 결과 ‘7·5’, ‘8·5’ 기간동안 한 학교당 연평균 경제이익이 5.3억 위안이었다. 교학, 과학연구, 생산의 삼자를 결합하고,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농림학교는 허베이(河北) 농업대학을 대표로 하는 ‘태행산도로’(太行山道路)를 창조하여 정부와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62. 중등 농업교육

1985년 ‘교육체제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발표한 후 중등 농업교육이 신속히 발전했다. 농림 중등전문학교, 농민 중등전문학교, 농촌 직업고등학교가 각각 1984년의 406개, 219개 4,217개에서 1998년에는 393개, 421개, 4,775개로 늘었다. 재학생수는 10만 2,400명, 5만 6,100명, 89만 5,100명에서 54만 1,600명, 20만 200명, 227만 2,800명으로 늘었다. 또한 15년간 850여만명의 중등전문가를 배출했다. 각지의 중등농업교육은 ‘해당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 교육하며 다양성과 실효를 중시하자’는 원칙을 확립했다. 다시 말해 현지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그 지역의 중등 농업전문(직업)교육 목표와 인재층을 확정했다. 그리고 현지의 산업구조와 경제발전의 수요에 맞게 전공을 설치조정하고 교학내용을 갱신하여 다재다능한 전공자를 배양했다. 신입생모집제도, 학제기간, 교학모델, 교학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했다. 현재의 인력과 물자를 충분히 활용하고 사회역량을 빌려 더욱 많고 좋은 그리고 일정한 기술수준을 갖춘 응용성 인재를 배출했다. 그리하여 졸업생이 자기가 배운 기술지식을 활용해 현지의 경제진흥을 위해 공헌하게 하고 학교는 자신만의 특

색을 살려 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63. 농촌 성인교육과 문맹퇴치 작업

20년의 개혁과 발전을 통해 농촌의 초등교육 보급사업은 큰 발전을 거두었고, 성인교육과 문맹퇴치 작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 교육통계에 따르면 1978~1998년 전국 7,944만명의 문맹자가 글을 깨쳤으며 연평균 378만 3천명이 글을 깨쳤다. 국가통계국은 1982년과 1995년의 통계조사자료를 통해 전국 성인(15세 이상) 중 문맹자가 2억 3천만명에서 1억 4,500만명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약 1억 3,500만명의 문맹자가 있다고 밝혔다.

성인 문맹률은 34.49%에서 16.48%로 줄어 현재는 14.50%이다. 농촌 문맹자수는 2억 1,100만명에서 1억 2,100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문맹률도 37.74%에서 19.66%로 줄었다. 그 중 여성 문맹자 수는 1억 4,500만명에서 8,631만명으로 줄었고 문맹률도 53.01%에서 28.48%로 줄었으며 현재는 5.50%이다. 농촌 15~44세의 청장년 문맹자 수는 9,124만명에서 3,158만명으로 줄었고, 그 중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 문맹자 수는 6,831만명에서 2,855만명으로 줄었다. 청장년 문맹률은 23.31%에서 7.63%로 줄었고 그 중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의 문맹률은 36.03%에서 9.42%로 하락폭이 가장 크다.

1998년말까지 전국 초·중등 농민문화기술학교는 64만 3,300개로 늘어났으며 8,782만 7,700명을 배출했고 그중 320만 8천명이 글을 깨우쳤다. 보기 드문 홍수재해로 교육을 받은 인구가 전년보다 47만명 늘었다. 1998년까지 전국 19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교육부가 조직한 무작위 추출 조사에 통과했으며 현 단계에서 국가가 규정한 청장년 문맹을 기본적으로 퇴치하자는 목표를 실현하여 청장년 문맹률이 5% 이하로 떨어졌다. 성급 정부의 평가를 거친 결과 청장년 문맹을 기본적으로 퇴치한 현(縣)이 2,400여 개에 이른다. 약 90%의 향진(鄉鎮)과 54%의 행정촌이 농민기술훈련학교를 열어 현(縣), 향(鄉), 촌(村)의 성인교육을 통한 문맹퇴치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형성했다. 중국의 문맹퇴치 작업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1984년 이후 쓰촨성 빠중현(四川巴中縣), 지린(吉林), 산둥성 우롄현(山東五蓮縣), 후난(湖南), 구이저우성 송타오현(貴州松桃縣), 허난성 시평현(河南西平縣), 헤이룽장(黑龍江), 신강(新疆), 전국부녀연합, 닝샤(寧夏) 등 10곳이 유네스코의 국제 문맹퇴치상을 받았다.

64. 소성진(小城鎮) 건설

소성진은 일반적으로 진(鎮) 정부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이미 일정 인구와 공업, 상업이 밀집되어 있고 현지 농촌사회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강력한 파급력을 갖추고 있다. 민정부(民政部)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말까지 전국에는 1만 9,216개의 건제진(建制鎮)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전국에는 3만여 개의 향(鄉)과 2,000여개의 국유농장 소재지와 몇몇 경제가 발달한 촌이 있으며 현재는 이런 지역을 통틀어 소집진(小集鎮) 혹은 지역 주거중심지로 부르고 있으며 소성진의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소성진의 신속한 발전은 이미 1979년 농촌에서 가정연산승포제와 향진기업 발전을 실시한 이후, 농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1979년 중국 농촌의 건제진(建制鎮)은 2,854개 밖에 없었으나 20년만에 1만6,362개로 증가했다. 현재 소성진의 인구는 2억 5천만명에 달하고 그 중 비농업 인구가 1억 2천만명(공안부자료)이다. 전국에서 새로 늘어난 진(鎮) 인구 중 2/3가 소성진에서 왔으며 소성진 인구는 이미 전국 지방도시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성진은 국가의 대출과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농촌 향진기업이 창출한 수입과 농민자신의 투자만으로 건설되었다.

65. 농촌 노동력 이동

농촌노동력 이동은 개혁과 발전의 산물이다. 개혁 전의 거시계획 경제에서 도시

와 농촌을 분리한 취업제도는 농민의 직업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다. 1978년에 중국의 비농업 부문이 이미 총 생산량의 68%를 차지하였으나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여전히 76%를 차지했다. 그중 1/3이 잉여 노동력이다. 농촌이 빈곤하면 도시도 순조롭게 발전할 수 없다.

1978년 이후 농민은 가정생산청부제를 실시하면서 토지의 주인이 되었으며 노동력의 자주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이는 인구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낙후지역의 농민이 도시와 발달지역으로 움직이는 취업이동은 20년 동안 4단계를 거쳤다.

1978~1984년은 오랜 동안의 계획체제로 인한 고질을 타파하고 인구이동을 회복하는 시기이다. 농민은 노동력지배권을 회복했고 잉여노동력의 외지취업은 상품경제영향을 받았으나 기업을 세우지 못하는 일부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전국의 외지취업인구는 200만명을 넘지 않았다.

1985~1988년은 지역의 경계를 허문 시기이다. 지역발전이 불균등하여 도시 주위와 연해발전지역의 농민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2,3차 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들 외에도 외지노동력이 필요시 되었고 중서부의 일부 농민들은 취업압력 때문에 좀더 먼 지역으로의 취업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현을 떠난 취업인구가 천만명이 넘었다.

1989~1994년은 ‘외지 노동력 붐’이 일어난 시기로, 현을 떠나 취업한 농민이 5,000만명에 달했고 그 중 절반이 다른 성에 취직했다.

1995년 이후 도시에서는 실업자가 나타났지만 취업을 위한 농민의 이동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농촌노동력의 외지취업인구는 1995년의 최고치(현을 떠난 취업인구 5,500만명)와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단지 도시취업은 더욱 어려워졌으나 유동취업의 지역과 직종은 더욱 광범위해졌다. 농민의 이동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발달지역과 낙후 지역의 발전, 취업메

커니즘의 전환에 긍정적인 역할과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66. 농업 품질표준체계 건설

농업부는 국가표준 230여 개, 직업 표준 640여 개, 지방농업부처와 협조 및 지도를 통한 지방표준 1만 5천여 개를 제정 발표하였고, 농업 표준화기술 위원회 혹은 기술단위 20개를 조직했다. 농업부는 잇따라 농업 생산자재, 농산물, 농산 가공품, 농업 생태환경 품질 국가급 품질검사센터 13개, 부(部)급 품질검사센터 179개를 설립하였고 그 중 98개의 품질검사센터가 품질 법집행 검사 인가자격과 국가 계량인증을 받았다. 동시에 농업시스템 국가급 및 부(部)급 품질검사센터도 감독, 등록, 인증, 중재, 검정과 위탁검사를 벌여 국가급 품질검사센터를 선두로 하고 부급 품질검사센터를 주체로 하며 지방농업전문검사역(소)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검사 체계를 형성하였다.

1985년부터 농업부는 법집행 검사기구를 설립해 농업 생산자재와 농산품품질에 대한 감독검사에 들어갔다. 매년 평균 30~40개 품종의 농업 투입품을 농산품품질 국가감독이 추출검사하며 추출 검사량은 국가 전체의 법집행 품질감독 검사의 20~25%에 해당한다. 5종류의 주요 관리 산업의 농산품 품질은 국가가 통일 감독 검사한다. 매년 10~15 종류의 신형 농자부급 감독추출검사와 3~5 종류의 농산품과 산업품질을 추적대비 조사한다. 농업부는 중국농기계 상품품질 인증위원회와 중국 수산물 품질인증 위원회를 잇따라 조직하였고, 수약(獸藥) 인증은 협의중이다.

농작물종자 인증과 녹색식품의 인증시범지역도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료와 천연고무 제품의 인증은 이미 2000년 농업 품질인증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농업시스템의 ISO9000 국제표준 인증훈련과 시범지역도 이미 가동되었다. 수의기재, 액화질소 생물용기, 사료, 어분, 천연고무상품과 산업에 대해 생산허가증 관리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농업시스템 생산허가증 현장평가 심사팀을 만들어 1,200여

기업을 심사했다. 또 800개 생산기업에 생산허가증을 발급했다. 위조상품을 생산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부는 위조단속 사무실을 설치해 농업생산자료와 농산품 품질에 관한 위조단속과 농촌소비자의 품질제보를 책임지도록 했다. 계량관리 는 1988년 국가계량인증 농업평가심사팀의 일상 업무를 농업부가 책임진 후 농업 부는 이어 농업시스템 90여개에 대한 법집행 검사기구를 조직하여 계량인증업무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정책법규화 건설을 강화했다.

67. 농촌경제 정보체계 건설

중국의 농촌경제 정보체계는 농업 부처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농촌개혁요 구에 적응하기 위해 과거의 농업통계 정보시스템의 기초 위에 건립하기 시작한 것 이다. 현재 정보인프라 건설에서 농업부와 성급의 농업부처 대다수가 컴퓨터 네트 워크 센터를 설치하여 국제 인터넷과 연결하였으며 부(部) 네트워크 센터와 전국 각지 2,000여 개의 농업 관리부처와 생산경영 기업이 원거리 통신을 실현해 전국 농업시스템의 컴퓨터 네트워크화가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인력면에서는 전 국 농업시스템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보업무팀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정보자원 수집 개발면에서는 상하중횡으로 연관된 정보수집 경로를 형성하여 생산, 시장, 과 학기술 등 영역을 포함하는 10여개 소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보 발표와 서비스 면에서는 정보 발표제도를 만들어 규범화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회에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특히 각종 농업정보네 트워크의 개통은 정보가 사회, 기층 그리고 농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루트를 탄생시켰다.

68. 농민 수입과 소비

개혁개방 이후 농민의 수입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현재 농민 일인당 순수입은 1978년 134위안에서 1998년 2,162위안으로 늘어 연평균 14.9% 성장했다. 1978년의

고정가격으로 계산하면 농민 일인당 순수입은 1978년 134위안에서 1998년에는 610위안으로 연평균 7.9% 성장했다. 이 기간동안 1978~1984년이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시기로 농민 일인당 순수입이 연평균 16.5% 성장했으며 1985~1988년은 안정적인 성장시기로 4.9% 성장, 1989~1991년에는 하락 시기로 1.9% 성장, 1992~1998년은 다시 한번 안정적인 성장시기로 돌아서 5.2%의 성장률을 보였다. 농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농민의 소비수준도 높아졌다. 1978~1997년 농촌주민 일인당 생활소비 지출이 116위안에서 1,617위안으로 늘어 연평균 7.8% 성장했다. 1978~1984년에는 농민소비수준이 빠르게 제고되어 농민의 생활소비 지출 총액이 연평균 11.9% 늘었으며 1985~1988년 농민의 소비수준은 안정적으로 성장, 연평균 4.3% 늘었다. 1989~1991년 농민소비수준은 정체경향을 보여 0.04%, 1992~1997년에는 다시 안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서 6.1% 성장했다.

69. 농업보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민보험회사는 당중앙, 국무원의 ‘농촌보험사업을 적극 발전시키자’라는 지시에 따라 각종 농촌 보험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현재 보험은 이미 기본적으로 농촌 사회경제와 농민생활 각 방면에 필요한 보험, 예를 들어 향진기업 재산보험, 농민가정 재산보험, 농민 가옥보험, 농기계 보험, 농업용 트랙터 보험, 농업용 변압기 보험, 농촌 전력보험, 농촌 펌프우물보험, 농촌종합보험, 어선 보험, 농민 돌발상해보험, 농민 의료보험과 농민 양로보험 등이 생겼으며 농촌 시장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응용에 따라 종자품질보험, 종자개발보험 등 새로운 보험종류가 탄생해 선진 농업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촉진했다.

농업보험의 높은 위험성, 높은 기술성, 비영리성 등 때문에 많은 상업보험회사는 이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인민보험회사는 1982년부터 기업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체해서 혹은 지방정부나 관련 부처와의 연합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식량작물, 경제작물, 기타작물, 삼림, 농작물화재, 대가축, 소가축, 가금, 수산양식과 기타 보험 등 부류별로 그리고 밀수확기 화재보험, 삼림재배보험, 밀재

배보험, 벼재배보험, 면화재배보험, 잎담배재배보험, 과일재배보험, 채소재배보험, 경작소보험, 돼지보험, 닭보험 등 종류별로 경종업 보험과 양식업 보험을 시험 실시하였고, 보험배상을 통해 국가구제자금의 부족분을 해결하여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1982년 농업보험업무를 회복하고 16년간 중국인민보험회사는 각종 농업재해로 53억 위안을 배상하여 피해지역 농민들이 생산을 회복과 삶의 터를 재건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국가의 구제자금 부족을 해결하여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안정에 상당한 공헌을 하여 농업보험은 농민치부의 보호신이 되었다.

70. 농촌 기초위생보건

1980년대 위생부는 일부지역에 기초위생보건 시범업무를 실시하였고, 1990년 위생부, 국가계획위원회, 농업부, 국가환경보호국, 전국위생애호위원회가 연합하여 ‘중국농촌에 2000년에는 누구나 위생보건을 누릴 수 있도록 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2가지 3단계 전략을 확정했다. 1998년 말까지 전국에는 75% 이상의 농업 현이 이 계획목표를 달했거나 기본적으로 도달했고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랴오닝(了寧),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충칭(重慶) 등 성, 직할시에서는 이미 현을 기준으로 계획목표를 실현했다.

1998년 말 전국 농촌에는 이미 2,037개의 현급 병원, 방역소 1,695개, 향진 위생원 5만 71개가 있으며 89.51%의 행정촌에 위생실이 설치되어 있다. 현급 의료 예방보건 기구를 기술지도 중심으로 하고 향진 위생원을 연계고리로 하며 촌 위생실을 기초로 한 3급망이 이미 농촌에 있다. 전국 23% 정도의 행정촌이 다시 합작의료를 실시해 상하이, 쑤난(蘇南) 등 경제 발달지역의 합작의료율이 80%를 넘는다. 1998년 말까지 전국에는 99만명의 향촌의사, 34만명의 위생원, 평균 모든 행정촌에 향촌의사와 위생원 1.8명이 있다. 그 중 80%정도의 향촌 의사가 정규과정의 전문화된 중

등 의료교육이나 훈련을 거쳤다. 1997년 전국 농촌의 영아 사망률이 3.468%로 줄었고 임산부 사망률도 10만명당 80.4명으로 감소했으며 농촌평균수명도 69세에 달하고 법정 전염병 발병률도 1980년의 10만명당 2,076명에서 1997년 10만명당 199.29으로 감소, '4대백신' 접종률이 향을 기준으로 85% 이상 달한다.

71. 농업의 외자 이용

20년간 중국 농업이 급속도로 대외개방되어 세계 140여개 국가와 농업과학기술 교류와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10여개 국가와 농업 연합위원회나 업무팀을 구성하였다. 동시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국제농업 발전기금회, 국제농업연구협상팀 등 주요 국제금융 농업기구들과 경제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초통계에 따르면 개혁개방에서 1997년 말까지 중국농업의 외자 이용 항목 7,300개, 계약금액이 140억 달러이며 그 중 국외대출(우대대출 포함) 항목이 150개, 계약금액이 64억 5천만 달러로 농업의 외자이용 계약금액의 45%를 차지한다. 외국기업 직접투자 항목은 6,749개, 계약 금액은 65억 4천만 달러로 45%를 차지한다. 국회원조항목은 407개, 계약외자금액은 10억 달러로 7.5%를 차지한다. 100여개 국가와 여러 형식의 농업과학기술교류 및 협력관계를 맺었다. 대량의 선진과학기술 성과 및 식량, 면화, 기름, 과일, 채소, 목초, 수산물, 축산종자 등 십여만개 품종자원을 도입했으며 그 중 10억 위안 이상의 기술성과를 낸 항목이 수십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농업 과학교육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세계 각 국에 파견한 방문학자와 유학생이 6,000여명에 달하고 연수생이 8,000여명이며 1만여명의 전문가를 초청했다. 외자와 선진기술설비를 농업과학연구원,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했다.

72. 농업법제 건설

농촌개혁의 심화와 국가법제의 추진과 함께 농업법제건설도 단순히 중요시되던 수준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입법과 집행을 병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농업법제 건

설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0년간 전인대와 상무위원회는 농업과 농촌경제에 관한 13건의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원은 40여 건의 농업행정법규를 반포하였으며 국무원 농업 행정부처는 450여 건의 규정과 기타 규범성 문건을 반포했다. 지방도 대량의 지방성법규와 정부규정을 제정해 농업 법률체계가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동시에 농업행정 법 집행 업무체계 건설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들어 농업행정 법 집행 업무가 강화되면서 법 집행 주체에 대한 정리를 통해 농업행정 법 집행 주체가 점차 규범화되었다. 처벌절차 등을 개선하여 농업행정 법 집행 행위가 규범화되었다. 자격증 제도를 통해 법 집행 관리수준이 높아졌다. 법 집행 체제의 개혁을 통해 법 집행 종합시범지역을 설정하여 농업행정 법 집행팀이 더욱 완비되고 규모를 갖추어나갔다. ‘1·5’, ‘2·5’와 지금 진행중인 ‘3·5’ 표준법률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법률의식이 뚜렷이 제고되었으며 농업간부의 법제관념도 높아지고 있다.

73. 농촌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농촌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은 당의 농촌업무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등소평 이론을 지도방침으로 하고,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며 중앙의 농업과 농촌업무 그리고 정신문명 건설에 관한 일련의 지시에 따라 ‘사유’(四有) 신형 농민 배출을 목표로 건설과 실천을 통해 농민의 사상도덕과 과학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농촌현대화 건설에 있어 사상적, 정신적인 지주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농민에게 등소평 이론, 당의 농촌에 대한 기본노선과 기본정책,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새로운 시기의 창업정신, 유물론과 무신론의 기본상식과 기타 과학지식의 홍보교육을 한다. 두 번째는 농민의 도덕규범 건설을 강화하고 법제교육과 결합하여 농촌에 새로운 기풍을 마련한다. 세 번째는 농촌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적극추진하고 각종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체육 활동을 벌이고 농촌문화의 시장관리를 강화한다. 네 번째는 각종 농촌 교육을 발전시키고 농민 자질을 향상시키며 과학교육을 통한 농업 부흥방침을 실현한다. 다섯째 문명 가정, 문명 촌, 문명 소성진, 문명 향진기업, 문명 농촌시장, 문화 과학기술위생 등 대중적인 정신문명 건설활동을 벌인다.

74. 농촌 기층조직 건설

당의 11기 3중 전회 이후 당의 농촌 기층조직 건설이 당의 정리와 당 지부를 핵심으로 하는 촌급 조직 건설, 3단계 정리와 건설을 거쳤다. 당의 12기 2중전 회의에서 나온 당 정리에 관한 결정은 마비상태에 빠져 전투력을 상실한 당의 기층조직에 칼을 댄 것이다. 당의 13기 4중전회는 당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1990년 중공중앙은 중조부(中組部) 등 관련부처의 ‘전국촌급조직건설업무좌담회요록’에서 각 지역에서 문건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기층조직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농촌기층조직건설이 건강한 발전을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당의 14기 4중전회는 농촌 기층조직 건설이 전면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전회에서는 ‘당건설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중공중앙이 곧이어 전국농촌기층조직건설 업무회의를 열어 ‘농촌기층조직건설에 관한 중공중앙의 통지’를 발표하여 농촌 기층조직의 정돈과 건설 업무를 추진하였고, 농촌기층조직건설의 지도사상과 업무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농촌 기층조직 건설 ‘5개호’의 목표를 제기했다. 1997년 중앙은 또 향진 당위원회 ‘6개호’ 목표를 제기하여 비교적 완벽한 농촌 기층조직 건설의 목표체계를 확립했다. 몇 년 동안 각 지역은 중앙의 통일배치를 받아 220여 만 명의 기관간부들을 농촌으로 보내 정돈작업을 도왔으며 1998년말까지 마비상태와 후진 빈곤상태에 빠진 촌 당지부 29만 1천개를 정리하였으며 이는 농촌 당지부의 38.6%에 달한다. 3만8천개의 향진 당위원회를 정리하고 그중 8,000여개가 정리 후 향진 당위원회로 포함되었다. 나약하고 마비상태에 빠졌던 촌 당지부가 효과적으로 정리되었고 농촌기층조직건설도 강화되어 농촌개혁을 발전 진보시켰다. 당의 15기 3중전회가 농촌 기층조직 건설과 간부팀 건설에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 각급 당조직이 농촌기층조직건설을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고 견실하게 추진하며 중국농촌의 21세기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5. 촌민자치 실시, 기층민주 확대

1982년 ‘헌법’에서 촌민위원회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1988년 시행한

‘촌민위원회조직법’(시범실시)은 촌 위원회의 탄생 구성 그리고 운영방식을 규범화 시켰다. 1998년 수정된 ‘촌민위원회조직법’은 선거, 공무 논의, 감독 3가지 측면에서 시범실시법을 더욱 보완했으며 26개성, 자치구, 직할시가 잇따라 행정구역의 촌민 위원회조직법 실시방법을 제정했다. 법률법규의 보장을 받아 민주선거, 민주정책결정, 민주관리 그리고 민주감독을 핵심으로 한 촌민자치제도가 기초적으로 확립되었다. 1998년까지 전국 83만2천여개 촌민위원회가 3~4차례 선거를 실시했으며 ‘해선’(海選), ‘예선’, ‘경선’, 비밀투표, 무기명투표, 공개개표 등 규범화된 절차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60%의 촌민위원회가 촌민대표회의 제도와 촌업무 공개제도를 만들어 현향(縣鄉) 정무의 공개했다.

자료: 『中國農業年鑒』, 1999, 中國農業出版社.

제 4 장

농업 및 농촌경제 정책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새로운 세기와 더불어 새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이루어지고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시점이다.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완벽한 형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공업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또 국제분업에 대한 참여도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을 국민경제의 근간으로 삼고 ‘농촌’을 내수를 늘리는 데 있어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간주하며 또 ‘농민’을 시장경제체제의 주체로 삼는다면, 틀림없이 21세기 초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해 커다란 시장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농촌의 개혁과 발전상은 농촌의 상황이 크게 개선된 이유가 바로 당의 농촌정책 방향이 옳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농촌의 개혁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했고, 기존의 농촌정책도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이러한 농촌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당의 기존 농촌정책에 따라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그들이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나가야 한다.

1. ‘10차 5개년계획’ 기간의 농업·농촌경제 정책목표

1.1. 기본목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경제의 발전단계가 다르면 농업 및 농촌경제 정책의 목표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선진국들의 농업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3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농업구조를 조정하는 단계이며, 셋째는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중국의 농업과 농촌경제는 지난 20년 동안의 개혁과 발전을 거치면서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는 농업의 종합적 생산능력이 끊임없이 증대됨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공급은 과거 장기적인 부족현상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때로는 풍년을 이루기도 함으로써 농업·농촌경제를 발전시키려는 1단계의 목표는 거의 달성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란 공급을 더욱 늘려 국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농촌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사에 따른 이익을 제고시킴으로서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증대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농산물의 시장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켜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급의 목적과 수입의 목적은 구조조정의 명제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10차 5개년 계획’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과 농촌경제정책은 ‘생산구조의 조정’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거나 ‘공급을 안정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공허한 주장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다.

‘구조조정’은 외국, 특히 서구의 경제학개념 속에서는 결코 단순히 생산구조나 산업구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종합적이고도 풍부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다. 즉 이것은 제품의 생산구조나 산업구조 또는 취업구조 등을 포함될 뿐 아니라 규모나 조직, 시장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유형의 수치나 비율 그리고 상호관계와 함께 무형의 기술적 진보, 집약적 경영 및 효율성의 제고 정도도 포괄하는 개념이고 당연히 수치에 대한 예측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이해를 바

탕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면 여기에 담긴 함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며 좀 더 확실하게 국제적 통념과 접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생태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파괴되어, 전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농업의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농업발전정책의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생태환경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농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생태환경의 보호문제를 농업정책목표의 범주에 넣고 관련회의를 개최할 때도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1.2. 농촌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농업구조와 농촌경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곱 가지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2.1.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적절히 조절

농산물의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 아래 다생산, 고품질, 고효율의 생산력을 지향하는 농업발전의 기본요구사항에 따라 시장수요를 감안해 판매수요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식량증산을 피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생산력을 보호하고, 또 안정적으로 제고시켜나가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아 수요에 맞춰 식량의 연간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한다. 현재와 이 다음 단계 기간 동안 생태환경 보호와 관련한 건설 역량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증가시켜 농경지를 일정부분 임야나 초지로 전환시키고, 또한 도시근교 소재 농장이나 국영농장 그리고 군부대 직영농장들이 식량을 주문 생산하는 임무와 그 생산량을 계획성 있게 조절해나가야 한다.

1.2.2. 농산물 품질의 향상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일을 농산물의 공급상황을 개선해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와 수단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북지역의 봄밀과 남방지역의 올메벼 그리고 가공전용 소맥(밀)을 수입분으로 대체하는 등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1998년 중국의 올메벼 가운데 상등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인데, 2005년경에 이르면 약 60%까지 증가하고 총재배면적은 약 600만ha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의 가공용 밀의 품종은 1백여 종이나 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수십 종에 불과하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 ‘제10차 5개년’ 기간 동안 黃淮(황하와 회하 유역)와 華北(화산 이북) 동부지역의 빵 제조 전용 밀과 江淮(양자강과 회화 유역)지역의 비스켓 및 케이크 제조 전용 밀, 그리고 화북지역의 단단한 알갱이의 소맥과 맥주보리 등의 생산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 맥류제품 전용 생산기지를 조성해 2005년경까지 가공전용 밀의 생산량이 100억kg(1,000만 톤)에 달하도록 해 가공전용 밀의 자급률이 70%선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1.2.3.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목축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외국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목축업의 발달 여부는 한 나라의 농업현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목축업은 위로는 재배업(농업) 그리고 아래로는 가공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와 농업 및 농촌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문제, 그리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목축업 분야도 현재 구조조정과 품질제고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농업과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산물 가운데 일부 품종, 즉 우유나 양모의 생산량은 아직 국내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동물성제품의 소비수요

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목축업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4.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개발의 추진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은 국가의 전체 과학기술 개발체계를 지탱하는 주요요소로 농업개발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과학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을 진흥시키려는 전략적 측면이나 새로운 농업 과학기술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다음 3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농업과학기술이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농업기술분야의 연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과거 농업기술 관련 연구기관이 너무 많고,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연구역량이 분산돼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농업기술의 보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 등을 철저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둘째,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및 그것을 이용한 산업화 정도를 촉진하고 전통농업의 개선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셋째, 시장의 요구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체계를 최대한 빨리 구축해 농업생산에 있어서 좀더 많은 과학기술을 사용 또는 응용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1.2.5. 농업의 지역적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절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상시적인 식량부족 현상과 계획경제 체제의 속박 그리고 제한된 토지에서의 소규모 경영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각 지역별 농업구조는 구조의 동일성 내지는 획일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만약 이러한 농업구조와 관련정책을 고수한다면 각 지역의 비교우위적 특성을 발휘해나갈 수가 없다. 이것은 또 현재 중국의 농산물이 농가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잉생산 현상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농업의 지역적 배치를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각 지역이 자신들의 지역발전에 유리한 산업공간을 서

로 교환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농업 발전단계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하고 농업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정책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중시하고 또 현실에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행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1.2.6. 농업분야의 잉여노동력을 전환배치

이것은 농촌경제, 더 나아가 전체 국민경제 발전의 총체적이고도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 대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국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비교적 낮은 수준(800 달러 전후)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대다수 공산품들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농민들의 수가 너무 많아 농업분야에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고, 농촌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자급 혹은 반자급의 자연경제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 속도가 매우 느리고 농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또 이로 말미암아 전체 사회의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많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무엇보다 도시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내상황에서 보면 도시화 속도의 가속화란 대도시는 더 이상의 확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중도시는 적절한 속도로 발전시키며 소도시나 소성진은 보다 빠른 속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소도시나 소성진을 발전시키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발전전략으로 중국적인 특색을 가미한 도시화정책이다. 소도시나 소성진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경제발전의 실제적 필요와 객관적인 조건을 전제로 과학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기존의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개조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집진(集鎮, 비농업 인구를 위주로 하는 ‘城市’ 보다는 작은 규모의 거주 구역)을 건설한 다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곳은 점차적으로 중소도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소도시나 소성진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관리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운용하도록 해 여타 대도시 및 중도시와는 다른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1.2.7. 생태환경 보호와 관련 건설역량 강화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건설은 당면한 농산물 수급상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농산물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강화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건설은 농업구조조정 방면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건설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임무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생태환경은 이미 매우 심각한 정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척 많다. 따라서 이 일은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바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환경파괴행위를 중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건설에 좀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농촌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이상의 7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조정과 체제개혁 등의 방면에 있어서 과거 농산물의 공급문제(역주 : 주로 공급부족을 가리킴)만을 해결해야 했던 단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요구사항들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1.3. 정책개혁의 핵심은 ‘하나의 기초와 세 개의 체계’라는 기본틀을 확립하는 것

전체적으로 말해, 농업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단계에서 국가는 농촌에 대해서 과거의 미시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던 것에서 벗어나 거시적으로 총생산량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야 하며, 일방적으로 공급 상황만을 관장하던 것에서 탈피해, 공급과 수요를 함께 아우르는 관리체제로 점차 바뀌어나가야 한다. 또 이와 상응하여 농촌경제 체제는 반드시 기존의 생산방법을 개혁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용해나가야 한다.

지난 20년간 농촌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얻은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농업의 발전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당의 제15기 3중전회는 처음으로 중국 농촌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려는 목표모델이자 기본틀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세 개의 체계’를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즉 ‘가정승포제를 도입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농업의 대사회적 서비스체계와 농산물 시장체계 그리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지 및 보호 체계를 발판으로 삼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요구하는 농촌경제 체제를 적절하게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것이 앞으로 농촌경제 체제개혁의 ‘총강령’이자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촌경제의 개혁에 있어서 연구·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중국의 개혁은 농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으며, 농업은 가장 먼저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킨 분야다. 농산물 가운데 정부의 계획통제를 받는 품종이 그리 많지 않고 설령 계획통제를 받는 품종이라 할지라도 이미 과거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모의시장’을 통해서도 시장의 교환관계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기본적인 권익도 보호하고 있다.

또 농촌경제가 도시지역의 공업경제와 비교해 가장 다른 차이점이자 최대이점은 바로 그것이 경제적 이성을 지닌 양대 미시적 주체, 즉 농가와 향진기업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촌경제의 개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전체 경제분야의 개혁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계속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여 농촌경제체제의 개혁 또한 마땅히 제한적이거나 마술선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하나의 기조와 세 개의 체계’라는 농촌경제체제 개혁의 기본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2. ‘가정승포경영제’(농가생산책임제)의 정착

‘가정승포경영제’의 확립은 지난 20년간의 농촌개혁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것은 그동안 농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질적인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가능케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농촌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가장 효과가 큰 기본정책이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당의 농촌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정승포경영제’를 근간으로 하여, 때로는 통합적으로 때로는 분리적으로 운영되는 ‘이중경영체제’라는 기본정책이었다. 농촌안정정책의 기본핵심은 ‘가정승포경영제’를 근간으로 ‘이중경영체제’가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되고, 토지의 청부 관계가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정책 안배상 ‘소유권을 명확히 해 청부권을 안정시키고 경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신사고에 따라, 농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보장된 토지사용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농민들의 시장주체적 지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토지권을 법에 의거해 이전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촌의 도시화, 공업화 및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1. ‘가정승포경영제’의 이론 및 실천 근거의 확립

당의 ‘제15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나온 ‘농업 및 농촌 공작과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은 지난 20년간의 농촌개혁 추진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정승포경영제’의 시행은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에 요구되는 규율에 적응하려는 목적에 부합될 뿐 아니라 농업생산 자체의 특성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수공노동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방식뿐만 아니라 선진과학기술과 생산수단을 이용한 현대적 농업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폭넓은 적응력과 왕성한 생명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승포경영제를 토대로 한 통합과 분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이중경영체제를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토지 청부 관계의 안정에 달려있다. 토지 청부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킴과 동시에 농촌의 토지 청부 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관련 법규를 시급히 제정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보장된 토지사용권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이는 바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가정승포경영제를 토대로 한 이중경영체제와 농촌의 토지 청부 관계 이 두 가지가 ‘오랜 기간 동안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기본근거를 확실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 이래,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중대개혁을 단행했었다.

첫째는 해방초기 당시 1년 여 동안 유지되던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를 토지사유제로 바꾼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너무 조급하게 토지사유제를 농민사유와 집체에 의한 통일적 경영 및 사용의 토지제도(초기형태의 농업생산합작사)로 개혁한 것이다. 셋째는 현실에 맞지 않게 농민사유와 집체적 통일경영 및 사용의 토지제도를 또 다시 집체 소유와 통일경영 및 사용의 토지제도(본격적 형태의 농업생산합작사와 인민공사)로 개혁했던 것이다. 이러한 토지제도는 약 25년 동안 지속되었었다. 넷째로는 집체 소유와 통일경영 및 사용의 토지제도를 집체 소유와 가정승포경영의 토지제도로 바꾼 것을 들 수 있다.

네 차례에 걸친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집체 소유 토지의 생산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적응해야 한다. 둘째, 현대적인 생산력 조건 하에서는 반드시 토지의 소유권, 경영권, 사용권, 처치권 등을 합리적으로 분리해내야 한다. 셋째, 토지의 경영관리 체제는 반드시 농업의 자연 재생산 능력과 경제재생산 능력이 교차하는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넷째, 토지의 경영규모는 필히 농업생산력의 수준과 국내사정 그리고 농민들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우리들은 마침내 중국 실정에 적합하고 또 현실성 있는 생산력 발전을 추진해나가는데 유리한 농촌 토지제도, 즉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고 가정승포경영을 토대로 한 통합과 분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이중경영체제를 찾아냈다. 지난 20년의 개혁과정은 가정승포경영제도가 반드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다.

2.2. 가정승포경영제도 정착 과정에서 당면한 주요 문제점

2.2.1. 사상이나 인식의 부족

이는 다음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집체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어떤 사람들은 청부지를 회수해 예비용 토지를 많이 남겨둠으로써 청부 가격(토지를 청부받아 경영하는데 대해 반대급부로 내는 사용료)을 올리는 것이 바로 집체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승포경영제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른바 집체에 의한 통일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또 집체 경제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가정승포경영제와 집체 통일경영제를 따로 분리해 대립시키면서 집체에 의한 통일경영만이 집체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꼴이 된다.

둘째, 토지의 규모화경영을 발전시켜나가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일부의 사람들은 토지의 청부관계를 안정시켜나가는 것과 토지의 적정 규모화경영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서로 모순되고 상호 대립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오해임이 분명하다. 토지의 적정 규모화경영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일종의 상대적이고 동태적인 개념이다. 토지를 적정 규모로 경영하는 일에는 매우 긴 과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적정 규모화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가정경영(소규모경영)은 여전히 농업생산의 주류적 경영형태이다.

이러한 인식이 생겨난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일부 사람들이 시종 가정승포경영제는 결국 ‘집체에 의해 결성된 생산조합’이 아닌 아주 낙후된 생산방식으로 집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불리하며 따라서 일종의 임시 방편책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2.2.2. 토지생산권의 소유주체가 불분명하고 생산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중국 농촌의 토지소유권은 농민들의 집체 소유로 환원되었다. 이는 ‘헌법’을 비롯한 ‘민법총칙’, ‘토지관리법’, ‘농업법’ 등 주요 관련 법률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집체’가 대체 어떤 계급의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심지어 각종 법률마다 다르기까지 하다. 집체 토지생산권은

주체가 불분명한 점 이외에도, 생산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집체는 토지소유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집체소유토지에 대한 수용을 들 수가 있다.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집체 소유토지의 양도는 우선 국가가 법에 따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약간의 보상비를 지불한 다음, 다시 국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집체는 양도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집체로 돌아가야 할 양도에 따른 거액의 대가도 국고로 유입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2.2.3.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음.

농촌개혁 이래, 정부는 줄곧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충실하게 하고 또 강화하는 방법을 탐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의 청부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사지를 사람이 바깥에 따라 빈번하게 토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토지 청부경영권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토지의 청부기간을 30년 더 연장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사용권에 대해 안전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주요원인이다.

농민들의 토지청부경영권이 불안정한 이유를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농민들의 토지청부경영권에 관한 내용들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제도 아래에서 농민들은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얻어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 중국의 ‘담보법’ 제36조와 제37조에는 경지를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현실 생활속에서 자신의 토지사용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정부가 농민과 집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토지의 청부경영에 관한 계약을 꼭 문서로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토지청부경영에 관한 계약을 제멋대로 해지함으로써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지역의 농민들은 토지청부경영에 따른 서면계약서나 법률적 효력을 지닌 토지사용증서를 아예 받지도 않고 있다.

2.2.4. 토지사용권의 이전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음.

토지사용권의 이전은 현재 이미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토지사용권의 이전은 아직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하며 농민들간에 청부나 양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극히 적다. 농업부의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토지를 청부받거나 양도받은 농가는 모두 316만 2천호로 전체 청부경영농가 총수의 1.6%에 불과하며, 청부되거나 양도된 토지는 모두 약 102만ha로 전국 청부경영 경지총량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 토지사용권의 이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정책규정과 법규에 의한 관리가 부족하고 또 토지사용권 본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사용권 이전 시장이 제대로 건립되지 못하고 무질서한 상태에 처해 있다.

2.2.5. 농업관련 세금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가정승포경영제도의 기본적인 분배원칙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충실히 내고, 집체 소유분은 충분히 남겨놓은 다음, 그 나머지는 모두 개인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배원칙은 농민들로 하여금 부분적이거나 잉여농산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적극적인 생산의욕을 크게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 중에 각종 이익관계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른 폐단이 날로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세금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거둬들이는 각종 준조세가 국가의 공식 세금보다 많은 점을 가리킨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실히 내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만 ‘충분하게 남겨놓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여러 방면에 걸쳐 농민들에게 큰 부담만 지우게 되는 제도적 결함을 남기는 꼴이 된다.

세금부담이 너무 크고 또 지방정부에서 거두는 각종 준조세가 정식 세금보다 많은 까닭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첫째는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민들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근본원인은 각종 세금과 집체에 내는 각종 부담금(三提五統費) 이외에도 납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각종 준조세가 국가의 정식 세금보다 많아짐으로써 국가의 거시적 조절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나아가 국가의 관리능력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각종 비용을 부과하는데 있어 자율성은 너무 큰 반면 투명성은 비교적 낮고, 또 그러한 비용의 사용처에 대해 감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각종 부패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토지관련 세금제도는 국가, 집체, 농민 삼자간의 이익분배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삼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토지관련 세금제도는 농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관련 세금제도를 제정하는 일은 농촌의 개혁과정에서 시급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2.3. 농민에게 장기적이고 보장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가정승포경영제도가 지속적으로 견고하고 온전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민들의 시장주체적 지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토지사용권을 30년간 연장하는 문제와 청부기간 내 농사짓는 사람이 바뀌는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둘째, 토지사용권을 법에 의거해 유상으로 양도하는 유통시스템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셋째, 농촌관련 세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농민과 집체 및 국가 사이의 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

2.3.1. 토지소유권의 인격화와 완전성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

농촌의 집체적 토지생산권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은 바로 법률적 형식으로 ‘누가’ 진정한 토지 소유권자인지를 확정짓는 일이고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이며, 또 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일선 현장의 집체 조직을 토지의 집체 생산권의 주체로 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농민이 토지를 청부할 때 조직과 조직 사이의 관계는 매우 명확했으며, 이는 집체와 농민이 필요에 따라 토지의 처리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촌민들의 소조직(원래의 생산대)을 집체적 토지생산권의 주체로 삼는 것이 비교적 현실적이고 타당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토지관리 관련기관은 법에 의거해 집체 토지소유권을 모두 등록한 후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토지소유 증서는 토지소유의 유일한 법률적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집체 토지소유권에 대해 확인한 후에는 서로 다른 소유권 주체간의 생산권 관계를 제멋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집체 소유의 토지생산권의 주체를 확인한 후에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권을 인격화시키는 일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 집체 토지소유권 및 생산권 제도에는 한가지 현저한 결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집체 소유재산은 인격화된 생산권주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민은 명의상 집체 소유재산의 당연한 소유자이긴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집체 소유재산 가운데 자신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또 소재 지역의 마을(집체)에서 호적을 옮길 때에도 한푼의 재산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농민들에게 있어 집체 소유토지에 대한 향유권을 누리는 일은 당연하고도 천부적인 것이며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제도는 농민으로 하여금 집체 소유재산 가치의 보존과 증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이 독립적인 토지승포 경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집체 소유의 구체적인 인격화의 표현이다.

2.3.2. 농민들에게 독립적이고 완전한 토지사용권을 부여

농민의 토지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청부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권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나가야 한다. 지나간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이 불완전하고 또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부기간을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별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다. 농민의 토지사용권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8가지 항목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배타적 점유권

농민은 규정된 청부기간 동안은 토지의 사용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나. 개발권

농민은 청부기간 동안 토지를 개량시켜 토지의 생산가치를 높일 권리는 있지만 토지를 제멋대로 비농업 용지로 전환시킬 권한은 없다.

다. 수익권

농민은 반드시 토지생산품이 판매되는 과정을 통해 적절한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또 농민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된 이후 자본과 노동의 투자로 인해 늘어난 토지의 개량 가치는 일정부분 얻어낼 수 있다.

라. 양도권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또 토지사용권의 이전 시장 건설 및 상품화를 통해 토지 이전의 내재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마. 임대권

바. 주식매입권

농민은 토지사용권을 이용해 연합기업 등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사. 저당권

농민은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해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 승계권

농민의 토지사용권은 승계될 수 있다. 중국 농민들의 토지경영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의 계승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조건이 성숙될 경우, 1세대에 한해 계승권을 인정해주는 체제로 점차 바뀌어나가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할 점은 바로 저당권 문제이다. 농민에게 완전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혁은 농민이 농지사용권을 담보로 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다. 농지사용권을 담보로 한 농지관련 금융제도를 건립해나가는 것은 실행할 만한 일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은 우선 일부지역을 선택해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다.

2.3.3. 30년간의 청부경영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토지사용권 조정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나가야 함.

토지의 청부경영 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획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는 대다수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부경영 기간 동안 토지를 운용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토지의 청부경영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토지의 청부관계를 어떻게 안정시킬 될 것이며, 어떻게 안정될 것인지가 하나의 커다란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시각들은 일치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상황과 모순이 많이 있으나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한 가지는 30년 청부 기간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든지 토지를 모두 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사람을 늘리되 땅은 늘리지 않으며, 사람을 줄이되 땅은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엄격히 실행한다. 물론 자신이 원해서 토지를 내놓으면 제출한 토지는 토지가 없는 인구에게 순서대로 분배된다.

다른 한가지 방안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사람을 늘리되 땅은 늘리지 않으며, 사람을 줄이되 땅은 줄이지 않는다’를 실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상황에서는 사람과 땅의 모순의 출현이 상당히 첨예할 것이다. 다음 몇 개의 엄격한 제한적인 조건과 단계가 만족할 만한 상황하에서 적당한 조정을 실행한다. 첫째, 조정 기한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조정범위는 토지사용권의 이전 및 변동이 잦은 농민들 사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셋째, 촌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넷째, 해당 향·진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상급기관인 현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여섯째, 향·진 인민정부나 현 인민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4. 토지사용권의 이전체계를 확립

토지사용권이 이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자발적이고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관련정책을 제정해 다른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농민들이 토지를 버리고 소성진이나 소도시 지역으로 이주해 토지의 청부경영권을 다른 농민에게 양도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기회가 있으나 농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농사를 정성껏 짓지도 않음으로써 지력이 약화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집체에서 청부 토지를 회수해야 한다.

둘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토지의 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가정농장’이나 전문 농업조직 등을 통해 토지의 ‘적정규모경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4황’(불량경지)에 대한 개발은 비교적 큰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도급, 위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공개입찰을 시행하려는 지방은 관련 상급단체의 허가를 얻어 입찰관리회사를 만들거나 국가의 상관 법규나 정책에 의거해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입찰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셋째,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에 맞춰 토지 이전을 법제화하고, 은행 등 상관 업무부서의 지도하에 토지은행을 건립하거나 토지관련 신용제도를 만들어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과 관련한 저당권 설정이나 투자경영 업무를 맡도록 할 수 있다. 농민

들은 토지사용권을, 집체는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해 투자개발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얻어낼 수 있다.

넷째, 토지사용권의 등록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토지사용권의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토지는 일종의 특수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토지의 이전은 반드시 관련 법규나 정책 측면에서 거시적인 관리를 진행해나가야 한다. 거시적인 관리의 내용에는 주로 토지정책과 토지 관련법규의 제정, 집행 및 감독, 소유증명서나 사용증명서의 확인 및 변경, 소유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범위내의 권익 보호 및 토지 관련 분류의 화해 및 중재, 토지 개발계획과 자원보호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감독, 토지의 유통관리, 토지가격의 결정 및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와 조절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완벽한 토지유통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들로 국가는 하루 빨리 관련 정책이나 법규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유통에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2.3.5. 농촌과 관련한 세금제도를 개혁

농촌과 관련한 세금제도의 개혁은 국가, 집체, 농민 삼자간의 이익분배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또 토지의 정부 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농민의 토지승포권과 생산자주권 그리고 경영수익권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촌관련 세금제도의 개혁을 추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승포경영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향·진 인민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특별세나 농촌지역 교육을 위한 공동자금의 각출을 비롯한 농민들로부터만 징수하는 각종 행정사업성 조세나 정부의 기금 및 공동출자금 등 준조세를 전면 취소하는 반면 농업세의 실질 부담률을 적절하게 늘려나가면서 농업특별세, 도살세, 의무노동자 및 숙련노동자 관련 정책, 그리고 촌에서 거두는 준조세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정해나가야 한다.

3. 농산물 시장시스템의 확립

시장은 농민들이 상품생산을 발전시켜나가는 전제조건으로 농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달한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산물 시장시스템의 확립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임과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업과 농촌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해나가고 농업 및 농촌 경제의 구조를 조정하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수급상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이 일원화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시장시스템을 하루 빨리 확립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농업자원의 분배과정에서 시장시스템이 기본적인 조절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3.1. 농산물시장의 성장역량의 강화

현재 중국 농산물시장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농업발전 과정상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분포돼있지 않아 전국을 무대로 한 시장 네트워크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농산물시장의 기반시설 건설이 부족해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장과 관련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거래질서가 매우 혼란스럽고, 일부 지역에서 타지역 생산물에 대해 진입을 금지시키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네트워크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조절 체계도 좀더 개선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농산물의 판매부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장시스템의 미비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 발전을 좀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산물 시장시스템의 성장역량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3.2. 농산물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 개혁의 심화

국가의 농산물 구입 및 판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농산물시장시스템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물, 특히 주요 농산물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 된다.

중국은 지난 20년간의 개혁을 거치면서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경영과 가격을 개방하였으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수매하는 농산물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면화이며, 이외에 소량의 공업 원료도 포함된다. 이러한 농산물들의 서로 다른 특징과 수급상황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방식과 속도로 개혁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물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향은 이미 개방한 신선품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조직화와 법규화 정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유통효율을 향상시켜 나감과 동시에 시장의 경쟁성과 체계성을 유지시켜나가야 한다. 또 식량과 면화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거시적 통제나 조절하에서 시장수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시장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다원적 경제주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며 적절한 규모의 시장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3.2.1. 식량 구입 및 판매 시스템 개혁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 정책과 한 가지 개혁’이라는 전략목표를 반드시 견지해나가야 한다. 이 기간의 전반기에는 첫째, 농민들의 잉여생산물에 대해 보호가격으로 수매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장기적 정책으로 삼아 시행되어야 하지만 보호가격과 정상 수매가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식량이 공급초과 현상을 나타내고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농민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보호책이다. 따라서 보호가격은 그 해의 수급상황과 생산원가 등을 감안하여 적당하게 조절해나가야 하며, 또 가격이 급등하

거나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의 종류와 품질에 따른 가격차를 보다 확대해나가야 한다.

둘째, 경영주체들은 국유식량기업을 주요 판매루트로 삼아 농업산업화경영의 선두기업이나 사료가공회사들이 자가소비 식량을 직접 구입하는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보호가격에 의한 수매대상이 아닌 곡물에 대해서는 국유식량기업이 수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분야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식량안정기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성 정부가 분담하거나 또는 중앙정부와 성 정부에서 주로 조달을 책임지고 현 이하에서는 일정 부분만을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격인하 정책만으로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손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국유식량기업에 대한 개혁속도를 강화해 잉여인력을 전환, 배치시킴으로써 판매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나가야 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중·후반기에는 식량의 유통체계를 완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다.

첫째, 옥수수는 보호가격에 의한 수매 대상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국유식량기업의 수매대상에서도 제외시키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경영주체들은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둘째, 인도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참고해 국가는 모든 상품식량에 대해 보호가격에 의한 정부수매를 약속하지 않은 채 매년 정부에서 수매할 수량(인도정부는 매년 약 2,000만 톤의 곡물을 수매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30

만톤의 쌀을 수매하고 있음)과 가격을 사전에 공포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자극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정부수매가 꼭 필요할 경우에 국가는 사전에 계획된 수량과 가격에 따라 수매하고 만약 시장가격이 보호가격보다 높아졌을 때는 수매를 중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수매해야 한다.

셋째,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통해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국가의 식량 저장량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국유식량기업, 농업산업화경영의 선두기업 및 사료가공회사 이외의 기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곡물사용 기업이나 판매조직들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장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적절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독립적이면서도 상하 수직적인 식량 저장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국유식량저장고의 개조 및 건설 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국유식량기업은 정경분리와 재정부담의 완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는 이미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식량 경영 및 조절 체계를 갖추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다른 조건들이 좀더 갖춰질 경우, 국가는 ‘식량전용저장고만을 관리’하는 개혁적 사고, 즉 국가는 식량전용창고에 저장된 식량 부문에 대한 수매, 저장 및 반입, 반출 등을 책임지고 정책적 경영이나 조절 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식량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수량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국가는 식량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는 셈이 된다.

3.2.2. 면화 및 기타 공업용원료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의 개혁

최근 2년 동안 면화시장은 판매부진과 재고증가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1999년의 ‘면화의 해’부터는 면화의 저장 및 수출입 상황 그리고 품질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판매가격을 개방하고 유통경로를 확대시켜나감으로써 주로 시장시스템에 따라 면화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실현되는 신체제를 점차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한다.

잎담배, 누에고치, 양모 등 공업용 원료들도 유통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해나감으로써 농산물시장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면화 등 공업용원료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도매시장, 경매시장 등 시장시스템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지역과 판매지역간의 안정된 판매관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3.3. 농산물시장 건설과 관리 강화

농산물시장은 발전의 선후순서와 그 기능에 따라 대략 세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는 비교적 원시적 형태의 상설거래시장이고, 두 번째는 비교적 발전된 형태의 현물도매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발전된 형태인 선물거래시장, 즉 농산물에 대한 선물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외국의 상황을 통해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현재 농산물의 유통 및 거래의 주요 교역장소는 여전히 현물도매시장이다. 비록 선진국의 도매시장이 현재 직판체제나 슈퍼마켓, 그리고 택배 등 현대적 유통방식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긴 하지만 현물도매시장은 여전히 대체될 수 없는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현재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채소와 과일의 양이 전체의 84.4%와 7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엔 1980년대 중반에는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채소와 과일의 양이 전체의 82.9%에 이르렀다가, 1990년대 들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20~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엔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채소와 과일의 양이 전체의 45%, 프랑스 파리는 20% 그리고 미국 뉴욕은 10% 가량에 이른다.

중국의 국내사정을 돌아보면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농산물의 시장시스템을 확립해나는데 있어 농산물 도매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시장의 계획, 건설, 관리 등의 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살피나가야 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분포시키려면 우선 계획을 잘 짜야 한다. 현재 중국은 이미 적지 않은 수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분포돼 있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배치 및 건립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설과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은 생산지 도매시장을 잘 건설해야 한다. 생산지 도매시장은 상품용 농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에 건설해야 하는데, 주로 교통의 편리성과 원래의 농산물 집산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판매지 도매시장은 보통 도시지역에 건립하게 되며 도시계획안을 마련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완벽한 기반시설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조건이며 현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의 취약한 부문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저장창고, 시장정보 및 품질검사방법 등도 잘 갖추어나가야 한다. 시장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감독 및 관리와 시장의 자율적인 감독 및 관리 등이 포함되는데, 반드시 시장경영자와 상품경영자 그리고 시장관리자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또 시장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 정비함으로써 시장을 관리하는데 대해 법률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자율적인 관리라도 필요한 법규나 제도는 제정, 정비해야 한다. 정부에 의한 행정적인 관리나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를 막론하고 모두 시장의 공개성, 공정성, 체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3.4. 농민과 시장의 중간조직의 발전

중국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농산물의 합작가공 및 판매 조직을 발전시키고, 시장에 진입하는 농민들의 조직화 정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첫째,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전문판매조직을 지원해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상품생산력이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에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전문판매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로 기술교류를 위해 만

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전문기술협회’ 또는 ‘○○전문기술연구회’ 등으로 불리다가 가공이나 판매 부문을 점차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생산, 기술, 가공, 판매 등을 모두 한데 모은 경제적 실체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기술협회’는 기본적으로 합작조직의 특징이나 특성을 잘 갖추고 있고, 상품생산이나 유통과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갈수록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조직을 중시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향이나 촌 단위의 집체 경제조직이 농산물의 가공이나 판매에 참여하도록 적절히 유도하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현재 농산물의 가공이나 판매 분야에 대한 향이나 촌 단위 집체 경제조직의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 부문에 대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더욱 커다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급 및 판매협동조합(供銷合作社)을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농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연합이나 합작을 시도하도록 유도하고, 이윤을 되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회성 거래관계에 벗어나 점차적으로 합작경영이나 리스크에 대한 공동관리 등의 형태로 이익 공동체적인 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넷째, 농업의 산업화경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4. 2005~2015년 농업·농촌경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05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기간은 중국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시기이며 두 번째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발전을 거쳐 농업의 생산조건과 생태환경은 비교적 크게 개선되고, 농업구조와 농촌경제구조도 더욱 개량됨으로써 농촌경제의 기본 체질이 개선되고 그에 따른 이익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가정승포경영제를 토대로 삼고 농업의 대사회적 서비스체계, 농산물시장체계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보호 체계를 버팀목으로 삼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맞춰 발전해온 농촌경제 체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005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은 ‘구조조정’이라는 전략적 기본목표를 위해 세 방면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첫째, 농업 관련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농업생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공급능력과 농촌경제 성장의 질과 양을 안정적으로 제고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소성진(小城鎮)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향진기업의 구조 조정과 체제 개혁을 하루 빨리 실현하고, 농업 및 농촌경제 분야의 새로운 발전공간을 개척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잉여노동력을 대대적으로 전환, 배치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연해의 선진 발전지역과 대도시나 중간 규모의 도시 교외지역이 우선 농업 및 농촌의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2005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농업 및 농촌경제의 발전목표와 임무와 관련하여 농촌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4.1. 가정승포경영제를 토대로 한 이중경영체제를 더욱 확립

‘농촌토지승포법’ 등의 관련 법률이나 법규의 제정 및 실시를 통해 가정승포경영 제도의 법률적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승포경영권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을 뿐 아니라 일련의 관련 법규 및 관리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사용권 이전의 메커니즘 확립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통

시장 및 이와 관련된 법규 그리고 이전량에 대한 조절 및 감독관리 등 방면에 대해 효과 있는 방법을 이미 알아냈다. 또 청부 기간 동안 발생할지 모를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토지조정, 도시지역으로 이주해간 농민들이 사용하던 토지의 처리문제,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에서 적정규모의 토지경영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 등도 모두 시장 메커니즘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관련 법규도 잘 갖추어진 토지 사용권의 유통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4.2. 농촌의 생산요소시장을 집중적으로 발전

농촌의 생산요소시장이 발전되지 않는다면 농산물시장은 선천적인 결함이 있게 되기 마련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촌의 생산요소시장의 발전은 농촌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이후에도 농산물 시장체제를 계속 개선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농촌의 생산요소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 자본시장, 노동력시장, 기술시장 등을 주로 장악해나가야 한다.

농촌의 자본시장은 현재 농촌의 생산요소시장 가운데 성장 및 발전이 비교적 취약한 부문이다. 어떤 한 통계에 따르면, 1978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사이 중국 농업부문의 종합시장화 지수는 21.99%에서 69.86%로 상승한 데 비해 농업자금의 시장화 지수는 33.30%에서 68.89%로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즉 농업자금의 시장화 정도는 개혁 초기엔 전농업분야의 평균 시장화 지수보다 높았으나 현재는 평균 지수보다 낮아진 상태다. 농촌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는 비교적 큰 경제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는 만약 조절을 제대로 못할 경우 거시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소농 위주의 농촌경제 구조 속에서 농촌자본시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현대적 금융시스템 및 금융제도와 소농의 비대칭적 금융수요의 접합점을 찾는 문제는 소농 위주의 농업국가가 보편적으로 직면해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또 중국이 농촌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나가는데 있어 피할 수 없

는 하나의 기본적 문제이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이후에는 농촌경제가 번영하고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의 거시적 조절기능, 특히 금융감독 및 관리 체계가 완비됨으로써 농촌의 금융리스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며 농촌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문제도 의사일정에 올려 토의할 조건을 이미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신용대출과 같은 농업의 간접금융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농업의 직접금융 조달경로와 규모, 예를 들어 농업의 장기 건설 및 개발 채권 발행, 증시상장 농기업 수의 증대, 농촌의 각종 보험시장 개척 등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주로 농업관련 신기술 개발산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과 관련된 농촌의 창업자본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로 창업과 발전에 필요한 주식자본을 기업에 제공하고, 또 창업투자기구와 관련 교역시장 및 중개서비스 조직 등을 만들어내야 한다.

농촌의 노동력시장은 농촌 생산요소시장 가운데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1996년 이 분야의 시장화 지수는 73.56%)이다. 현재 이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시장이 맹목적으로 커지고 폐쇄성이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의 법제화 정도를 높이고 노동력의 수출 및 수입 지역간의 상호 협조를 강화하며, 또 도시와 농촌 지역의 취업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도 등도 잘 해나가야 한다.

농촌의 기술시장은 농촌의 생산요소시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분야이다. 과학적 교육을 통한 농업진흥 전략의 확대 실시, 농업관련 과학기술 개발의 활성화, 농업관련 신기술의 산업화 정도의 가속화 및 농업관련 과학기술의 연구 및 교육 보급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농촌의 기술시장을 발전시키라는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앞으로 기술상품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기술상품의 기술검정 및 기술상품의 가격을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신기술의 이전, 과학과 기업의 결합,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회사나 공장직영 연구소의 건립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4.3. 농촌의 도시화를 대대적으로 추진

현재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도시화가 21세기 중국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훌륭한 받침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경기순환상 현재의 경제주기가 끝나게 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며,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이후엔 중국 농촌의 도시화 및 농업분야 잉여노동력의 전환배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는 전체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농업과 농촌의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내사정을 감안하여 소성진(小城鎮)을 중점적으로 개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2010년경에 이르면 소성진이 농촌인구를 현재의 2배 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역으로 전환배치된 농업분야의 잉여노동력이 향진기업의 수요를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발전을 토대로 민간투자의 유도, 소성진 지역의 경제적 기반 조성, 도시기능의 완비, 신도시 건설 수준의 향상 등의 시책을 통해 소성진 지역의 선도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을 대규모로 전환, 배치시켜나가야 한다.

4.4. 신기술개발을 통해 전통농업의 개조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업부문 연구개발 체제의 개혁과 농업기술 보급 체계 개선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한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에 과학교육을 통한 농업진흥정책을 시행할 때 신기술을 이용해 전통농업방식의 개조속도를 가속화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초스피드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농업의 현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현재 중국의 신기술 연구나 도입은 대부분 대도시와 공업 부문에 치중돼 있을 뿐 농촌이나 농업 부문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며, 또 농촌지역에는 신기술의 이전 및 보급 체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신기술을 이용해 전통농업방식을 개

조시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전 정비작업을 해야한다. 현대의 신기술이란 주로 생명공학기술, 정보처리기술, 재료과학, 해양과학, 우주 및 항공 기술, 핵기술, 위성 및 센서 기술 등을 가리킨다. 신기술을 통한 전통농업방식의 개조가 가져온 신기술 농업은 과학기술이 집약되고 관련 지식이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생산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잠재력이 크며 또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신기술을 이용해 전통농업방식을 개조하는 속도를 가속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나가야 한다.

첫째, 투자를 늘려 국가의 과학기술 개발체제나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농업기술개발을 중요사항이나 안건으로 다루어 우선항목 또는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연해의 선진발달지역을 신기술을 이용한 전통농업방식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 주요 대상지역이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셋째, ‘쾌속모방’ 책략에 따라 농업관련 신기술을 도입하는 분야와 항목을 넓혀 나가야 한다.

넷째, 전통농업기술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시켜 전통농업기술의 많은 경험을 계승하고, 전통농업기술 가운데 낙후되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대량의 생산량을 계속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관련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기업이나 항목을 대대적으로 발전, 확충시켜나가 투자, 세수, 신용대출 등 방면에서 우대조치를 시행해나가야 한다.

4.5. 생태환경 건설과 보호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생태환경에 대한 인위적 파괴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생태환경이 크게 손상되거나 취약한 지역에 대해 초보적인 구제성 정비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태환경 부문에 대해 국가의 전체 계획이나 요구에 따른 생태환경

과 관련된 건설이나 보호 역량을 키워나가 생태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은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요 생태보호 구역의 건설 역량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태환경 건설 및 보호 관련 법규나 관리제도를 제정, 정비하고 생태환경보호구역을 지정, 건설해야 한다. 다원화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 및 개발체제를 확립하고 또 보다 실용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생태환경 정비 및 보호 기술을 연구, 개발 및 보급해나가야 한다.

4.6.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2000년 말경에 이르러 중국의 WTO가입이 성사될 경우, 농업부문에 대한 중·미 간 무역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에 따라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이후로는 중국이 과도기적으로 시행했던 관세부과 제도나 수입쿼터제가 없어지게 되어 중국의 농업은 커다란 경쟁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들은 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Green Box’ 등을 이용해 국내 농업부문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들을 취하면서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업의 생산효율과 경영효율을 극대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생산의 기술적인 함량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둘째, 농산물품질 검사의 표준체계를 확립하며, 셋째, 시장 경쟁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고, 넷째, 농업구조 및 농촌경제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하며, 다섯째 농업기반시설(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설비 등)의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섯째, 농업부문의 교육 및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곱째, 국제시장의 변동상황에 대해 추적, 감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거나 기업이 개방형경영체제로 전환해나가는데 대해 관련 자료나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 “農業和農村經濟政策研究”, 劉 江 主編, 2000, 『21世紀初中國農業發展戰略』, 中國農業出版社.

제 5 장

중국의 농정체제와 중앙·지방정부 역할

1. 중국의 농업발전과 농정변화

1.1. 개혁·개방과 중국 농업의 발전

1.1.1. 농업생산량

중국의 재배작물에는 양곡, 면화, 유료, 마(麻), 당류, 잎담배 등이 포함되어있다. 재배업은 농업생산의 기초로서 그 동안 중앙정부와 각급 정부가 중요시했으며 특히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농촌에서 실시된 가정도급책임제는 중국 재배업의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는 생산량의 대폭 증가, 일인당 생산량의 제고, 시장공급충족에서 보여진다.

가. 양곡생산

중국의 양곡생산은 1949년의 1억여톤에서 1999년에는 5.08억여톤으로 증가하여 약 4억여톤 정도를 증산하였다. 연평균증가량은 800여만톤으로 세계총재배면적의 10%정도의 경작지로 세계인구의 22%되는 국민수요를 만족시키는 기적을 달성하였다.

각각의 역사단계를 살펴보면 양곡생산발전속도는 불균형적이었다. 건국초기(1949

~1958년)에는 전국범위에서 토지개혁정책을 실행하였기에 전국양곡생산은 연속 9년 풍작을 거두어 양곡 8,447만톤을 증산하고 연평균 938만톤을 증산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은 양곡생산정체를 초래하여 1958년부터 1978년까지 양곡생산은 불과 1억여 톤밖에 증산되지 못하였으며, 연평균증가량도 500만톤에 그쳤다. 하지만 1978년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농촌가정도급책임제를 확정하여 수많은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양곡생산도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연평균증가량 1,000만톤의 속도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양곡생산량이 5억톤을 돌파하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양곡생산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일인당 양곡점유량도 대폭 증가하여 1952년의 288kg, 1978년의 319kg에서 1999년에 400kg이상으로 되어 양곡수급을 안정시켰다.

표 1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 만톤

연도	양곡							유지작물					면화	마류		사탕 수수	사탕 무우
		곡류						땅콩	유채씨	깨	황홍						
		벼	소맥	옥수수	두류	서류											
1978	30,476.5		13,683.0	5,384.0	5,594.5		3,174.0	521.8	237.7	186.8	32.2	216.7	135.1	54.4	2,111.6	270.2	
1980	32,055.5		13,991.0	5,520.5	6,260.0		2,872.5	769.1	360.0	238.4	25.9	270.7	143.6	54.9	2,280.7	630.5	
1985	37,910.8		16,856.9	8,580.5	6,382.6		2,603.6	1,578.4	666.4	560.7	69.1	414.7	444.8	206.0	5,154.9	891.9	
1986	39,151.2		17,222.4	9,004.0	7,085.6		2,533.7	1,473.8	588.2	588.1	61.8	354.0	192.7	71.0	5,021.9	830.6	
1987	40,473.3		17,441.6	8,776.8	7,982.2		2,820.0	1,527.8	617.1	660.5	52.6	424.5	208.4	56.9	4,736.3	814.0	
1988	39,408.0		16,910.8	8,543.2	7,735.1		2,696.5	1,320.3	569.3	504.4	40.4	414.9	127.0	54.0	4,906.4	1,281.0	
1989	40,755.0		18,013.0	9,080.7	7,892.8		2,730.0	1,295.2	536.3	543.6	33.8	378.8	112.4	66.0	4,879.5	924.3	
1990	44,624.0		18,933.1	9,822.9	9,681.9		2,743.2	1,613.2	636.8	695.8	46.9	450.8	109.7	72.6	5,762.0	1,452.5	
1991	43,529.0	39,566.3	18,381.3	9,585.3	9,877.3	1,247.1	2,715.9	1,638.3	630.3	743.6	43.5	567.5	88.4	51.3	6,789.8	1,628.9	
1992	44,265.8	40,169.6	18,622.2	10,158.7	9,538.3	1,252.0	2,844.2	1,641.2	595.3	765.3	51.6	450.8	93.8	61.9	7,301.1	1,506.9	
1993	45,648.8	40,517.4	17,751.4	10,639.0	10,270.4	1,950.4	3,181.1	1,803.9	842.1	693.9	56.3	373.9	96.0	67.2	6,419.4	1,204.8	
1994	44,510.1	39,389.1	17,593.3	9,929.7	9,927.5	2,095.6	3,025.4	1,989.6	968.2	749.2	54.8	434.1	74.7	35.5	6,092.7	1,252.5	
1995	46,661.8	41,611.6	18,522.6	10,220.7	11,198.6	1,787.5	3,262.6	2,250.3	1,023.5	977.7	58.3	476.8	89.7	37.1	6,542.0	1,398.4	
1996	50,453.5	45,127.1	19,510.3	11,066.9	12,747.1	1,790.3	3,536.0	2,210.6	1,013.8	920.1	57.5	420.3	79.5	36.5	6,687.6	1,541.5	
1997	49,417.1	44,349.3	20,073.5	12,328.9	10,430.9	1,875.5	3,192.3	2,157.4	964.8	957.8	56.6	460.3	74.9	43.0	7,889.7	1,496.8	
1998	51,229.5	45,624.7	19,871.3	10,972.6	13,295.4	2,000.6	3,604.2	2,313.9	1,188.6	830.1	65.6	450.1	49.5	24.8	8,343.8	1,446.6	
1999	50,838.6	45,304.1	19,848.7	11,388.0	12,808.6	1,894.0	3,640.6	2,601.2	1,263.9	1,013.2	74.3	382.9	47.2	16.4	7,470.3	863.9	

자료 : 2000년 통계연감

양곡증산의 요인으로는 양곡단위 생산량수준의 제고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1949년에는 68.6kg/무(畝)이었지만 1999년에는 300kg/무(畝)에 이르러 3.4배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이 기간동안 양곡과종면적은 3.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양곡생산의 급성장은 국가의 거시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농민생산적극성이 대폭 제고되어 생산투입이 증가된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농업과학기술에 있다.

중국의 양곡작물에는 벼, 소맥, 옥수수, 대두, 서류 등 5개의 주요 품종이 있으며 이외에 수수, 조 등과 같은 잡곡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주요 양곡작물에서 생산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물은 벼로서 총양곡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맥, 옥수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1978년 벼생산량은 1.37억톤이며 1999년에는 1.98억톤으로 증산되었으며, 1978년보다 45.1% 증가하였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맥과 옥수수생산증가속도도 더욱 빨라져 1978년부터 1999년까지 소맥과 옥수수 생산량은 각각 2.11배와 2.22배 증가하였다. 품종구조 조절과 시장수요의 영향으로 대두와 서류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폭은 앞의 3종류보다 낮아 1999년에 이르러 생산량은 각각 1,894만톤과 3,641만톤을 기록하였다.

나. 면화생산

면화는 중국의 3대 재배작물의 하나로서 농업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면화의 생산역사를 살펴보면 생산과동이 매우 빈번했다. 개혁개방이후 1978년부터 1984년까지 6년 동안은 중국면화생산의 번성단계이었다. 1984년에 이르러 전국 면화 총생산량은 625만톤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1978년보다 1.9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19.3%를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에 409만톤의 면화를 증산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국내외 면화시장상황과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파동과 정체현상이 나타났는데 1991년의 567만톤 외에 기타 연도는 400~500만톤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

다. 유지작물

중국의 유지작물은 주로 땅콩, 유채씨, 해바라기씨, 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78년 이후 국민소득향상으로 인해 유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결과 생산도 신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1999년 유지작물 총생산량은 2,601만톤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1978년의

4.98배이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유채씨와 땅콩은 주요 유지작물로서 두 품종의 생산량 비중은 8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땅콩생산량은 1,264만톤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1978년의 5.33배이며, 유채씨생산량은 1,013만톤으로서 1978년의 5.32배 증가하였다.

라. 당류작물

중국의 주요 당류 작물은 사탕수수와 사탕무우이다. 1978년 전에는 ‘양곡생산중심’정책으로 생산은 매우 미비하였지만, 개혁개방 이후 작물생산자유권리의 확대로 신속히 발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9년에 이르러 당류작물 총생산량은 8,334만톤을 달성하였는데 이중 사탕수수와 사탕무우 생산량은 각각 7,470만톤과 864만톤으로서 1978년의 3.5배와 3.19배이었다.

1.1.2 농경지 면적의 변화

농작물 총과종면적은 1999년에 이르러 156,373천ha에 이르렀으며 이는 개혁초기 1억4천만ha 전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이 중 식량작물은 113,161천ha 외에 면화 3,736천ha, 유지작물 13,906천ha, 채소류 13,347천ha, 당류작물 1,644천ha, 과수원 8,667천ha, 연초는 1,374천ha, 차원은 1,130천ha이다.

양곡작물에서 벼재배면적은 여전히 1위를(31,284만ha) 고수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밀로서 28,855천ha이고 옥수수는 25,904천ha, 두류는 1,1190천ha, 서류는 10,355천ha에 달하였다. 이중 벼와 밀은 수익성 문제로 1978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감소된 반면 옥수수는 축산발전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두류는 소폭 증가에 그쳤고 서류는 감소되는 추세이다. 면화와 마류 등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재배결정권리의 확대로 땅콩, 유채씨, 사탕수수, 잎담배, 채소, 과수 등 재배면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면화, 사탕무우, 차 등 작물의 재배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다.

1.1.3 토지 생산성의 변화

농업부문에서의 개혁·개방은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이용, 농업과학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토지생산성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일부 품목은 세계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토지사용권을 농민개인에게 부여한 것은 생산증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곡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4,800kg/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면화의 경우 1978년의 450kg/ha에서 1999년에는 1,028kg/ha로 제고되어 1978년보다 2.28배 향상되었고, 유지작물도 현재까지 2배정도 생산성이 제고되었다. 이 중 땅콩의 경우 1978년의 1,350kg/ha에서 1999년에는 2,961kg/ha로 제고되어 1978년보다 2.19배 향상되었고, 유채씨의 경우 1978년의 720kg/ha에서 1999년에는 1,469kg/ha로 제고되어 1978년보다 2.04배 향상되었고, 깨의 경우 1978년의 510kg/ha에서 1999년에는 1,066kg/ha로 제고되어 1978년보다 2.09배 향상되었다. 황홍마의 경우 1978년의 1,320kg/ha에서 1999년에는 2,540kg/ha로 제고되어 1978년보다 1.92배 향상되었고, 사탕수수의 경우 1978년의 38,505kg/ha에서 1999년에는 57,338kg/ha로 제고되어 1978년보다 1.49배 향상되었고, 사탕무의 경우 1978년의 8,175kg/ha에서 1999년에는 25,335kg/ha로 제고되어 1978년보다 3.1배 향상되었고, 잎담배의 경우 토지생산성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토지생산성(주요 농산물단위생산량)

단위 : kg/ha									
	곡물	면화	땅콩	유채씨	깨	황홍마	사탕수수	사탕무	烤煙
1978		450	1,350	720	510	1,320	38,505	8,175	1,725
1980		555	1,545	840	330	1,755	47,565	14,250	1,815
1985		810	2,010	1,245	660	2,085	53,430	15,915	1,920
1986		825	1,815	1,200	615	2,055	52,860	15,960	1,530
1987		870	2,040	1,260	600	2,085	55,140	16,350	1,785
1988		750	1,905	1,020	570	1,950	53,115	17,190	1,800
1989		735	1,815	1,095	465	2,310	50,850	16,245	1,605
1990		810	2,190	1,260	705	2,415	57,120	21,660	1,680
1991	4,206	870	2,188.5	1,215	645	1,905	58,350	20,790	1,710
1992	4,342	660	2,000	1,281	692	2,233	58,605	22,832	1,687
1993	4,557	750	2,492	1,309	747	2,449	59,012	20,124	1,654
1994	4,500	785	2,564	1,296	794	2,020	57,671	17,936	1,491
1995	4,659	879	2,687	1,416	908	2,534	58,136	20,132	1,584
1996	4,894	890	2,804	1,367	969	2,491	56,225	25,483	1,750
1997	4,823	1,025	2,592	1,479	919	2,649	60,158	24,475	1,809
1998	4,953	1,009	2,943	1,272	1,042	2,677	59,549	24,806	1,740
1999	4,945	1,028	2,961	1,469	1,066	2,540	57,338	25,335	1,797

1.1.4. 농가 인구의 변화

1999년의 농촌인구수는 87,017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69.11%를 차지하는데 이는 1978년의 농촌인구비율 82.08%보다 12.97%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에 1999년 도시인구수는 38,892만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0.89%를 차지하는데 1978년에 비해 도시화 과정이 재빨리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인구비율이 감소하는 중요 원인의 하나는 농촌잉여노동력의 도시진출이다.

농촌이동인구의 구조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동인구의 주류는 청장년 노동력이다. 15~49살의 청장년 노동력은 총인구이동의 69.9%를 차지하며, 이 중 25~34살 인구는 30.7%를 차지하고 있다. 25~29살 인구는 도시진출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로서 전체 이동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② 교육정도 측면에서 유출지역의 인구교육수준은 유입지역보다 낮으며, 이동인구의 남녀교육수준의 차이가 크다. 15살 및 15살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이동인구 중 중학교수준이 가장 높아 52.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24.2%이고 고등학교수준이상은 13.3%이고, 문맹은 1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출지역의 농촌인구 교육수준보다는 훨씬 높지만 도시인구의 교육수준보다는 낮다. 유동인구 중 남녀교육수준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교 교육수준의 남성은 55%를 차지하는 반면에 여성은 9.3%를 차지하며, 고등학교 이상수준의 남성은 16.6%, 여성은 0.5%이며, 국민소학교수준의 남성은 21.7%, 여성은 50%를 차지한다.
- ③ 미혼인구는 총 유동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유동인구 중 15살 이상 미혼인구는 20.3%를 차지하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상시주거 미혼인구 17.6%와 19.4%보다 높다.

결론적으로 도시측면에서 도시의 많은 취업기회와 높은 노동임금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진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경제구조와 경제이익추구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눈을 돌리게 한다. 현재 중국의 농

촌노동생산성은 아직도 낮으며, 인구가 많은 반면에 경작지면적이 작다. 가정형 경영방식은 노동생산성을 제약하여 농가소득이 도시보다 훨씬 낮게 한다. 이와 동시에 개혁개방 이래 정부는 계획경제체제하의 농민의 도시진출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도시와 농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의 농촌노동력의 도시유입은 도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농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농촌의 노령화과정을 촉진시키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노동력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표 3 도시와 농촌인구수 및 구성

단위 : 만명

연도	연말 총인구수	성별				도시와 농촌			
		男		女		도시인구		농촌인구	
		인구수	비중 (%)	인구	비중 (%)	인구수	비중 (%)	인구	비중 (%)
1978	96,259	49,567	51.49	46,692	48.51	17,245	17.92	79,014	82.08
1980	98,705	50,785	51.45	47,920	48.55	19,140	19.39	79,565	80.61
1985	105,851	54,725	51.70	51,126	48.30	25,094	23.71	80,757	76.29
1986	107,507	55,581	51.70	51,926	48.30	26,366	24.52	81,141	75.48
1987	109,300	56,290	51.50	53,010	48.50	27,674	25.32	81,626	74.68
1988	111,026	57,201	51.52	53,825	48.48	28,661	25.81	82,365	74.19
1989	112,704	58,099	51.55	54,605	48.45	29,540	26.21	83,164	73.79
1990	114,333	58,904	51.52	55,429	48.48	30,191	26.41	84,142	73.59
1991	115,823	59,466	51.34	56,357	48.66	30,543	26.37	85,280	73.63
1992	117,171	59,811	51.05	57,360	48.95	32,372	27.63	84,799	72.37
1993	118,517	60,472	51.02	58,045	48.98	33,351	28.14	85,166	71.86
1994	119,850	61,246	51.10	58,604	48.90	34,301	28.62	85,549	71.38
1995	121,121	61,808	51.03	59,313	48.97	35,174	29.04	85,947	70.96
1996	122,389	62,200	50.82	60,189	49.18	35,950	29.37	86,439	70.63
1997	123,626	63,131	51.07	60,495	48.93	36,989	29.92	86,637	70.08
1998	124,810	63,629	50.98	61,181	49.02	37,942	30.40	86,868	69.60
1999	125,909	64,189	50.98	61,720	49.02	38,892	30.89	87,017	69.11

주 : 1885~1989년의 수치는 1982년과 1990년의 인구보편조사에 근거하여 조정한 것이며, 1990년 이후는 변동샘플조사에 의한 통계수치이다.

자료 : 2000년 통계연감

1.1.5. 농가소득의 변화

개혁개방 이래 농촌개혁은 농가소득의 신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농산물수급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특히 1997년부터 주요 농산물수급은 전반적인 부족 상황에서 균형을 달성하였으며, 심지어 많은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과잉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농가소득의 증가속도는 완만하게 되었으며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에 소득은 증가되지 않게 되었다. 현단계에서 농민소득은 농촌발전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로 되고 있다.

농가소득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소득이 농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78년 1인당 농업생산소득은 총소득의 85%를 차지한 반면에 2000년에는 50.4% 하락하였다. ② 비농업소득의 비중은 농가소득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농업소득에는 농민이 농촌공업, 건축, 운수, 상업, 음식업에 종사하여 획득한 소득으로서 1978년 1인당 총소득의

표 4 도시와 농촌가정 1인당 수입과 지수

연도	농가 1인당 순수입		도시가정1인당 수입	
	절대치	지수	절대치(위안)	지수
1978	133.6	100.0	343.4	100.0
1980	191.3	139.0	477.6	127.0
1985	397.6	268.9	739.1	160.4
1986	423.8	277.6	899.6	182.5
1987	462.6	292.0	1,002.2	186.9
1988	544.9	310.7	1,181.4	182.5
1989	601.5	305.7	1,375.7	182.8
1990	686.3	311.2	1,510.2	198.1
1991	708.6	317.4	1,700.6	212.4
1992	784.0	336.2	2,026.6	232.9
1993	921.6	346.9	2,577.4	255.1
1994	1,221.0	364.4	3,496.2	276.8
1995	1,577.7	383.7	4,283.0	290.3
1996	1,926.1	418.2	4,838.9	301.6
1997	2,090.1	437.4	5,160.3	311.9
1998	2,162.0	456.2	5,425.1	329.9
1999	2,210.3	473.5	5,854.0	360.6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7%를 차지하는 반면에 2000년에는 44.1% 상승하였다. ③ 제2산업에서 획득한 농가 소득은 제3산업보다 훨씬 높다. 1985년 일인당 제2산업 소득은 29.47위안, 제3산업 소득은 39.95위안인 반면에 1999년에 이르러 각각 5,643위안과 334.3위안이었다. ④ 농민의 비생산성 소득비중은 1987년까지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민의 비생산성 소득은 농민이 서비스업, 외지인구의 송금 혹은 현물, 집단공익기금, 축적기금, 국가재정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으로서 1978년에는 총소득의 8%를 차지하였으며 1980년에는 13%, 1986년까지 10%이상을 유지하였지만 1987년부터 감소하여 2000년에는 5.5%로 감소하였다.

1.2. 1978년 이후 개혁 · 개방정책과 농정 변화

1.2.1. 경제개혁과정 및 내용

1978년 12월 중공11기 3중전회에서 업무중심을 경제건설에 집중시킬 것을 결정하고 개혁 · 개방정책을 실행하였다. 20여년 동안 중국은 특색 있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광범하고도 강한 경제체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은 대체적으로 4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제1단계(1978년 12월 ~ 1984년 9월)

제1단계는 중공11기 3중전회부터 12기 3중전회전까지로서 개혁의 초기단계에 속한다. 이 기간동안 개혁의 중심은 농촌이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3급 소유, 대(隊)를 기초로 하고 정부와 인민공사를 통합(政社合一)하고, 집중(계획)경영, 통일분배의 인민공사제도를 폐지하고 공유토지를 장기간 농민에게 임대하여 경영토록 하였으며, 가정도급경영책임제(家庭聯產承包經營責任制)를 골자로 하고 이중(집단과 가정) 책임경영제도를 실시하였다. 둘째로는 가격 등 경제수단과 계약 등 법률수단에 의존하여 농촌경제관리를 개선하였고 농산물 특히 주요 농산물가격을 대폭 조정함과 동시에 농산물계획구매 · 계획판매(統購統銷)제도를 폐지하고 양곡 등 국민생계에 관련된 농산물에 대해 계약구매제도를 실행하였다. 또한 이 기간동안 도시에서 기업개혁을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경영결정권리를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제특구를 건설하여 연해 14항구도시를 개방하였으며 외국기술, 설비, 자본도입을 진행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기초를 형성하였다.

나. 제2단계(1984년 10월 ~ 1991년 12월)

중공 12기 3중전회부터 13기 8중전회전까지로서 전반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이었다. 제2단계에서의 개혁중점은 도시에 있었다. 이 기간에는 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도시관련 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책임제’와 ‘利改稅제도’(국영기업에 대해 종래에 취하였던 이윤상납제도를 법인세를 징수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를 기초로 진일보 도급, 임대 등 방식을 채택하여 재산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기업관리층, 분배, 노무 등에 관한 내부관리제도에 대해 개혁을 단행하였다. 둘째, ‘調(조절), 放(완화), 管(관리)’방침에 따라 가격차이관계를 조정하고 가격형성기능을 개혁하였다. 또한 소상공품과 대부분의 공업소비품 가격에 대한 통제를 폐지하였으며 부분적인 중요 공업생산자료에 대해 계획내와 계획외의 ‘이중가격(雙軌制)가격’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시장을 건설하여 시장체제의 형성과 개선을 촉진하였다. 셋째, 지령성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거시적 경제조절을 개선하고 지방과 기업의 자주권리를 확대하였다. 동시에 海南省경제특구를 건설하였고 珠江삼각주, 長江삼각주, 閩南(복건성 남부)삼각지대, 山東반도, 遼東(요녕성남부)지역을 개방하였다.

다. 제3단계(1992년 1월 ~ 1995년)

등소평의 남부지역시찰연설부터 현재까지로서 이 단계는 개혁의 전반적인 추진 단계이다. 개혁의 중점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건설이다. 중공 14대표대회에서 개혁의 목표방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제기하였으며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건설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與建立社會主義市場體制若干問題的決定)을 통과하여 체계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로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는데 개혁은 과거체제에 대한 개혁에서 새로운 체제건설으로 초점을 전환시켰으며, 단일개혁치중에서 정반적인 추진과 중점개혁을 결합시켰으며, 정책추진에서 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대외개혁·개방도 진일보 심화시켰다.

1.2.2. 농업개혁

농업에 대한 개혁은 주로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토지경영제도개혁을 중심으로 가정도급제를 기초로 하고 統分統合의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했다. 또한 농산물시장체계의 건설과 농업법제건설을 진행하였다. 이런 개혁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토지경영제도개혁을 중심으로 가정도급제를 기초로 하고 統分統合의 이중경영체제를 점차 확립하고 부단히 안정시키고 개선하였다.

(1) 농가생산청부제(包產到戶)의 실시와 농가생산책임도급제를 골자로 한 각종 책임제와 統分結合의 이중경영체제를 건립(1979년~1983년)

1978년말 중공 11기 3중전회는 사상의 해방과 실사구시의 지침을 확립하고 동시에 원칙적으로 ‘농업발전에 있어서 약간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결정’(초안)을 통과하여 농촌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그 후 각종 형식의 생산책임제가 농촌에서 신속히 실행되었다. 절대다수 지역에서 먼저 실행한 것은 노르마청부제(定額包工), 聯產到組(연합생산책임을 생산소조에까지 도급하는 방법, 즉 생산소조 생산청부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였다. 1979년 84.9%의 기층조직에서 각종 형태의 책임제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55.7%의 기층조직은 노르마책임제를, 24.9%의 기층조직은 聯產到組를, 0.1%의 기층조직은 가정책임제(包幹到戶)를 실시하였다.

1980년 9월 중공중앙은 진일보로 농업생산책임제를 강화 및 개선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반포하고 2년 동안의 개혁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적극 권장을 하였다.

1982년 9월 중공중앙은 ‘전국농촌업무회의요점’(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를 비준하고 중국농업은 반드시 사회주의 집단화의 길을 견지하고, 토지 등 기본생산수단에 대한 공유제는 장기간 유지하며, 집단경제에서의 생산책임제는 장시간 유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업생산책임제의 개선과 건전화에 관해 각종 지도적 의견과 구체적 조치를 제기하였다.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책임제형식도 개인생산청부제(聯產到勞)에서 농가생산도급제(包產到戶), 농가도급제(包幹到戶)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가정생산도급제(家庭聯產承包)를 중심으로 한 책임제와 統分結合의 이중경영제도를 건립하고 형성하였다. 1983년말까지 전국의 99.5%의 기층조직은 보편적으로 생산책임제를 실시하였으며 참여농가는 총 농가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97.8%의 기층조직은 농가도급제를 실시하였는데 참여농가는 총 농가의 94.5%를 차지하였다.

(2) 토지사용권을 15년 연장하고 가정생산도급제를 골자로 한 책임제를 확고히 하고 개선하였다.(1984년~1993년)

1982~1986년 동안 중공중앙은 5차례의 제1호 문서를 발표하여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기하여 농민의 개혁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하였으며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장기간 안정화시키고 統分結合의 이중경영체제를 확고히 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1984년 중공중앙 제1호 문헌은 토지사용기한연장에 관한 정책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문헌에서는 “토지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생산주기가 길거나 개발항목, 예를 들어 과수, 임지, 황폐 산, 황폐토지 등의 토지사용기한은 더욱 길어야 한다. 토지사용기한연장에 있어서 농민이 토지조절의사가 있으면 ‘大安定(큰 틀에서 안정화), 小調整(작은 규모의 조정)’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협상을 걸쳐 집단에서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토지사용기한의 15년 연장에 관한 중공정책의 반포이후 그 해 전국의 99.1%의 농촌기층조직은 농가도급제를 실시하였으며 참여농가는 총 농가의 96.5%를 차지하였다. 이후 농촌가정도급경영의 토지면적비중은 대체로 97%좌우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사용기한 15년 연장정책은 농민의 토지투입에 대한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농민이 첫째, 재배와 정지사업을 중요시하게 하였고, 자발적으로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고 지력 향상에 노력하게 하였다. 둘째, 자금을 모아 관정, 수로건설에 적극적이었으며 생산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셋째, 농민자신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토지정지, 다락밭보양, 댐 건설 등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게 하였다.

실천 중에서 농촌사회경제조직은 자체 경제실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점차 경영과 서비스기능을 건전화하고 통일하여 농가에 농기계, 수리, 식물보호, 방역, 경영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도급제의 기초 위에 토지에 대한 적절한 규모경제를 달성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도급된 토지에 대한 재도급, 이전 등 형태가 출현하였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실정에 결부시켜 토지도급과정에서의 각 계층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토지도급관계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가정생산도급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와 統分結合의 이중경영체제가 부단히 안정되고 개선되었다.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수정안’이 통과하였는데 헌법에서는 “농촌의 가정생산도급제를 위주로 한 책임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집단소유경제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적으로 가정생산책임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3) 토지사용기한의 30년 연장과 이중경제체제의 헌법명문화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켜 농가투입을 권장하고 토지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1993년 기존의 15년 연장정책시한만료 전에 중공중앙은 제11호 문헌을 공표하여 기존의 토지도급시한이 만료된 후 다시 토지사용기한을 30년 연장하고 안정시킴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황무지개간, 사막개량과 토지개량 등 개발형 생산에 대해 사용기한은 더욱 연장할 수 있다고 결정함과 동시에 토지사용기한 내에 ‘사람은 증가하되 토지는 증가하지 않으며, 사람은 감축하되 토지는 감소하지 않는’ 방법을 권장하였다.

중공의 토지사용기한 연장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에서는 토지사용기한 연장업무를 전개하였다. 1995년 3월에 국무원은 토지도급관계의 안정화와 개선에 관한 농업부의 의견을 비준하였으며 업무지침과 토지도급계약관리에 대해 명시하였다. 1997년 중공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실은 16호 문헌을 반포하여 다시 토지도급관계 안정화와 토지사용기한 30년 연장에 관한 업무에 관해 구체적 업무지침서를 하달하였으며 정책분계선을 명확히 하였다. 1998년 말까지 전국의 80% 농촌에서는 토

지사용기한을 연장하였으며 대다수 지역에서는 농민에게 토지사용경영증서를 부여하였으며 토지사용기한 30년 불변을 골자로 하는 토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농민의 시장주체지위의 점차적인 확립에 따라 농가간의 토지사용권이전, 재도급, 토지사용권의 출자, 연합경영, 임대 및 四荒(황무지, 황폐된 산, 황폐된 초원, 황폐된 사주)사용권의 경매 등 토지이전체제가 일부 지역에서 발전되어왔다.

중공은 도급관계의 장기 안정화 정책과 사용기한 30년 연장정책을 실천하는 중에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농가투입을 자극하였으며 농업생산성을 제고시켰다. 30년 연장정책은 농민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경영에 임할 수 있게 하여 토지경영의 단기적 행위는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장기투자에 대한 적극성이 진일보 자극되었다.

농업생산요소의 합리적인 배치와 개발이용을 촉진시켰다. 토지도급경영권이전문제 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경제발달지역에서는 토지의 적정규모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산악제한정책 등 정책이 원활히 실행되고 있다. 도급기간 내에 ‘사람은 증가하되 토지는 증가하지 않으며, 사람은 감축하되 토지는 감소하지 않는’ 방법은 농가로 하여금 인구증가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농가산악제한정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사회보장안정을 확고히 하였다. 토지는 중국농촌에서 기본적인 생산수단일 뿐더러 사회보장기능을 가지고 있다. 농민으로 하여금 토지도급경영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여 농촌사회안정을 촉진시켰다.

1998년 10월 중공중앙 15기 3중전회는 농업과 농촌업무의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결정을 비준하여 가정도급제를 기초로 하고 統分結合의 이중경제체제를 21세

기의 중국농업과 농촌발전의 중요한 지침으로 확정하였다. 동시에 이는 중국농촌의 기본 경영제도라고 재차 명시하였다. 결정은 이중경영체제의 안정과 개선의 기초는 토지도급관계의 개선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토지사용기한 30년 연장정책을 확고히 실행하고 농가의 토지사용권리, 생산자결권리, 경영수익권리를 보장하여 독립적인 시장주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99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수정안’을 통과하였다. 헌법에서는 “농촌집단경영조직은 가정도급제를 기초로 한 統分結合의 이중경영체제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법적으로 농촌기본경영제도의 지위가 확립됨을 의미하고 있다.

나. 농산물시장체계의 건설

(1) 농산물유통체제개혁

중공집권이후 국영상업은 시장을 통해 양곡, 면화, 유류, 돼지 등 주요 농산물 구매하였다. 하지만 국가공업화의 시작과 발전에 따라 도시와 공업광산지역인구의 신속한 증가로 양곡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사회수요는 급증하였다. 따라서 1953년부터 정부는 양곡, 면화, 유류, 생돈에 대해 統購統銷(일괄구매·일괄판매)제도를 점차 실시하였다. 농산물구매에서 일괄구매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의 계획가격과 수량에 근거하여 도시주민들에게 공급되었다.

농산물수급이 긴장한 상황에서 統購統銷제도는 국가의 공업화수요와 도시주민의 양곡수요를 만족시켰지만 장기간 저가의 농산물일괄구매제도는 농민생산적극성을 하락시켜 농업생산의 정체를 초래하였다.

중공 11기 3중전회이래 가정도급의 경영체제가 확립되고 농업생산이 발전되고 농산물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농산물유통체제개혁도 점차 추진되었다. 국가는 양곡 등 주요 농산물구매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기초 위에 점차 농산물일괄구매범위를 축소하고 일괄구매수량을 감소시켰으며 시장에 의한 조절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갔다. 1985년 정부는 양곡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統購統銷제도폐지를 선포하고

계약수매제도로 전환시켰으며 계약수매 외의 양곡·면화와 기타 농산물의 구매·판매가격과 유통채널을 개방하여 시장을 통한 구매와 판매를 실시하였다.

양곡수매제도를 개혁함과 동시에 1990년 초에 정부는 선후로 2차례 양곡판매가격을 인상하였으며, 양곡일괄수매제도를 개혁하여 시장조절기능을 확대하였다.

1990년대이래 양곡시장을 안정시키고 양곡수급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한편으로는 省長책임제실시를 통해 양곡생산의 안정적인 제고와 수급균형을 보장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양곡보호가격과 양곡위험기금제도, 양곡전문비축제도 등을 확립하였다. 양곡유통체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정부는 ‘四分開, 一完善’을 골자로 한 양곡유통체제개혁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개혁의 초점은 보호가격에 따라 농민의 잉여양곡을 수매하고 국유양곡수매·비축기업은 順價(시장가격에 따른 가격)판매를 실시하며 양곡수매자금에 대해 전문운영과 국유양곡기업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농산물유통체제개혁에 따라 농산물시장은 신속히 발전하였다. 현재 중앙농산물 도매시장을 중추로 하고 지방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農貿市場(농민시장)을 보완하는 시장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농산물시장체계의 성장과 발전은 농산물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와 농촌경제를 번영시키며,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농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다산·고품질·고효율의 농업발전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농산물시장체계의 건설

농산물가격, 경영과 시장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에 따라 현재 전국 범위에서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수매시장과 판매시장을 양측 날개로 하는 농산물시장체계가 점차 확립되었으며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농민시장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

(가) 수매시장

장기간 국유상업과 농촌공소합작사는 수매시장의 주체였다. 하지만 농산물유통체제의 개혁에 따라 이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농산

물가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민의 운수판매조직의 구매와 생산자의 직판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이한 농산물수매시장의 개방정도는 서로 다르다.

(나) 도매시장

개혁개방이래 농산물도매시장 수는 부단히 증가하여 1997년에 이르러 전국 각종 농산물도매시장은 4,000개소로 발전하였다. 북경, 천진, 상해, 광주, 심양, 무한 등 35개 중·대형 도시와 농산물 주산지에서는 보편적으로 양곡, 채소, 과일, 육류, 수산 등 농산물도매시장을 강화하였다. 정부관련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모두 농산물도매시장건설의 종합계획을 확립하였으며, 주요 도시와 주요 지구에 전국규모 혹은 구역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였다. 이 중 일부 도매시장은 농산물수집·분산, 가격형성, 정보전달 등 측면에서 큰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다) 판매시장

판매시장은 수매시장과 도매시장보다 개방정도가 훨씬 높다. 전통적인 국영의 양곡유류상점과 부식물상점은 더 이상 시민들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주요 거래처가 아니다. 다수 도시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 구매를 하며 대형 종합상점, 슈퍼마켓, 체인점 등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 도시와 농촌의 集貿市場(농민시장)

도시와 농촌의 농민시장은 1985년에 6,133개소이었으며 1997년에는 87,105개소 증가되어 42% 증가하였으며, 거래액은 1985년의 632.2억 위안에서 1997년에는 17,424억 위안으로 26.6배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농민시장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농산물시장체계의 중요한 구성으로 되었다. 농촌의 농민시장은 수많은 농민의 상품거래의 주요 장소로 되었으며 도시의 농민시장은 도시주민의 ‘채소장바구니’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유통채널로 되고 있다.

다. 농업법제건설

중국의 농업법제건설은 개혁개방이래 경제개혁과 마찬가지로 굴곡적인 길을 걸

어왔다. 중공 11기 3중전회 이후 농촌개혁확대와 전반적인 국가법제업무의 추진에 따라 농업법제업무도 입법을 중요시하는 단계에서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법 체계의 초보적인 형성

개혁개방 20년 동안 정부는 농업행정법안 39건, 법안수정안 4건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농업부는 418건의 조례와 규범화 문서를 반포하였으며 지방에서도 대량의 지방법규와 정부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런 법과 조례는 농산물생산과 유통, 농촌생산력발전과 생산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이 기초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게 되었다.

1993년 8기 전국인민상무위원회 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을 통과하여 농업기본법의 형식으로 중국농업발전의 기본 목표를 확립하였으며 농업발전의 기본조치를 제정하였다. 또한 농업생산경영체제를 명확히 하였으며 농산물생산과 유통, 농업투자, 농업과학기술과 교육, 농업자원과 환경보호 등에 관한 기본제도를 건립하였으며 국민경제에서의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수호하였고, 농업의 지속발전, 안정과 조화로운 발전 및 농업법 건설을 촉진시켰다.

(2) 농업집법체계의 초보적인 성과

최근 정부기능전환에 관한 시장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농관련 집법업무는 농관련부문의 중시를 받아 기초적인 집법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집법제도의 확립과 집법행위의 규범화
- 집법체계의 규범화와 집법인원의 수준제고
- 농업행정집법인원의 확대
- 현행 농업집법체계의 개혁과 종합적인 집법시범화 사업

2. 현 단계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2.1. 중국 농업과 농촌경제발전 ‘十·五’계획 및 정책조치

2.1.1. 발전과정과 환경여건

가. ‘九·五’기간 주요 성과

20여년 간의 개혁개방과 발전을 통해 중국농업은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九·五’기간동안 복잡한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정부는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고도로 중시하고 강화하였으며 각 분야의 공동 노력으로 말미암아 중국농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 ① 주요 농산물의 장기적인 불균형으로부터 총체적인 균형을 달성하였으며 풍작연도에는 여분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九·五’기간동안 주요 농산물생산량은 지속 증가하였는데 2000년 양곡생산이 대폭 감소한 것 외에 기타 연도에서는 5억 톤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인당 양곡점유량 400kg이상을 연속 달성 혹은 초과하였다. 농산물수급관계의 변화는 개혁개방 이래 농업발전의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이며, 중국농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농촌산업구조와 취업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비농업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2000년 향진기업의 증가액은 농업경제 증가액의 64%를 차지하였으며 1995년보다 9.2% 증가하였다. 2000년말까지 농촌에서 제2, 제3산업 종사인원은 1.75억명으로서 1995년보다 1,100만명 증가하였다. ③ 농촌개혁이 한층 강화되어 농촌의 집단토지에 대해 제2차 가정도급제실행은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가정도급제도 한층 확고히 되었다. 또한 양곡, 면화유통체제개혁이 뚜렷이 진전되었으며, 농촌세수개혁도 착수되었고 세수개혁시험사업은 이미 효과를 획득하였다. ④ 농업은행체제와 경영방식개혁은 신속히 발전하였으며 농촌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 틀은 이미 마련되어 농업산업화경영도 뚜렷이 발전하였다. ⑤ 농민소득(溫飽)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생활수준도 향상하였다.

‘九·五’기간 농민 1인당 소득은 연평균 4.7% 증가하였으며, 최빈곤층 농민도 1995년의 6,500만명에서 2000년 말에는 3,000만명으로 감소하여 기본적으로 정부의

‘八七빈곤농가지원계획’(八七扶貧攻堅計劃)을 완성하였으며 농가소비구조도 뚜렷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농촌소비의 엔겔지수도 1995년의 58.6%에서 2000년에는 50.1%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十·五’기간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기초를 제공하였다.

나. ‘十·五’기간 농업과 농촌발전의 환경여건

21세기에 진입하여 경제의 세계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과학기술혁명도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산업구조조정도 강화되어 국제경쟁은 가열화 되고 있다. 특히 WTO의 중국가입으로 중국농업은 새로운 발전기회와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十·五’기간동안 중국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의 거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현 단계 중국은 국민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공업화와 도시화를 강화하는 단계에 진입하였기에 보다 안정된 농업의 지원이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국민경제에서의 기초적인 지위는 더욱 중요시 될 것이며 강화될 것이다. ② 중국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비수준향상은 농산물수요를 자극할 것이며, WTO가입은 중국 농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제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수요잠재력이 풍부하다. ③ 西部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서부지역의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속도를 강화할 것이다. ④ 농업기술발전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생물기술, 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최첨단 농업기술의 신속한 발전 및 상업화는 농업의 진일보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⑤ 중국농촌의 도시화과정은 농업인구를 도시로 유입하게 할 것이며 이는 농업잉여노동력이전에 유리하며 농업 관련산업의 확장과 농업규모경제달성에도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九·五’기간 특히 1990년대 말 이래 중국농업과 농촌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十·五’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안들이다. ① ‘九·五’기간 중 1인당 농민소득증가속도는 해마다 감소하여 1996년의 9%에서 2000년에는 2%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부·서부 양곡주산지의 농가소득은 약간 하락하였다. 농가소득 증가속도의 하락과 도시와의 격차확대는 이

미 국내수요확대와 도시와 농촌의 비례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의 농민부담은 가중되어 농민생산적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② 농업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1인당 토지 자원이 감소되는 추세이며, 가뭄과 물 부족사태가 심각하다. 농업생태환경악화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어 농업지속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재해대체능력이 약화되는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 비합리적인 농업과 농촌경제구조는 시장에 날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③ 농업과 학기술이용의 총체적인 수준은 매우 낮으며 혁신능력이 취약하여 과학연구와 시장이 분리되고 과학기술성과보급율이 낮으며 보급체계도 비합리적이다. ④ 농업에서의 대외개방확대, 특히 WTO가입 후 농업생산과 농산물무역에서의 경쟁은 한층 강화되어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 ‘十·五’기간 주요 농산물 수급분석

‘十·五’기간 인구증가와 소비수준향상은 농산물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관련부문의 예측에 의하면 2005년 중국 총인구는 13.3억명 이내로 통제될 것이며 ‘十·五’기간동안 국민경제연간증가속도를 7%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국민영양섭취 수준도 제고될 것이며 2005년에 이르러 엔젤지수는 46% 하락할 것이며 2010년에 이르러 전국 1인당 1일 에너지섭취량은 2,300칼로리, 단백질 77g(이중 30%는 동물단백질), 지방 70g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위의 요인으로 ‘十·五’기간동안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안정 증가와 지속 합리화 추세를 가질 것이다. 양곡 중 식용소비는 감소되고 사료용, 가공용 양곡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수요는 증가될 것이며 농산물가공상품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여 초급단계의 1차 농산물에서 정밀가공·정밀포장의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생산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요구도 날로 강화될 것이다. WTO가입 후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국내시장에서부터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으로 전환 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축산물, 수산물, 채소, 과일, 화훼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2.1.2. 농업과 농촌발전의 지침과 주요 목표

가. 농업과 농촌발전의 주요 방향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농촌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 안정, 건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수요와 국민소비수준수요를 만족시켜 WTO 가입 후의 도전을 맞이하여야 한다.

(1)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에 대한 전략적 조정

국내·국제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농가소득의 증가를 기본 목표로 전반적으로 농산물품종·품질구조, 농업생산구조, 농업지역배치 등을 조정 및 합리화하고 농산물가공수준을 향상시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관련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농촌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촌 제2, 제3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촌도시화과정을 촉진하며 점차 농촌잉여노동력을 이전시켜야 한다.

(2) 새로운 농업발전모델 전환

새로운 단계의 농업발전요구에 따라 농업은 생산량증가중심에서 생산량증가와 품질향상을 중요시하는 단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농산물품질과 수익성을 적극 제고시켜야 한다. 전통적인 투입중심에서 전통적인 투입과 자본, 기술이 상호결합을 중요시하여 농업집약화수준을 제고시켜야 하며, 원료생산중심으로부터 생산, 가공, 판매 一體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관련효과를 확대하여 농업산업화경영수준을 제고시켜야 하며, 농산물증가중심에서 농가소득향상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원천을 확대시켜야 한다.

(3) 과학영농과 농업지속발전의 추진

‘농업과학기술요점’(2001년)에 따라 현대농업기술과 시설장비를 농업에 투자하고 선진 농업과학기술지식으로 농민을 교육하여 빠른 시일 내에 농업발전이 과학기술진보와 노동력수준 향상에 의존하게 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체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여 농업과학기술혁신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국외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술성과이용과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산업화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인재를 발굴하고 농민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시켜야 한다. 합리적으로 농업자원을 개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건립하여 생태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4) 농가소득증가

농가소득증가는 농업과 농촌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전반에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농가소득을 농업과 농촌경제업무의 기본목표로 하여 농업과 농업경제구조를 조절하고 농가소득기회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의 신속한 증가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농촌세수개혁을 추진하여 농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나. 주요 목표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업의 전반적 수준과 수익성을 제고하며 농업증가액의 평균증가속도를 5% 전후로 유지하고 농업생산액의 비중을 국민소득의 13%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농민소득정체현상을 개변시켜 1인당 연평균 소득증가속도를 5%로 유지시켜야 한다. 양곡생산성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농산물 품질수준을 향상시켜 시장경쟁력을 높여 국민경제발전과 인구성장 및 소비수준에 적응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과 기계장비수준을 제고시켜 농업기본생산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업종합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2005년에 이르러 전국 농업기계 총 동력은 6.2억 킬로와트를 달성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농업현대화를 추진하여 경제발달지역과 중·대형 도시교외지역의 농업현대화를 우선 실현시켜야 한다. 농촌도시화수준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농촌잉여노동력을 적극 이전시켜 2005년에 이르러 농업노동력 4,000만명 정도를 이전시켜 농업종사인원이 전사회 종사인원의 44%로 감소시켜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극소수 최하층의 농가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지역의 기본적인 생산·생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농촌경제체제개혁을 강화하고 중국실정과 지역특성에 부

합하는 사회서비스시스템, 농산물시장시스템, 농업지지도보호시스템을 건설 및 개선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수요에 적응하는 농촌경제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다. 발전임무

(1) 농업생산구조의 합리적인 조정 및 재배·축산·수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전반적인 농업수준의 제고 위에 합리적으로 재배업을 조정하고 축산업과 수산업 발전에 노력하며 농업생산구조의 진일보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재배업, 축산업, 어업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55.7%, 29.8%, 10.9%에서 50%, 33%, 13%로 조정하여야 한다.

(가) 재배업

농산물품질과 수익성제고를 핵심으로 양곡생산성 안정화를 전제로 지속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식부체계, 품종·품질과 지역배치를 조정하고 대대적으로 다산·양질·고효율의 농작물을 개발하여야 한다. 양곡작물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경제작물과 사료작물생산발전을 강화하여 ‘三元化’식부체계를 형성시켜야 한다. 농산물생산을 우위지역에 집중시켜야 하며 전문성, 집약화, 산업화경영수준을 제고시켜 수급균형과 지속제고의 목표를 실현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지역배치, 합리적인 구조조정, 비교적 높은 품질과 비교적 높은 경제수익성이 있는 재배업체계를 형성하여 한다. 양곡생산성의 안정적인 제고는 농업구조조정의 전제이다. 따라서 토지자원 특히 기본적인 농지보호수준을 강화하고 농업기반시설건설과 양곡생산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품양곡생산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2005년 전국경작지면적은 19.2억무 수준이 상으로 유지하며 ‘十·五’기간 양곡총재배면적을 16억무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축산업

양곡수급균형을 달성하고 동물성 식품에 대한 국민소비수준이 향상된 유리한 상황에서 축산업을 신속히 발전시켜 농업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농가소득 증가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2005년에 이르러 축산업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주요 축산물생산을 안정적으로 제고시키며, 축산물품질의 개선, 축산물가

공수준의 제고, 품종다양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축산업발전은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양질·다산·고수익성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축산과 가금의 우량종 번식과 동물검역방역체계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료자원을 개발하고 사료용 작물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초원조성을 확대하고 사료공업을 대폭 발전시켜야 한다. 축산물사육방식을 변화시키고 개별농가의 사육기술을 개선하고 적당한 규모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집약화 사육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점적으로 큰 규모의 선진적인 현대화 축산물 가공업체의 대표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외의 선진적인 축산물가공기술과 설비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축산물가공수준과 종합이용수준을 제고시켜 축산업의 산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 어업

‘양식업을 위주로 양식·어획·가공업을 결부시켜 지역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육성’의 지침에 따라 어업구조를 합리화시켜야 한다. 수산양식업을 신속히 발전시켜야 하며 선진적인 양식방법을 대폭 보급하여야 하며 고효율의 생태형 수산양식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건이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기술·자본집약형의 기업화 양식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어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2005년에 이르러 양식생산량의 비중은 어업총생산량의 67%를 달성하여야 한다. 근해어획밀도를 엄격히 억제시키고 해양어획량의 마이너스성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양어획체계를 조정하여 원양어업을 중점적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해양어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켜 공해에서의 생산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수산물가공업을 적극 발전시켜 수산물가공의 종합이용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2005년에 이르러 어업가공생산량이 어업총생산량의 40%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업기반시설건설과 사회서비스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산물품질안전감독시스템을 건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어업을 발전시켜 어업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005년 수산물 우량품종 피복비중은 70%를 달성하고 어업기술이용수준을 제고시키고 주요 양식업병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여야 한다. 어업법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업관리제도를 건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5년 내지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어업은 기본적으로 건전화한 어획업, 발달된 양식업, 새로운 관광어업 및 양질의 어업생태환경의 산업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2) 농산물품질의 전반적인 제고와 시장경쟁력의 강화

농산물품질제고를 제1의 목표로 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농산물품종체계를 합리화시키고 농산물품질을 대폭 개선시키고 농산물품질안전을 확보하여 ‘十·五’기간동안 농산물품질향상을 달성하여 날로 향상되고 있는 국민소비수준을 만족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농산물품종과 품질체계를 합리화시켜 시장수요의 다양성, 전문성, 고품질요구에 맞추어 소비자중심의 양질, 전문성을 가진 농산물생산을 대폭 발전시켜야 한다. 적절한 식용, 가공용, 사료용 양곡품질수준에 따라 양질 벼, 가공용 소맥과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양질의 잡곡생산을 확대하여 2005년에 이르러 벼의 고품질비율을 2000년의 50%에서 70%로 제고시켜야 한다. 양질의 전문용도 소맥재배면적을 한층 확대하고 가공용 소맥생산은 기본적으로 자급되어야 한다. 면화생산은 신강, 황하 중·하류, 장강 중·하류 등 3대 면화주산지를 기초로 안정적으로 집중되어 연결되어 있는 다산·양질의 면화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면화생산기지건설을 강화하여 방직업의 면화품질수요에 따른 양질의 면화생산을 대폭 발전시키고 면화산업화경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雙低’형 유채재배면적을 적극 확대하고 장강유역의 ‘雙低’유채주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2005년에 이르러 전국 ‘雙低’유채재배면적비중은 2000년의 유료작물총면적의 50%에서 70%로 제고시켜야 한다. 양질대두생산을 대폭 발전시키고 동북지역에서 대두·옥수수 윤작계획을 실시하여 황하·회하·해하지역과 장강유역지역의 대두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단위생산량의 제고와 품종을 개량하고 중점적으로 高油·고단백질의 대두생산을 발전시켜 다양한 대두품질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당류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산·多糖 양질품종을 대폭 보급시켜 단위생산량과 당분함유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채소, 과일, 화훼, 차 등 명품·특품·신 상품생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전문성 품종비중을 증가시키고 가공과 신선도유지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축산업은 생돈생산과 가금·계란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쇠고기·양고기와 고품질 가금육류생산을 대폭 발전시켜야 하며 2005년 돈육생산량은 육류 총생산량의 65%로 감소시키고 살코기형 돈육생산비중을 제고하여 소·양·가금 등 육

류생산비중을 35%로 제고시킨다. 유업과 양모생산을 중점 발전시키고 유업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액체상태의 우유생산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모방직업의 양질 세양모에 대한 수요에 따라 양질·세양모생산을 적극 발전시키며 중점적으로 면양 마리 당 생산량을 증가하고 품질을 제고시킨다. 수산물품종체계를 합리화시키고 유명·특화·신품종의 수산물품종비중을 확대하고 수산물가공에서의 신선도유지수준을 제고시킨다.

농산물품질안전수준을 질적으로 제고시킨다.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대대적으로 조직 및 실행하며 2005년에 이르러 대다수 농산물 및 가공상품의 품질이 국가표준 혹은 업계표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품질안전표준은 국가표준에 전부 도달하며, 초보적으로 일정한 시장경쟁력을 갖춘 브랜드화된 상품을 개발한다. 초보적으로 재배업 생산기기의 외부오염을 통제하고 기본적으로 농업자체오염을 통제하여 50%좌우의 농산물이 표준에 따라 생산됨에 노력하고 중 축산물·가금상품의 검역통과비중은 100%에 도달하고 시장샘플조사 품질안전율은 95%이상에 도달하여야 한다. 초보적으로 어업수질오염상황을 완화시키고 기본적으로 어업약품잔류, 농약잔류, 유독·유해물질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여 75%의 주요 수산물생산이 표준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주요 수산물 시장샘플조사 품질안전율은 90%이상에 도달하여야 한다. 대대적으로 무공해농산물생산을 추진하고 그린식품, 유기농산물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건전한 농산물품질안전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관련법규조례를 개선하여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3) 농업의 지역배치의 합리화와 지역비교우위의 충분한 발휘

각 지역의 자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특화를 확대하고 중점 산업을 육성하며 지역특성에 알맞는 우위농산물을 발전시키며, 기초적인 시장경쟁력을 갖춘 산업지대와 산업군을 형성시킨다. 농산물불균형시기에 형성된 ‘소생산 다품종(小而全)’생산 구조를 변화시켜 주요 농산물생산의 우위지역집중을 촉진시켜야 한다. 특색농업발전을 지역배치합리화의 중점사안으로 하여 규모생산을 형성하고 브랜드화를 창출하고 기동산업을 육성하여 중국농업으로 하여금 구역화, 전문화, 산업화 방향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농업발전의 지역분업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동남연해의 경제발달지역과 중·대형 도시의 교외지역은 대대적으로 개방형 농업, 고기술 농업,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시장수요에 적응하는 농산물생산을 적극 발전시켜 수출외 환획득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중부지역과 양곡주산지는 양곡생산우위의 장점을 살려 상품양곡, 가공용 양곡, 사료용 양곡 생산기지건설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양곡생산능력을 제고시키고 축산업과 식품가공공업의 발전으로 양곡가공비중과 양곡 생산수익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서부대개발전략수행의 유리한 여건 하에 발전목표의 조정과 중점사업의 육성으로 발전모델을 전환시켜 서부지역 농업과 농촌경제발전과 생태환경보호를 하여야 한다. 서부지역발전목표는 농업과 농촌경제의 질과 수익성을 추구하여 농가소득을 증가뿐 아니라 생태환경보호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중점적으로 초지보호 및 건설을 추진하여야 하며 계획적으로 경작지를 임지·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색농업, 물절약농업, 생태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가공업을 대폭 발전시켜 특색 있는 원료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의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기초와 지방특화·민족특화의 농산물가공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발전방향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생산과 경영방식을 개혁하고 과학기술과 농업산업화경영의 길을 따라 집약화 경영을 실행하여야 한다.

농업의 지역배치 합리화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수자원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절약 농업의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해 지도하며 관개지역의 물절약과 비관개지역의 물절약을 모두 중요시해 경작지물절약수준을 강화하고 건설공정과 농업기술, 농업기계, 생물기술, 화학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결합시켜 다양한 물절약기술을 응용한 해당 지역수자원에 적절한 농업재배구조와 경작제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공업의 대폭 발전과 농업연관효과의 확대

시장을 안내자로 하고 가공능력의 개혁, 개조에 입각하여 농산물가공, 신선도 유지, 저장기술과 설비의 도입, 개발을 추진하고 농산물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산물가공수준을 비교적 높은 단계로 제고시켜야 한다. 중점적으로 양곡, 유류, 육류 등에 대한 정밀가공, 가공수준향상을 발전시키며 채소, 과일, 우유 등 가공

발전을 농산물가공기업의 새로운 성장극으로 삼아야 한다. 농산물가공상품 및 그의 제품은 다양성, 영양성, 편리성, 안전성, 품질성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중요 농산물상품의 총체적인 품질은 선진국가의 현단계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특화가공산물은 국제선진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공업분포를 합리화시켜 동부지역과 중·대형 도시의 농산물가공수준을 확고히 하고, 제고시키는 동시에 서부대개발전략 및 향진기업구조조정과 결부시켜 중·서부 지역의 농산물가공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중·소기업을 연합하여 전반적으로 농산물가공업을 발전시키고 주식제, 주식합작제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중점적으로 큰 규모의 높은 수준의 농산물기업가공기업을 육성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龍頭기업과 브랜드상품을 창출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업발전과 농업산업화경영을 결부시켜야 한다. 이는 농산물가공공업발전을 촉진하고 농산물가공수준을 제고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도경이며 농업연관효과를 극대화하고 농민소득을 증가하는 효과적인 도경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공기업, 유통조직, 중개조직 등 龍頭기업발전을 지원 및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농민과 이익공동배분·위험공동부담의 경영체제를 형성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켜야 한다.

(5) 향진기업발전수준과 농촌도시화수준의 지속적인 제고와

농촌잉여노동력의 점차적인 이전

지속적으로 향진기업구조를 합리화 시켜 ‘적극지원, 합리기획, 분류지도, 준법관리’의 방침에 따라 향진기업으로 하여금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구조조정, 기술진보와 체제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발전을 하여야 한다. ‘十·五’기간 중 향진기업 생산증가액 속도는 매년 10%수준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수출액은 매년 8%수준으로 증가토록 하여야 하며 2005년에 이르러 향진기업인원은 1.37억명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산업정책에 따라 제1산업을 강화하고 제2산업을 합리화시키고 제3산업을 발전시켜야 각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향진기업산업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향진기업을 지도하여 농업산업화경영발전을 인도하고 농수산물가공·저장·신선도유지·운수판매업을 대폭 발전시키고 고기술

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발전을 권장토록 하여야 한다. 2005년에 이르러 전국 향진 기업증가액 중 제1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 전후로 안정시키고 제2산업은 74% 전후로 감소시키고 제3산업은 25% 전후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향진기업 지역분포를 합리화시키고 향진기업의 상대적 집중을 유도한다. 동부지역은 기술, 자본집약형 산업과 개방형 산업을 발전시키며, 중부지역은 발전과 제고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술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점적으로 노동집약형 산업과 자원가공형 산업을 발전시켜며, 서부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향진기업의 동·서 지역합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향진기업발전과 소도시건설을 결부시켜 향진기업의 소도시집중을 권장하고 농촌에서의 제3산업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향진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상품품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체제혁신을 추진하여 소유권제도개혁과 경영체제개혁을 강화하고 과학관리를 실현하고 실정에 따라 기업의 경영방식과 조직형태를 탐색하며 조건이 허락될 경우 현대기업제도를 점차 건립하여야 한다.

안정적으로 소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 소도시발전은 농촌잉여노동력을 이전하고 도시와 농촌의 비례적 발전의 효과적인 도경이다. 소도시건설은 합리적인 배치, 과학적인 계획, 적정한 규모, 효과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급 도시와 인프라여건이 훌륭하고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鎮급 소도시에 발전의 무게중심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기능을 구비하여 인구집중, 농촌지역경제와 사회중심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도시발전의 초점은 소도시경제번영에 있으며 향진기업의 합리적인 집중을 유도하고 농촌시장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산업화경영과 사회서비스발전을 소도시건설과 결합시켜야 한다. 투자채널을 확대하고 정부주도하에 주로 시장에 따라 소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 소도시발전의 정책을 제정하고 소도시 호적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경작지보호와 농민권익보호 하에 소도시 건설부지를 해결하여야 한다.

점차 농촌잉여노동력을 이전시켜 한다. 지속적으로 농업내부취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향진기업의 농업노동력이전기능을 발휘시켜야 한다. ‘十·五’기간동안 향진기업은 농촌노동력 1,000만명 정도를 흡수하여야 하며, 농촌에서의 제2, 제3산업을 강화

하고 농촌소도시건설을 강화하여 제2, 제3산업과 소도시의 인구흡수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十·五’기간동안 농촌소도시는 농촌잉여노동력 2,500만명 정도를 흡수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내수확대정책을 추진하는 유리한 기회에 농업과 농촌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여 진일보 농촌생산·생활 및 시장여건을 개선하며, 적극적으로 일부분의 농촌노동력을 기반건설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노동수입을 확대토록 하여야 한다.

(6) 농업개간개혁과 발전 및 농업현대화를 위한 시범화 기능

농업개간체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농업개간경제관리체제, 기업경영체제, 사회보장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다양한 소유권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수준 높은 농업이원화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농업현대화 및 산업화과정에서의 시범기능을 발휘하여 시장경제요구에 부합되는 산업구조와 상품구조를 확립하여 양질·다산·고수익의 농업비중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용두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3산업 비중과 수준을 강화하여 서비스부문을 확대하여야 한다. 품질과 수익성제고의 전제하에 농업개간경제의 적절한 발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2005년 농업개간사업생산액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1,010억위안을 달성하여야 하며 연간증가속가 7%를 달성하여야 한다. 현대화 시범농장을 건설하여 전국농업현대화 실현을 위해 시범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을 기반으로 기능이 구비된 농업개간 소도시를 건설하여 최하층 농장의 발전과 직원가정소득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중점 건설사업

(1) 안정적인 농산물생산기지 건설

‘시장수요에 따르고 과학기술진보에 의존하여 발전목표를 조정하고 지역분포를 합리화하고 건설내용을 개선하고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요 농산물생산기지를 확립’하는 인식에 따라 주요 농산물생산기지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2005년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양질의 전문성을 지닌 양곡생산기지, 양질의 면화생산기지, 유료생산기지, 당류생산기지, 대두생산기지를 건설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물절약농업시범화사업을 ‘3원화구조’재배

시범화사업, 농업개간기업의 천연고무 등 생산기지건설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무공해농산물과 그린식품생산기지를 건설하며 생태환경이 우월한 지역에서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그린식품생산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일부 지역에 농산물수출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수출농업발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산물생산기지건설에 있어서 생산량, 품질, 수익을 결부시키고 품질과 수익성제고를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분포에서 우세산지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충분한 생산량을 제공할 수 있는 몇 개의 생산지대, 지역, 산업지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기반시설건설과 과학기술정보기반시설건설을 결합시켜 기술투입수준을 제고하며, 생산기지의 생산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지의 시범기능과 인도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선진기술 시범기지, 농업구조조정 모범기지, 농업산업경영의 선도적 기지, 농가소득증가의 선행적인 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2) 농업우량종자사업과 동식물보호사업의 확대와 ‘육토(농지정지)사업’확대

(가) 농업우량종자사업

‘十·五’기간동안 중점적으로 농작물우량종자, 축산가금우량종자와 수산물우량종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점적으로 감자와 고구마 독성제거·대량번식센터, 양질품종육종번식센터, 농작물종자가공 및 유전자형질변형종자의 검사, 종자품질인증 및 검사 및 농작물종자유전자보존 및 감정 등 센터를 건설하고 종자산업기반시설을 강화 및 개선하고 우량종자의 종합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점차적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과 품종배양체계를 건립하여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육종, 생산, 판매기능을 보유한 종자산업체계를 건립하여 산업화경영을 실현하여야 한다.

(나) 축산가금우량종자사업

과학적인 축산가금우량종자체계를 건설하고 이용가치 있는 축산가금희귀품종(보호농장)구역, 유전자보관센터를 건설하고 전국種畜품질검사센터와 지역의 품질검사센터 및 품질검사를 건설하여야 한다. 일련의 축산가금종자농장과 축산가금자원농장과 유전자보관센터를 건립하여 우량종자보급율을 제고하고 양질의 축산물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다) 수산물우량종자사업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신품종배양과 유전자배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량품종의 보호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국외의 도입우량종자에 대한 산업화경영을 실현하고 수산물종묘사업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품질과 수익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수산물유전자보관센터, 국가급 수산물종묘양식장, 우량종묘양식장, 수산물육종센터, 수산물유전자검사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

(라) 동식물보호사업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소, 지역의 주요 식물검역실험실, 주요 병해충진급방제시설, 성급 단위의 농약검사소, 部급 농업잔류측정센터 등 사업을 건설하여야 한다. 현 단계 식물보호체계 위에 전국적인 주요 역병예찰체계와 주요 병해충예찰방제체계, 유해생물검역방역체계를 건설하고 검역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안전성을 보장하고 농산물품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속적으로 동물역병 진료감독체계, 동물약친보관운송의 냉동시스템과 동물방역감독과 수의약감사시스템, 기술지원과 생산자료보장체계, 주요 동물역병통제시스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물종묘, 지역간 교류의 종묘에 대한 검역사업을 강화하고 축산가금과 어류용 사료의 품질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 옥토(농지정지)사업

중점적으로 토양비옥도측정체계, 정보관리체계, 신기술개발실험체계, 사업종합시범체계를 건설하여 토양, 비료, 수자원배치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성과와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농업기본생산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생태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3) 농업사회서비스체계의 지속적인 건설과 개선

(가) 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과 개선

지속적으로 성급, 시급, 현급 농업기술보급센터(소)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술보급

수준과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에 따라 輕重에 따라 현급 농업기술보급종합센터를 건설하여야 한다. 농업세수개혁과 지방행정조직개혁수요에 따라 기층 농업기술보급조직의 관리체제와 운행체제를 개혁하며 행정구역을 타파한 농업기술보급지역센터, 전문성을 타파한 농업기술보급종합센터건설을 적극 권장하며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농업과학기술시범농장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술보급방식을 개혁하고 서비스 방법을 전환시킨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기술인원교육을 진행하며 기업, 연구소, 학교의 농업기술보급을 권장한다.

(나) 농촌경제정보시스템 건설

농업과 농촌경제발전, 농업구조조정과 농가소득향상의 목적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부문을 주체로 전국의 성, 시, 현 및 절대다수의 향진, 농업용두기업, 농업도매시장, 중개조직, 대규모 농가를 연결하는 농업종합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중점적으로 농산물수급, 가격, 농업생산자료, 농업생산과 농업이용기술 등 정보수집시스템을 건립하며 점차, 部, 성급, 지역, 현급 및 일부 용두기업정보처리시스템을 건설하며, 部소속의 정보센터·언론매체·중앙농업학교 등 정보분산창구를 건설하며, 농업부업무자동화시스템을 개선하고 ‘十·五’기간의 ‘농촌시장정보서비스행동계획’을 조직 및 수행한다.

적극적으로 농촌경제관측과 관리시스템건설을 추진하고 농촌집단재무의 전산화처리를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현과 향급 농촌재무관리방법을 혁신하여 정보전달, 처리 및 분산을 갖춘 시스템을 형성하여 농촌 각종 정책수행상황을 전달하고 농촌경제종합관측과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촌경제종합관리인원을 육성하여 높은 수준의 농촌경제종합관측관리집단을 양성한다.

(다) 농산물품질표준시스템과 품질검사감독시스템 건설 및 개선

농산물품질, 안전, 위생수준제고를 목표로 ‘무공해식품운동계획’을 조직 및 실시한다. 농산물 품종, 생산, 가공, 품질안전, 포장, 저장 분야에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을 제정하며,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표준화생산종합시범지역을 건설하며, 농업품질감독관측체계를 개선하고 部급 품질검사센터를 새롭게 건설 혹은 확대 건설하며, 농산

물품질인증체계를 건설 및 개선하고 농산물품질인증업무를 강화하며, 농산물품질 안전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여 법적 집행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라) 농업생태환경감독측정시스템 건설

기존의 농업생태환경감독관측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전국 농업생태 환경, 어업수역환경감독관측체계 및 주요 농업생태환경오염사고의 진단과 감독관 측체계를 건립하며, 농산물품질안전과 농업생태환경감독관측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농업부 환경감독관측센터와 성급 농업환경감독관측센터(소) 및 지방의 농업환경감독관측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마) 농산물도매시장건설 강화

중점적으로 채소, 과일, 육류, 가금·계란, 수산물, 화훼, 특산물 등 농산물주산지에 전국규모 혹은 지역규모의 대형 농산물산지도매시장, 무공해식품, 그린식품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를 개축 혹은 확장건설하며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서비스기능을 강화시키며 농업산업화경영수준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림부에서 인증한 산지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품질안전감독검사네트워크를 건설하여야 하며 관련설비투자를 확대하여 이와 같은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농산물시장진입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도매시장의 정보네트워크와 전가결제 등 선진거래방법을 시범 운영하여야 한다.

(바) 농업산업화경영인프라 건설

계획적으로 국가급 농업산업화경영시범지역과 시범사업을 건립하며 각 성, 자치 구, 직할시에서는 정부의 종합계획 하에 성급 시범지역과 시범사업을 건설하여 지역성, 전문성, 대규모의 농산물생산, 유통, 가공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농업산업화 국가중점 용두기업의 과학기술센터건설을 강화하여 국가중점 용두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농업산업화경영정보망을 건설하여 산업화경영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어업법제체계와 민간어업부두건설

중점적으로 어업지휘관리시스템설비, 200해리 전속경제수역 및 내륙의 큰 강, 큰

호수와 변경지역의 어업지도선박, 부두, 교통통신설비 및 기타 법집행설비건설을 진행하여 어업법집행수단과 수준을 강화하고 국가의 어업권익을 수호하며 1급 민간어업부두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부두건설을 강화하며 관련시설을 구비시켜 어민들의 생명재산안전과 보급측면에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농업과학기술기반시설건설의 지속적인 강화

중점적으로 농업부 중점실험실의 개조와 건설을 진행하며 국가의 주요 과학사업과 육종센터, 지역센터의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농업유전자평가 및 감독통제센터 및 감독관리체계를 건립하며 국가식품신품종관측실험중심과 分會를 건립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고효율의 식물신품종관측실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국가동식물품종자원보존체계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의 종자유전자보관센터, 국가종자유전자포건설 등을 건설하여 종자공급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동물냉동정액보존센터를 건설하고 유전자자원의 해당지역보존업무와 원산지보호지역건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야생식물보호구와 멸종수생야생동물보호구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 주요 정책조치

(1) 농촌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농촌토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統分結合의 이원화경영체제를 안정시킨다.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농가의사에 기초하여 여건을 구비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토지경영권이전에 대한 제도개혁탐색을 권장하며 이전·재도급·주식제·상호교환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토지의 규모농가, 농업기업에로의 집중을 촉진하고 규모경영을 발전시키고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자원배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양곡·면화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변화 하에 시장수요에 따라 양곡·면화유통체계개혁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획득한 경험을 기초로 전반적으로 농촌세수개혁을 추진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농촌신용협작사를 개혁하고 농업은행의 역할을 발휘시켜 농촌금융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켜 주식제, 주식협작제 등 방법으로 농업경영체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시장주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정에 맞는 농업협작형태를 탐색하여

농민의 시장진입을 인도하고 농업과 농촌경제관리체제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강화

‘十·五’농업과 농촌경제발전목표를 실현하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점차 국가, 집단, 농가와 각 업계가 결합된 농업투자체계를 건설하여야 한다. 재정과 신용자금의 농업투자비중을 증가시키며 농업재정지출은 경상재정지출증가폭보다 높아야 한다. 농업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의 각 단계에 투자하는 동시에 종자공급, 시장정보제공, 농산물가공, 포장, 저장운송, 판매 등 단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소도시, 농촌도로, 물공급,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역량을 동원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중·대형 기업의 농업투자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농민을 지도하여 농업투입을 증가토록 한다.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외국자본을 충분히 이용한다. 경제세계화와 WTO가입에 따라 농산물수출입정책 및 금융, 재무, 기술 등 분야의 법규를 연구, 제정 및 개선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강화한다. WTO의 ‘그린박스’정책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농업지원과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중점적으로 농업기반시설과 생태환경건설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키고 농업과학기술진보를 지원하고 농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농업기술이용수준을 제고시킨다. 새로운 해양제도의 실행으로 인한 어민들의 산업이전, 취업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농업산업화경영의 적극적인 발전

농업산업화경영발전을 농업현대화실현의 중요한 방법으로 농업경제수익성제고와 농가소득증가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중요시하여야 한다. 농업부 등 8개 부문의 ‘농업산업화경영중점용두기업육성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농업산업화경영용두기업발전을 육성하여야 한다. 농업산업화경영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육성의 주도산업과 중점사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지역적인 주도산업과 주도상품의 개발, 농산물생산기지의 건설, 용두기업육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정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자본과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고기술·정밀가공형 용두기업을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주문형 농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용두기업의 농산물수매위협기금건립 등 방법을 통해 용두기업과 농가간의 안정된 수급관계를 건립하여 이익공동배분, 위험공동부담의 경영체제로 전환시켜 서로 의존하고 서로 발전토록 하여야 한다. 농산물시장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여 개방되고 통일되고 질서 있는 농산물유통체계를 건설하여 농산물유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4) 농업과학기술진보와 혁신의 대폭적인 추진

농업과학기술혁신속도를 강화하여 농업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해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혁신체계, 효율적인 과학연구성과이용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건립하고, 농민의 지식수준향상을 위한 농업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의 방향과 중점을 조정하여 생산량제고를 중요시함과 동시에 보다 더 고품질, 고수익성에 눈길을 돌려 주로 농업생산을 위한 연구방향을 생산, 가공, 판매의 전 과정을 위한 연구로 전환시키며 자원소모형 기술개발위주에서 자원절약형 기술개발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양질, 다산, 특수, 소비자위주의 동식물신품종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양질의 농축수산물 신품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가공, 저장, 신선도유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고 농산물가공기술과 비용절감·수익증가 농업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농업기술의 농가보급을제고를 중심으로 각급 농업기술보급기관을 강화하고 기술보급수준을 제고시킨다. 기술보급에도 시장개념을 도입하여 유상과 무상기술제공을 결합시킨다. 과학연구소, 학교, 기업, 농업과학기술인원로 하여금 기술개발, 기술자문, 기술주식제,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보급과 제공사업에 종사토록 적극 권장한다. 농업과학기술체제개혁을 강화하여 과학연구와 현장이 분리된 문제를 해결한다. 농업과학기술교육, 산학결합 등을 통해 농업과학연구성과의 이용수준을 제고한다. 조건을 구비한 농업과학기술연구기관의 기술형 기업 혹은 기업그룹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부분 과학연구기관은 농업과학기술과 정보중개자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농민직업기술훈련과 교육을 강화하여 농민의 기술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농민의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하여 多채널, 多층차, 다양한 형식의 농민기술훈련

체계를 건설하고 농업방송학교, 전문기술훈련반, 직업고등학교, 원격교육, 제2교육, 농민야학 등 형식을 통해 농민기술훈련과 농촌기술보급업무를 강화한다. 또한 ‘그린카드사업’, ‘21세기 청년농민교육사업’, ‘농업기술전파보급사업’ 등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농민의 기술이용능력과 생산기술수준을 제고시킨다.

(5) 농업전문합작경제조직의 대폭적인 육성

적극적으로 농민의 전문협회, 생산·판매서비스팀, 전문합작사 등 다양한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운행체제와 경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농민 및 그들의 합작경제조직을 주체로 한 농업사회서비스제공체계를 건립하여 농민의 조직화 정도를 향상시키고 시장위험감소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민의 시장진입을 인도한다. 농민자원의 기초 위에 향촌 집단경제조직의 농산물판매, 생산자재공급, 농업기술보급 등을 조직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한다.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 규장제도를 제정하고 행위를 규범화하며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농민중개인계층을 대폭 발전시키고 규범화한다.

(6) 농업환경보호의 강화

경작지, 초원 수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오염을 엄격히 통제한다. ‘옥토공정’을 대폭 조직 및 실행하고 벼짚과 같은 퇴비면적을 증가하고 유기비료사용을 증가하고 일부 지역은 윤작 혹은 𪎏科재배 등 휴경작물을 재배가능토록 하여 토양비옥도를 향상시킨다. 북부지역의 초원과 남방지역의 산지초원의 보호와 건설수준을 강화하고 초원의 퇴화, 사막화, 알칼리화를 방지한다. 어획허가제도와 양식허가제도를 개선하여 어획시기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양자원, 어업자원, 수역생태환경을 보호한다. 물절감농업을 대폭 발전시켜 수자원이용수준과 수익성을 제고시킨다. 정부의 서부대개발전략에 따라 서부지역의 농업생태환경건설과 농업기반시설투자를 강화한다. 농업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오염을 통제한다. 지속적으로 농업에너지건설과 생태농업시범 현(縣)건설을 추진한다.

(7) 농업기계화의 적극적인 추진

농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농업기계화장비와 생산구조를 합리화시키고 안정적으

로 농업기계장비율을 제고시켜 전반적인 농업기계화수준을 향상시킨다. 2005년까지 전국 경작수확종합기계화율 39%달성을 목표로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농업기계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선진 농기구연구, 개발, 보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양곡작물생산기계화수준을 추진시키고 소맥생산기계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점적으로 벼의 이앙, 수확과 옥수수수확 등의 기계화를 강화하고 경제작물, 축산업, 농산물가공기계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면화, 대두 등 작물생산기계화를 추진하고 종자선별 등 단계의 기계화수준과 양곡의 산지 건조를 강화하고 초지생산기계화를 추진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종합이용기술, 발작물기계화농업기술보급, 기계화 보호형 경작기술연구를 추진하며,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농업용 항공업을 발전시킨다. 농업기계화서비스제공체계를 건립 및 개선하고 농업기계화법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표준을 개선하고 농업기계감정, 품질감독, 감리업무를 강화한다.

(8) 빈곤호(농촌최하층) 지원과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중시

중·서부지역의 소수민족지역, 혁명근거지지역, 변경지역, 최하층 지역의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현 단계에서 극소수의 생존여건이 악화되고 자연자원이 결핍한 지역의 인구에 대해서는 退耕還林還草(경작지를 임지, 초지로 전환)를 통해 이전과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빈곤지역의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기본생산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빈곤호지원과 지적 수준개발을 결부시켜 빈곤지역의 교육, 문화, 위생사업발전을 중요시한다. 점차 재정의 빈곤호지원자금을 증가하고 빈곤지원기금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빈곤지원대출을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빈곤농가소액대출을 확대하여 빈곤농가생산을 지원한다. 서부대개발과 결부시켜 빈곤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각 계층과 각 업계를 동원하여 빈곤지원과 개발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의 지정빈곤지원사업과 연해지역의 성과 도시와 서부 빈곤지역의 자매결연을 통한 빈곤지원사업에 협조한다. 빈곤지원과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당·정 제1지도자 책임제를 실시한다.

(9) 농업법제건설의 추진

지속적으로 농업입법을 강화하고 농업법적체계를 개선한다. 입법연구업무에 치

중하고 입법수준을 향상시킨다. WTO규정에 따라 관련법규를 수정 및 제정하며 국내외 관련농업정책법률을 수집한다. 농업집법업무를 강화하고 종합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행정처벌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시킨다. 농업집법체계와 집법인원건설을 강화하고 집법감독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2.2. 주요 농정정책

2.2.1. 토지도급제도개혁정책

- 목적 : 토지도급관계에 대한 관리 강화
- 내용 :
 - － 토지사용기한 30년 연장
 - － 농가와 토지도급사용계약서와 토지도급경영권증서 체결
 - － 임의의 토지도급계약기간축소, 도급토지의 환수, 토지도급사용비용추가부담 등 행위에 대한 검사 및 시정
 - － 토지도급계약, 토지도급사용비용의 징수 및 사용제도와 관리제도의 개선 및 관리
 - － 관련입법업무를 추진

2.2.2. 농민부담경감정책

- 목적 : 농가소득증가와 농촌 안정화
- 내용 :
 - － 농업세수법규정책의 엄격한 집행
농업세, 농업특산세, 도축세의 실질 징수와 평균부담금지; 강제징수 금지
 - － 농촌공제금액수의 엄격한 통제
농촌공제금 3년 불변정책
 - － 임의적인 비용징수, 자금축적, 벌금, 각종 부과금 금지
 - － 농민의 금전, 현물, 노력제공의 목표달성운동의 일정 금지
 - － 농업용 전기부담 경감

- 행정조직, 인원 및 지출의 구조조정
- 농민부담경감정책실시의 지도자책임제 실시

2.2.3. 향촌 불량채무 정리

- 목적 : 농촌경제발전과 농촌사회안정 도모
- 내용
 - 정리방법 : 향촌 자체실시와 현금 농업, 재정, 금융, 세무, 審計(감사)기구의 협조와 지도
 - 새로운 불량채무발생 근절
 - 향촌 2급 집단경제조직의 대출은 금융기관대출에만 한정.
 - 향(진)촌의 공익사업은 투입량산출원칙을 엄격히 준수. 군중감독기구 강화
 - 행정과 기업분리원칙 엄격히 준수
 - 향진정부의 인원구조조정, 지출감소
 - 세수정책의 엄격한 준수
 - 채권채무관계의 합리적인 처리
 - 방법 : 채무회수, 부채경감, 경매, 채무이전
 - 법에 따라 집행, 정책분계선을 엄격히 준수, 농가와 채권인권의 보장
 - 위법행위의 엄격한 조사와 처벌

2.2.4. 농촌합작기금회 정돈

- 목적 : 농촌금융질서확립, 금융위험감소
- 내용 :
 - 기본원칙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책임제
 - 위험자체부담
 - 농가합법적인 권리 보호
 - 주요 조치
 - 농촌합작기금회 신설을 금지
 - 재산정리(정부책임하에 농업은행, 인민은행지점, 재정, 공상행정관리부문

의 협조)
분류처리

2.2.5. 농업생산구조조정

- 목적 : 소비자 위주의 농업생산발전과 농가소득 증가
- 주요 내용
 - 농산물가격형성체제 개선, 관련세수우대정책의 지속 실시
 - 농업과학기술진보의 추진
 - 양질 농산물생산기지 건설과 가공수준 강화
 - 농산물시장체계건설
 - 농민합작경제조직 발전
 - 정보화 건설
 - 농업표준체계와 품질감독관리 강화
 - 투자확대

2.2.6. 양곡유통정책

- 목적 : 농가이익 보장, 양곡생산파동 피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양곡시장 정돈,
- 주요 내용 :
 - 양곡보호가격수매범위 축소(흑룡강, 길림, 요녕 및 내몽골동부, 하북 북부, 산서 북부의 봄 소맥과 남방의 여름 벼, 강남의 소맥은 2000년부터 보호가격수매에 제외)
 - 양곡수매가격정책 개선
 - 양곡초과저장보조방법에 대한 개선
 - 양곡수매시장관리 강화
 - 국유양곡기업 개혁
 - 양곡생산구조 조정
 - 보호가격에 근거한 농민잉여양곡수매
 - 양곡의 시장가격에 기초한 판매 추진

- 양곡수매보호가격의 합리적인 제정과 품질차이, 계절차이를 반영
- 정상적인 양곡수매질서 보장
- 재정부문과 농업발전은행의 국유양곡수매·판매기업의 경영지원

2.2.7. 면화유통정책

- 목적 : 면화수급 조절
- 내용 :
 - 면화재배면적 감축(신강면화생산발전 통제, 장강유역면화재배면적 감소, 황하유역 면화생산재배면적 대폭 감소)
 - 시장을 통한 면화가격 형성
 - 공소합작사의 면화기업개혁 추진
 - 면화품질관리강화
 - 성급 정부의 면화생산, 수매, 판매업무의 책임제

3. 주요 농정집행조직과 기능

3.1. 중앙정부 농업관련 각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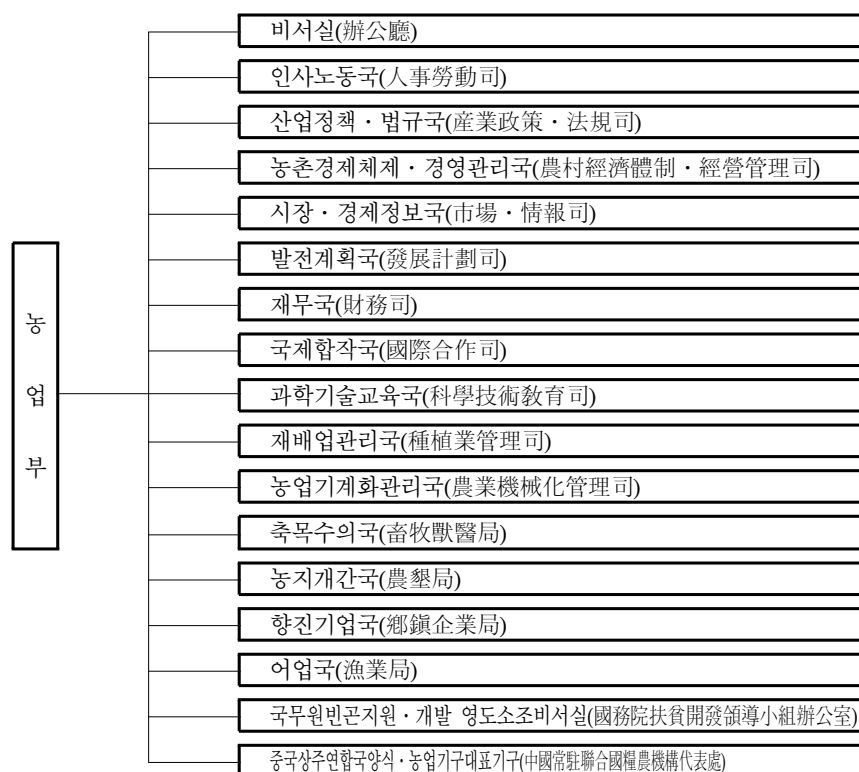
중앙정부 단계에서 농업 및 농산물과 직접 관련된 조직들은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등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의 조직체계와 관련기능은 다음과 같다.

3.1.1. 농업부 조직체계와 관련기능

농업부는 농촌경제업무를 관장하고 재배업, 축산업, 어업, 개간, 향진기업, 사료공업 및 농업기계화 등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능부문이다.

가. 조직체계

그림 1 농업부 조직체계도(주요 업무기구)



나. 주요 기능

-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전략,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구 및 기안하며, 상급조직의 비준을 받은 후 진행하며; 농업개발계획의 기안과 감독을 진행한다.
- 농업산업정책을 연구 및 기안하며, 농업산업구조의 합리적 조정, 농업자원의 합리적 배치, 품질제고를 지도하며 농산물 및 농업생산재가격, 관세조정, 대규모 농산물유통, 농촌신용사업, 조세, 농업재정보조 등에 관한 정책건의를 진행하고 재배업, 축산업, 향진기업 등 농업 각 산업에 관한 법률과 법규초안작성을 조직한다.

- 농촌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연구 및 제기하며 농촌지역서비스체계, 농촌 집체(집단)경제조직 및 합작경제조직 건설을 지도한다. 정부의 요구에 근거하여 농촌기본경영제도, 정책을 안정 및 완비시키고, 농촌경제이익관계를 조절하며, 농민부담과 경작지사용권 전환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 농업산업화경영정책과 큰 규모 농산물시장체계의 건설 및 발전계획을 연구 및 제정하며, 농업생산과정을 촉진시키며 ‘장바구니(菜籃子)계획’과 농업생산 수단시장체계의 건설을 조직하고 협조한다. 주요 농산물, 중점 농업생산자료의 수출입에 관한 건의를 제기하며 농업 각 분야 상품 및 농업생산자료 공급과 수요상황 등 농촌경제정보를 예측 및 반포한다.
- 농업자원기획, 생태농업 및 농업지속발전 업무를 조직하며 농업용지, 어업수역, 초원, 농업에 적합한 간척지와 습지, 농촌재생자원의 개발이용 및 농업생물종자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지도한다. 어업수역의 생태환경과 水生·야생 동식물 보호업무를 책임지며 국가어업권익을 수호하며, 국가를 대신하여 어선검사와 어업업무 및 어업부두의 감독관리권한을 대행한다.
- 농업과학기술연구, 교육, 기술보급 및 관련인원발전에 관한 계획 및 관련 정책을 제정하며, 과학 및 교육에 의한 농업부흥전략을 실시한다. 중요 고학연구와 기술보급 프로젝트의 선별과 실행을 조직하며 농업교육과 농업직업기능 개발업무를 지도한다.
- 농업산업기술표준을 기안 및 그의 실행을 조직하며 농산물 및 녹색 식품(그린 식품)품질감독, 인증업무와 농산물 신제품 보호업무를 조직한다. 종자, 농약, 수의약품 등 농업투입물의 품질측정, 검증, 법률감독관리를 협조하며 국내생산물 및 수입종자, 농약, 수의약품 및 관련비료 등 상품의 등록과 농업기계안전감리업무를 조직한다.
- 동식물방역과 검역에 관한 법률·법규초안을 작성하며, 정부간 협의, 협정을 조인하며, 관련기준을 제정하며 수의사, 수의약품관련업무를 조직하고, 국내 동식물의 방역, 검역업무를 조직 및 감독하며, 질병상황을 반포하고 방역업무를 실시한다.
- 정부간 농업관련 대외사무를 담당 책임지며, 국제경제, 기술교류와 협작을 진

행한다.

- 직속사업단위의 업무와 농업부 소속 기업개혁을 지도하며, 농업부 소속 기업의 국유자산가치보존과 증가를 감독하며, 권한에 따라 직속기관의 인사, 임금, 기구구성업무를 진행하며, 관련 사회단체를 지도하여 농업경제발전에 공헌하도록 한다.
- 국무원빈곤호지원(扶貧)개발영도소조의 일상업무를 책임 및 진행한다.
- 국무원에서 위임한 기타 업무를 책임 및 진행한다.

3.1.2.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요 농업관련 산하조직

가. 농촌경제발전司

주요 기능은 농촌경제발전전략을 제기하고 농업, 임업, 수리, 기상, 수산, 축산, 농업개간 등 발전계획과 정책을 조율하고 혁명근거지·소수민족지역·변경지역·빈곤지역의 경제개발계획과 지원계획을 편성하며 전국생태환경건설계획을 편성 및 실시하고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을 관측 및 분석하며 중대 사업을 배치한다. 산하기관은 종합處, 연도계획處, 수리處, 농업處, 임업處, 扶貧(빈곤지원)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경제무역유통司

국내외무역발전전략을 제기하며, 국내외 시장발전상황을 관측 및 분석하며, 국내 주요 상품의 시장균형과 수출입의 총량균형을 연구하여 주요 상품의 조절·통제정책을 제출한다.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국민생계와 대형, 중점민감상품의 수출입계획을 편성하며, 국제수지계획을 편성한다. 양곡, 면화, 식물성 식용유 등 주요 상품수출입계획을 편성하며, 정부상품수주, 비축, 투입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며 시장을 인도하고 조절한다.

다. 가격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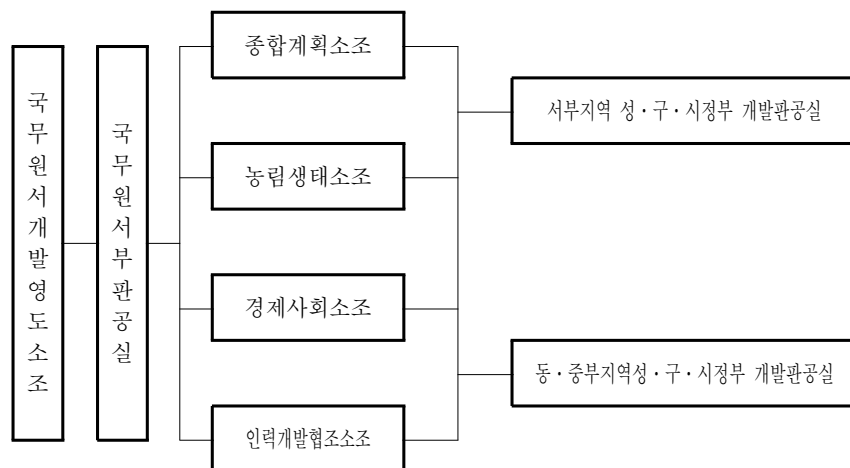
주요 상품과 서비스업의 가격정책을 제정하며 정부가격관리범위, 원칙, 가격제정방법을 제기한다. 정부관리상품가격과 비용징수기분을 조정하며 주요 농산물비용

을 조사하고 가격정책과 정부가격제정, 정부지도가격의 집행을 감독한다. 산하기관으로는 종합處, 계획處, 농산물과 농업생산자료가격處, 농산물비용조사處 등 부문이 있다.

3.1.3. 국무원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 및 관공실

국무원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관공실은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구성인원은 국무원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각 부처의 책임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 서부개발정책조치제정 및 추진 기반건설추진, 서부지역 생태환경보호와 건설 등 사안을 관장하고 있다.

그림 2 조직체계



○ 농림생태소조

국가계획위원회관련 司·局, 국무원 相關부문과 서부 각 성·자치구와 회동하여 서부지역 농림수리건설, 농촌경제발전, 구조조정, 생태환경보호와 건설, 자원개발과 건설정책을 제기하며, 서부지역의 退耕還林(草)(농경지를 임지, 초지로 전환)계획의 추진을 조직하고 협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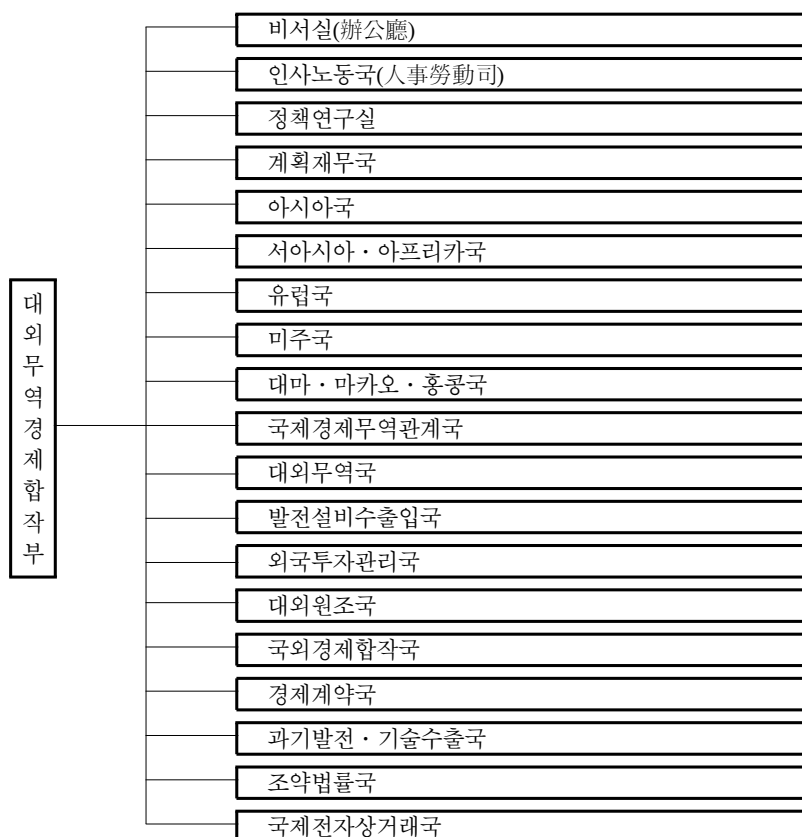
3.1.4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가. 대외무역시(국)

(1) 농산물수출處

농산물수출발전전략과 정책조치를 연구 및 제정하며, 전국 농산물수출상품에 대한 거시관리를 진행한다. 농산물수출상품의 쿼터관리와 홍콩·마카오에 공급상품 관리를 진행, 농산물수출수주업무를 관리하고 농산물국영무역제도와 수출자동허가 제도의 실행방안을 연구 및 제정한다. 멸종위기동식물수출관리업무를 관련기관과 함께 책임지며, 홍콩·마카오에 공급되는 신선·냉동 상품의 운송업무를 조직과 협조업무에 참여한다.

그림 3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조직체계



(2) 대외무역국 수입處

전국 수입상품(발전설비 제외)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책임지며, 수입상품구조합리화정책조치를 연구, 수입상품의 경영협조관리를 책임진다. 관련부관과 회동하여 수입상품쿼터, 등기 등 업무를 관리하며, 수입상품국영무역제도와 수입자동허가제도의 실시방안을 연구한다.

나. 아시아司(국)

- 주관국가(지역)의 경제무역정책을 제정 및 집행한다.
- 주관국가(지역)경제무역에 대한 종합연구·조사를 책임지며, 쌍방무역상황을 파악하고 상호무역흐름을 관측 및 분석하며, 상호무역관계에 대한 무역부 내부와 외부부문의 관계확립에 협조하며, 상호무역관계의 주요 사무를 처리하며, 상호무역을 발전시킨다.
- 주관국가에 대한 시장다원화전략의 실시를 책임진다.
- 주관국가 지역성 경제무역활동에 참가하고 관련협의를 제정한다.
- 駐주관국가대사관(영사관)의 경제상업處(실)업무를 지도하고 중국주재국가의 상무기구와 연계를 취한다.

3.1.5. 국가양식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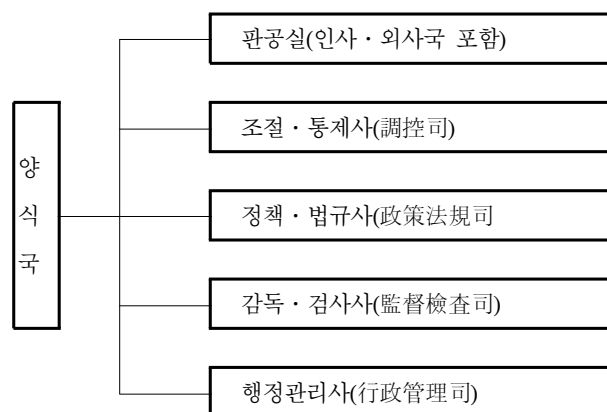
국무원의 기능기관으로 국가발전계획위원회관리하에 있는 전국양곡유통의 거시적 조절의 구체적 업무와 지도 및 중앙양곡비축에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전국양곡에 대한 거시적 조절 및 통제, 수급균형 및 양곡유통의 중·장기 계획, 수출입계획과 수매비축, 중앙비축양곡사용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건의를 제기하며, 전국양곡유통체제개혁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 전국양곡유통과 중앙비축양곡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초안과 관련 정책 및 관련 제도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의 집행을 감독하며 전국 양곡유통, 저장, 가공시설의 건설계획을 편성한다. 이 중 한도 내의 중·대형 건설항목을 규정절차

에 따라 보고 비준하며 양곡 정구가격, 수매보호가격과 판매한도가격의 원칙을 제기한다.

- 국가질량기술감독국과 협동하여 양곡품질표준의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양공저장, 운송의 기술적 기준을 제정하며 그이 집행을 감독한다.
- 양곡유통계통의 관리와 전 계통의 교육훈련을 지도하며 전 계통의 기술개선과 신기술보급을 지도 및 추진하며 대외교류와 합작과 계통의 통계업무를 책임진다.
- 중앙비축양곡의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그의 집행을 감독하며 중앙비축양곡의 규모, 총체적 배치와 수매, 판매, 수출입계획을 연구 및 보고하고 그의 실행을 감독한다. 중앙비축양곡의 재고, 품질, 안전을 감독 및 검사하며 중국비축양곡 총공사의 업무를 지도한다.
- 국무원과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기타 사항을 책임진다.

그림 4 국가양식국 조직체계도



3.2. 길림성의 농업관련 부처

3.2.1. 길림성 농업위원회(廳) 조직체계와 관련기능

가. 길림성 농업위원회(廳) 조직체계

그림 5 농업위원회 조직체계도(주요 업무기구)



나. 주요 기능

- 국가관련농업과 농촌경제업무의 지침, 정책, 법률을 집행하며, 길림성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전략, 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 및 승인을 받는 동시에 실시를 조직하며, 길림성농업개발계획을 제정하고 실행을 감독한다.
- 길림성 농업관련산업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며, 농업산업구조합리화, 농업자원의 합리적 배분, 품질개선을 지도하며, 농산물 및 농업생산자료가격, 대형 농산물유통, 농촌신용대출, 세수 및 농업재정보조 등에 관한 정책건의를 제기하며, 농업 및 농촌경제에 관한 지방의 법규조례초안을 기안하며, 농업법규실행을 감독·검사한다.
- 길림성 농업과 농촌업무의 조직과 지도를 책임지며, 농촌경제체제개혁에 관해 연구 및 건의하며, 길림성 농업사회서비스체계건설과 향촌집단경제조직, 합작경제조직건설을 지도하며, 농촌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개선하며, 농촌경제이익관계를 조율하며, 농민부담경감과 경작지사용권리이전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 농업산업화경영지침과 정책건의, 길림성 대형 농산물시장체계건설과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 및 제정하며, 농업생산·유통·소비 一體化를 촉진하며, ‘채소장바구니’사업과 농업생산자료시장체계건설에 대한 협조를 조직하며, 주요 농산물, 주요 농업생산자료의 수출입에 관한 의견을 제기하며, 농업 각 산업 및 농업생산수단수급상황 등 농촌경제정보를 관측하고 반포한다.
- 농업자원기획, 생태농업과 농업지속발전업무를 조직하며, 농업용지, 영농에 적합한 간척지, 농업재생자원의 개발이용 및 농업생물자원보호와 관리업무를 지도한다.
- 길림성 농업과학연구, 교육훈련, 기술보급 및 인력개발 발전계획과 관련정책을 제정하며, 科教興農(과학기술과 교육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전략을 실시하며, 주요 과학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보고, 심의 및 실시하며, 길림성 농업교육훈련과 농업직업기술개발업무를 지도한다.
- 지방 농업 각 산업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실행을 조직하며, 농업 각 산업생산물과 그린식품의 품질감독, 인증과 농업식물신품종의 보호업무실행을 조직하고 종자, 농약 등 농업투입물에 대한 품질감독·측정, 감정, 집법감독업무를 협조를 조직하며, 성내에서 생산 혹 성외에서 유입된 종자, 농약, 비료 등 상품의

등기를 조직하며, 농기계안전감리, 품질측정, 감정, 인정과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농기계수리·제조, 수리·보양체계건설업무를 지도한다.

- 지방의 식물방역과 검역에 관한 법규초안을 기안하고 관련기준을 제정하며, 성내의 식물방제, 검역, 피해상황반포와 방제업무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 길림성 농업개간기업, 직속기업개혁, 직속사업단위의 업무를 지도한다.
- 길림성정부 위임사안을 책임진다.
- 길림성정부규정에 따라 길림성 牧業관리국을 관리한다.

3.2.2. 길림성 발전계획위원회 주요 농업관련 산하기관

가. 농촌경제발전處

길림성 농촌경제발전의 전략을 제기하며, 농업, 임업, 수리, 기상, 축산, 개간 등 발전계획과 정책을 조율하며, 길림성 농업생태환경건설의 중·장기계획과 연도계획을 편성 및 실시하며, 길림성농업과 농촌발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며, 주요 사업을 배치하며, 농업산업화추진과 협조를 조직한다.

나. 경제무역유통處

길림성 내외무역발전전략을 제기하며, 길림성내외 시장발전상황을 관측 및 분석하며, 길림성내 주요 상품의 시장균형과 수출입의 총량균형을 연구하여 주요 상품의 조절·통제정책을 제출한다.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국민생계와 대형, 중점민감상품의 수출입계획을 편성하며, 양곡, 면화, 식물성 식용유 등 주요 상품수출입계획을 편성하며, 주요 상품의 수주, 비축, 투입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며, 상품시장건설의 발전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조율하며 상품시장건설 주요 사업을 배치한다.

다. 길림성 빈곤지원업무판공실(扶貧工作辦公室)

길림성 빈곤지역발전전략과 정책조치를 연구 및 제기하며, 길림성 빈곤지역개발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도계획과 지원계획을 제정하며, 길림성의 빈곤지역개발업무추진을 조직하고 빈곤지역개발사업을 관리하며, 재정금융부문을 협조하여 빈곤지원재정과 빈곤지원대출의 계획관리업무를 진행하고 빈곤지원자금사용에 대해 지도·감독·검사를 진행하며, 길림성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에 위임한 기타 사안을 책임진다.

3.2.3. 대외무역경제협력廳

가. 대외무역관리處

길림성 수출입상품발전계획과 정책조치를 연구 및 제정하며, 길림성 수출입상품 쿼터 연도계획을 편성 및 보고, 실행을 조직하며, 국가에서 제정한 수출입상품목록에 근거하여 쿼터, 허가증 확정, 발부업무를 책임지며, 길림성 수출입상품쿼터주요업무를 관리하며, 국가가공무역정책을 집행하며, 관련부문과 함께 길림성 각종 가공무역을 관리하며, 수출입상품브랜드등기 후의 관련업무를 책임지며, 국각수출입상회와 연계를 취한다.

그림 6 대외무역경제협력廳 조직체계도



나. 종합업무관리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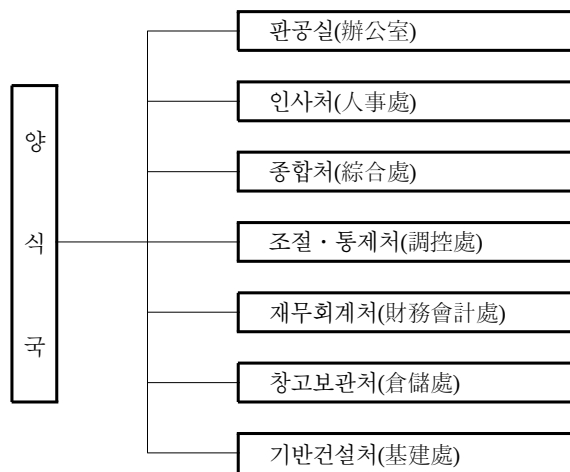
국가(지역)별 대외무역정책과 대 홍콩·대만·마카무역정책실시를 책임지며, 위임에 근거하여 외국정부와의 상호 무역담판을 진행하고 관련 문서를 체결하며, 상호무역관계중의 주요 사무를 처리하며, 위임에 근거하여 홍콩·마카관련 무역기관과 대만 정부위임을 받은 민간조직과의 무역담판 및 관련문서체결을 진행하며, 길림성에서 국내외에서 개최한 각종 무역경제교역회, 전람회, 박람회, 수출광업업무 등을 관리한다.

다. 길림성 糧食局

길림성 糧食局은 양곡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길림성 정부의 직속기관이다. 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부문과 함께 길림성 양곡에 관한 거시조정, 총량균형 및 양곡유통의 중·장기계획과 연도계획을 연구 및 제기하며, 길림성 양곡유통체제개혁방안을 제정하고 그의 실행을 조직한다.
- 국가의 양곡유통과 비축양곡관리지침과 정책 및 법규를 집행하며, 지방 양곡유통과 비축양곡관리의 구체적인 정책과 조례를 연구 및 제정하며, 길림성 양곡유통, 저장, 가공시설건설계획 등을 편성, 감독, 실행한다.
- 양곡수매가격, 양곡수매보호가격, 판매제한가격의원칙을 연구 및 제기하며, 양곡수매업무를 조직하고 협조하며, 재해지역양곡공급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하며, 군양곡공급을 보장한다.
- 길림성 품질기술감독국과 함께 양곡품질표준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양곡저장, 운송의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 길림성 양곡유통업체관리와 교육훈련을 지도하며, 업체기술혁신과 기술보급을 지도 및 추진하며, 국유양곡기업개혁을 추진하며, 대외교류와 협작을 책임지며, 양곡관련 정보와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통계업무를 책임진다.
- 관련부문과 함께 지방의 비축양곡을 관리하며, 지방비축양곡의 규모, 배치, 수매, 판매, 수출입계획을 연구 및 제기하고 감독 및 실시하며, 지방비축양곡의 재고, 품질, 안전업무를 감사하며, 업체안전생산을 지도하며, 길림성 비축양곡관리회사의 업무를 관리한다.

그림 7 길림성 양식국 조직체계도



- 양곡재무회계의 관리
- 양곡유통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양곡거래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양곡시장정보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양곡시장거래질서를 개선하여 양곡유통을 활성화시킨다.
- 양곡유류수출입계획과 기타 성과의 수급계약에 따라 공급물량을 배치하고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양곡유류운송관리업무를 책임진다.
- 길림성의 소금업무를 책임지며 식염전매법규실행을 조직하고 감독한다.
- 길림성정부의 기타 위임사안을 책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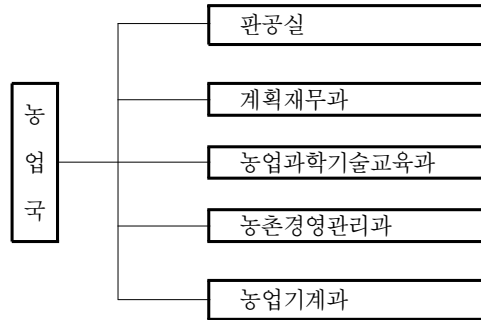
3.3. 지방정부 농업관련부문(길림성 白山市)

3.3.1. 白山市 농업국

백산시 농업국은 백산시 농촌경제를 주관하고 재배업, 농업기계화, 농촌생태환경보호 등 산업을 종합관리하는 기능부문이다. 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양곡재배업, 농업기계화, 농촌경제관리, 농촌에너지환경에 관한市委와 시정부의 농촌경제업무지침과 정책을 집행하며, 국가농업법집행·감독·검사를 책임지며, 백산시농업전문법규의 연구, 기안, 협조, 심의보고업무를 책임지며, 농민소득증가계획, 조치를 연구 및 제정하고 실시한다.

그림 8 백산시 농업국 조직체계도



- 백산시 농촌경제체제개혁을 지도하고 농촌경제체제개혁방안을 제정하며 시정부의 비준을 얻어 추진한다.
- 농산업발전기획, 계획의 편성 및 감독실시하며, 농산업 구조조정, 자원배치, 농산업간 총체적인 균형조율을 책임지며, 농산업건설사업의 심의, 보고,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주요 농산물수출입계획업무에 참여한다.
- 농산물, 농업생산자료 등 가격정책, 농촌신용대출, 세수와 재정보조정책의 연구제정에 참여하며, 종합적으로 경제수단을 이용한 시장조절과 생산조절에 참여한다.
- 백산시 농촌경제조직의 건설과 발전, 농촌가정도급제와 이원화경제체제의 안정과 개선을 지도하며, 향촌집단경제조직에 대한 관리업무에 대해 거시적인 지도를 진행하며, 농촌도급계약관리를 지도하고 농민부담경감업무의 감독관리를 지도하며, 농촌내부 각종 경제이익관계를 조율한다.
- 농업과학연구과제의 기술개발과 농업과학기술성과감정 및 보급을 조직하며, 농업서비스체계건설을 지도 및 조율하며, 농업방송교육, 농업실용기술교육, ‘그린카드’교육을 지도한다.
- 주관 상품의 市급기술표준제정을 조직하며, 농산업상품과 화학비료, 농약 등에 대한 품질감독, 측정과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농업분야에서의 성, 국가, 업계표준실행을 감독하며, 백산시 식물내부검역업무를 주관한다.
- 농업자원, 농업환경보호와 농업에너지업무를 관리하며, 농업자원과 농촌에너지의 종합이용을 지도한다.

- 관련부문과 함께 농업업무홍보활동을 진행하며, 농업관련부문의 대외경제, 무역, 과학기술교류와 대외업무에 협조하며, 농업외자유치사업을 지도하며, 농민노무수출과 농업기술수출 및 대외훈련교육을 조직한다.
- 주관사업의 업계관리를 책임지며, 농업기계감리, 감정을 책임지며, 농업기계사용과 수리보양관리를 지도한다.
- 성과 국가관련부문을 협조하여 농업, 농업기계화, 에너지환경보호, 사업자금, 물자 등 업무를 책임지며, 농업계통 전문사업비용의 사용, 관리, 감사를 책임진다.
- 市委와 시정부에서 위임한 기타 업무를 책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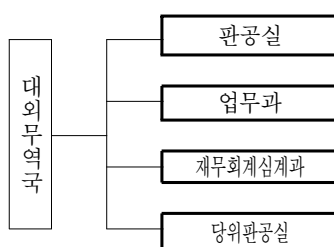
3.3.2. 백산시 발전계획위원회 주요 농업관련 산하기관

가. 농촌경제과

백산시 농촌경제와 임업발전의 주요 전략문제를 연구하며, 농업·임업구조기획을 편성 및 조정하고 관련정책의 구체적 조치를 제기한다. 백산시 농업, 임업, 수리, 수산, 전기, 농업기계, 축산, 특산, 기상, 토지, 향진기업 등 생산과 기반건설의 장기계획과 연도계획과 특산물시범기지, 농산물수출생산기지 등 전문사업계획을 편성한다. 농촌경제발전사업과 외자유치사업의 심의비준과 보고업무를 책임지며,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集貿)시장의 계획업무를 진행하며, 백산시 빈곤현경제개발계획제정을 조직한다. 관련부문과 함께 빈곤지원업무와 지원사업을 연구 및 확정하고 그의 실시를 감독하며, 지원자원관리하며, 백산시 각 부문과 각 현의 빈곤지원개발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며, 빈곤현의 개발성과를 감사한다.

나. 백산시 대외무역국

그림 9 백산시 대외무역국 조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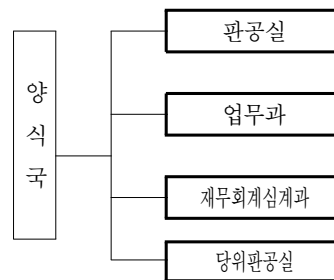


다. 종합업무과

전 계통의 업무를 책임지며, 백산시 수출상품의 중·장기계획과 연도계획을 편성하며, 백산시 수출상품허가증과 발전설비수출입업무의 상급보고와 분배를 책임진다. 대외무역다원화전략의 실행을 조직하며, 대외무역기업과 기타 관련기업을 조직하여 국내외 수출업교역회, 무역협상회, 상품박람회에 참석하며, 백산시 대외무역출장심의보고업무를 책임지며, 업무통계, 운송업무를 책임지며, 무역축진회업무를 책임진다.

라. 백산시 糧食局

그림 10 백산시 양식국 조직체계



주요기능

- 국가, 성, 시의 양곡유통지침, 정책을 집행하며, 양곡유통시장체계의 계획을 진행하며, 양곡유통유통의 거시적 조절과 시장물량조절을 실시하며 가격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킨다.
- 백산시의 양곡수매, 판매, 저장, 가공 등 단계에 대한 조절을 진행하며, 총량균형을 달성하고 수급을 조절하여 양곡유통시장을 안정시키며, 국가비축양곡·유통의 저장, 조달 등 업무를 지도한다.
- 업계관리를 책임지며 관리인원훈련을 진행한다.
- 업계 내 각 기업, 사업단위의 책임제자금분배, 기업심사, 재무계획집행상황을 감사 및 감독한다.
- 市委와 시정부에서 위임한 기타 업무를 책임진다.

4. 농업부문 예산과 재원조달

4.1. 중앙단계

4.1.1. 국가전체 예산

중국 국가재정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에 비해 최근 들어 상당히 증가되어 왔다. 통계에 의하면 재정수입은 1978년에 비해 10.9배정도 재정지출은 13배에 이르렀지만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각종 세수, 기업수익 등으로 충당된다. 1984년까지 세수와 국유기업의 상납이윤인 기업수익이 재정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5년에 국유기업의 이윤상납은 세금납부로 개정하는 제도개혁 ‘利改稅’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재정수입에서 세수항목이 대폭 증가하여 그 비중이 증가되었다.

이윤상납을 세금납부방식으로 개혁한 제도개혁의 목적은 이윤상납방식을 취할 경우 기업은 적자의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납부를 실행하면 기업의 흑자 혹은 적자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도 중국의 국유기업은 ‘친공산당’ 성향을 지니기에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밀접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개혁은 기업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경영주체’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利改稅’도 그 일환으로 되고 있다.

재정지출은 기반건설지출, 농촌생산지출, 문화교육비, 국방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지출운행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첫째 실질적자(재정적자에 국채, 국외차관을 더한 것)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둘째 각종 보조금이다. 양곡, 면화, 유류의 가격보조, 기업에로의 손실보전보조 등 명목이 다양하고 방대하여 재정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재정은 앞에서 기술한 국가예산에 계상되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 성정부)에서 사용되는 예산내 자금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부부문, 단위(조직)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예

산외자금이 있다. 이와 같은 예산외자금은 ‘제2의 예산’으로 불리우는데 이 자금에 대한 통제가 필요로 하고 있다.

표 5 국가재정수입과 지출 총액 및 증가속도

단위 : 억 위안

연도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차액	증가속도(%)	
				재정수입	재정지출
1990	2,937.10	3,083.59	-146.49	-	-
1991	3,149.48	3,386.62	-237.14	7.2	9.8
1992	3,483.37	3,742.20	-258.83	10.6	10.5
1993	4,348.95	4,642.30	-293.35	24.8	24.1
1994	5,218.10	5,792.62	-574.52	20.0	24.8
1995	6,242.20	6,823.72	-581.52	19.6	17.8
1996	7,407.99	7,937.55	-529.56	18.7	16.3
1997	8,651.14	9,233.56	-582.42	16.8	16.3
1998	9,875.95	10,798.18	-922.23	14.2	16.9
1999	11,444.08	13,187.67	-1,743.59	15.9	22.1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4.1.2. 농업예산 금액(금액/%) : 상동

농업에 대한 농업지출비중은 연간 총 재정지출의 8%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농업지출총액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총액뿐만 아니라 국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두자리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요 원인은 정부의 농업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한 결과이다. 하지만 각 연도별로 관찰하면 그 증가속도는 여전히 불균형하다.

중국의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국민경제성장속도, 재정의 농업지출규모, 경제발전의 단계적 특성 등이다.

국가재정의 농업에 대한 투자에서 중앙정부는 농업기반시설건설과 생산여건개선을 위해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하였다. 국가재정의 농업투입은

1,100여억위안에 이르렀는데 1990년보다 700여억위안 증가하였으며, 1990년의 3.75배 수준이다. 또한 유관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조성한 1,000억 수준의 재정국채에서 375억 위안을 농업생산여건개선, 수리시설, 천연림조성, 생태환경보전 및 개선, 節水관개농업개발 등에 사용하였다.

표 6 국가재정의 농업지출

연도	농업지출	비중(%)	단위 : 억 위안
			증가속도(%)
1990	307.84	9.98	-
1991	347.57	10.26	12.9
1992	376.02	10.05	8.2
1993	440.45	9.49	17.1
1994	532.98	9.20	21.0
1995	574.93	8.43	7.8
1996	700.43	8.82	21.8
1997	766.39	8.30	9.4
1998	1,154.76	10.69	50.7
1999			

주 : 1998년 농업기반건설지출에는 국채추가발행으로 배정된 지출을 포함.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4.1.3. 농업분야별 예산구성

표 7 농업지출에서 분야별 지출

연도	합계	농업생산지출과 농림수리기상 등 부문	농업기반건설	농업科技사업	단위 : 억 위안
					농업구제
1990	307.84	221.76	66.71	3.11	16.26
1991	347.57	243.55	75.49	2.93	25.60
1992	376.02	269.04	85.00	3.00	18.98
1993	440.45	323.42	95.00	3.00	19.03
1994	532.98	399.70	107.00	3.00	23.28
1995	574.93	430.22	110.00	3.00	31.71
1996	700.43	510.07	141.51	4.94	43.91
1997	766.39	560.77	159.78	5.48	40.36
1998	1,154.76	626.02	460.70	9.14	58.90
1999		677.46			42.17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4.2. 지방정부

중국에 있어서 현재도 그럴뿐더러 장래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재정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분리하고 재정권한이 중앙, 지방 중 어디에 있느냐를 고찰하는 것은 중앙집권과 지역주의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分稅制’(지방세와 국가세금을 분리하는 제도)가 재정개혁의 종착역으로 되고 있다.

‘分稅制’는 지방정부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 상납하는 제도를 국가세금과 지방세로 분리하고(分稅制)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각자 확립하는 것이다.

1979년 이전에 중국은 ‘統收統支’(통일징수 및 통일지출로서 지방수입을 중앙정부에서 흡수하여 다시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배하는 제도)제도를 실행하여 중앙정부 권한이 막강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실행한 3차례의 개혁을 통해 지방에 재정관리를 책임지는 제도를 실행하였다. 1차 개혁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실행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2차 개혁은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 실행된 ‘세수항목을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을 조사·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3차 개혁은 1988년부터 실행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지방에서의 재정청부제’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립된 分稅制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는 직책권한의 구분을 기초로 한 세수항목의 구분이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무장경찰(전경), 중점건설항목, 중앙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외채무의 원리금지불, 중앙직속 행정사업단위의 비용에 대해 책임지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둘째로는 구체적으로 세수종류를 중앙재정고정수입, 지방재정고정수입, 공통수입(국가와 지방이 공유하는 세수)을 구분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수지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재정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중앙과 지방의 고정수입, 공통수입은 다음과 같으며 分稅制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실행하였다. 셋째로는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수지구조에 큰 변화를 이루었다. 표와 같이 재정수입에서 1990년 중앙재정수입은 33.2%,

지방재정수입은 66.2%로서 지방재정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런 현상은 1993년까지 지속되었지만 1994년부터 중앙재정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 이르러서는 중앙재정수입은 51.1%, 지방재정수입은 48.9%로 변화되었다. 또한 재정지출에서 1990년에 중앙재정지출은 32.6%, 지방재정지출은 67.4%에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앙재정지출은 30%, 지방재정지출은 7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로는 分稅制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沿海의 각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 고조를 억제하려는데 의도가 있다. 중앙정부는 60대40으로 중앙과 지방 재정비율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정책이래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을 지속하였기에 재정 측면에서 우대조치를 받은 광둥성, 복건성 등 연해 각 성, 시는 재원이 풍부하여지게 되었다. 특히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는 개발·투자중심으로 연해지역에서 서부으로 이전하고 있다.(西部大開發) 이를 위해서 연해지방 성, 시의 자금을 중·서부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分稅制정착의 관건으로 되고 있다.

표 8 분세제 하의 재정수입항목

중앙정부고정수입	관세, 세무부문에서 대리 징수한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소비세, 중앙기업소득세, 지방은행·외자계열 은행·비은행 등 금융기업소득세, 철도부문·각 은행본점·각 보험회사본점 등이 일괄 납부하는 수입(영업세, 소득세, 이윤 및 도시유지건설세 포함), 중앙기업의 납부 이윤
지방정부고정수입	영업세(중앙정부단계의 것을 제외), 지방기업소득세, 지방기업납부이윤, 개인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고정자산투자조절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자동차·선박사용세, 인화세, 도살세, 농·목축업세, 경제사용세, 계약세, 유산·증여세, 토지부가가치세, 국유지유상사용세
공동수입	부가가치세(중앙 75%, 지방 26%) 자원세(자원유형에 따라 구분되어짐,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정부에 귀속) 기타 대부분은 지방정부수입에 귀속) 증권거래세(중앙 50%, 지방 50%)

자료 : “분세제재정관리체제실행에 관한 국무원결정”, 1993

표 9 분세제 하의 재정지출항목

중앙정부재정지출	국방비, 무장경찰(전경)비용, 외교 및 원조지출, 중앙단계행정관리비, 중앙정부통제하의 기반건설투자, 중앙직속기업의 기술개조와 신제품개발비, 지질조사비용, 대농업지원, 중앙부담의 국내외 원리금부채반환, 중앙부담의 공안, 검찰, 사법기관지출 및 문화, 교육, 과학 등 각종 사업비용
지방정부재정지출	지방행정관리비, 공안·검찰·사법비용, 일부 무장경찰(전경)비용, 민방위사업비, 지방통제하의 기반건설투자, 지방기업의 기술개조와 신제품개발비, 농업지원, 도시유지 및 건설비용, 지방의 문화·교육·위생 등 사업비, 가격보조지출

자료 : “분세제재정관리체제실행에 관한 국무원결정”, 1993

표 10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비중

단위 : 억 위안

연도	절대치			비중(%)	
	전국	중앙	지방	중앙	지방
1990	2,937.10	992.42	1,944.68	33.8	66.2
1991	3,149.48	938.25	2,211.23	29.8	70.2
1992	3,483.37	979.51	2,503.86	28.1	71.9
1993	4,348.95	957.51	3,391.44	22.0	78.0
1994	5,218.10	2,906.50	2,311.60	55.7	44.3
1995	6,242.20	3,256.62	2,985.58	52.2	47.8
1996	7,407.99	3,661.07	3,746.92	49.4	50.6
1997	8,651.14	4,226.92	4,424.22	48.9	51.1
1998	9,875.95	4,892.00	4,983.95	49.5	50.5
1999	11,444.08	5,849.21	5,594.87	51.1	48.9

주 : 국내외 채무수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표 11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단위 : 억 위안

연도	절대치			비중(%)	
	전국	중앙	지방	중앙	지방
1990	3,083.59	1,004.47	2,079.12	32.6	67.4
1991	3,386.62	1,090.81	2,295.81	32.2	67.8
1992	3,742.20	1,170.44	2,571.76	31.3	68.7
1993	4,642.30	1,312.06	3,330.24	28.3	71.7
1994	5,792.62	1,754.43	4,038.19	30.3	69.7
1995	6,823.72	1,995.39	4,828.33	29.2	70.8
1996	7,937.55	2,151.27	5,786.28	27.1	72.9
1997	9,233.56	2,532.50	6,701.06	27.4	72.6
1998	10,798.18	3,125.60	7,672.58	28.9	71.1
1999	13,187.67	4,152.33	9,035.34	31.5	68.5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길림성의 경우 중국 국가재정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5년부터 1999년 기간 길림성 재정수입은 1999년에 이르러 1,012,821만 위안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1995년의 1.6배이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1999년에는

2,346,231만 위안으로서 1995년의 1.94배에 상당하며 여전히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의 재정적자규모도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원인은 길림성의 경우 중앙직속기업이 많으며, 또한 농업성이기에 연해 각성보다 경제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농업에 대한 길림성 투자는 중앙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결정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정책을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정수입취약으로 인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농업에 대한 투입을 살펴보면 농임수리기상 부문 사업비와 농업종합개발비용이 빠른 증가를 가져왔지만 농업생산지원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2 길림성 재정수입과 지출

단위 : 만 위안

연도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차액	증가속도(%)	
				재정수입	재정지출
1995	632,803	1,209,012	-632,803	-	-
1996	763,998	1,455,266	-763,998	20.7	20.3
1997	828,508	1,677,548	-828,508	8.4	15.2
1998	936,374	1,900,966	-936,374	13.0	13.3
1999	1,012,821	2,346,231	-1,012,821	8.1	23.4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표 13 길림성 재정의 농업지출

단위 : 만위안

연도	총재정지출	총재정지출증가속도	농업지출	농업지출증가속도(%)	총 지출에서 농업비중(%)
1995	1,209,012	-	91,569	-	7.5
1996	1,455,266	20.3	105,436	15.1	7.2
1997	1,677,548	15.2	122,390	16.1	7.3
1998	1,900,966	13.3	172,463	40.9	9.1
1999	2,346,231	23.4	149,227	-13.5	6.3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표 14 길림성 농업분야별 지출

단위 : 만위안

연도	농업생산지원	농임수리기상부문 사업비	농업종합개발비	합계
1995	26,402	54,265	10,902	91,569
1996	26,547	62,417	16,472	105,436
1997	34,904	73,687	13,799	122,390
1998	33,005	120,425	19,033	172,463
1999	26,206	104,539	18,482	149,227

자료 : 2000년 중국통계연감, 주 : 재정권한

중국경제는 1978년의 ‘개혁·개방’ 이래 分權化경향에 따라 지방(성)과 기업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르러 그의 폐해(지역격차 증가 등)도 지적되고 있다. 1994년에 실행한 ‘分稅制’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방과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강화이다.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부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정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예산이 단순히 경제효율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중앙권한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연해지역 특히 광둥성, 복건성 등은 이를 반대하여 왔다. 분세제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이 어느 정도 타협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예산에 관한 전국적인 재정내역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국에서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이야기와 같이 법에 따라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국재정실태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3. 농업투자(지출)의 주체와 현황¹⁾

농업투자의 주체는 재원조달원천으로부터 분류하면 정부의 재정지출, 은행의 신용대출, 집단축적기금, 향진기업의 축적, 농가자금, 국외투자 및 기타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 부분은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의 鄭洪濤 외 논문을 인용함.

표 15 조달원천별 변화추세

기간	재정지출	집단투자	신용대출자금	향진기업자금	단위 : %	
					농가자금	외국자본
1980-1997	3.5	-1.85	12.39	5.7	19.49	18.44
1985-1995	4.56	6.44	4.2	-0.21	14.67	17.62
1990-1997	6.12	67.95	9.3	-5.96	10.43	2.14
1994-1997	6.46	18.72	20.1	-19.49	-1.56	-6.18

4.3.1. 국가재정의 농업지출

농업에 대한 농업지출비중은 연간 총 재정지출의 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지출연평균증가율도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정부의 농업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한 결과이다. 하지만 각 연도별로 관찰하면 그 증가속도는 불균형하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국가재정의 농업지출증가속도는 3가지 측면에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국민경제성장속도이다. 21세기에 들어서 국민경제성장속도는 뚜렷이 늦추어질 것이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1998년의 GDP증가속도는 7.8%로서 1991~1995년의 12%보다 훨씬 낮으며, 1996년의 10.7%, 1997년의 8%보다 낮다. 이는 GDP성장속도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재정수입증가속도도 1999년에는 1998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지만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의 24.8%에서 1995년에는 20.0%, 1996년에는 19.6%, 1998년에는 14.2%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또한 1979년부터 중국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일부 연도에 수입이 지출을 초과한 외에 특히 1986년부터 매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였을 뿐더러 차이도 더욱 커져가고 있어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부채액도 방대하다. 정부재정지출증가속도의 감소에 따라 정부의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증가속도도 감소할 것이다. 둘째, 재정의 농업지출규모이다. 셋째, 경제발전의 단계적 특성이다. 경제발전과 종합국력의 강화로 농업지원이 가능한 일로 되고 있다. 또한 경제세계화 추세에 의해 농업의 기초적 지위는 더욱 중요하여 지고 있어 농업투자증가에 대한 노력은 각 계층의 공동한 인식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정부재정의 농업에 대한 증가에 유리하다.

4.3.2. 신용대출

현단계에서 중국금융체제개혁은 점차 강화되어 있으며 각 전문은행의 기능도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신용대출은 점차적으로 전의 정책신용대출위주에서 정책대출과 상업대출을 모두 중요시하는 기능으로 전환할 것이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특성 때문에 대출이율은 매우 낮으며, 또한 중국의 농업경영규모가 작은 요인으로 단위비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농업신용대출의 증가는 어려울 것이다.

4.3.3. 농촌집단경제의 투자

현재 대부분 농촌집단경제는 약화되었으며, 기존의 집단에서 소유한 기업은 모두 개인에게 청부하여 집단경제의 투자는 매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부 통계자료에서 집단경제투자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정부 혹은 세계은행에서 매년 지방농업에 투자하는 재정부외에 신용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신용대출은 집단경제조직이 담보하고 있지만 대출상환은 최종적으로 여전의 농민의 몫이다. 따라서 통계상에서 신용대출자금과 집단자본을 동일시하여 중복계산하며 집단경제의 투자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제조직은 일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역농업기반건설에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산업화와 집단경제조직도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때 집단경제조직의 농업투자는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향후 10년 동안은 2%대를 유지할 것이다.

4.3.4. 향진기업의 투자

과거에 향진기업발전은 농업생산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향진기업의 농업투자절대수치는 비교적 낮는데 이는 주로 경제환경 원인으로 향진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하락된 것과 관련이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외 실질수요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면 향진기업도 점차적으로 활력을 되찾아 수익성과 이윤도 점차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향진기업과 농촌, 농업관의 '혈연'적 관계로 향진기업의 경제회복은 농업에 대한 지출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0~2005년간 향진기업의 농업투자는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4.3.5. 농가투자

개혁개방이래 농민 1인당 소득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경제발전에 따라 농민의 취업기회도 진일보 증가하며 특히 농업에서의 농업과학기술의 보급과 기반시설여건의 개선 및 농업산업화정책 등으로 일정 기간동안 농민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농가소득증가는 다만 농업에 대한 농가투자증가에 가능성만을 제공하여 준다. 현단계에서 농가소득은 다원화 추세를 가지고 있다. 농업소득은 농가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진입하여 대폭 하락하여 1990년의 74.4%에서 1997년의 60.65%로 하락하였다. 이와 반대로 농가의 제2·3산업에서 획득한 소득은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농가의 투자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농민의 투자기회와 투자대상의 증가 및 농업생산의 특수성은 농가의 농업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공산품과 농산물 가격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이와 같은 농가부담은 인구수에 의해 평균 부과한 것으로서 농가의 농업투자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상기의 요인에 의해 향후 몇 년간(2000~2005년) 농가의 농업투자증가속도는 감소할 것이다.

4.3.6. 외국투자

1990~1997년 사이에 중국농업의 외국자본유치는 파동이 심하였지만 총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WTO가입 및 중국농산물시장 특히 양질의 농산물시장 잠재력은 풍부하다. 향후 중국농촌기반시설과 사회여건의 개선됨에 따라 농업에 대한 투자도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4.3.7. 기타 투자

경제의 발전과 현대농업의 확대로 국내외 기타 경제조직의 이미 혹은 향후 농업에 대한 투자자의 하나로 되고 있다. 현재 일부 기업들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투자경로가 다양하며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

5. 농산물의 대외수출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5.1. 수출정책 수립(담당부처)과 기능

5.1.1. 대외무역司

- 대외무역관리체제개혁과 상품수출입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업무지침과 실행방안을 제정한다.
- 상품수출입쿼터관리제도를 연구 및 제정하며, 전국 상품수출입쿼터연도계획을 편성하고 하부조직에 하달함과 동시에 그의 실행을 조직한다.
- 상품수출입허가증관리제도제정을 책임지며, 상품수출입허가증관리대상품목을 확정한다.
- 상품수출입쿼터수주정책제정을 책임지며, 그의 실시를 조직한다.
- 변경무역정책제정을 연구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 품질전략에 따라 수출입상품품질관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명품수출’활동을 추진하며 수출광고홍보를 지도하며, 관련단위에 위탁하여 ‘검사실행수출입상품종류표’를 제정 및 조정, 반포한다.
- 다양한 새로운 국제무역방식을 연구하고 보급한다.
- 가공무역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고 그의 실행을 조직한다.
- 시장다원화전략을 연구 및 제정하고 그의 실행을 조직하며, 국내대외경제박람회, 교역회 등 무역촉진활동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 각 종 기업의 대외무역경영권자격기준을 연구 및 제정하며, 전국 각종 기업의 대외무역경영권 자격심의업무를 책임지며, 국가지정경영의 수출상품기업과 주요 공업품, 농산물수입경영자격심의를 책임진다.
- 전국여행상품, 소액무역경영권의 심의업무를 지도한다.
- 수출입상회, 무역대리협회와 연계를 맺는다.

가. 농산물수출處

농산물수출발전전략과 정책조치를 연구 및 제정하며, 전국 농산물수출상품에 대

한 거시관리를 진행하며, 농산물수출상품의 쿼터관리와 홍콩·마카오에 공급상품 관리를 진행하며, 농산물수출수주업무를 관리하며, 농산물국영무역제도와 수출자동 허가제도의 실행방안을 연구 및 제정하며, 멸종위기동식물수출관리업무를 관련기관과 함께 책임지며, 홍콩·마카오에 공급되는 신선·냉동 상품의 운송업무를 조직과 협조업무에 참여한다.

나. 대외무역국 수입處

전국 수입상품(발전설비 제외)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책임지며, 수입상품구조합리화정책조치를 연구하며, 수입상품의 경영협조관리를 책임지며, 관련부관과 회동하여 수입상품쿼터, 등기 등 업무를 관리하며, 수입상품국영무역제도와 수입자동허가제도의 실시방안을 연구한다.

5.1.2. 아시아司(국)

- 주관국가(지역)의 경제무역정책을 제정 및 집행한다.
- 주관국가(지역)경제무역에 대한 종합연구·조사를 책임지며, 쌍방무역상황을 파악하고 상호무역흐름을 관측 및 분석하며, 상호무역관계에 대한 무역부 내부와 외부부문의 관계확립에 협조하며, 상호무역관계의 주요 사무를 처리하며, 상호무역을 발전시킨다.
- 주관국가에 대한 시장다원화전략의 실시를 책임진다.
- 주관국가 지역성 경제무역활동에 참가하고 관련협의를 제정한다.
- 駐주관국가대사관(영사관)의 경제상업處(실)업무를 지도하고 중국주재국가의 상무기구와 연계를 취한다.

5.1.3. 농업부 국제합작司

- 중국농업대외개방과 국제합작의 관련계획을 연구 및 제정하며, 중국농업대외업무를 제도를 제정하며, 농업대외업무를 지도, 조율, 관리한다.
- 각 국 농업합작과의 농업부관련부문합작업무에 대해 관리한다.
- 중국과 연합국농업기구, 세계양식계획, 국제농업발전기금간의 업무연계와 합작을 관리하며, 각성의 국제농업발전기금대출사업의 보고, 1차심의, 추천업무

를 관리하며, 정부간, 부문간 농업협치, 협정의 협상, 조인의 조직업무, 관련대외사무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조율업무를 책임진다.

- 농업경제, 기술, 무역의 국제교류와 협작을 지도하며, 대중국원조와 도입외국 자본사업의 유치업무를 책임지며, 대외원조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관련사업신청업무를 책임진다.
- 세계농업생산, 무역발전추세 및 정책방향을 연구하며, 농업과학기술과 경제무역정보를 수집하며, 대응책과 건의사항을 제출한다.
- 중국주재연합국양곡농업조직대표처의 업무를 지도한다.
- 관련주관사업단위의 업무를 지도한다.

5.2. 국제무역관계司(대외 통상마찰 대처)

주요 기능

국무원의 위촉에 따라 중국의 WTO가입협상을 책임지며, WTO협상과정에서의 국무원관련부문의 입장, 의견을 조율하며, 구체적으로 협상을 조직한다. WTO가입 후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WTO관계를 처리하며,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다자간무역협상 즉 서비스무역, 투자조치, 공업품관세, 공업품보조, 농산물관세, 농산물관세쿼터, 농산물국내지지, 농산물국영무역, 지식재산권 등 문제협상에 참여한다.

- 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타 다자간대외무역협상, 국제서비스무역, 국제경제무역조약, 협정의 협상과 조인을 책임지며, 협상방안을 계획하며, 국무원 관련부문의 협상과정에서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한다.
-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경제무역조직의 활동에 참여한다.
-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지역국제무역조직의 활동에 참여한다.
- 다자간경제무역정책을 기획 및 집행하며, 국제경제무역조약과 협정의 국내실행상황을 파악하고, 협상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대외에 승낙한 중국경제무역체제개혁과 주요 대외무역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 대중국 원조와 기부자금에 대한 관리를 진행한다.

- 중국주재관련국제조직대표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연계한다.
- 산하에는 1~7처까지 있다.

5.3. 현단계 농산물대외수출의 문제점

5.3.1. 농산물품질표준체계와 관련 인증 및 관리체계의 미비

현단계에서 중국 농산물은 국제시장에서 풍부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수준은 아직도 비교적 낮다. 예를 들어 과일류 수출량은 국내총생산량의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주요 원인은 선진국가일수록 농산물품질과 안전성요구가 높으며 일부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요구는 생산단계부터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단계 중국생산체계에는 품질과 관리문제가 산재하고 있으며 완비된 농산물품질표준체계와 관련 인증 및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5.3.2. 농산물수출국가확대의 한계

현단계의 중국농산물수출확대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수출물량도 비교적 적으며 수출시장은 다양화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화교거주지역과 주변국가와 지역 예를 들어 홍콩, 마카오, 독립국가연합체 등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현단계 중국우세농산물을 유럽과 미주 등지에 수출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다.

5.3.3. 농산물수출관련 정책과 조치의 미비

관세, 시장진입 문제를 고려하여 할 동시에 중국은 더욱이 생산, 시장, 가공 등 측면과 무역자유로 인한 관련정책조치들이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시장측면에서 유명브랜드창출, 상품의 등급기준, 시장조직육성, 시장중개조직의 육성, 시장감독기능 등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5.3.4. 농민의 시장진입에 있어서 조직화수준과 기업경영수준 문제

현단계의 중국농민의 시장진입에서 있어서 조직화수준은 매우 낮으며, 생산, 유통, 무역 등 분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경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통경영수준도 매우 낮다. 이는 더욱 중국농산물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5.4. 해결방안

기존의 농산물수출에서 양곡과 유류수출입은 국영양곡·유류기업에서, 면화수출입은 공소합작사에서, 농업생산수산물수출입은 국가지정 국영기업에서 독점하고 있었으며 정부관리 외의 기타 품목수출은 중국수출입허가제도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종사하고 있다.

WTO가입으로 인한 새로운 무역환경은 중국으로 하여금 농업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정책수정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은 WTO가입이라는 변수를 전제로 향후 정책을 검토하여 보려 한다.

5.4.1. 향후 중국농업발전의 목표와 방향

- 주요 농산물수급의 안정적인 증가
-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증가
- 농산물시장체계의 개선과 건설

5.4.2. 해결방안

농업시장경제체제개혁의 심층 추진

- 목표
 - 시장조절을 기초로 시장기능과 정부의 거시적 조절이 결합된 농업의 시장경제체제건설의 건설
 - 농산물공급의 안정화와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제고
- 조치
 - 체제개혁의 핵심은 농업발전에 대한 시장조정의 기초적 기능을 확립하고 시장을 통해 농업자원배치와 농산물수급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1) 농업경영주체에 개혁의 진일보 추진

○ 목표

- 농가가정도급제의 진일보 안정과 개선을 통해 농촌에서의 토지를 기초로 한 소유권제도를 건설하고 다양한 선진 기업형 경제조직 및 농민합작조직을 건설하고 농업一體화와 농민조직화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 조치

- 농가가정도급제안정과 개선의 핵심은 농가경영주체지위를 더욱 보장하는 것이다.

(2) 농산물유통체제개혁

○ 목표

- 상이한 규모와 유형의 시장구조의 개방되고 경쟁력이 있으며 규범화되고 질서 있는 농산물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에 대한 시장의 조절기능을 강화한다.

○ 조치

- 농산물시장체계의 건설(구체적인 조치로는 農貿市場(농민시장)의 대폭발전,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도매시장의 중점 육성,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농산물 선물시장의 건설)
- 농산물시장중개조직의 육성(판매규모가 큰 개별판매농가의 육성, 농민사회와 전문조직 및 기타 경제조직의 육성을 통해 농민조직화수준제고, 공소합작사체제개혁의 추진, 향진기업육성, 전문중매인원의 육성)
- 시장관리의 강화와 시장질서의 보장(각종 시장법규의 개선, 시장관리수준 강화, 부문독점과 지역봉쇄를 타파)

(3) 농업의 대외무역체제의 개선

○ 목표

- 국제시장에서의 중국농업경쟁력강화와 자국농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통해 WTO가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 조치

- 농산물무역체제의 개혁(수출촉진과 농업보호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농산물관세제도의 개선(총체적인 농산물의 관세수준의 지속적인 감소, 농산물관세구조의 합리화

- 중국현단계 농업관세구조의 불합리성에 근거하여 非중요 농산물 혹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 즉 축산물과 원예작물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 관세징수와 밀수타격)
- 동식물위생검역제도의 강화와 개선(기술무역장벽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지 않음)
- 대외무역관리체제의 개혁(현단계의 주요 농산물수출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대외무역기업에서 독점 경영하고 있음. WTO가입은 이런 체제의 변화를 초래함. 따라서 대형 농업기업 혹은 농산물가공에 종사하는 향진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을 확대하여 직접 국제경쟁에 참여토록 유도, 합의한 일부 주요 농산물쿼터를 일정 비율로 사영기업에 배분)
- 농산물수출촉진기능을 건립(선진국처럼 수출보조제도를 실시할 여력이 없음. 따라서 초점은 농산물신용대출, 담보제도의 건립 및 개선에 있음. 이외에 우대정책을 취하여 대형 농산물무역기업과 기업그룹육성에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

(4) 농업의 외자유치에 대한 개혁

○ 목표

- 산업정책조정방향에 따라 농업의 외자유치에 유리한 정책과 체제를 확립하여 보다 많은 외국자본을 농업에 유치.

○ 조치

- 외국상인경영사업의 통제를 적당한 수준에서 해제(외자도입허용범위는 현재 주로 농업자원개발과 농산물생산가공영역에 집중되고 저장, 운송 분야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다. 향후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 전과 후의 단계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허용하고 농산물저장, 운송영역에 대한 외국투자 허용하여 지방정부의 재배, 양식산업의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토지사용심의·비준권한 확대, 외국유치사업의 세수와 국내자금지원 등 우대정책을 실시

(5)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거시적 조정체계의 개혁과 개선

○ 목표

- 주요 농산물 총수급균형과 안정, 농산물시장과 가격의 기본적인 안정, 농가 소득의 안정된 증가, 농업자원보호, 농업지속발전의 실현.

○ 대안

- 농업계획관리체제의 개혁과 개선(지령성 개혁을 지도성 개혁으로 전환, 정부행위범위의 제한, 각급 정부직책범위의 합리적인 획분)
- 농산물비축제도의 건립과 개선(전반적 수요를 고려하여 양곡, 면화, 유류, 육류, 당류, 양털 등 주요 농산물 전문비축제도의 개선, 分級비축의 관리제도 실행, 농산물비축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건립)
- 농업보호제도의 진일보 개선(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 보호제도실행, 가격위험기금의 확립, 농업보조제도의 개혁-유통단계에서의 보조를 생산자에 대한 보조로 전환, 생산량에 대한 보조를 소득에 대한 보조로 전환, 농업기반시설확대, 농업과학연구의 보급, 농업자원보호에 대한 강화, 농업생산의 외부성에 대한 개선)
- 농업법률체계의 개선
- 농업행정관리체제의 개혁(문제점은 농업기구의 중복설치, 정부기능의 중복, 농업조절수단분산, 정부자체 직책범위의 불명확, 따라서 정부기능을 WTO협약에 따라 농업지원과 보호, 기반시설건설, 과학기술보급 및 이용, 과학연구기반건설, 다양한 농산물유통기업, 조직, 농민합작조직의 육성으로 전환, 농산물시장규범과 관리강화, 농산물품질표준 및 관리인증체계확립, 거시적관리강화, 농산물 특히 양곡비축제도의 건립과 개선)

(6) 도시와 농촌분리의 관리체제에 대한 개혁

○ 문제점

- 폐해로는 인구유동과 노동자원의 합리적 배치제한, 도시화과정을 저해, 산업간 연계약화, 도시와 농촌차이 확대.

○ 목표

- 도시와 농촌차이를 초래하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대책

- － 호적관리제도개혁
- － 교육, 의료,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 농촌에서의 소도시건설

5.4.3 농업생산구조에 대한 조정의 추진

가. 기본원칙

- 주요 농산물수급의 기본적인 안정화 기초 위에 중점적으로 농업수익성 저하 문제와 농민취업문제를 해결
- 비교우위를 통한 각종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배치
- 시장을 통한 생산구조에 대한 조정
- 산업등급향상을 주력

나. 해결방안

(1) 농업내부구조조정

(가) 재배업 생산구조에 대한 조정

- － 향후 양곡재배면적은 16.5억무 전후로 유지될 것이지만 양곡생산의 수익률은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세지역은 서부, 서남, 동북, 화북, 장강중·하류, 화남지역 순서이다. 따라서 양곡생산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은 서부와 동북지역으로서 양곡생산의 지역배치과정에서 이 두 지역을 중점 육성하여야 함. 품종구조 측면에서는 기름함유량이 높은 옥수수생산을 강화하고 남방은 옥수수재배잠재성을 풍부하기에 남방에 알맞는 옥수수품종개발을 강화, 벼의 경우 양질미생산강화, 소맥생산은 주로 품종구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 면화의 경우 최근 과잉생산체제에 처하였지만 WTO가입은 면화에 대한 국제수요를 자극해 대체적으로 600만ha 수준의 유지가 필요, 주산지는 화북,

장강중하류, 서부 신강지역인데 비교우위에 의하면 서부 신강지역과 북방 황하유역에 집중하고 장각지역은 적정수준으로 통제)

(나) 축산업생산구조에 대한 조정(축산업은 정부의 중점 지원 분야임)

- 동부 경제발전지역과 중·대형 도시에 선진적이고 규모화 되고 전문성이 있는 축산물공급과 수출기지를 건립
- 중·대형 도시근교의 위치한 축산생산기지를 점차 遠郊(원외)로 이전
- 축산물 품종, 구조에 대한 조정 중점은 번식과 우량품종 보급에 있음.
- 초식성 동물사육을 대폭 발전

(다) 어업 생산구조에 대한 조정

- 생산물이 품종과 수량 향상
- 유명, 전문성 수산물비중 확대
- 어획강도에 대한 엄격한 통제, 어업자원보호,

(2) 농산물가공업의 대폭 발전

○ 농산물가공업발전의 제약요인

- 농산물공급의 규모와 안정성 부재
- 농산물품질이 공업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음.
- 농산물가공업 산업구조 불합리성

○ 대안

- 농업구조의 대폭 조정과 합리화(농산물품종구조의 개선, 농업의 전문성, 지역성 생산을 추진)
- 농업산업화경영의 적극적인 추진(용두기업의 지원과 육성, 소유권제도개혁과 시장체계개선, 농업산업화경영조직 육성)
- 농산물가공업발전을 위한 체제와 정책환경의 개선(금융부문의 대출방법개선-농산물가공기업 특히 중서부 지역과 향진기업의 농산물가공업에 대한 대출규모, 대출이율삭감, 세수측면에서의 우대정책 실시-농산물가공기업의 부가가치세율 감축, 지방, 관련부문의 비합리적인 비용징수와 각종 기금징수

행위의 근절, 농산물가공상품수출권장, 가공기업에 자체수출권리의 확대, 농산물가공품의 수출쿼터와 허가증관리수준의 개방)

5.4.4. 농업종합생산능력의 제고

가. 기본목표

- 농업생산성 제고

나. 해결방법

(1) 농업과학기술진보의 촉진

- 농업과학기술발전의 중점 영역과 방향
 - 동식물 종자자원의 보호와 신품종의 선별배육과 보급
 - 주요 농작물과 축산물, 수산물의 다산·양질·고수익성을 위한 생산기술의 개발
 - 동식물 병·충해·鼠害의 예찰과 종합방제기술의 확립
 - 농업기계와 공정기술의 개발 및 개선
 - 자원개발과 환경보호기술
 - 농산물 저장, 신선도유지, 가공기술 개발
 - 농업기초연구 강화
- 대책
 - 농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정부재정투자확대, 농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대출구조조정, 기업과 개인투자를 권장)
 - 농업과학연구체제에 대한 진일보 개선(농업과학연구기관의 기능과 배치에 대한 조정, 과학연구경영에 대한 분배와 관리체제의 획기적인 개혁, 과학연구인원과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개선)
 - 농업기술보급서비스체제의 개선(전국농업기술보급체제의 개선, 농업생산과 과학연구, 교육, 보급과의 합작 강화)
 - 농업교육과 농민기술훈련 강화
 - 국제농업기술교류의 강화(주요 농업과학기술성과의 도입 촉진, 인력교류확대)

(2) 농업과 농촌기반건설의 강화

○ 기본목표

- 농촌경제와 사회발전에 위해 기초를 제공

○ 해결방안

- 농업재해예방기반시설건설 강화(큰 강, 큰 호수에 대한 관리강화, 농경지 수리시설강화, 防護林사업의 강화, 농업기상예측·예보사업 강화)
- 농촌교통과 통신기반시설건설에 대한 강화(국자재정투자와 농촌노동의무제 공을 통해 중점적으로 老혁명지역, 소수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궁지역 교통문제를 해결, 농촌에 전화회선확대와 TV수신문제 해결)
- 농촌 전력시설 대폭 개선(전력시설 확장·개조, 농촌전기사용료 감축)
- 농촌의료위생시설 대폭 발전

5.4.5. 농업자원과 환경보호

○ 기본목표

-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는 동시에 농업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의 지속생산능력을 보호하고 제고한다.

○ 해결방안

- 농업자원과 환경보호에 대한 입법건설 강화
- 농업생태환경관측체계의 건설
- 농업환경 중점오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강화(도시와 공업오염관리 강화, 화학비료·농약·농업용 비닐의 환경오염 통제, 중·대형도시의 축산기업의 분뇨오염에 대한 관리강화)
- 생태농업의 대폭 발전(생태농업縣 육성, 삼강평원(동북지역을 말함), 내몽골 목축·농업지대, 화북평원, 황화회하지역, 황토고원, 하투지역(지금의 녕하지역) 사천분지, 장각중·하류, 강한평원, 화남구릉지대, 운귀고원, 북경·천진 근교 지대에 중점적으로 생태농업縣을 육성)
- 농업환경중점보호지대 설정
- 농업에너지생산과 이용기술의 대폭 보급(동식물성 부탄가스의 개발이용기술, 태양에너지이용기술, 땀나무 절감 부역의 보급)

<부록> 농업산업화경영에 있어서 용두기업 육성의 의견 (關與扶持農業產業化經營重點龍頭企業的意見)

1. 용두기업 중점육성의 기준

2001년부터 5년간 전국범위에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용두기업을 중점 육성한다.

○ 경제규모

- － 고정자산규모(동부지역 5,000만원 이상, 중부지역 3,000만원 이상, 서부지역 2,000만원 이상)
- － 최근 3년간 판매액(동부지역은 2억원 이상, 중부지역은 1억원 이상, 서부지역은 5,000만원 이상)
- － 산지도매시장의 경우 연간거래액 5억원 이상

○ 경제수익성

- － 기업부채비율 60%이하
- － 상품부가가치율이 높고, 은행신용등급 A급 이상, 시장위험 대처능력 보유

○ 산업관련효과

- － 기타 산업과급효과가 높으며, 생산, 가공, 판매 각 단계의 이익이 밀접히 조직되고 많은 농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비교적 큰 규모의 원료생산기지를 보유

○ 시장경쟁력

- － 생산된 상품은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도상품은 국가산업정책

에 부합되고 지역경제추진역할을 하여야 한다.

○ 기타 포함 대상

- 비교적 높은 과학기술혁신능력과 지속발전능력을 보유(개발 혹은 생산된 상품은 고기술상품 혹은 관련산업형성을 추진시킬 경우 과기부에서 인정한 과학기술 시범화기업)
- 주도상품의 우세가 뚜렷하고 수출잠재력과 수입대체능력이 높은 특화된 산업

2. 육성 및 지원정책

중점 용두기업에 대해서 생산기지건설, 원료수매, 설비도입, 상품수출 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 국유상업은행은 농업산업화경영지원을 대출을 이용한 농업지원의 중점사업으로 삼아 자금배분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용두기업에 대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주기와 대출용도에 따라 대출상환기한을 확정하고 중국인민은행에서 규정한 이자율로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이자율향상을 금지한다. 용두기업의 생산기지건설과 기술개조에 필요한 대출은 농업주관부문에서 상업은행에 추천하여 상업은행은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출을 배분한다. 양곡, 면화 등을 원료로 하는 대형 가공기업의 원료수매자금에 대해서 상업은행은 기업과 생산기지농가에서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필요 구매자금을 핵산하고 신용대출지원을 할 수 있다. 신용이 높은 용두기업은 일정한 신용수준을 생산기지농가와 계약한 농산물수매에 사용할 수 있다.
- 용두기업의 생산기지와 농가과급효과를 육성하기 위해 용두기업과 연관된 생산기지건설 등은 중앙재정에서 지원할뿐더러 지방재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용두기업과 농가간의 각종 다양한 위험공동부담체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확립한다. 계약체결 등 방식을 이용하여 수매관계를 안정시키고 시장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은 위험기금건립을 통해 보호가격으로 농가생산물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혹은 합작, 주식합작제 등 형태로 농가와

용두기업을 이익공동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파동으로 인한 용두기업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정부부문은 국가의 관련 재정세수 정책과 제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용두기업과 농가의 시장위기 관리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 용두기업의 재배업, 양식업, 농림산물 1차 가공 등의 활동으로 획득한 소득은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의 ‘국유농업기업·사업단위의 기업소득세징수문제에 관한 통지’(關與農口企業事業單位徵收企業所得稅問題的通知)에 근거하여 잠시 기업소득세징수를 정지한다.

용두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개발 및 혁신비용이 기업소득세 전에 산정하는 방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의 ‘기술진보촉진과 관련된 재무세수문제에 관한 통지’(1996년)와 국가세무국의 ‘기술진보촉진과 관련된 세수문제에 관한 보완통지’(1996년)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국가산업화정책의 기술개조사업에 필요한 국산설비투자의 소득에 대해서 감면정책을 실행한다.

- 용두기업이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국제경쟁참여와 제품경쟁력강화를 적극 권장하며, 농산물수출을 확대하는 용두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대외무역발전기금의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농산물 및 가공상품수출에 대해 융자우대를 실시한다.

농산물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수준을 강화한다. 국유상업은행은 농산물수출에 필요한 유동성 자금대출에 대해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첨단·신기술목록과 국가관련부문이 비준하여 도입하는 농산물가공설비에 대해 ‘국내투자항목에서 면세되지 않는 상품목록’에 들어있는 상품을 제외한 기타 상품수입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행정심의수속을 간편화하고 심의비준조건을 완화하여 용두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한다. 용두기업의 수출입회사 설립자격을 완화하고 그의 경영범위를 완화시킨다.

중외합資농산물유통기업이 보유한 유통망을 이용하여 중국농산물이 국외에 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 용두기업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자금확보를 권장한다. 국내외의 투자유자경험을 이용하고 자산재구성, 지분확보, 지분참여, 합병, 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용두기업은 규범화된 회사체제로 전환된 후 주식발행과 주식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주식상장된 용두기업은 농업관련상장기업의 주식배분에서의 우대정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조건을 조성하여 용두기업의 외국자본과의 합자·합작을 추진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용두기업을 위주로 한 농업산업화발전 투자기금의 건립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용두기업지원업무에 대한 관리와 지도의 강화

각급 농업, 계획, 경제무역, 재정, 대외경제무역, 은행, 국가세무, 지방세무, 증권감독위원회 등 부문은 산업화경영발전수요에 근거하여 농업산업화경영 용두기업의 발전에 관해 연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농업부는 관련부문과 함께 용두기업육성사업의 지도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정부 농관련 주력사업

<사례 1> 연변조선족자치주 安圖縣 石門鎮 달맞이꽃재배기지 건설

(1) 현황

현단계의 石門鎮 달맞이꽃재배면적은 이미 500ha에 달하지만 대부분 농가 개별 재배형식으로 생산하기에 품질이 비교적 낮고 생산량도 낮아 매년 기업에 600여톤의 달맞이꽃씨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2) 장점

현재 石門鎮경내에는 1998년에 설립된 식물유료유한회사가 있으며, 업계에서 비교적 일찍 의약용 식물유료개발을 연구한 전문생산기업이다. 현재 540만 위안의 고정자산과 연간생산능력 500톤에 이르고 있다. 또한 石門鎮에는 2,243ha의 경작지(밭)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옥도가 높아 700~1,000ha 규모의 달맞이꽃 경작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3) 전망

石門鎮의약용 식물유료유한회사는 500톤 달맞이꽃기름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설비를 풀 가동할 때 매년 4,000톤의 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수요규모의 확대로 현재 연간생산량은 이미 300톤에 이르고 있어 2,500톤 좌우의 원료를 소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어 생산품의 95%를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국가와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石門鎮의 지리적 여건과 장점을 기초하여 石門鎮정부는 “시장과 용두기업의 인도하에 萬畝달맞이꽃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주도산업을 육성하여 생산·공급·판매 일체화의 길을 따라 지역산업우세를 형성한다”는 石門鎮경제발전방향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방향확정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생산기지건설을 통해 石門鎮에서는 매년 기업에 1,500~2,000톤 전후의 양질의 원료를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수요를 보장하고 기업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이용하여 石門鎮의 주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산업화과정을 추진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달맞이꽃생산기지의 건설은 기업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4) 개발면적, 생산량, 생산액, 이윤세금

- 재배면적 : 700~1,000ha
- 육묘면적 : 40,000m²
- 생산량 : 1,500~2,000톤 원료
- 이윤세금 : 300~500만 위안

(5) 기술기준 : 생산기업표준에 참조

(6) 투자총액 및 구체적 조치

- 고정자산투자 81만 위안, 유동자금 100만 위안 총 181만 위안을 조성하여 투자
- 자원조달에 있어서 고정자산투자는 省과 州의 보조금 혹은 대출을 이용하며, 유동자금은 전부 농민자체투자로 조성한다.

(7) 생산기지건설책임단위와 의존단위

- 책임단위 : 石門鎮 인민정부(구체담당기관은 石門鎮농업기술보급(推廣)참과 의약용 식용유료유한회사이다.)
- 의존단위 : 안도현 天野의약용 식용유료유한회사
- 기술의존단위 : 연변농학원, 안도현 과학기술위원회

(8) 유통시스템 건설

생산기지운영은 농가단위로 한 분산재배와 石門鎮농업기술보급참과 의약용 식용유료유한회사에서 연합으로 기지건설복무(서비스)참을 건설하여 집중관리하며,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매년 재배수량, 기술기준, 수매가격은 모두 복무(서비스)참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 한 후 매년 봄에 재배계약을 체결한다.

<사례 2> 중국 길림성 연변 種畜場

(1) 본 種畜場은 1951년에 건립된 종축장으로서 생돈, 닭 등 축산물을 연변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2) 현황

- 인력 : 생산인원 21명과 관리인원 4명, 평균임금 60~800위안/월, 총 11만 6천 위안/월 전후
- 사육규모 : 종돈(암컷) 380두, 비축종돈 30두 총 410두, 비육돈·仔豚 : 3,100두.
- 시장가격 : 종돈 200kg기준 800~1,000위안/두, 비육돈 80~100kg 기준 650~

700위안/두, 仔猪 17.5~20kg 기준 250~300위안/두

- 사료비용 : 연평균 총 사료소비량은 150톤으로서 사료가격은 1,050위안/톤으로서 총 157만 7천위안/년 정도 소요. 사료소비 중 종돈은 20%, 자돈은 10%, 비육돈은 70%의 사료를 각각 소비함.
- 사료가격 : 옥수수 0.36~0.53위안/500g, 대두 0.6~0.8위안/500g, 겨 0.07~0.10위안/500g, 전분 3,500위안/톤.
- 생산능력 : 비육돈 300두/명·년, 분만종돈 30두/명·년, 丙種생돈 60~80두/명·년

(3) 경제핵산(2001년)

달성이윤=생돈총생산액 220만 위안-(임금 17만 6천 위안+사료비용 157만 위안+물·전기 사용료 17만 위안+건물유지비 7만 위안+관리비 7만 위안+초대비 2만 위안)=12만4천위안(해당연도 목표이윤 20만 위안)

부표 1 최근 경영상황

연도	손익(만 위안)
1995	-20
1996	-10
1997	12
1998	5
1999	5
2000	-8

원인 : 시장가격의 불합리성, 기업부채과중, 은행대출이율상승폭 큼

(4) 지원

- 사회공익사업기관으로서 면제, 농업세감면, 상부임무무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전에는 지방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았지만 현재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영향

장점 : 국제가격보다 돈육가격은 57%, 우육은 84%, 양고기는 54% 낮은 편임. 노동력 풍부하고 값싼 편임. 사료조달이 풍부함

단점 : 육질이 비교적 낮고 역병이(구제역 등) 철저히 방제되지 못한 상황임.

농업관련 용어해설

용어는 원칙으로 중국어(한자, 한국어로 뜻, 보충설명 삽입)로 표시했다.

1. 농업부(농림부)

농업부는 농촌경제 및 농림축어업, 국가농업개간기업, 농촌기업, 사료공업, 농업기계공업의 각산업부문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그 주된 직무에는

- (1) 농촌경제정책 검토, 책정
- (2) 농촌경제체제개혁 플랜책정과 실시지도
- (3) 관할업종의 발전계획 책정과 실시에 대한 행정감독
- (4) 농산물, 농업생산자재 가격정책, 농촌금융정책, 농촌재정, 세제정책제정에 참가
- (5)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지제도 정비에 대한 행정지도
- (6) 전국 부식품산지에 관한 ‘쇼핑백’프로젝트 제정과 실시
- (7) 농업과학기술연구, 교육 및 보급의 실시
- (8) 농산물 및 농업생산자재 기술, 품질검사
- (9) 동식물 검역수의, 수의약, 농약의 생산, 등록 각 업무의 주관
- (10) 농업자원관리 및 농촌환경보호
- (11) 농업관련 대외교류사업
- (12) 농업관련산업으로의 행정지도, 감독 등이 있다.

2. 농업증가치(농업부가가치액)

농업생산을 하는 경영주체의 경영 및 노동의 최종성과를 가리키며 당해업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공헌을 나타낸다.

3. 가비가격(비교가능가격)과 불변가격

가비가격은 1년간의 생산액과 소비액에서 물가변동요인을 제외하여 실질적 변화를 보기 위하여 쓰여지는 가격지표를 가리킨다. 불변가격은 그 하나로 기준연도가격에 1년 실물생산량을 곱해서 산출한다. 본 백서에서는 1990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현행의 불변가격이 쓰여지고 있다.

4. 양식총산량(식량생산량)과 곡류

양식에는 수도작, 밀, 옥수수 등 곡류를 포함시켜 코량, 조, 그 밖의 작곡, 서류(감자, 고구마 포함, 토란 제외)의 생산량은 국유기업, 집단조직 및 농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식량의 수량을 나타낸다. 또는 서류 생산량은 햇감자 5Kg을 식량 1Kg으로 환산한다. 즉 수도작은 실제로 밭벼를 포함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번역문안에서는 수도작벼로 하였다. 또한 양식 중 상대적으로 고급에 속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수도작 벼, 밀 (또는 정미, 밀가루)는 특히 미백(細糧)으로 불리워진다.

5. 농촌사회총산치(농촌총생산액)

농촌 물질생산부문이 생산한 생산물을 화폐로 표시한 수치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향·진·촌 단계 및 그 이하 레벨의 집단 경제조직과 농가 등이 경영하는 농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음식업의 생산액과 국유농장의 농업생산액 합계치를 가리킨다.

농촌부에 입지하고 있어도 국유기업생산액은 포함하지 않고 국유농장이 경영하는 농외부문 생산액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총생산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격은 각 생산물의 통계상의 통일가격이다. 이 중에서 농업 총생산액(농업산치)에는 경작농업, 임업, 축산업, 부업(수렵, 채집, 농가의 가내공업등) 어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번역문에서는 농축임수산업 생산액으로 한 이상의 5개 부문을 포함한 농업개념을 ‘대농업’으로 표현하고 경작농업만을 가리켜 ‘소농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6. 향진기업(농촌기업)

향(진) 및 촌 집단경영기업과 촌 아래에 있는 ‘촌민소조’경영기업 총호경영 (농가 공동경영)기업, 개인경영기업, 사영기업, 총합체(공동경영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복수의 개인경영기업과 농가가 서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적기업 등의 전체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개체경영(개인경영)은 가족노동력을 주체로 한 것을 가리키며 사영은 고용노동력을 주체로 한 것을 가리킨다.

7. 사회노동력수(사회노동자수), 향촌노동력수(향촌노동자수), 농업노동력수(농업노동자수)

사회노동력 수는 보수를 받고 노동 혹은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부의 월급소득자(직공), 도시부의 자영업자(사영기업종업원, 개체노동자), 농촌사회노동자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농촌사회노동자는 농촌인구 중에서 노동 혹은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개별경영, 정부의 공공시설, 건설노동에 징용된자, 집단조직(향정부와 촌민위원회)직원, 도시부의 기업과 국유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임시공, 계약공을 포함), 호적이동이 없는 계절 타관노동자가 포함된다.

한편 향촌인구 중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력을 가리킨다. 업종별 노동력수는 주로 취업처에 따라 산출된다. 농촌사회노동자와의 다른 점은 국유농업기업(국유농장)의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점에 있다.

또한 농업노동력은 상기되어진 농촌사회노동자 혹은 향촌노동자 중 농림축부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8. 농민

농촌호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즉 반대개념으로 비농민이 있고 비농촌호적을 소유하는 자를 가리킨다.

9. 농민순수입(농민소득)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농민소득=총수입-자영업경영비-조세·공과-생산용설비(감가)상각비-조사보조(정부의 농가조사시 지불되는 일종의 요금)

마지막 조사보조가 포함되는 것은 농민소득통계가 샘플조사통계라는 것에 의한다. 통계에서는 농민소득은 기본소득(임금소득+가족경영소득), 이전소득(증여·송금 등) 재산소득(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세대원수 일인당 평균치를 표시되는 것이 많고 번역문중에서는 농민인구 일인당 평균소득(농민인균순수입;農民人均純收入)으로 표시했다.

10.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

본 백서에서는 3대 경제지대구분으로 동부지구는 북경, 천진, 요영,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둥, 광둥, 해남 중부구는 하북, 산서, 내몽고, 길림, 흑룡강, 안회, 강서, 호남, 호북, 광서, 하남 서부지구는 사천, 운남, 티벳, 내서, 감숙, 영하, 청해, 신감으로 되어있다. 이 지역구분은 본래 제7차 5개년계획의 목표에 바탕을 두고 각 성별의 경제사회발전레벨에 응해서 구분한 것에서 시작된다. 단지 당초는 하북, 광서가 동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본 백서에서는 중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11. 농산품의 수구가격(지수); 농업·부업생산물 구매가격(지수)

국유상업기업, 집단상업기업(구매판매협동조합) 농산물 수출정부기관, 정부기관, 단체, 개인상인이라는 상업기구등이 구매한 농산물 가격(지수)를 가리킨다. 이 가격(지수)은 보고시기의 실제 구매금액에 기초를 둔 가중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한 것으로 1993년에는 합계 276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12.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예를 들면 소득의 세대간 격차등의 편중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값은 0~1사이에 두고 작을수록 분산도가 작은 (평등한) 것을 나타낸다.

13. 농촌경제수익분배

농촌집단경제조직(집단경영의 농촌기획을 포함), 농가가 생산활동과 자산운용 등으로 획득한 당해에 지출가능한 모든 수입의 정부, 집단, 개인간의 분배관계를 나타낸다. 통계상은 농촌경제총수익(농촌경제총수익)=농촌경제비용(농촌경제총비용)+농촌경제순수익(농촌경제재수입)이라는 관계로 나타낸다. 총수익(총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농림축부수산업, 농촌공업건축업, 운수업, 상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영총수익, 이자, 이용요금수입을 포함하여 용자, 정부구매전도금, 재정투자, 미완성품의 가치를 분배로 돌릴 수 없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총수익(총수입)과 총생산액(총산액)과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총수익(총수입)에는 총생산액(총산치)에 포함되는 용재립과 가축의 생장에 따른 가치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점이다. 총수익(총수입)에서는 판매부분을 실제의 판매가격, 자급부분은 정부구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4. 향촌제유통수(鄉村提留統籌, 향과 촌의 집단유보 및 통일징수자금)

우선 향(진)정부재정은 그 수입에서 보면 국가예산에 끼워져 있는 예산수입, 예산

에 계산되어지지 않은 예산외수입, 현 정부로부터의 급부금(給付金), 독자재원수입(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수입에는 크게 나누어 부가가치세, 영업세, 기업법인세를 포함한 공사업관련세, 농업세, 경제전용세를 포함한 농업관련세, 국유기업관련세, 에너지, 교통 등의 기초산업의 진흥재원보조로 징수되는 에너지·교통정비기금, 향(진)재정의 수지균형을 보증하기 위한 급부금인 예산조절기금 등이 있다.

예산외수입은 국가예산에 끼워져 있지 않지만 각 행정단계의 독자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각종 조세, 지방부가금, 각종공공요금수입, 관할하는 국유기업에서의 설비갱신, 기술혁신, 기금의 상납분, ‘예산외 조절기금’ 등이 포함된다.

독자재원수입(자수입)은 향(진)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향(진)집단경영의 농촌기업과 농촌기업에서 국세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자금, 향(진)정부의 공공사업수입, 촌 단계에서 징수하는 통일 징수자금(총수입)이 포함된다.

이 향(진)재정의 구조는 현단계 이상의 재정에도 공통한다.

촌(촌민위원회)단계에는 재정제도는 없고 지역내 경제활동에 이윤징수, 축적(즉 집단보유)을 하는 집단경제조직의 재무(집단재무관리라고 불린다.)가 존재한다. 그 수입을 보면 집단복지기금(공익금), 지역내 공공사업에 쓰여지는 집단축적기금(공적금), 집단경영의 농촌기업에서의 이윤상납, 농지이용권의 분배를 받는 농가가 납입하는 농지청부비(토지승포비) 그밖의 공과 등이 있다. 이들 수입은 촌내 역원보수, 공공적 사업경비등에 지출되나 농업에 관련된 자금은 농업지원보조금(이공포농, 이공건농)이라고 불리운다.

이상의 비용항목을 집단경제조직의 축적제도에 관련된 것이나 사실상 최말단의 재정적 기능을 부과하고 있다.

15. 생활소비수평(생활소비수준)

농민과 비농민에 대해서 지출소득(국민수입사용액)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추계되는 물적소비지출을 가리킨다.

16. 농업에 투하된 재정자금

국가재정예산 중 농업에 지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농업개간, 농업, 축산, 임업 농업기계관리, 수리, 수산, 기상 등의 관련행정기관의 사업비, 고정자투자자금, 유동자금, 기술혁신비용 등 용도의 특정된 재정자금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농촌에 생산활동지원지출(지원농촌생산지출)로 불리는 농촌집단조직과 농가의 생산을 지지하기 위한 소규모 기반정비·토지개량보조금, Illusion방지보조금,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농촌기업과 집단조직에 대한 생산개선보조금, 개간보조금, 목초지 가축보호보조금, 조림보조금, 수산보조금, 농업생산을 종합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과 양식생산전용자금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농촌부의 사회보장비가 포함된다.

17. 재정총지출(재정지출총액), 재정총수입(재정수입총액)

재정총수입(재정수입총액)에는 조세수입, 국유기업수입(국유기업의 이윤상납), 채무수입(차환, 국적매각수입 등) 그 외의 수입이 포함된다. 그 중 국유기업수입은 기업개혁에 따라 감소하여 그 대신 조세수입이 늘고 있다.

재정총지출(재정지출총액)은 인프라투자, 국유기업유동자금의 추가배분(국유은행으로의 용자자금추가분을 포함한다.) 국유기업의 설비갱신, 기술혁신비용, 신제품시작비(試作費), 지질탐사비용, 공업·교통·상업부문사업비, 농업관련지출, 문화·교육·과학연구진흥, 의료위생사업비, 사회보장비·국방비·행정관리비(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산당 등의 운영비, 인건비 등) 채무반환비등을 포함한다. 재정지출 중에서 인프라 투자, 국유기업유동자금의 추가배분, 국유기업의 설비갱신, 기술혁신

의 비용, 연구개발비등은 무상자금(재정발관: 拨款)이라고 불린다. 국가재정수지 벨런스는 경상성수지(경상수지)와 건설성수지(투자수지)로 나뉘어 평가된다. 재정수지에 대해 살펴보면 경상성수입(경상수입)에는 각종 조세수입, 국유기업의 비영리적 사업에 따라 나타나는 적자보조(마이너스수입) 예산조절기금으로부터의 수입, 그 외에 포함되는 건설성수입(투자수입)에는 경상수지잉여, 인프라 투자자금, 국유기업 수입, 국유기업의 영리적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적자보조(마이너스 수입) 기타가 포함되어 있다.

18. 중앙정부재정(중앙재정), 지방정부재정(지방재정)

지방정부에는 위에서부터 성단계(성, 민족자치구, 직할시), 지구단계(지구, 지구레벨의 시), 현단계(현, 현레벨의 시), 향단계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혹은 각각의 상위 클래스의 정부로부터 정책지도를 받고 동시에 지역 실태에 응한 행정을 집행한다. 이런 책임·권한관계에 맞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분할된다. 실제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실제로는 성단위 정부)의 사이에는 1980년대가 되어 재정관리 청부제(재정 包乾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재정수입은 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정액(비율)으로 또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사이에서 분할된다. 즉 지방정부는 연간 세수입 중 일정액(비율), 또는 정해진 종류의 세금수입을 중앙정부에 상납하게 되어있다. 재정지출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과 지방정부에 지출을 하청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에 따라 이전부터 분할된다. 이상을 전제로 한 지방재정은 수지균형 실현이 의무화되고 있다.(적자가 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정활동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제도에서는 지방재정이 계획이상으로 조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을 귀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가예산을 짤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지방행정이 지역의 사회경제 진흥을 위해서 세금수입 확보에 노력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어 이 점도 이 제도의 도입목적의 하나이다. 더욱이 성단계 이하의 상위정부와 하위정부사이(예를 들면 성과 지구, 지구와 현 사이)에도 상기의 중앙정부와 성정부와의 관계에 따라서 같은 관계가 확립되어 있다.

19. 농업은행과 농촌신용합작사(農村信用合作社)

농업·농촌관련의 융자·예금과 결제, 농업관련의 재정무상지출의 감독을 하는 국유은행에서 농촌신용합작사(농촌신용협동조합)의 지도·감독도 한다. 단지 1994년부터는 정책금융기능이 분리되어 순수한 상업은행으로서 재편되기 시작했다. 본점은 북경에 있고 성단계, 지구단계, 현단계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농촌신용합작사는 소유제도상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금융기관이고 농가의 출자를 받고 있으나 농업은행의 지도를 받아 농촌·농업관련융자, 예금업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업은행 현 지점 하부기구에 가까워졌다. 그 기구는 현단계에 신용사련사(信用社聯社, 신용연합협동조합)이 향진단계의 신용사련사가 있고 촌단계에는 신용스테이션이 있다. 따라서 업무범위는 농업은행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신용사련사는 현 범위 내에서 멈추고 그 자금이 농업은행 현지점에 예금과 예금지불준비금으로 예금되어 전국과 연결되어 있다.

20. 백조(白條, 공수표)

1980년대 후반에 정부가 농가로부터 식량 등의 농산물을 사들일 때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농가 판매증명서를 발행했다. 또한 농가가 생계비나 다음해의 비료를 구입할 수 있게 국유 및 구매판매협동조합의 점포에서 이 증명서를 현금을 바꾸어 쓸 수 있게 조치했다. 그러나 구매 자금 수당이 더 늦어지기도 하고 점포 안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게되어 사실상 보장능력을 잃었고 그 결과 백조(공수표)라고 불리게 되었다.

21. 농촌집체(農村集体, 농촌의 집단부문)

1970년대 중반 농촌경제체제개혁 중에서는 인민공사제도 아래서 농업을 포함한 농촌 경제활동이 행해졌다. 이 제도는 공사, 생산대대(大隊), 생산대는 3단계의 조직체제를 가지고 생산대가 기본적 생산단위를 가지고 있다.(말하자면 생산대를 기초로 한 3단계 소유제) 인민공사와 생산대대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하달하는 등, 지도, 감독, 수리, 기초건설사업 실시, 각각의 단계에

설립된 집단경영기업(그 후 농촌기업의 전신이 된 사대(社隊)기업)의 경영 등을 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개시된 농촌경제체제 개혁 중에서 인민공사체제가 농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수단 공유제(집단소유제)를 토대로 행정과 집단경제기구가 분리된 정사분개(政社分開)의 신체제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체제인 인민공사는 향(진)인민정부와 기업·회사 형태를 가진 같은 단계의 집단경제조직으로, 인민공사 밑의 생산대대는 촌민위원회와 촌경제합작사(촌협동조합)으로, 말단 생산대는 자연촌이 있는 남방지역 등에서는 촌민소조(村民小組)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집체(농촌의 집단부문)는 향, 촌, 촌민소조단계의 각 경제조직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집단경영의 농촌기업, 농업관련의 사업체(농촌기계 스테이션 등)가 포함된다. 토지의 소유권은 이 집단부문에 속한다. 이들 조직이 속지적 조직인 것을 명시할 경우에는 사구(社區)집체경제조직(지역적집단경제조직), 사구합작조직(지역적협동조합경제조직) 등으로 분리워진다. 이 경우 사구(社區)는 지역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또는 지역 내 거주하는 농가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협동조합(합작)이라는 호칭이 채용되었다. 더 나아가면 촌민위원회와 촌민소조는 법률상은 농민자치조직이 되어 재정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향(진)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행정적 기능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현실적으로는 촌민위원회와 촌협동조합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조직이 두개의 기능을 해온 지역이 많다.

22. 외자이용(외국자본·자금의 도입)

중국에 있어서의 외자이용 개념에는 차관(借款)과 원조의 수수, 직접투자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있다.

23. 사회상품영수총액(社會商品零售總額, 상품소매총액), 농민대비농업거민출적상품액(農民對非農業居民出的商品額, 농민이 비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상품총액)

전자는 전국 상업, 음식업, 공업, 그 밖의 업종에 소매액과 자유시장 등의 농민으로부터 비농민에게 판매되는 직접판매액의 합계를 가리킨다. 구입자에게는 도시부,

농촌부의 개인소비자와 학교, 정부기관, 군대, 단체 등이 생산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기업 등으로 판매되는 원재료나 설비(기업내 거래 포함), 상품의 도매액, 공공사업의 물품, 서비스판매수입과 공공요금, 농민끼리의 상품판매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개념인 사회상품영수액에는 농민이 비농민에게 판매한 직접판매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대비농업거민출적상품액(농민이 비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상품총액)은 농촌 생산자(농가와 농촌기업)가 자유시장과 산지형식으로 도시 부의 개인소비자나 학교, 정부기관, 단체, 군대에 판매한 소비재 소매 액이다. 이 지표는 공상행정기관의 자유시장거래의 사업통계와 전형조사에 따른 추계로 인해 산출되었다.

24. 가정련산승포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 농가생산청부책임제)

1980년대 전반의 농촌경제체제개혁 가운데 그때까지의 인민공사체제의 집단경영방식이 재편되어 도입된 농지이용권을 분배하여 경영시키는 방식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액청부제방식 포산도호(包產到戶)와 경영청부제방식 포건도호(包乾到戶)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농가가 촌의 집단경제조직과 농업생산청부계약 승포합동(承包合同)을 체결시켜 매년 일정의 농지청부비 토지승포비(土地承包費)를 납입하여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후자의 경영청부제방식이 채용되어 있다. 이 생산책임제가 도입된 후로부터 종래의 인민공사와 생산대대 레벨의 향(진) 및 촌단계의 집단경제조직에서는 농업생산자재 공급, 기계작업, 방제, 관개 등의 농작업의 조직적 지원 등을 행하는 집단통일경제기능강화가 강조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농촌경제체제는 집단통일 경영기능과 농가개별분산경영이 결합하여 2단계경영(쌍층경영)체제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국유농업개간기업에도 국유농장의 종업원 세대에게 농지이용권을 배분하여 경영시키는 경영청부책임제가 도입되어 같은 2단계 경영체제를 취하고 있다.

25. 기층간부(基層幹部, 말단의 간부)

간부에는 영도간부(領導幹部, 지도자), 국가간부(國家幹部, 공무원) 등이 있으나

농촌 기층간부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 촌단계의 촌민위원회, 촌집단경제조직, 공산당지부의 직원(촌장, 사장, 正副서기 등)을 가리킨다. 즉 공무원이 아니다.

26. 구양전(口糧田, 식용쌀생산농지), 책임전(責任田, 공매용식량생산농지), 기동지(機動地, 기동경지)

1980년대 전반의 농촌경제체제개혁이 실시되어 집단소유의 농지이용권(사용권)이 농가에 분배되었다. 농지이용권의 분배방법을 전형적으로 나타낸 것은 우선 지역내의 경지가 3종류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는 구양전(식용쌀생산농지)으로 농가세대원수는 인원수로 나누어 균등 분배되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 판매하는 식량을 생산하는 책임전(공매용식량생산농지)으로 농가노동력수에 응해서 분배되었다. 세 번째로 당면 분배하지 않는 여분으로 보존되는 기동지(기동경지)이다. 이것은 차후에 증가한 인구가 이용권 취득을 보증하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농지이용권 재분배 조절 시에 이용된다. 단지 각 지역의 토지조건, 인구밀도 등에 의한 지역내경지전부를 구양전의 형식으로 분배해 버리는 곳도 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규모확대경영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양전은 전 농가에 균등분배했으나 책임전은 의욕있는 농가만 분배받는 양전제(兩田制)가 채용되었다.

27. 적도규모경영(適度規模經營, 적정규모경영)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백서에서 소개되어 있으나 중국의 적정규모경영을 육성하는 정책이념에는 단순히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공간의 균일 소득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농가경영규모의 영세화와 겸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집약도(토지이용률 등)와 토지생산성저하, 그 결과로 정부에 판매되는 식량 감소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28. 대중성시(大中城市, 대·중규모도시)

도시규모는 소성시(소도시)가 인구20만인 이하, 중성시(중규모도시)가 인구 20~50

만인, 대성시(대규모도시)가 50만인이상이고 대·중성시(대·중규모도시)는 인구 20만인이상의 도시가 된다. 또는 대성시(대규모도시) 중에서도 인구100만인을 넘는 도시는 특대성시(특대도시)라고 불린다.

29. 사황지(四荒地, 농촌의 미이용황무지)

농촌부에 있는 황무지 산, 경사지, 수면, 사주를 가리킨다.

30. 통구통소제도(統購統銷制度, 통일구매, 통일판매제도), 평가양식(評價糧食, 배급식량), 합동정구(合同定購, 계약구매제도), 국가정구(國家定購, 국가구매), 의구(議購, 협의구매)

1980년대 이후의 식량관리제도는 몇 번에 걸쳐 제도개혁을 거듭하여 왔다. 1953~1984년까지는 통구통소제도(통일구매, 통일판매제도)가 채용되어 왔다(같은 관리 제도는 면화, 석유, 철강 등의 중요물자에 대해서 적용되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원칙으로 산지에서의 구매에서 가공·유통 그리고 소비지에서의 소매까지를 국가 계획에 따라 직접 통제되어 그 업무는 중앙정부 단계에서는 상업성(현재의 국내무역성), 지방정부단계에서는 식량청(또는 局)이 관할하여 실제 업무는 국유식량기업에 따라 담당되어진다. 생산자는 자급용식량쌀과 종자용 이외의 전량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도시부 소비지에서는 주민에 대해서 국유식량 소매점에서 배급표와 배급수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식량(배급식량)이 배급되어졌다. 1985년부터 농산물시장 자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합동정구(계약구매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도 아래에서는 농가는 정부와 평등한 입장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유의사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실제적 변화의 의미를 가진 제도상의 변화는 종래에도 조금 있었던 의구(협의구매)의 테두리 안에서 크게 확대된 점이다. 이 의구(협의구매)는 정부가 합동정구(계약구매)의 계획을 달성한 후에 조금 높은 가격으로 추가구매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 합동정구(계약구매)와 의구가 병존한 식량관리제도를 쌍궤제(복선루트제)라

고 부른다. 1990년이 되면 합동정구(계약구매)는 국가정구(국가수매)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31. 전항저비량(專項貯備糧, 전용비축식량), 양식풍검기금(糧食風檢基金, 식량리스크기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식량유통에 본격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골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는 양식비발시장(식량도매시장) 유통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산지의 초급비발시장(지역도매시장)을 개념으로 성을 범위내의 중간단계의 중급비발시장(도매시장), 성을 넘어선 광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급비발시장(중앙정부지정의 도매시장)이라는 3개의 계급 도매시장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장거래를 전제로 전용저비량(전용비축식량)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산지와 주요소비지에 비축을 하고 시장변동에 따라서 그 방출과 매입을 통해 가격조작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축식량의 조작과 함께 가격차손을 보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양식풍검기금(식량리스크기금)이 정비되고 있다. 이 비축용식량은 국가정구(국가매입)를 통해 생산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보호가(최저보호가격)를 적용하여 매입되고 있다.

세 번째는 국유식량기업의 식량취급업무에 양조선(두기등세우기:정책적업무와 영리업무의 분리)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다. 식량기업은 영리기업으로서 식량 시장거래에 참가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정구(국가매입)와 비축식량의 조작 등의 정책업무를 한다. 종래는 국가통제가 강했기 때문에 기업재무와 정부의 식관회계는 일체화되어 있었으나 시장유통부분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이러한 주먹구구식을 개정하기 위해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방식의 확립이 강조되게 되었다.

32. 국합상업조직(국영·합작상업조직), 공소합작사(구매·판매협동조합)

계획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상품유통은 거의 완전하게 정부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비재와 농촌·농림수산업을 위한 생산자재유통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상업성(현재의 국내무역성)이 관할하는 국유상업기업과 공소합작사(구매·판매협동조합)이고, 이 양자를 합쳐서 국합상업조직(국영합작상업조직: 기업)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들은 소유제도의 구분으로 국유와 집단소유로 분리된다. 공소합작사(구매·판매협동조합)는 1950년대에 농민출자협동조합조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후 농산물 국가통제와 인민공사 설립과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제하에서 일부농산물과 농업생산자재의 매입과 공급을 하는 관제(官製)의 유통조직으로 변질되었다.

33. 농업잉여노동력수(農業剩餘勞動力數, 농업과잉노동력수)

현재 농업노동력수 중에서 실제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수를 웃도는 사람수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것과 불완전 취업상태에 있는 시간 수를 가리킨다. 계산방법으로서는 향(진)단위로 개산(概算)하는 방법과 농가유출에 의한 전형 예를 조사하여 추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불완전 취업기간은 연간 300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 같다.

34. 전향농업대관(專項農業貸管, 농업을 위한 융자)

농업은행 및 타 금융기구가 농촌 부의 집단경영기업, 농촌기업, 개별농가, 국영농장에 대한 융자를 가리킨다. 이 융자에는 설비투자자금과 유동자금의 대부분 등이 포함된다.

35. 자금도위율(資金到位率, 자금확보율)

계획되어 있는 융자자금 총액 중 실제 소기의 기일까지 확보되어 배분 가능한 액수의 비율. 1980년대 후반이후 인프라 억제를 위한 국영은행의 융자를 감액하는 조치가

때때로 취해져 왔다. 그때에 은행지방지점에서는 어떤 특정 용자자금이 배분되고부터 실제로 배부되기까지의 시기로 일시적으로 그 자금을 타 목적에 유용 할 때가 있다. 그를 위해 유용한 자금의 일부는 배부시기까지 회수되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대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특히 대부이율의 낮은 농업을 위한 용자나 식량의 정부 매수자금용자 등이 유용한 일이 많고 이 자금 확보율이 저하하여 문제가 되었다.

36. 고산우질고효농업(高産優質高効農業, 다수량 · 고수익 · 고품질 농업)

이 용어는 국민경제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매수수요가 아닌 시장의 니즈(NEEDS)에 맞는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것과 농가의 겸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의 비교수익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농민소득증대로 이어져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식량작물 이외에 환금작물의 생산확대, 가격이 비싼 우량품종의 작황확대, 가공 · 판매를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수출을 촉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1992년에 국무원이 공포한 다수량 · 고수익 · 고품질 농업 발전에 관한 결정에 의해 정식으로 농업정책의 방침이 되었다.

37. 농촌합작경제조직(農村合作經濟組織, 농촌협동조합경제조직)

이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그 설립배경으로부터 보면 두 개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농촌경제체제개혁의 개시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농정 · 농산물유통정책 · 농촌금융정책에 비교적 강한 구조로 되어 있는 조직이다. 즉 구인민공사를 전신으로 하는 사구집체경제조직(지역적집단경제조직), 농촌신용합작사, 공소합작사(구매판매협동조합)가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사구집체경제조직(지역적집단경제조직)과 개개의 농가가 모여 지역경제진흥의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업종의 기술

도입과 판매 등의 협동을 목적으로한 전문합작조직(전문협동조합 또는 전업협회: 전문농업조직)이 해당된다. 또한 집단경영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충하는 등을 위해서 사구집체경제조직(지역적집단경제조직)이 농촌기업과 지역농가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농촌합작기금회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38. 농민부담(농민의 공적부담)

본 백서에서는 농민이 여러 가지 공공적 명목에서 지출하는 현금, 현물노무 등의 총칭으로 취급되고 있다. 여기에는 농지경영의 청부와 함께 농지청부비, 농한기에 이루어지는 수리시설과 농촌 도로 등의 유지, 수리 및 신설작업으로 출역하는 등도 포함되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으로 인한 불법 분담금(難派)이다. 이것은 주로 재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국가예산의 배분이 없는 촌(촌민위원회) 단계에서 징수·이용되는 것이 주류가 되었다. 예를 들면 촌단계의 임원보수, 교육비(초등학교의 건설비용과 교사에게 주는 보수), 의료생활동비, 인프라정비 사업비 등 공공적 사업비이고 그 모두가 농가와 집단경영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대부분은 세대원수, 세대 또는 경영건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할당되어다. 이러한 분담금(難派)의 제도적 문제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징수액(율)과 그 종류가 촌임원의 임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9. 부빈(扶貧, 빈곤구제)

빈곤지역은 바꿔 말하면 주민의 최저생존수준의 안정확보가 문제되어지는 지역이고 노소변궁지구(老小辺窮地區, 구혁명근처지, 소수민족거주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과 중복되어 있다. 실제의 분포는 산악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북·서남 지역의 목축·건조지대에 걸쳐서이다. 빈곤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과 지방(省)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중앙정부 지정의 빈곤현은 제7차 5개년계획기(1986~1990)에 328현, 제8차 5개년계획기(1991~1995)에는 187현이 추가되어 515현이 되었다. 이들 현은 국가부지현(國家扶持縣, 국가지원대상현)으로 되어있다. 본 백서에도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

이 최근 빈곤지역으로의 구제정책은 무상증여형의 구제로부터 경제개발을 주체로 하는 전환이 계속되면서 그 대표가 이공대부자금(以工代賑資金, 취업기회창출형 구제자금)으로 공공인프라 정비사업을 주체하는 개발사업이다. 이들 지역의 일반적인 구제사업은 민정부(民政部)가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민정부의 업무는 도시부의 거민위원회와 농촌 부의 촌민위원회 등의 말단 주민조직의 정비, 부상·퇴직군인과 그 가족의 보호, 결혼등록, 재해지역구제사업, 도시부·농촌부주민으로의 생활보조, 보호업무 등이 있고 개발사업을 관할하는 주관행정기관이 아니다. 즉, 본 백서 중에 언급되어 있는 팔칠빈곤구제난관돌파계획은 1994년부터 7년간 8,000만인의 의식충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개발, 수도, 전기, 도로 등의 인프라 정비 및 그 외의 산업진흥을 위한 재정·금융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빈곤인구를 기준하여 절대빈곤(절대적빈곤)의 기준은 정상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구체적으로는 인구1인당 평균소득이 440위안, 최저영양섭취량이 2,400kcal/인·일 이하로 되어 있다. 이 소득액은 최저영양섭취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식료비와 그 외의 의료, 주택, 연료, 교통, 의료비를 더한 액수이고 최저영양섭취량은 유엔식량농업기관(FAO)의 2,340kcal와 가까운 수준이 되고있다.

40. 농촌인구, 농업인구

농촌인구는 농촌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가리키고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영농장과 농촌의 마을에 정주(定住)하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농업인구는 농림축어업에 종사하던가 그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농림축어업 생산자, 동사업소의 직원과 책임자, 농촌의 집단조직에서 보수를 받는 임원, 교사, 의사 등의 그 가족, 국영농장의 종사자와 그 가족이 포함된다.

41. 성진, 향촌(城鎮, 鄉村 : 도시부, 농촌부)

성진(도시부)은 행정상의 용어이고 성시(도시)와 진정부가 있는 집진(集鎮, 시)으

로 구분된다. 성시(도시)에는 중앙정부직할시(북경, 천진, 상해)와 성(省, 민족자치구)정부소재와 그것에 필적하는 대·중규모도시, 현정부소재지 등의 정주민구가 2만인 이상의 지역이 포함된다. 단지, 행정상의 도시라고 해도 중심 시가지(구정부가 있는 지역)만이 도시부에 포함돼 교외의 농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집진(集鎮, Market town)은 일반적으로 농촌내 인구집중지역이지만 행정상은 진정부가 설치된 곳만이 도시가 된다. 또한 향촌(농촌부)은 성진(도시부) 이외의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

42. 성, 지구, 시, 현, 향(진)

중국의 지방정부는 4단계가 있다. 성단계에는 성, 민족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있다. 성정부 아래의 지구 단계에는 지구, 시(지구 단계의 시)의 인민정부가 있다(즉, 소수민족집중거주지역에서는 민족자치주가 있다). 이 지구단계는 직할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단계 아래의 현단계에는 현, 시(현 단계의 시)의 인민정부가 있다. (즉,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역에는 민족자치현이 있다) 현단계 아래의 향(진)단계에는 향, 진의 인민정부가 놓여져 있다(인구 20만인 이상의 시에서는 구인민정부가 있다). 현행제도에서의 최말단의 정부기구(향, 진단계까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하의 기구 즉 농촌 부의 촌민위원회와 그 아래의 촌민소조, 도시부의 가도 위원회와 그 아래의 거민위원회라고 불리는 것은 자치조직 또는 준행정조직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실질적으로는 행정기능을 임무 하면서도 재정, 인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43. 채감자;산품(菜監子;產品, 쇼핑백;생산품), 채감자공정(菜監子工程, 쇼핑백 프로젝트)

종래 도시 부를 위한 주식품(청과물, 축산물)은 국유, 합작상업조직이 주로 근교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1985년 이후에 그들의 유통은 자유화되었다. 그 후 근교산지는 시가지의 외연적 확대, 농가의 겸업화 등의 파장에 쓸리게 되었다. 그 이유로 농업부는 1988년부터 이전까지 계속되는 근교산지를 비

롯데는 도시부를 위한 부식품산지의 육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 사업이 채감자공정(쇼핑백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부식품의 생산품의 생산을 증강시켜 공급구조를 개선하여 더욱 행정구획의 경계를 타파하는 산지와 소비지의 사이에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라는 일괄된 제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지육성방침으로는 근교에 육용, 채란용 양계와 우유산지를 남방에서의 겨울 야채산지를 북방에서는 하우스야채산지를 더욱 전국에 104의 육용 돼지산지와 육우산지, 13의 담수어양식산지, 10의 젖소산지를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이 채감자(산품, 쇼핑백;생산품)라는 용어는 도시주민의 쇼핑백 말하자면 부식품을 의미하고 채감자공정(쇼핑백프로젝트)은 도시부주민의 쇼핑백(부식품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뜻을 가진다.

44. 파구(波購, 할당매수)

1950년대부터 정부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농업·부업생산물을 생산자에게 판매한 수량을 행정적으로 할당하는 국유상업조직을 통해 구매하여 그 도시 부와 관련부문으로의 공급을 보증하고 있다. 할당방법에는 수량을 할당하는 방법과 생산량에 대한비율을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 통구(통일구매) 방식과 다른 점은 생산자는 정부에게 판매하는 이외에 잉여분을 그 지역의 자유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파구(할당구매의 대상이 된 품목은 육용 돼지, 잎담배, 섬유용 작물인 마류, 차, 누에, 생맥, 참나무기름, 양모, 우피, 한방약재와 목재의 일부 등이 있다. 1985년에 육용 돼지, 수산물, 대·중규모도시의 야채의 할당구매가 폐지되어 자유화된 것을 계기로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품목마다 차차 폐지되어가고 있다.

45. 비가(比價, 교환비율),

공농업품상품종합비가지수(工農業品商品總合比價指數,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종합상대가격지수), 전도차(剪刀差, 가위모양가격차이)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기에 두 개의 상품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산물과 공업제품의 비가(교환비율)는 그 해의 농산물 평균

수매가격과 당해공업제품의 국유상업조직의 평균소매가격에 따라서 계산된다. (농산물 대 공업제품교환비율 = 공업제품단위중량당 가격 ÷ 농산물단위단위중량당 가격 = 농산물단위중량당 공업제품중량). 예를 들면 농산물과 농업용생산자재의 교환비율을 계산한 경우, 이 비율이 해를 거듭하면서 적어지게 되면 농산물생산의 생산자재가격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인식되는 것이 된다.

이 비가(교환비율)의 변화를 직접 나타내는 지표가 공농업품상품종합비가지수(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종합상대가격지수)이다. 말하자면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변동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공농업품상품종합비가지수(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종합상대가격지수) = 농업 · 부업생산물수매가격각지수 ÷ 농촌공업품소매가격지수 × 100)

이상의 2개의 지표는 공업과 농업 사이의 상품교환관계의 유 · 불리를 계산하는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런 지표가 계측되는 배경에는 농산물의 수매가격이 부당하게 낮고, 화학비료 등의 공업제품가격이 부당하게 높은 공업과 농업 사이에 불평등한 교환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대표하는 학술용어가 전도차(가위모양의 가격차)이다(가격지분). 이것은 원래 소련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1920년대 초두에 공업제품가격의 폭등과 농산물가격의 하락이 생겼을 때 이 현상을 토로키가 만들어 낸 가위의 양 칼날이 열리는 모양을 예로 들었던 것이 최초라고 한다.

46. 전영(專營, 국가유통전매)

1988년에 식량작물이 감소하고 자유시장가격이 폭등하였기 때문에 합동정구(계약수매)의 계획 달성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1989년 1월부터 혼란이 특히 커진 정미에 대해서 자유시장을 금지하고 국가유통전매로 할 것을 결정했다. 이 유통전매조치는 식량작물의 작황이 호전된 1991년에 폐지되었다.

47. 양식연도(식량연도)

양식생산년도(식량생산년도)와도 불리는 정부의 식량관리제도에 있어서 전국통

일에 쓰여지고 있는 연도이다. 일 년도는 4월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식량작물의 수확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편의상, 예를 들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1일로 지방식량연도를 제정하여 지역 내 업무에 대해서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48. 양식소구(糧食銷區, 식량소비지역)

중국의 식량관리정책에서는 지역적인 수요균형주의가 취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각 행정구역마다 산구(생산지역) 즉, 순이출지역, 소구(소비지역) 즉, 순이입지역, 자급지역으로 구분한다. 그 위에 지역간의 과부족조절로서 이출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현단계, 성단계, 전국이라는 아래의 행정단계에서의 축적방식에 따라 식량전체와 품목마다의 수급조절이 도모되고 있다. 즉, 각 성(省)에서는 성내의 생산지역, 소비지역, 자급지역에 구분되는 각 현과 시 사이에서 이출입을 조절한다. 그 결과 성으로서 여분이 생기거나 또는 부족하게 될 경우 전국에서 이출입 조절에 참가하는 것이다.

49. 구소동가(購銷同價, 매수·판매가격의 동일화)

1989년의 식량풍작을 배경으로 하여 국유식량기업의 식량섭취량이 증대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식량회계의 말단역마진 보조가 팽창했다. 이것을 받아 1991년과 1992년도에는 도시부 주민에게의 평가량(배급식량가격)이 각각 평균으로 67%, 41% 올라갔다. 그 결과 정부의 매수가격과 배급가격은 같은 수준이 되었고 말단역마진은 해소된 것이다.

50. 고분합작사(股份合作社, 주식합작사)

1980년대 후반에서 특히 동부연해 경제발달지역의 농촌에서 농지전용과 집단경영의 농촌기업의 성정이 가속화되었다. 그때까지 농가는 집단경제조직에서 농지이용권의 배분을 받기도 하고 농촌기업에 취업하기도 했으나 새로운 정보 중에서 집

단소유의 자산 이용과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발생했다. (1)외국기업이 농촌의 토지를 빌려서 공장을 설립하기도하고 공공사업에서 농지가 수용 또는 전용될 때에 지불되어지는 차입지와 전용매각대금은 법률상토지소유자인 촌 집단경제조직에 취득되어 농가는 그 분배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집단 구성원이기도한 농가는 그에 반발하여 토지의 대부, 매각수익 분배를 요구하게 되었다. (2)집단경영의 농촌기업은 집단경제조직의 소유에 귀속하지만 그 지역 농가 중에는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면서 기업에 취업한 자, 자영점업과 계절노동에 종사하고 기업과는 무관계의 것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점이 존재한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농촌기업의 자산은 증대하고 그 경영이윤이 방대한 것이 되면 각각의 농가가 기업수익의 행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최대의 수익자인 기업의 경영자의 기업재산의 횡령행위에 큰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문제는 모두 집단소유 재산에 관한 집단조직 내부의 소유, 처분, 수익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기에서 이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농가에게 고분(股分, 주식)을 분배하는 그 지분과 수익권을 보증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제도 명칭에 협동조합을 나타내는 합작이라는 개념이 붙여져 있는 것은 종래의 집단소유의 재산이 구성원농가의 공동출자관계에 바뀌 놓여지는 것, 신제도 시행 후 지분에 구집단경제조직의 지분(집체고, 집단주식)이 존재하고있는 것 등이 그 이유로 생각되어진다.

51. 지령성생산계획(指令性生産計劃, 행정명령적생산계획)

지령성생산계획(행정명령생산계획)의 반대개념으로 지도성생산계획(지도적생산계획)이 있다. 전자는 관계행정기관의 계통을 통한 임부로서 하달되어 그 완성이 위부화되어 있는 것이다. 후자는 일정 방향성을 나타내던가, 일정 폭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의향으로 제시되어진 것이고, 중앙정부는 가격, 세제, 이율 등 경제적 수단을 운용하여 실현을 위해 유도해 간다. 이 구별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시장경제화를 목표로 한 경제체제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종래의 계획 통제가 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다. 그러나 지도적 생산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명령으로 하달하는 가능성은 부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980년대 후반에 합동정구(계약수매)제도가 도입된 후계약수매계획은 지도성

계획(지도적계획)이고 정부는 자유시장 상황에 따라 수매가격을 조절하여 생산자를 유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시장상황의 폭등과 생산 부진에 따라 산지에서의 수매업무가 어렵게되면 계약수매 계획은 산지 지방행정기관과 생산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과다해야할 지령성계획(행정명령적계획)으로 변경되었다.

52. 경제작물(공예작물)

여기에서는 면화, 유료작물, 면화이외의 섬유작물(마류), 뽕나무, 차, 사탕원료, 야채, 담배, 과일, 한방한약재, 향신료, 염료용작물이 포함된다. 경제작물(공예작물)과 같은 레벨의 개념으로는 식량작물과 사료용작물, 녹비작물이 있다.

53. 파종면적(총작황면적)

조사시점에서 농작물이 실제로 파종 경작되는 면적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1)경지이외에 농작물이 파종, 경작된 경우, (2)파종, 경작했으나 이상기후로 조사시점에서 부분적으로 발아하지 않을 경우, (3)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둬하여 경작, 파종을 다시 하기도 한 면적, (4)다년생작물의 입모면적. 또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1)조사시점이전에 이상기후로 발아하지 않았을 경우, (2)기반정비사업등으로 이미 발아되어 있는 경우, (3)수도작 등의 이식전 묘판 면적, (4)수도작 등 일단 수확한 후 거둬해서 육성한 재생도(再生稻) 등의 면적. 그 외의 간작과 교호작(交互作)을 했을 경우는 동일 경지내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작물 면적을 계산한다. 즉, 작물통계에 있어서 단위면적당 수량은 보통, 이작물 면적을 분모로하여 계산한다.

54. 농업기계총동력(농업기계총동력수)

농림축부어업에 쓰여지는 내연기관, 전기동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여기에는 주로 용도가 농촌공업, 공공사업, 농림축산부어업 이외의 수송기계, 시험·교육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계, 동력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55. 농전유효관개면적(農田有效灌溉面積, 경지의 유효관개면적), 기전배관면적(機電排灌面積, 기계·전기배수·관개 실시면적)

유효관개면적은 일정의 수원이 확보되어 포장이 균형화 되고 관개 시설이 완비되어 해마다 정상적인 관개가 가능한 경지면적을 가리킨다. 단지 다음과 같이 제외된다. (1)관개설비가 1세트 상비되어 있지 않은 것(예를 들면 우물이나 수로가 통해 있으나 포장에 양수하는 펌프가 상비되어 있지 않다), (2)완전히 강수량에 의존하고 있는 수답, (3)기존의 수리시설이 노화되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56. 농촌용전량(농촌전력소비량)

농촌부의 국유부문의 공업, 교통, 공공사업 등의 사업체를 제외한 생산·생활용의 모든 전력소비요금의 합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전력사업에 의해 공급된 전력과 농촌의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이 포함된다.

57. 농용화비시용량(화학비료투입량)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질소, 인산, 칼륨 비료와 복합비료의 합계량. 그 성분량의 계산은 질소비료는 질소(N), 인산비료는 유효인산(P_2O_5), 산화 칼륨(K_2O)의 함유량으로 환산하고 복합비료에 관해서는 주요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계산된다.

58. 농업총합생산능력(농업총합생산력), 양식총합생산능력(양식총합생산력)

농업(식량) 총합생산능력이란 여러 각도에서 농업전체(또는 식량작물)에 투입·방출되는 기술계수를 계산하고 측정하여 추계 되는 일정조건하에서 가능하다고 기대되는 산출량의 수준을 가리킨다.

59. 표준량(표준식량)

식량통계의 식량중량지표의 하나로 국가품질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계산되는 식량의 중량. (표준식량의 중량 = 실물량 $\times$ {(1 - 실제의 수분함유율의 기준 - 실제의 협잡율) $\div$ (1 - 수분함유율의 기준 - 실제의 협잡율의 기준)} = 실물량 $\times$ (실제의 순성분율 $\div$ 순성분율의 기준))

60. 남방(남방지역), 북방(북방지역)

중국을 남북으로 나눌 경우 일반적으로 양자강 유역과 그 이남의 지역을 남방지역(남방)이라고 부르고, 그 이북 지역을 북방지역(북방)이라고 부른다.

61. 상품량(상품화식량), 상품량기지(商品糧基地, 식량주생산지), 상품량기지현(상품화식량주산현)

상품량(상품화식량)이란 농가 등의 생산자의 생산총량에서 자가소비용의 식용쌀, 종자유보, 사료를 공제한 식량을 가리키고 실제로 판매된 수량이 아닌 판매 가능한 수량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상품량기지(商品糧基地, 식량주생산지)를 지정하여 재정투자와 농업융자를 중점 배분하여 식량증산정책을 진행시켜 국내의 식량자급의 핵심으로 하려고 한다. 실지 주산지는 현을 단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량기지현(상품화식량주산현)이라고 불리고 현재는 500현이 지정을 받고있다.

62. 인구 일인당 평균식량 점유율

본래 이 개념은 (동년의 식량생산량 + 동순수입량) $\div$ 당년도말 총인구로 나타내야 하는데 본 백서의 수치는 (당년의 식량생산량 $\div$ 당년도말 총인구)로 나타낸다.

63. 무(畝)

중국의 전통적도량평(시제)의 면적단위. 1무 = 6.667a, 1ha ≒ 15무

64. 잎담배

엄밀히 말하면 잎담배가 아니라 일단, 건조실에서 발효, 화력 건조시킨 잎담배이다. 중국에서의 종이 말이 담배의 기본적 제품 프로세스는 농가단계의 건조실의 화력건조(건조·발효)→ (정부매수) → 부고(復烤, 국유가공공장재건조) → 종이 말이 담배 제조공장이 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자로부터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 고연(烤煙)이라고 불리는 담배이다.

65. 농간, 농간기업(農墾, 農墾企業, 국유농업개간기업), 농간계통(農墾系統, 국유농업개간기업계통)

현대중국의 국유농장역사는 일중전쟁 시대에 시작으로 동북지방에 인민해방군이 개간을 하고 국영농장을 설립했다. 국영농장에는 군간농장(해방군개간농장), 농간농장(농업개간농장), 시범부문개간농장(징역수형자의 노동개조농장)이 있다. 농업개간농장은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이후로부터 1980년대 초두까지는 농간부(농업개간성) 또는 국가농간총국(국가농업개간총국)의 관할하에 설치되어있고 현재에는 기구가 변하여 농업성이 관할하고 있다. 전국국영농장은 중앙관할기구 아래에서 각성, 자치구를 단위로 하여 간구(농업개간구)로 나뉘어 구분되어진다. 예를 들면 신장생산건설병단(1990년부터 국무원직할이 되었다), 흑룡강 간구, 내몽고 간구, 운남 간구, 광서간구 등이 있다(이상의 5개가 변경지역의 농업개간구이다). 그리고 이 아래에 각국영농장과 농업이외의 기업을 포함하는 다수의 농간, 농간기업(국유농업개간기업)이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총체로 농간계통(국유농업개간기업계통)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 또는 개개의 간구(농업개간지구)의 국유농업개간기업은 하나의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는 직원 및 그 가족생활에 관한 행정, 교육, 병원 등의 여러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

66. 농구(農區, 농업지역), 목구(牧區, 방목지역)

농구(농업지역)와는 경종농업을 주체로 하는 지역을 가리키고, 축산을 주체로 하는 목구(방목지역), 임업을 주체로 하는 임구(임업지역),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구(漁區, 어업지역)와 같은 레벨의 개념이다. 즉 축산을 주체로 하는 목구는 직접 축산지역이라고 번역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서부내륙지역의 방목지역이기 때문에 방목지역이라고 번역했다.

67. 농촌저축여액(農村貯蓄余額, 농촌개인예금잔액)

금융통계의 농촌저축여액(농촌개인예금잔액)은 중국농업은행과 농촌신용협작사(농촌신용협동조합)로 농가예금(보통예금과 정기예금등)만을 포함하고 그 외의 농촌합작기금(국유상업은행)과 민간금융기관으로의 예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농촌의 개인예금잔액은 농작물의 수확기가 종료한 12월 연말 시점잔액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여기에 비슷한 개념으로 농촌저축여금(농촌예금잔액)이 있으나, 여기에는 저축여금(개인예금) 잔액 외에 기업존관, 농촌기업의 예금, 농촌존관(농업예금)이라고 불리어지는 국유의 농업기업(예를 들면 국유농업개간기업)과 농촌의 집단조직의 예금이 포함된다.

68. 5년계획(5개년계획)

중국경제계획에는 장기계획과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이 있다. 5개년 계획(정식명칭은 국민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은 중기계획에 속한다. 이전까지의 5개년계획은 제1차에서부터 제9차까지 있으나 각 5개년 계획의 기간은 아래와 같다. 제1차 5개년계획기(1953~1957년), 제2차 5개년계획기(1958~1962년). 그 후 1963~1965년은 경제조정기라고 불리고 5개년계획이 책정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제3차 5개년계획기(1966~1970), 제4차 5개년계획기(1976~1980년), 제6차 5개년계획기(1981~1985년), 제7차 5개년계획기(1986~1990년), 제8차 5개년계획기(1991~1995년), 제9차 5개년계획기(1996-2000년)가 된다.

69. 분세제(分稅制), 중앙지방공형세(中央地方共享稅, 중앙세, 지방세, 중앙·지방공유세)

분세제(分稅制)란 조세의 종류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세수의 귀속과 관리권한을 서로 나누는 재정, 조세제도의 하나이다. 이 제도에서는 조세는 셋으로 분류된다. 제1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그 지출도 중앙정부에 귀속하는 중앙세이다. 제2는 지방정부의 고정적 수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제3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일정비율로 배분되는 중앙지방공형세(中央地方共享稅, 중앙·지방공유세)이다. 이 분세제(分稅制)는 199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중앙재정이 적자로 지방재정이 흑자인 상황을 개선하여 중앙재정에 조세수입의 60%를 모으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단, 적자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급부금(給付金)이 공포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부연해의 경제발전지역의 흑자성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 분세제(分稅制)를 어떻게 철저히 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세금의 종류도 정리되어 (1)소득세(법인소득세)에 대한 외자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세율 통일(33%), (2)유통세를 유전세(부가가치세, 17% 또는 13%), 담배, 술등 11품목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노무제공과 제3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세의 3종류로 한 것, (3)종래는 개인소득세, 고액소득자에 대한 소득조절세, 개인경영자소득세로 나뉘어진 개인소득세를 하나로 뭉친 것 등의 특징이 있다.

70. 관구(灌區, 농업관개구)

관구(농업관개구)란 하천, 댐관개 등이 행해지고있는 지방에서의 수원시설(취수구와 저수댐), 각종수로, 말단수리시설(수로, 양수펌프 등)의 일련의 관개수리 시스템이 완결되는 범위를 가리킨다.

71. 기본완호율(基本完好率, 기본정비율)

어느 시점의 기계·설비의 전보유량(대수 등)을 차지하는 정비가 완료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의 수량(대수 등)의 비율.

72. 산소율, 산품소수율(産銷率, 產品銷售率, 제 품 판매율)

일정기간내의 공업조세생산액에 대한 판매액 분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업 제품의 생산이 판매되어 실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73. 삼래일보(三來一補), 내료가공(來料加工, 위탁가공무역), 내양가공(來樣加工, 샘플가공), 내건장배(來件裝配, 녹다운방식), 보상무역

중국에서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무역과 병행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역방식을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삼래일보와 내료가공(위탁가공무역), 내양가공(샘플가공), 내건장배(녹다운방식), 보상무역이 포함된다. 위탁가공무역은 해외 발주자로부터 원료와 함께 소정의 규격, 디자인을 부여하여 가공하고 제품을 건네주는 방식이고 샘플가공도 그 하나의 방식이나 해외의 발주자가 제시하는 샘플과 제조법에 기초를 두고 가공을 하는 것을 특히 이렇게 부른다. 녹다운 방식은 외국기업이 설비, 기술, 재료를 가지고 들어와 가공 임금을 버는 방식이다. 보상무역은 외국기업에서부터 기계설비와 기술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차입금으로 놓고 제조한 제품을 건네주는 것으로 상환해 가는 방식이다. 통상무역과 다른 메리트는 외화 절약과 효율적 이용이 가능, 단기간에 기술습득이 가능, 단기간에 설비갱신이 가능한 등이 있다.

74. 투종(套種, 간작, 교환작)

어느 쪽이든 동일포장에 복수의 작물을 재배하는 집약적인 농지이용방식이다. 양자의 다른 점은 간작은 복수의 작물의 생장기간이 거의 동일 기간에 겹쳐지는 이용 방식이고 교환작의 경우에는 복수 작물의 생장기간이 일부분만이 겹쳐지는 이용 방식이다. 즉 교환작에서는 우선 최초의 작물을 파종할 경우에 늦추어 파종하는 작물의 공간을 비워두고 파종하여, 그 작물의 생장기간의 후반(수확기전)이 되어 도 또 하나의 작물을 작황 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통 생장기간이 경합하여 어느 한쪽의 작물밖에 재배되지 못하고 최초의 작물을 수확한 후 포장이 쉬게되

는 곳을 보다 긴 시간동안 포장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된다.

75. 중국농업과학원

농업부가 관할하는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립의 종합적농업연구기구. 1957년에 북경 시에 설립됐다. 중국농업과학원은 30개 이상의 연구기구(연구소, 연구실 등), 도서관, 대학원, 출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국의 과학기술촉진계획의 책정, 기초연구원, 응용연구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 산업화에 관한 정책의 책정과 그들의 실시를 중신으로 하는 행정기관(그 관할범위는 민수기술에 한정한다). 또는 국가해양궁, 국가지진국을 관할한다.

77. 고등농업교육기관, 농업중등전문학교

1950년에 고등농업교육은 각지의 종합대학에서 농학부를 설치하도록 행해왔으나, 그 후 독립한 농학단과 대학으로서 재편되어 왔다. 1979년에는 북경, 남경, 화남, 화중, 서남, 서북, 심양의 각 농업대학과 북경농업공정대학이 중점농업대학(즉, 고등교육의 레벨 업을 도모하기 위한 모델학교)으로 지정 받았다. 또한 농업중등전문학교는 각성 단계의 농업주관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농정 및 기술 스텝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즉, 중등전문학교는 일본의 고등전문학교에 상당하다.

78. 성화계획(星火計劃, 료원계획(燎原計劃)), 풍수계획(豐收計劃, 풍작계획), 온포공정(溫飽工程, 의식충족촉진사업)

어느 쪽이든 농촌지역의 경제지역의 경제사회진흥을 위해 책정된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가리킨다. 성화계획(료원계획)이란 1985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약칭이다. 이 사업의 주된 취지는 소규모이지만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바라보는 선진적·현대적 기술을 농촌에 도입·보급하는 것에 있다. 그 사업은 실로 다기 다재한 것이나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 풍수계획이란 1987년에 농업부와 제무부(일본의 대장성에 상당)가 개시한 주로 경종농업을 대상으로 한 농축수산업관련의 10종류의 보급기술의 보급사업이다. 그 보급기술에는 투자액은 소규모이지만 투자효과가 크고 농업생산력 향상이 전망되는 것을 선정했다. 예를 들면 신품종보급, 사료설계, 사육기술, 수산물의 양식, 가공기술, 생선식품의 선도보유, 가공·수송기술 등이 있다. 온포공정(의식충족촉진사업)이란 1988년부터 농업부 등에 의해 제기된 식량이입에 대해 감소증산을 도모하고 외부로부터의 식량 이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수량(하이브리드)의 교잡종 옥수수의 보급과 멀티재배기술의 보급이 행해졌다.

79. 영수물가총지수(零售物價總指數, 소매물가총지수), 도시의 상품소매물가지수, 농업생산자재소매가격지수, 거민소비가격(居民消費價格, 소비자물가지수)

소매물가총지수란 도시부·농촌부의 상품소매가격의 변동경향을 나타내기 위한 지수이다. 그 계산을 가중산출평균방식으로 산출되었으나 매년 실시된 가계조사 데이터에 따라 각 상품의 중량을 산출한다. 또한 가격은 전국의 146의 시, 80의 현에서 도시에서는 352품목의 상품, 현정부소재에서는 404품목의 상품을 취급하고 기장조사를 행하여 수집한다. 가격지표는 각 품목의 대표적 규격품의 평균가격(국정가격, 자유시장가격을 포함한다)으로 계산한다. 이 소매물가총지수는 농촌과 도시의 상품소매물가 지수가 포함된다. 또한 농업생산자재소매물가지수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는 각종농기구, 식료, 종묘가축, 대형가축, 화학비료, 농약, 농약산포기계, 기계연료가 대상이 된다.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와 농촌의 주민이 구입한 생활소비재와 서비스가격의 지수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각각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총합하여 산출하고 있다.

1993년에는 총 382품목의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생산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소매물가총지수와 다르다.

80. 농무시장, 집무시장(農貿市場, 集貿市場, 자유시장)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중국 농촌에서 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현재 농촌에서는 이러한 정기시장이 부활하고 있으나 도시부에서 일상적으로 개최되는 주로 소비재를 취급하는 일반적인 소매시장도 농무시장, 집무시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형태로 보면 변화가나 도시의 주택지역의 노상에서 행해지는 노천시장, 그 지역의 공상행정기관 등이 설비 투자하여 개설한 지붕이 있는 옥외시장이 많다. 거래형태는 생산농가와 개인경영의 상인이 가지고 들어온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 그 주체이다. 그러나 특히 농촌부 등에서는 농가가 산지에 수매하러오는 브로커에게 생산물을 판매하기도하고 반대로 상인이 농업생산자재를 판매하는 소매이외의 거래, 소비재 이외의 거래도 적지 않다.

81. 수재면적, 성재면적(成災面積, 피해면적)

농작물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나타내는 통계지표. 수재면적(재해면적)이란 농작물의 작물면적 중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10%이상의 감산을 가진 피해를 받은 면적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30%이상의 감산을 가져온 피해를 입은 면적을 성재면적(피해면적)이라고 한다. 또한 90%이상의 감산을 가져온 피해를 입은 면적을 무수면적(無收, 수확 제로 면적)이라고 한다.

82. 경지, 원지, 임지, 목장(목초지)

중국의 농업용지(농지)의 개념에는 경지, 원지, 임지, 묘포, 목장, 양식수면, 가간황지(可墾荒地, 개간가능황무지)가 포함된다. 경지는 기존의 경작지, 개간 후 초년도 논밭, 3년 미만의 미작황지, 휴간지, 경종작물을 주로 하는 수목과의 혼작지, 개척된 간석, 늪지를 포함한다. 수목지에는 뽕나무 밭, 차밭, 과수원 등 다년생 수목

이 심어져 있는 농지가 포함된다. 임지에는 용재림, 보안림, 밤나무, 호두 등 특용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지가 포함된다. 묘밭에는 수목묘밭을 가리키고 초목작물 예를 들면 수도작의 묘판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목초지는 천연, 인공채초, 방목지를 가리키고 임시적으로 이용된 미간지(未墾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간가능황무지에는 개간이 가능하나 아직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와 개간된 3년 이상 방치된 논밭을 가리킨다.

83. 표준매(標準煤, 표준탄)

각종 에너지원의 설계단위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생산·소비상황을 통일된 척도로 나타내는 채용된 환산기준이 표준매(표준탄)이다. 우선 석탄, 석유, 가스, 코크, 가솔린, 전력 등 각종 에너지원(원료)에 대해서 1Kg(전력은 1kw/시)당의 평균최저발열량을 킬로줄 혹은 Kcal로 계산하고 이것에 소정의 표준탄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전력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으로 소비된 에너지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84. 정원경제(庭院經濟, 농가건물대지경제)

농가가 집단소유의 농지가 아닌 주택의 정원이나 주위의 빈터를 이용해서 자급 혹은 판매목적으로 농산물·특산물 등의 재배로 생산활동을 정원경제(庭院經濟, 농가건물대지경제). 일본에서는 뒤뜰경제라고도 한다. 그 특징은 적은 자본으로 효율이 좋고 임기응변에 시장 요구에 맞는 생산이 가능한 것에 있고 또한 농가에 있어서도 노인노동력과 빈 시간을 활용하고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85. 전포, 전양(伝包, 伝讓, 이용권의 대차)

현재 가정련산승포책임제(家庭聯産承包責任制, 농산가생산청부책임제) 아래에서 농가가 보유하는 농지이용권은 대차가 가능하다. 이 경우 빌리는 것을 전포(또는 전입, 접포), 빌려주는 것을 전양(또는 전출)이라고 부른다. 대차의 방법에는 농가끼리의 구두상대계약에 따르는 경우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경제조직(촌경제합작

사 등)을 통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빌려주는 자는 세대의 기간적 노동력이 사망했거나 계절노동자로 부재로 경작능력이 없는 세대이고, 빌리는 자는 경작능력이 있는 빌려주는 자와 연고 또는 근린·친구관계에 있는 농가이다. 대차계약에는 식용쌀 부분의 부담관계, 집단으로의 청부비의 납입, 정부에게 판매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관한 거래결정이 이루어지나 반드시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에게 소작료를 지불하는 관계는 되지 않는다. 반대로 빌려주는 자 쪽이 농업을 하여 정부에게 식량판매 의무를 따르는 것을 빌리는 자에게 지불하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86. 홍맥, 화맥(紅麥, 花麥)

소맥은 국가품질기준에서 겨울·봄 소맥을 벼의 색과 질에 따라 6개로 분류한다. 벼의 색이 하얗고(또는 황백색) 백색소맥이 부드럽고 딱딱한 성질로 2종류, 벼의 색이 빨갛고(또는 홍갈색) 홍색소맥이 부드럽고 딱딱한 2종류, 벼의 색이 홍백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소맥이 부드럽고 딱딱한 2종류이다. 따라서 홍맥이란 상기의 홍색소맥, 화맥이란 혼합소맥이라고 생각되고 각각 수질기준이 다르다.

87. 유기적 구성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란 그 경제적 가치면에서의 구성과 기술적인 구성을 총합적으로 표시하고 생산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개념이다. 유기적 구성은 불변자본(고정자본 + 유동자본) ÷ 가변자본(노동력고용에 지불되는 자본)으로 나타난다. 마르크스의 생산력 발전과 더불어 이 비율은 상승한다. 즉, 노동집약적 생산에서 자본·기술 집약적인 생산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88. 소성진(小城鎮, 농촌부 소도시)

이 개념은 사회학적 개념이고 행정구획을 나타내는 성시(도시)와 성진(도시부)과는 별도의 차원의 개념이다. 농촌부에 소성진(소도시)을 발전시키는 의미로 본 백서

에서도 서술되어 있는데 기존 개념으로 말하면 집진(Market Town)에 상당한다. 이것은 전통적 정기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한 향과 진의 정부기관이 집중하여 입지하고 있는 농촌부의 변화가이다.

89. 중국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 그 주된 직무는 화폐, 이자, 환율, 금융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고 각종금융정책을 실시하고 화폐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금융관련법규와 규칙의 제정, 금융활동에 대한 분석·관측을 행하여 신용 조절하는 것, 각종 금융·보험기업의 설립·해산의 심사·감독하는 것, 인민엔의 발행·관리·유통을 조절하는 것, 외자와 금융 비축의 관리와 감독하는 것, 각종금융시장의 감독하는 것이다.

90. 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국가권력기관이지만 의회(입법기관)이면서 집행기관이기도한 의회·행정일체의 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각 정부단계의 인민대표대회의 정점에 선다. 현단계 이상의 인민대표대회에는 상무위원회가 있어 같은 단계의 정부기관, 사법·검찰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전국인민대표에 있으나 헌법과 서법규에 저촉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성단계의 인민대표대회도 독립의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91. 기본농전(基本農田, 기본농지)

1992년에 출판된 『전국기본농지의 보호업무를 전개하는 것에 관한 통달』은 특히 대도시근교에서 우량농지와 야채생산용지가 급속히 전용되어 지역적 식량자급 달성이 위협을 받게 된 것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농전(기본농지)의 지정을 통한 경지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 농지 난개발방지가 가능하고 당해지역의 농가가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보호할 농지를 지정해 가는 가운데 그 후의 전용개발이 가능해지는 토지구분이 명확해지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92. 사회상업농부산물수구액(社會商業農副産物收購額, 농업·부업생산물매수총액), 국내순구진액(國內純購進額, 국내순매수총액)

사회상업농부산물수구액(농업·부업생산물매수총액)이란 전국상업(유출을 포함한다), 요식업, 공업 등의 기업 및 도시부·농촌부의 비농민이 생산농가, 국유농장 등으로부터 매입한 모든 농업, 부업생산물의 총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농민자신이 구입한 공장이 아닌 수공업생산에 의한 사탕, 종이 등의 농산가공품도 포함된다. 이에 포함되는 식량은 무역량(유통식량) 중량이고 식용식물류는 제품이 된 대두, 미강(米糠), 옥수수유가 포함된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는 건조물도 생선수산물과 더불어 합산되고 있다.

국내순구진액(국내순매입총액)은 전국상업부문에 따라 상품의 구입, 판매의 균형 관계를 계측하는 통계지표. 국유, 집단상업조직과 개인상인 등 모든 상업기구가 고매, 도매 등의 전매 또는 가공과 그 판매를 위해서 국내시장에서 매입한 상품의 총액을 말한다. 이에 포함되는 품목과 그 판매 주체는 다음과 같다. (1)생산자로부터의 공업제품과 농산물 매입, (2)정부가 통제하는 중요물자의 같은 취급기업으로부터의 구매, (3)출판사 등으로부터의 서적, 잡지의 매입, (4)정부기관, 학교, 단체, 기업으로부터의 잉여물자와 폐지품의 매수, (5)재정성이 농촌에서 징수한 농업세(현물세)의 매입, 기타이다.

여기에 병행하는 지표로는 기초 채고, 수입 등이 있고 그들의 합계치를 내는 것에 따라 상업부문의 상품조달면에서의 생산 등 타 산업의 연관이 파악 가능한 것이 된다.

93. 국민수입(國民收入, 국민소득)

국민수입(국민소득)은 시장가격에 의해 평가된 물적생산부문의 국내 순생산액이다. 그 특징은 국내생산이고 본국국민의 해외에서의 요소수입을 포함하지 않는다. 물적생산부문이라고 불리우는 광공업, 농림축수산업, 건설업, 운수업, 우편통신업,

상업, 요식업만이 대상이 되는 그 외의 서비스부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수치의 산출방법에는 상기부문의 총생산액 - 원재료비 - 외부에 위탁한 운송, 반가공, 수리비 - 고정자본의 감가상각액이라는 방법과 상기부문의 임금, 이윤, 세, 이자분배를 집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94. 잡교수도(雜交水稻, 교잡수도), 잡교옥미(雜交玉米, 교잡옥수수)

각각 수도작, 옥수수의 일대잡종(F_1) 품종이고 종래 종에 비교해서 다수량이라는 특징을 가진 하이브리드이다. 중국의 교잡 수도작 품종의 개발은 1960년대에 개시됐고 1970년대에 웅성불능(雄性不能)의 야생 벼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인디카 계통의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급속하게 진전해 왔다. 현재는 남방의 수도작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어져 있으나 이모작 조생벼의 하이브리드품종은 식미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품질이 좋은 품종으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가가 산지의 과제가 되었다.

95. 존란두수(存欄頭數, 사육두수), 출란율(出欄率, 성축출하 · 도살두수)

가축동물의 존란두수(사육두수)는 연말시점에서 통계가 조사되고 연말사육두수란 연말 시점의 생육단계를 묻지 않는 대형가축, 돼지, 양, 가금의 실유두수, 마리수이다. 축산통계에서는 따로 사양두수라는 지표가 있으나 이것은 일정 기간 내에 사육한 모든 도살, 매각한 것을 포함한 모든 가축 두수를 가리킨다.

출란율(出欄率, 성축출하 · 도살두수)이란 일반적으로 가금, 젖소, 양을 제외한 상품적인 육용가축사육(즉, 소와 돼지고기)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일년마다 통계가 조사된다. 우선 성축출하, 도살두수란 일년간 육성이 끝나 출하, 도살한 식용가축두수를 가리키며 자가소비를 위해 도살된 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출란율(성축출하도살두수율)은 연간 성축출하, 도살두수 ÷ 연초의 존란두수(사육두수)

수) $\times 100$ 으로 계산된다.

96. 중저산전(中低産田, 중등·저수량경지)

중국에서는 농지기반정비 사업의 추진을 강조할 때에 경지의 풍도를 고산전(고수량경지), 주산전(중등수량경지), 저산전(저수량경지)으로 3구분하여 중저산전(중등, 저수량경지)의 개량을 지적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 분류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별로 빈번하게 공표되지 않는다. 길림성 농업구획연구소의 李恩澤 등의 논문에 의하면 적어도 1991년 시점에서 채용되어진 국가 기준은 식량작물의 단위 작황 면적당 수량이 4,575Kg/ha 이상이 고수량경지이고, 2,257.5~4,500Kg/ha가 중등수량경지, 2,250Kg 이하가 저수량경지라는 것이다. 더불어 전국작물통계에서 계산하면 1991년의 식량작물의 1ha당 수량은 3,875Kg이었다.

97. 국가경제위원회

국민경제각부문간의 조절을 도모하는 중앙행정기관. 주된 직무로는 국민경제의 발전계획, 중장기계획의 책정에 참가할 것, 계획에 따라 공업, 교통, 상업, 무역 각 부문에 대한 연도계획안을 책정, 하달하여 그 실시를 감독할 것, 마크로 경제분석을 하여 관련성청과 공동으로 마크로컨트롤을 실시할 것, 정부의 산업정책의 전체계획, 산업구조정책, 지역경제정책의 합리성을 보증할 것, 공업, 교통, 상업, 무역, 시장정비에 관한 총합적 법률 및 정책을 책정하여 그 실시를 감독하는 등이다. 시장경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업종, 지역을 넘어선 경제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각 성청간의 정책적 합리성의 유지와 시장을 통한 마크로컨트롤 기능을 완수하는 것이 추구하고 있다.

98. 농촌개혁시험구

1987년부터 정부는 농촌경제체제개혁을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각 테마를 좁혀 시험구를 시, 현 단위에 16의 성, 민족자치구, 직할시의 21지역으로 지정해왔다. 그 테

마는 식량매입, 판매제도개혁, 농촌의 협동조합 경제조직의 육성, 농촌기업경영제도의 개혁, 토지관리제도의 개혁, 농촌금융제도의 개혁, 임축어업경영제도개혁, 국유농장제도개혁, 빈곤지역개발 등에 걸쳐 있어 정부의 농촌경제체제개혁의 Plan만들기에 공헌해왔다. 즉, 농촌개혁시험구는 농업성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개혁실험구관공청이 관할되어 있다.

99. 성향호적제도(城鄉戶籍制度, 도시·농촌호적제도), 잠주호구(暫住戶口, 임시거주호적), 정주호구(정주호적)

현행의 호적제도는 1958년에 공포된 호적등록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호적은 국민 일인당 일부 작성되어 공안파출소와 촌민위원회에서 관리되어 각 세대에 복사된 호적장이 배부된다. 호적관리는 동일 생계지를 일호로 등록한다(농가가 동일 지역에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가 같으면 일호가 된다). 호적에는 (1) 성진호적(도시부호적) 즉, 성진(도시부) 지역 내 거주하는 자의 호적, (2)농촌호구(농촌호적), 즉 성진(도시부) 이외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호적, (3)집단호구(집단호적)가 있다. 집단호적은 정부기관, 학교, 단체, 기업 등의 내외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호적이다. 예를 들면 학생이 기숙사에 사는 경우는 도시부, 농촌부 출신에 관계없이 집단호적이 되어 기숙생 전체가 1호가 된다. 알려진 대로 호적이동, 특히 농촌부에서 도시부로 이동하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본래 농촌호적 관리업무에는 도시부로 유입 제한, 계획출산정책의 철저 등의 목적이 있다. 도시부호적의 변경항목에는 정주(상주), 임시거주,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변경(개명, 직장이동, 결혼, 이혼 등)의 구분이 있다. 근년, 정책적으로 농민이 도시부로 계절노동자가 용인받는 잠주호구(暫住戶口, 임시거주호적)의 취득이 인정받게 되었으나 이 잠주(임시거주)는 3일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만 인정된다. 그러나, 이직 정주호구(정주호적)가 인정받지는 못한다.

100. 혼합가격

정확하게는 혼합평균가격. 어느 한 품목에 대하여 규격과 품종의 차를 무시하여

판매액(또는 미수액)을 판매량(또는 매입량)으로 나누어 얻는다. 농업, 부업생산물 통계에서는 식량, 면화, 목재, 달걀, 수산물 등 40품목에 대해서 혼합평균매입가격, 시장가격 등 제도적으로 복수의 가격 종류가 있는 경우도 혼합평균가격에서는 모두가 합쳐진 데이터가 된다.

101. 국내무역부

국내의 상품유통을 주관하고 유통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국유상업기업, 구매판매 협동조합을 지도하는 중앙행정기관, 주로 업무로서는 (1)유통정책의 책정과 실시, (2)주요상품에 관한 시장제도의 정비 추진, (3)주요상품의 수요균형계획의 책정과 실시(특히 국유상업기업 등을 통해 행한다), (4)유통관련 인프라정비사업, (5)관련국 유기업에 대한 감독 등이다. 전용식량비축을 실시하는 국가식량비축국은 국내무역성 아래에서 관할된다.

102.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시장경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평한 시장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에 반부당경쟁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경제적 영리활동을 행하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공상행정관리가관이 실제 적발한다. 동법에서 금지된 행위는 이하 11항목이다. (1)기존브랜드 부정사용과 위조브랜드제품의 제조, 판매 등 상표사용에 관한 부정행위, (2)법적으로 인정받은 공공적 사업의 경영기업이 부당하게 소비자를 배제하기도하고 타 기업의 정당한 참여를 배제하는 것, (3)정부기관이 행정 권한을 범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거나 타 지역의 기업과 제품이 지역 내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4)기업이 특정한자에 대해 뇌물과 표시가격이외의 할인하는 대우를 하는 것, (5)광고 등의 부당 표시, 확대 표시, (6)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기업비밀을 폭로하는 것, (7)경쟁상대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할인, (8)구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9)5,000엔 이상의 현상금을 붙인 상행위와 현상금을 붙인 결함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 (10)경쟁상대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11)경쟁입찰의 담합과 부당한 가격조작

103. 연해개방도시, 경제특구

연해개방회도시란 해외의 기술, 자본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합병기업 등에게 투자, 세제상의 특별 대우 조치를 인정한 도시를 가리킨다. 1984년 5월에 처음으로 전국의 동부연해지역의 14의 도시가 지정 받았다.

경제특구는 1980년8월에 설치된 광둥, 복건의 4개의 특별지역을 가리킨다(1988년에 해남도가 성으로 승격하여 5개의 특구가 되었다). 경제특구에서는 합병기업 등의 외자직접투자가 장려되어 세금수입, 용지취득, 외국자본의 결제, 이윤송금, 출입국관리의 면에서 각종의 특별 대우 조치가 말하고 있다.

104. 계획출산계획

계획출산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중요한 국책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 목적은 인구증대를 계획적으로 억제하는 것에 있고 늦게 결혼하는 것과 아이를 적게 갖는 것, 잘 낳아 기르는 것을 제창하는 즉, 하나만 낳기를 장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세대(부부)마다 하나 낳기를 실행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농촌부와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의 적용이 난화되어 있다. 또한 하나 낳기 정책을 엄수한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보험비, 무료보육, 진찰, 취학 등 여러 보조가 주어진다. 반대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상가와 같이 의료, 교육면에서의 보조를 받을 수 없다. 즉 아이양육부담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105. 농업후비자원개발보험(農業後備資源開發保險, 농업예비자원개발보험)

이것은 농업부 등의 관계기관이 미이용 황무지, 산, 경사지의 개발을 위해서 제안한 일종의 자금확보, 운용제도이나 현시점에서는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다.

106. 무역량(貿易糧, 유통식량), 원량(原糧, 원곡)

정부의 식량관리정책의 매입, 판매, 이출입, 보관의 관리를 할 때 쓰여지는 식량개념. 밀, 정미, 대두, 옥수수 등 잡곡, 서류의 다섯 가지를 포함한다. 각각의 내역과 중량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밀에는 밀(미제품)과 밀가루를 포함하고 밀은 밀가루로 환산하여 중량 표시한다. (2)정미에는 자포니카, 인디카, 찹쌀, 쌀래기, 비폰, 현미, 벼를 포함하나, 현미와 벼는 정미로 가공한 비율을 곱해서 환산하고 정미, 쌀래기, 비폰의 중량에 가산한다. (3)대두에는 대두, 대두비지, 대두가루(콩가루)로 하고 이들을 합산하여 중량 표시를 한다. (4)옥수수는 이상의 3종과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잡곡 모두를 포함하고 그 중량표시는 조에 대해서는 정백조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5)서류는 고구마, 감자, 건조감자, 감자가루를 포함하고 중량은 그들의 총량이 된다.

무역량(유통식량)이 식량관리정책상의 개념이라고 하면 농업(식량생산) 정책에 비중을 둔 개념으로서 원량(原糧, 원곡)이 있다. 이것은 수확, 탈립(脫粒, 탈곡)을 거쳐 식량이고 벼 비비기, 정백, 제분 전의 밀, 벼, 대두, 고량, 조, 옥수수, 하늘콩, 강낭콩, 보리, 건조 감자, 생감자를 포함한다. 그 중량표시 시에는 생감자에 대해서는 1/5로 환산하여 더한다.

107. 복간(復墾, 전 용지의 회복)

1988년에 토지복간규정(토지회복개간법)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광산개발과 각종 공사, 자연재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용되기도 하고 폐기된 토지를 농용지 등으로 개간하는 것을 그 당사자에게 의무화시킨 법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광, 토사 등의 채굴에 의해 파괴된 토지, 지하자원채집으로 인한 몰락된 토지, 산업폐기물과 건축자재 등을 두고 있는 곳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 공장 배수 등에 의해 오염된 토지, 노화되고 폐기된 수로, 도로, 철도 등의 토지,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된 토지, 장기간 유휴상태에 있는 집락, 시가지주변의 토지가 대상이 되고 있다. 개간 후 용도 별로 보면 각각의 토지조건에 따라 경지, 임지, 수산양식 연못, 공원, 녹지, 목장, 채초지 등을 조성하게 되어 있다.

108. 표준돈(標準, 표준돈)

화학비료 가중평가가격을 산출할 경우 등에 이용되는 화학공업분야의 중량환산 지표의 하나이고 성분환산량과도 다르다. 종류가 다른 화학비료를 통일하고 중량단위에 환산할 시에는 각 품목마다 새롭게 정해져 있는 환산지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연구자료 D168-1 / 2002. 11

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업정책

등 록 제5-10호(1979. 5. 25)

인 쇄 2002년 11월 일 발행 2002년 11월 일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E-mail:Dongyp@chollian.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